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78호

2016. 11. 10.(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6-2177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5
제2016-2178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
제2016-218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
제2016-219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
제2016-2199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8
제2016-2214호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
제2016-2221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제2016-2222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

◆ 고 시

제2016-350호 동북권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3
제2016-3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20
제2016-352호 달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2
제2016-353호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 도면고시(경미한 변경)	44
제2016-354호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고시	71
제2016-355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	76
제2016-356호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고시	109
제2016-357호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38
제2016-358호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고시	158
제2016-359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87
제2016-360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회기외 2개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198
제2016-361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51
제2016-362호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52

제2016-363호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259
제2016-364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	260
제2016-365호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261
제2016-366호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262
제2016-367호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263
제2016-368호 도시관리계획[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	264
제2016-369호 도시관리계획[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	291

◆ 공 고

제2016-2164호 소방시설업 폐업 공고	319
제2016-216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320
제2016-216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320
제2016-2173호 종합공사시공업자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공시송달 공고	322
제2016-2183호 공시 송달 공고	322
제2016-2186호 밤고개로 확장공사 기본설계(안) 공람공고	323
제2016-218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324
제2016-2197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326
제2016-2202호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326
제2016-2211호 강서구 화곡동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327
제2016-2213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328
제2016-2217호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330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6-163호 서울특별시의회 안건 제출 공고	337

◆ 구 고 시

제2016-12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종로구) ...	338
제2016-126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종로구)	344
제2016-100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359
제2016-101호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중구)	361
제2016-102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364
제2016-125호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산구)	367

제2016-12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용산구)	369
제2016-144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도봉구)	370
제2016-14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도봉구)	372
제2016-104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노원구)	375
제2016-10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노원구)	379
제2016-95호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381
제2016-9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은평구)	382
제2016-98호 도시관리계획(응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384
제2016-7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양천구)	385
제2016-168호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구로구)	386
제2016-1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동구)	387

◆ 구 공 고

제2016-9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중랑구)	390
제2016-11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강북구)	395
제2016-1308호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내발산동 755-4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주민열람 공고(강서구)	397
제2016-963호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동작구)	398
제2016-1310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서초구) ...	405
제2016-13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강동구) ...	408

◆ 사업소고시

제2016-2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11
제2016-2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11
제2016-2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12
제2016-2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12

◆ 사업소공고

제2016-262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413

제2016-263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436
제2016-5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공고(은평소방서)	450
제2016-22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 이수자 업무정지 공고(송파소방서)	450

◆ 기 타

제2016-385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52
제2016-391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52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77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103호)에 따라 전국 시설관리공단 등의 명칭이 간결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 부산시설공단, 울산시설공단, 구미시설공단, 수원시설공단 등

나. 공단의 관료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기업성을 부각 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란 사명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공단을 공무원 조직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공단의 관료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기업성을 부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변경(제명 및 제1조, 제2조, 제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도환경개선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6층(청계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과(전화: 2133-8132, FAX: 768-8905, E-mail: osk0615@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78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103호)에 따라 전국 시설관리공단 등의 명칭이 간결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 부산시설공단, 울산시설공단, 구미시설공단, 수원시설공단 등

나. 공단의 관료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기업성을 부각 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란 사명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공단을 공무원 조직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공단의 관료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기업성을 부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변경
(제명 및 제1조, 제2조,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보도환경개선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6층(청계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과(전화: 2133-8132, FAX: 768-8905, E-mail: osk0615@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8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위임근거 없이 규칙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내용 삭제(안 제3조 삭제)
-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 변경(안 제14조제4항, 제18조 제3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등(안 제18조제5항제5호, 제31조제5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참조 :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11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9707@seoul.go.kr

2) 주소 : (우)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재생협력과

3) 팩스 : 02-2133-075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전화 : 02-2133-72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9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행정자치부령) 개정사항 반영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별표의 징계기준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령 개정 사항 반영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의결시 강화조항 신설(안 제2조제2항)
- 징계의 감경 제외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제8호)
- [별표 1] 징계기준 중 ‘1. 성실의무 위반’ 유형으로 부작위, 소극행정,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신설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반영

- [별표 1] 징계기준 중 ‘1. 성실의무 위반’ 유형으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신설
- [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중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에서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삭제(별표1에 포함)하고,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신설,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의무 위반행위’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02)2133-3019, FAX: 02)2133-1301, E-mail: kkk2776@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99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민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서비스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마을세무사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나. 마을세무사 주요 활동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다. 마을세무사 위촉 및 해촉 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라. 마을세무사 활동 범위, 상담대상자, 상담방법, 상담 처리를 규정함 (안 제6조~제8조)
- 마. 마을세무사 수당 및 표창 근거를 규정함 (안 제9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2133-3354, FAX: 2133-1033, E-mail: sp8265@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14호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소속기관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부패방지 자정노력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및 행정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서울형 청렴자율준수제」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형 청렴자율준수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정의에 청렴자율준수제 포함
 - 청렴자율준수제의 운영방향, 기본요건, 평가,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지정 및 역할
-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인원 변경
 -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여 총 5명 내외’ →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청렴자율준수제’ 관련 내용은 별도의 장으로 신설(제5장)
- 종래 “제5장 보안 및 사후관리”는 제6장으로 변경
- ‘평가’ 및 ‘포상’ 조항에서 ‘청렴자율준수제’ 인센티브 등 규정

나. 기타 조문 현행화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02-2133-1891, FAX: 02-2133-1301, E-mail : ezspark@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21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권의 위임사항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하천법」과 상이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 점용료·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시 별도 조정산식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5퍼센트 이상 증가시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액된 금액 적용(안 제6조)

나. 납부 기한 내 점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및 독촉

- 증가산금 삭제(안 제8조)

다. 공익을 위한 처분 등으로 점용료 반환시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를 적용하여 가산(안 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하천관리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전화: 02-2133-3898, FAX: 02-2133-1044, E-mail: mansi10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22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권의 위임사항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하천법」과 상이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의 점용 허가함에 있어 같은 장소에 2명 이상 경합되었을 때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선정 (안 제2조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하천관리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전화: 02-2133-3898, FAX: 02-2133-1044, E-mail: mansi10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0호

동북권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43호(2010. 10. 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1호(2010. 11. 4)로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1호(2016.9.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 동북권체육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동북권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토지를 활용하여 서울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서울시민들의 생활체육수요 충족 및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2.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

3. 면 적 : 49,830㎡

4.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84)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2091-3753)

동북권체육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원)

구분	변 경 전 (체 육 공 원)				변 경 후 (체 육 공 원)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동)
합 계	33,819.00	9,965.50	1동	38.50	17	49,830.00	24,439.22	5	6,406.87	7,111.40	57	
기 반 시 설	소 계	4,071.00				3,348.69	3,348.69					감) 722.31㎡
	도 로	3,170.00				2,694.00	2,694.00					감) 476.00㎡
	광 장	901.00	901.00				654.69	654.69				감) 246.31㎡
휴 양 시 설	390.50	390.50			17	64.0	64.0				50	감) 326.50㎡
운 동 시 설	5,465.50	5,465.50				17,070.0	17,070.0	1	4,423.60	4,960.32	5	증) 11,604.50㎡
교 양 시 설												
편 의 시 설						1,787.21	1,787.21	3	149.88	181.07		증) 1,787.21㎡
관 리 시 설	38.50	38.50	1	38.50		136.62	136.62	1	136.62	273.24	2	증) 98.12㎡
녹지 및 기타	23,853.50					27,423.48	2,032.70		1,696.77	1,696.77		증) 3,569.98㎡
시 설 율 (법정 50%)	(9,965.50 / 33,819.00) × 100 = 29.46%					(24,439.22 / 49,830.00) × 100 = 49.05%						
건 폐 율 (법정 15%)	(38.5 / 33,819.00) × 100 = 0.11%					(6,406.87 / 49,830.00) × 100 = 12.86%						

2. 시설조서

구분	부호	위치	변 경				전 (채 육 공원)				변 경				후 (채 육 공원)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기	합계		33,819.00	9,965.50		1동	38.50	-	17			49,830.00	24,439.22		5동	6,406.87	7,111.40	57	
	소계		4,071.00	4,071.00								3,348.69	3,348.69						
	도로		3,170.00	3,170.00								2,694.00	2,694.00						
	가	전지역	901.00	901.00															폐지
	가-1	2개소	257.00	257.00															폐지
반	가-2		644.00	644.00															폐지
																			신설
										가		654.69	654.69						신설
										가-1	도봉동15-22	(336.64)	(336.64)						신설
										가-2	도봉동8	(163.80)	(163.80)						신설
시										가-3	도봉동5-1	(154.25)	(154.25)						신설
												64.00	64.00					50	
																			폐지
																			폐지
설	소계		390.50	390.50					17										
	휴게소	나	390.50	390.50															
	나-1		154.00	154.00															폐지
	나-2		236.50	236.50															폐지
	①		(52)	(52)	하드 우드				1										폐지
양	파고라	②	(100)	(100)	하드 우드				4	①		64.00	64.00					4	신설
	평의자	③							12	②								20	신설
	등의자									③								18	신설
	편상									④								8	신설
	소계		5,465.50	5,465.50								17,070.00	17,070.00		1동	4,423.60	4,960.32	5	
안	다		4,865.40	4,865.40								3,120.40	3,120.40						
	다-1		1,081.20	1,081.20		2면													폐지
	다-2		1,081.20	1,081.20		2면													폐지
	다-3		1,621.80	1,621.80		3면													폐지
	다-4		540.60	540.60		1면													폐지
등	다-5		540.60	540.60		1면													폐지
										나	도봉동1-6	3,120.40	3,120.40		5면				신설
	죽구장	라	600.10	600.10															폐지
	테니스/ 배드민턴장									1	도봉동8	4,423.60	4,423.60	RC조	2층, 17면	4,423.60	4,960.32		신설 (실내)
	게이트볼장									다	도봉동8	1,496.00	1,496.00		4면				신설
시	축구장									라	도봉동5-2	8,030.00	8,030.00		1면				신설
	주민운동시설									⑤								5	신설

구분	변경 전 (체육공원)								변경 후 (체육공원)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소계		-	-			-	-				1,787.21	1,787.21		3동	149.88	181.07		
	주차장									마	도봉동1-7	1,637.30	1,637.30						신설
	휴게음식점									2		60.75	60.75			60.75	60.75		신설
	카페테리아									3		27.60	27.60			27.60	27.60		신설
	전망대									4	도봉동1-23	61.53	61.53	RC 조	2층	61.53	92.72		신설
관리시설	소계		38.50	38.50		1동	38.50	-				136.62	136.62		1동	136.62	273.24	2	
	화장실 ④		28.50	28.50															폐지
	관리실 1		10.00	10.00															폐지
	관리사무소/화장실									5	도봉동7-1	136.62	136.62	RC 조	2층	136.62	273.24		신설
	자전거보관대									⑥								2	신설
녹지 및 기타	소계		23,853.50									27,423.48	2,032.70			1,696.77	1,696.77		
	녹지		21,704.00								전지역	25,390.78							
	대전차방호시설		2,149.50									2,032.70	2,032.70	RC 조	1층	1,696.77	1,696.77		예술창작공간 활용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시 점	종 점	비 고
당초			소 계		1,194.4	3,170				
변경			소 계		795.3	2,694.0				
당초 폐지	소로	3	1	6.0	210.0 —	1,260.0 —	진입로	부지경계부	부지경계부	
당초 폐지	산책로		1	1.8	94.4 —	169.9 —	연결로	진입광장	부지경계부	
당초 폐지	"		2	1.8	115.0 —	207.0 —	"	진입광장	부지경계부	
당초 폐지	"		3	3.0	136.0 —	408.0 —	"	진입광장	휴게소 나-2	
당초 폐지	"		4	1.5	394.0 —	591.0 —	"	산책로-3	휴게소 나-2	
당초 폐지	"		5	2.0	84.0 —	168.0 —	"	산책로-4	광장 가-2	
당초 폐지	"		6	1.5	4.0 —	6.0 —	"	산책로-3	족구장 라	
당초 폐지	"		7	2.0	15.0 —	30.0 —	"	휴게소 나-2	휴게소 나-1	
당초 폐지	"		8	3.0	21.0 —	63.0 —	"	휴게소 나-1	광장 가-2	
당초 폐지	"		9	3.0	6.0 —	18.0 —	"	광장 가-2	테니스장 다-5	
당초 폐지	"		10	1.5	3.0 —	4.5 —	"	산책로-5	테니스장 다-5	
당초 폐지	"		11	1.5	3.0 —	4.5 —	"	산책로-4	테니스장 다-5	
당초 폐지	"		12	1.5	3.0 —	4.5 —	"	산책로-4	테니스장 다-5	
당초 폐지	"		13	1.5	4.0 —	6.0 —	"	광장 가-2	테니스장 다-5	
당초 폐지	"		14	1.5	4.0 —	6.0 —	"	산책로-4	테니스장 다-5	
당초 폐지	"		15	1.5	5.0 —	7.5 —	"	광장 가-2	테니스장 다-5	
당초 폐지	"		16	2.0	35.0 —	70.0 —	"	광장 가-2	산책로-4	
당초 폐지	"		17	3.0	30.0 —	90.0 —	"	광장 가-2	테니스장 다-4	
당초 폐지	"		18	2.0	28.0 —	56.0 —	"	산책로-17	산책로-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시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3	1	4.0	17.0	68.0	주진입로	남측지구계	소로3-2	
신설	"	"	2	3.0	220.0	703.2	시설간 연결로	서측지구계	전망대	
신설	"	"	3	4.0	200.0	903.0	시설간 연결로	광장 가-1	광장 가-3	
신설	"	"	4	1.5	32.0	57.7	시설간 연결로	소로3-3	게이트볼장	
신설	"	"	5	4.0	32.3	135.4	시설간 연결로	주차장	소로3-3	
신설	"	"	6	3.0	32.0	128.7	시설간 연결로	소로3-3	게이트볼장	
신설	"	"	7	1.5	10.0	15.0	시설간 연결로	소로3-3	축구장	
신설	"	"	8	1.5	32.0	48.0	시설간 연결로	소로3-3	게이트볼장	
신설	"	"	9	3.0	30.0	90.0	시설간 연결로	소로3-3	광장 가-2	
신설	"	"	10	3.0	30.0	90.0	시설간 연결로	소로3-3	광장 가-2	
신설	"	"	11	1.5	38.0	62.0	시설간 연결로	소로3-3	소로3-3	
신설	"	"	12	1.5	10.0	15.0	시설간 연결로	소로3-3	축구장	
신설	"	"	13	2.0	90.0	180.0	시설간 연결로	동측지구계	광장 가-3	
신설	"	"	14	9.0	22.0	198.0	시설간 연결로	동측지구계	주차장	

조성계획도(당초)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계획도(변경)

동북권 체육공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금천구고시 제2014-8호(2014. 3. 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527호(2015. 8.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75호(2015.9.17.)로 고시된 『디지털3단지~산길간 지하차도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가산동319-10(디지털3단지) ~ 독산1동998-10(두산길)(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건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1) 전 체 : 폭4차로, 연장452m (지하차도290m)

2) 금 회 : 폭4차로, 연장142m(가산동 구간)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불입(변경)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토지조서(변경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8) 및 서울특별시 도시 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02-3708-8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변경)

□ 사업명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가산동 구간)

연번	구분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구	동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당초	금천	가산	319-27	장	1,640	1,640	주식회사 교 학 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2	한국산 업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근저당	319-7에서본 할원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근저당	
										주식회사 서울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78	근저당	
										주식회사 전주페이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80	근저당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	
2	변경	금천	가산	319-27	장	1,640	1,640	주식회사 교 학 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2	한국산 업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근저당	326-8에서 분할원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	
										주식회사 전주페이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59	근저당	
										메리츠종합금융 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여의도동)	근저당	
										주식회사하나다 올 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층(대치동,신인빌딩)		
										주식회사하나자 산 신탁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연번	구분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구	등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3	당초	금천	가산	638	철	26	18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변경	금천	가산	638	철	26	18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4	당초	금천	가산	651	철	1,914	224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변경	금천	가산	651	철	1,914	224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5	당초	금천	가산	731	철	879	111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변경	금천	가산	731	철	879	111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6	당초	금천	가산	766	철	349	43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변경	금천	가산	766	철	349	43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별첨 2 서(변경)

□ 사업명 : 디지털3단지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가산동 구간)

일련 번호	구 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면적 (㎡) /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관계	
1	당초	가산동	319-2 7	슬라브	콘크리트1층	1,364㎡	주식회사 교 학 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2	한국신 업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근저당	1층 및 지하,외부
				슬라브	콘크리트2층	1,364㎡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근저당	
				슬라브	콘크리트3층	1,364㎡			주식회사 서울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78	근저당	
				건물	적벽돌/함석	403㎡			주식회사 전주페이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80	근저당	
				슬라브	콘크리트지하	36㎡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	
				보일러		1대						
				담장	H=1.6m	16m						
				노리기계		3대						
				에어컨		5대						
				Col Bus제본기	A-TYPE	1대						
				Col Bus제본기	B-TYPE	1대						
				Col Bus컨트롤러		3대						
				자동리프트		23m						
				제단기 및 출입기		1대						
				리프트		1대						
				하마디온전기		1대						
				출입기		1대						
				벤딩기		1대						
				케비넷		1대						
				운전기부속품		1대						
				사무실	샷시	13.7㎡						
				고모리온전기		1대						
				물레일		1대						
				지문제거기		1대						

인원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당초 가산등 319-2 7			냉동기저수조		1대	주식회사 교학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2				1층 및 지하, 외부
				모터		1대						
				냉동기컨트롤판넬		1대						
				습수냉동기		1대						
				전기판넬		3대						
				드라이판넬		1대						
				전기판넬		1대						
				에어컨분전함		1대						
				잉크 판넬		1대						
				가습기		2대						
				컨트롤판넬		1대						
				냉각수로		1대						
				브로아모터		1대						
				에어드라이어		1대						
				집진기		1대						
				집진기실	함석/철골	107.1㎡						
				쓰레기장	천막/콘트리트	18.0㎡						
				실외콘프레셔실		15.4㎡						
				실외콘프레셔		1대						
				실외냉동기		2대						
				에어컨실외기		10대						
				실외기반침틀	콘크리트	28.0㎡						
				은행나무 (D20)		1그루						
				은행나무 (D30)		1그루						

일련 번호	구 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면적 (㎡) /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1	당초 가산등 319-2 7			전기컨트롤러		3대	주식회사 교 학 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2					2층
				실링기		2대							
				다트시설		1식							3층
				두랄기		1대							
				삼방제단기		1대							
				벨트라인		10m							
				중철기기		2대							
				에어컨		2대							
				컴프레서		3대							
				After Cooler		1대							
				사무실	석고	85.5㎡							
				탈의실	2개소/석고	58.2㎡							
				창고	석고	123.5㎡							
				전기실	석고	71.8㎡							
				다트시설		1식							
				옥외변전설비시설	3700kw	1개소							
				변전설비시설판넬	3700kw	1개소							약상
				변압기	100Kw-600Kw	11기							
				변압기웬스	H=2.0m	42.6m							
				실외기		8대							
				창고	스레트	5.5㎡							
				컴프레서		3대							

일련 번호	구 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면적 (㎡) /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번경	가산동 319-7		슬라브	콘크리트1층	1,364㎡	주식회사 교 학 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42	한국산 업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근저당	1층 및 지하, 외부
				슬라브	콘크리트2층	1,364㎡						
				슬라브	콘크리트3층	1,364㎡						
				건물	적벽돌/함석	403㎡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	
				슬라브	콘크리트지하	36㎡			주식회사 전주페이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180	근저당	
				보일러		1대			메리츠종합금 융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여의도동)	근저당	
				담장	H=1.6m	16m						
				노리기계		3대						
				에어컨		5대						
				Col Bus제본기	A-TYPE	1대						
				Col Bus제본기	B-TYPE	1대						
				Col Bus컨트롤러		3대						
				자동리프트		23m						
				제단기 및 출입기		1대						
				리프트		1대						
				하마다운전기		1대						
				출입기		1대						
				벤딩기		1대						
				케비넷		1대						
				운전기부속품		1대						
				사무실	샷시	13.7㎡						
				고모리운전기		1대						
				틀레일		1대						
				지문제거기		1대						

일련 번호	구 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면적 (㎡) /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변경	가산동	319-7	냉동기저수조		1대	주식회사 교학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42					1층 및 지하, 외부
				모터		1대							
				냉동기컨트롤판넬		1대							
				습수냉동기		1대							
				전기판넬		3대							
				드라이판넬		1대							
				전기판넬		1대							
				에어컨본전함		1대							
				잉크 판넬		1대							
				가습기		2대							
				컨트롤판넬		1대							
				냉각수로		1대							
				브로아모터		1대							
				에어드라이어		1대							
				집진기		1대							
				집진기실	합석/철골	107.1㎡							
				쓰레기장	천막/콘크리트	18.0㎡							
				실외콘프레셔실		15.4㎡							
				실외콘프레셔		1대							
				실외냉동기		2대							
				에어컨실외기		10대							
				실외기반침틀	콘크리트	28.0㎡							
				은행나무 (D20)		1그루							
				은행나무 (D30)		1그루							

일련 번호	구 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면적 (㎡) /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변경	가산동 319-7		사철나무(D8)		13그루	주식회사 교 학 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2				1층 및 지하,외부
				닥트시설		1식						
				사무실	내부/석고	13.5㎡						
				화물용승강기		1대						
				탈의실	합판	5.4㎡						
				콘프레셔		4대						
				노리기계		3대						
				요시노제본기		1대						
				사무실	석고	12.3㎡						
				접지기		10대						
				벤딩기		2대						
				탈의실	합판	11.9㎡						
				리프트		1대						2층
				출입기		1대						
				제단기		1대						
				균지기		1대						
				유로바인더		1대						
				표지각기		1대						
				에어컨		3대						
				컨트롤러		1대						
				에어컨분전함		1대						
				요시노컨트롤러		1대						
				물통		3대						

일련 번호	구 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면적 (㎡) /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변경	가산동 319-7		전기컨트롤러		3대	주식회사 교 학 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2					2층
				실링기		2대							
				다트시설		1식							
				두철기기		1대							
				삼방제단기		1대							
				벨트라인		10m							
				중철기기		2대							
				에어컨		2대							
				컴프레셔		3대							
				After Cooler		1대							
				사무실	석고	85.5㎡							
				탈의실	2개소/석고	58.2㎡							3층
				창고	석고	123.5㎡							
				전기실	석고	71.8㎡							
				다트시설		1식							
				옥외변전설비시설	3700kw	1개소							
				변전설비시설판넬	3700kw	1개소							
				변압기	100Kw-600Kw	11기							옥상
				변압기웬스	H=2.0m	42.6m							
				실외기		8대							
				창고	스레트	5.5㎡							
				컴프레셔		3대							

일련 번호	구 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면적 (㎡) /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	당초	가산동	326-9	슬라브	콘크리트1층	18.0㎡	주식회사하나 다울신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층(대지동, 신안빌딩)				
				슬라브	콘크리트2층	18.0㎡						
				매점	브룩/천막	30.0㎡						
				헬스	H=1.6m	11m						
				천막		13.3㎡						
				담장기둥	0.4*0.4*1.6m	5ea						
	변경	가산동	326-8	슬라브	콘크리트1층	18.0㎡	주식회사하나 자산신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슬라브	콘크리트2층	18.0㎡						
				매점	브룩/천막	30.0㎡						
				헬스	H=1.6m	11m						
				천막		13.3㎡						
				담장기둥	0.4*0.4*1.6m	5ea						

□ 위치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2호

달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534호(1983.9.7)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호(2012.1.19)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달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달터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개설로 단절된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연결로를 조성하여 자연환경 및 경관

- 을 보전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74 일대
 - 3.면 적 : 232,078.02m²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6) 및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6262)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달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강남구 개포동 일대)

구	분	경			경			변			경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기반 시설	계	232,078.20	49,030		1,879.00	3,868.00		232,078.20	51,129.00	9	1,879.00	3,868.00	148	증 2,099㎡
	소계	12,406.60						12,761.00	12,761.00					증 354.40㎡
	도로	8,033.80						8,086.30	8,086.30					증 52.50㎡ (계오류수정12㎡)
	녹지연결로	334.80						636.70	636.70					증 301.90㎡
	광장	4,038.00						4,038.00	4,038.00					
조경시설		2,869.00						2,869.00	2,869.00					
휴양시설		8,842.00			142.00	142.00		8,842.00	8,842.00	1	142.00	142.00	148	
교양시설		2,224.00			529.00	1,386.00		2,224.00	2,224.00	2	529.00	1,386.00		
운동시설		19,813.00			888.00	2,020.00		21,181.00	21,181.00	1	888.00	2,020.00		증 1,368㎡ (계오류수정)
편의시설		3,306.00			320.00	320.00		3,252.00	3,252.00	5	320.00	320.00		감 54㎡ (계오류수정)
녹지 및 기타		182,617.60						180,949.20						감 1,668.4㎡ (계오류수정 1,326㎡)
시설율 (법정 40%)		(49,030 / 232,078.20) × 100 = 21.1%					(51,129 / 232,078.20) × 100 = 22.0%							
건폐율 (법정 10%)		(1,879.00 / 232,078.20) × 100 = 0.80%					(1,879.00 / 232,078.20) × 100 = 0.80%							

2.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32,078.20			20	1,879.00	3,868.00				232,078.20	51,129.00		9동	1,879.00	3,868.00	148	중 2,099㎡
	소 계		12,406.60									12,761.00	12,761.00						중 354.40㎡
	도 로		8,033.80									8,086.30	8,086.30						중 52.50㎡
	녹지연결 로		334.80									636.70	636.70						중301.90 ㎡
	진입광장	1-1	개포동 175	1,216.00						1-1	개포동 175	1,216.00	1,216.00						
기 반 시 설	1-2	개포동 156	2,822.00						1-2	개포동 156	2,822.00	2,822.00							
	소 계		2,869.00									2,869.00	2,869.00						
	잔디광장	2-1	포이동 268	345.00					2-1	포이동 268	345.00	345.00							
		2-2	포이동 274	864.00					2-2	포이동 274	864.00	864.00							
		2-3	개포동 175	776.00					2-3	개포동 175	776.00	776.00							
조 경 시 설	벽 천	3	개포동 175	884.00					3	개포동 175	884.00	884.00							
	그늘시령		공원 전지역							공원 전지역									
	셸 터		공원 전지역							공원 전지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한 양 시 설	소 계			8,842.00				142.00	142.00			8,842.00		1등	142.00	142.00	148		
	휴게소	4-1	포이동 268	830.00							4-1	포이동 268	830.00	830.00					
		4-2	포이동 268	790.00							4-2	포이동 268	790.00	790.00					
		4-3	포이동 271	388.00							4-3	포이동 271	388.00	388.00					
		4-4	포이동 271	80.00							4-4	포이동 271	80.00	80.00					
		4-5	포이동 271	80.00							4-5	포이동 271	80.00	80.00					
		4-6	포이동 274	270.00							4-6	포이동 274	270.00	270.00					
		4-7	개포동 175	446.00							4-7	개포동 175	446.00	446.00					
		4-8	개포동156	1,938.00							4-8	개포동156	1,938.00	1,938.00					
		4-9	개포동 154	910.00							4-9	개포동 154	910.00	910.00					

구 분	변 경				전 경				변 경				후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휴 양 시 설	가로 휴게소	5	포이동 271	756.00						5	포이동 271	756.00	756.00							
	원형 휴게광장	6	포이동 271	1,404.00						6	포이동 271	1,404.00	1,404.00							
	노인정	7	개포동 156	950.00	조적조	1층	142.00	142.00		7	개포동 156	950.00	950.00	조적조	1층	142.00	142.00			
	정의자		공원 전지역			148개소					공원 전지역							148		
교 양 시 설	소 계			2,224.00			259.00	1,386.00				2,224.00	2,224.00		2동	529.00	1,386.00			
	교향문화 회관	16	개포동 175	640.00	철근조	지하1층 지상3층	223.00	716.00		16	개포동 175	640.00	640.00	철근조	지하1층 지상3층	223.00	716.00			
	청소년회관	17	개포동 176	1,584.00	철근조	지하3층 지상1층	306.00	670.00		17	개포동 176	1,584.00	1,584.00	철근조	지하3층 지상1층	306.00	670.00			
	소계			19,813.00			888.00	2,020.00				21,181.00	21,181.00		1동	888.00	2,020.00		증 1,368㎡	
안 통 시 설	구민 체육관	8	포이동 271	3,240.00	철근조	지하1층 지상3층	888.00	2,020.00		8	포이동 271	3,240.00	3,240.00	철근조	지하1층 지상3층	888.00	2,020.00			
	테니스장	9-1	포이동 274	2,404.00						9-1	포이동 274	2,404.00	2,404.00							
		9-2	개포동 156	2,520.00						9-2	개포동 156	2,520.00	2,520.00							
		10-1	포이동 268	1,490.00						10-1	포이동 268	1,490.00	1,490.00							
		10-2	개포동 175	806.00						10-2	개포동 175	806.00	806.00							
	배드민턴장	10-3	개포동 156	1,536.00						10-3	개포동 156	1,536.00	1,536.00							
		10-4	개포동 154	648.00						10-4	개포동 154	648.00	648.00							
		11-1	포이동 271	2,750.00						11-1	포이동 271	2,750.00	2,750.00							
		11-2	개포동 156	1,240.00						11-2	개포동 156	1,240.00	1,240.00							
	농구장	12	포이동 268	165.00						12	포이동 268	165.00	165.00							
	다목적 운동장	13	개포동 156	1,240.00						13	개포동 156	1,240.00	1,240.00							
	다이내트랙	14-1	포이동 271	478.00						14-1	포이동 271	478.00	478.00							
		14-2	개포동 156	648.00						14-2	개포동 156	648.00	648.00							
		14-3	개포동 154	648.00						14-3	개포동 154	648.00	648.00							
		15-1	포이동 268	792.00						15-1	포이동 268	792.00	792.00							
	체력단련장	15-2	개포동 175	576.00						15-2	개포동 175	576.00	576.0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소계		3,306.00				320.00	320.00				3,252.00	3,252.00		5동	320.00	320.00		감 54㎡
	전망대	18-1	포이동 268	736.00		한식 기와	64.00	64.00		18-1	포이동 268	736.00	736.00	한식 기와	2층식	64.00	64.00		
		18-2	포이동 271	400.00		한식 기와	64.00	64.00		18-2	포이동 271	400.00	400.00	한식 기와	2층식	64.00	64.00		
		18-3	개포동 175	804.00		한식 기와	64.00	64.00		18-3	개포동 175	804.00	804.00	한식 기와	2층식	64.00	64.00		
		18-4	개포동 154	906.00		한식 기와	64.00	64.00		18-4	개포동 154	906.00	906.00	한식 기와	2층식	64.00	64.00		
		18-5	개포동 165	406.00		한식 기와	64.00	64.00		18-5	개포동 165	406.00	406.00	한식 기와	2층식	64.00	64.00		
	소계		182,617.60									180,949.20						감1,668.40㎡	
녹지 기타			182,617.60								180,949.20							감1,66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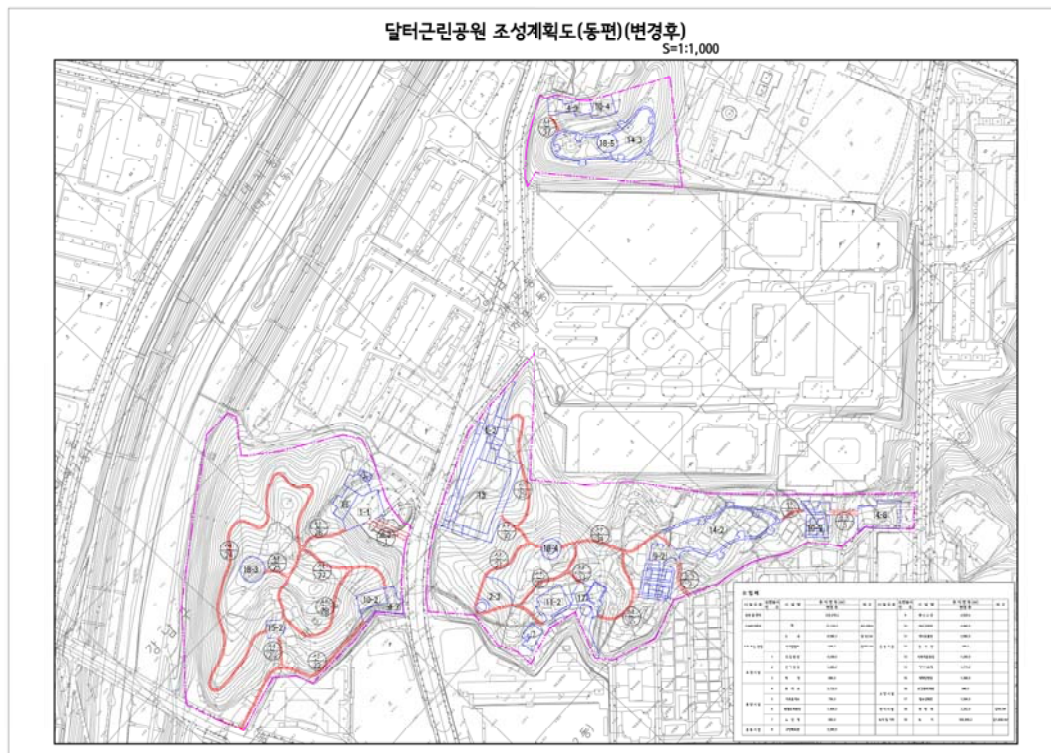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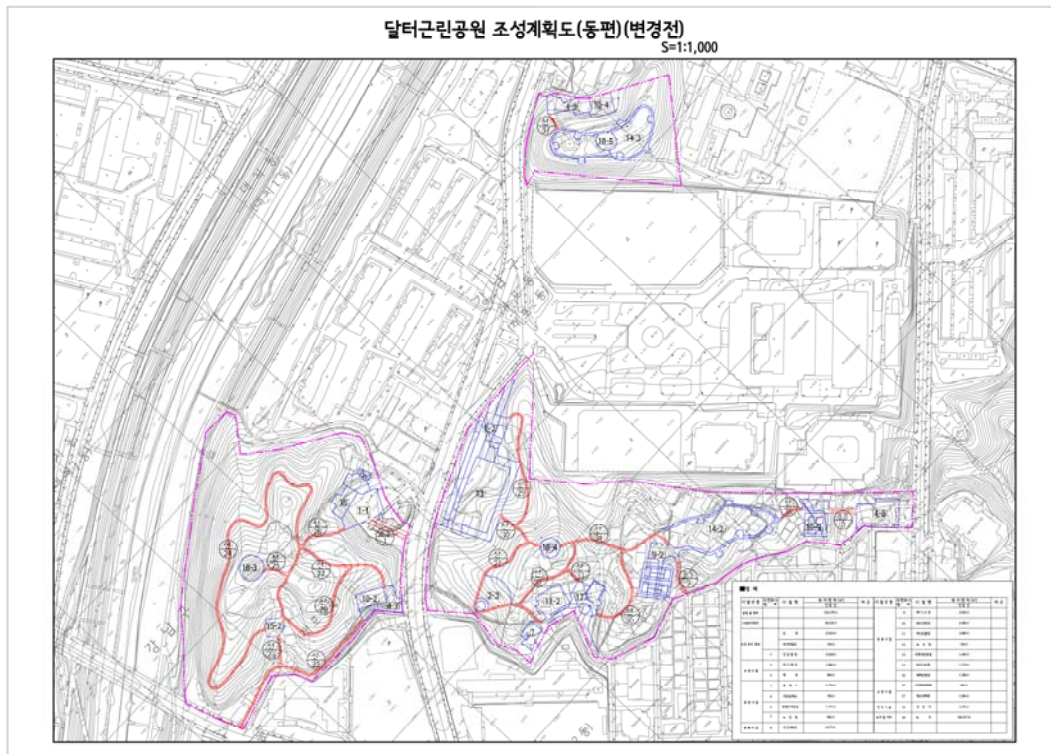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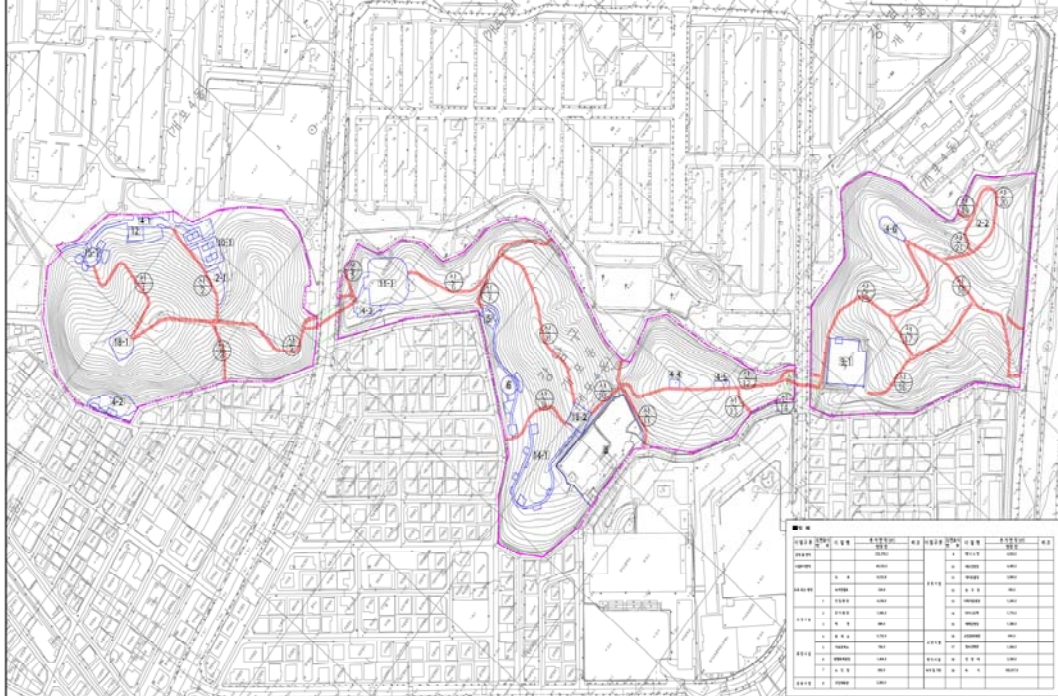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927.00	8,033.80					
변경					3,947.30	8,086.30				증52.5㎡	
당초	소로	소 계			97.00	508.00					
변경					97.00	508.00					
당초		3	1	7.0	40.00	280.00	진입로	다목적운동장앞 도로진입부	진입광장(1)		
당초		3	2	4.0	30.00	120.00	진입로	개포고축 거주지진입로	테니스장(2)		
당초		3	3	4.0	27.00	108.00	진입로	휴게소(8)	배드민턴장(3)		
		* 도시계획도로는 부지면적에는 산입, 시설면적에는 ()로 표시하여 미 산입시킴으로서 시설물에 미포함.									
당초		산책로	소 계			3,830.00	7,525.80				
변경						3,850.30	7,578.30				증52.5㎡
당초			1	2.0	120.00	240.00	산책로	체력단련장(1)	전망대(1)		
당초			2	2.0	92.00	184.00	산책로	휴게소(1)	산책로(4)와 연결		
당초			3	2.0	56.00	112.00	산책로	포이동축 거주지진입로)	산책로(4)와 연결		
당초			4	2.0	217.00	433.50	산책로	파출소앞진입부	전망대(1)		
당초			4-1	2.0	60.00	118.30	산책로	파출소앞진입부	전망대(1)		
당초			4-2	2.0	13.00	26.10	산책로	파출소앞진입부	전망대(1)		
당초			5	2.0	22.00	44.00	산책로	파출소앞진입부	휴게소(1)		
당초			6	2.0	166.00	332.00	산책로	체력단련장(1)	전망대(1)		
당초			7	2.0	28.00	56.00	산책로	체력단련장(1)	전망대(1)		
당초			8	2.0	158.00	316.00	산책로	체력단련장(1)	전망대(1)		
당초			9	2.0	80.00	160.00	산책로	체력단련장(1)	전망대(1)		
당초			10	2.0	30.00	60.00	산책로	산책로(11) 에서 분기	전망대(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11	2.0	80.00	240.00	산책로	구민체육관	개포시영아파트 출구	
당초			12	2.0	228.00	455.20	산책로	개포시영아파트 측진입부	산책로(15)와 연결	
당초			13	2.0	24.00	48.00	산책로	테니스장앞 진입부	산책로(12)와 연결	
당초			14	2.0	19.00	37.00	산책로	테니스장앞 진입부	산책로(12)와 연결	
당초			14-1	2.0	10.00	20.00	산책로	테니스장앞 진입부	산책로(12)와 연결	
당초			15	2.0	207.00	414.70	산책로	포이동주거지 진입부	산책로(12)와 연결	
당초			16	2.0	146.00	291.00	산책로	테니스장앞 진입부	산책로(18)와 연결	
당초			17	2.0	40.00	80.00	산책로	산책로(16)에서 분기	산책로(15)와 연결	
당초			18	2.0	184.00	368.00	산책로	양재대로진입부	휴게소(6)	
신설			18-1	2.0	20.30	40.50	산책로	양재대로진입부	산책로(18)와 연결	신설
당초			19	2.0	16.00	32.00	산책로	감사원아파트 진입부	잔디광장(2)	
당초			20	2.0	144.00	288.00	산책로	산책로(22)에서 분기	산책로(18)와 연결	
당초			21	2.0	34.00	68.00	산책로	체력단련장(2)	산책로(20)와 연결	
당초			22	2.0	175.00	350.00	산책로	휴게소(7)	양재대로출구	
당초			23	2.0	28.00	56.00	산책로	산책로(22)에서 분기	체력단련장(2)	
당초			24	2.0	420.00	630.00	산책로	체력단련장(2)	산책로(26)와 연결	
당초			25	2.0	24.00	48.00	산책로	산책로(23)에서 분기	전망대(3)	
당초			26	2.0	120.00	240.00	산책로	진입광장(1)	체력단련장(2)	
당초			27	2.0	92.00	184.00	산책로	배드민턴장(2)	산책로(26)와 연결	
당초			28	2.0	105.00	210.00	산책로	산책로(27)에서 분기	체력단련장(2)	
당초			29	2.0	132.00	264.00	산책로	진입광장(2)	산책로(30)와 연결	
당초			30	2.0	50.00	100.00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앞도로진입부	산책로(31)와 연결	
당초			31	2.0	164.00	328.00	산책로	노인정	전망대(4)	
당초			32	2.0	84.00	180.00	산책로	산책로(31)에서 분기	산책로(34)와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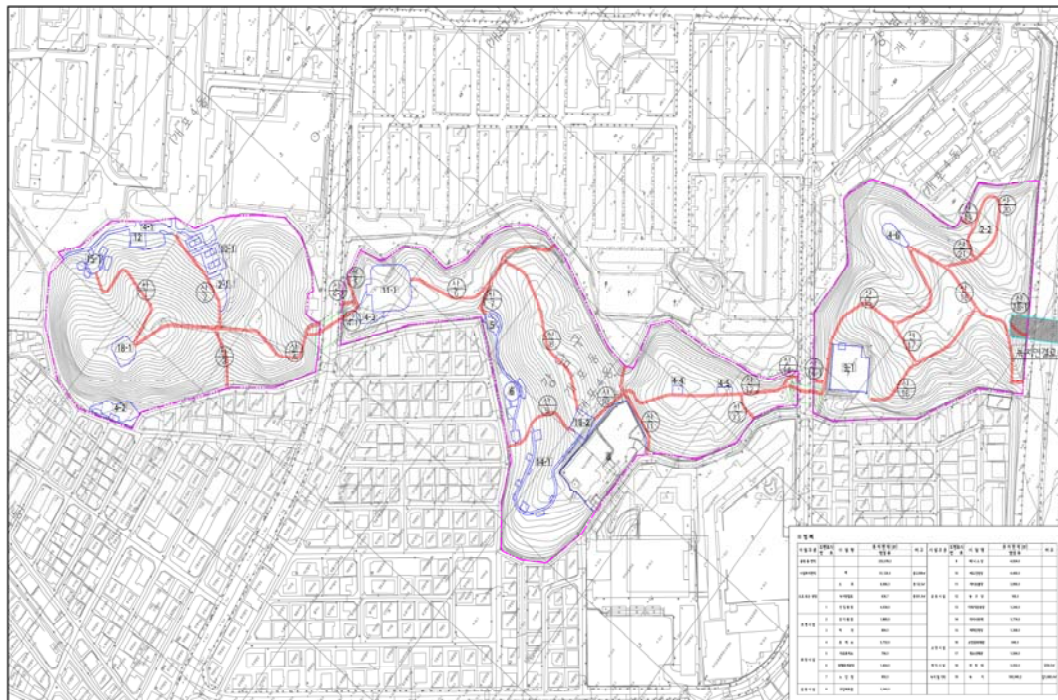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33	2.0	16.00	32.00	산책로	청소년회관	산책로(32)와 연결	
당초			34	2.0	116.00	232.00	산책로	테니스장(2)	전망대(4)	
당초			35	2.0	90.00	180.00	산책로	청소년회관	산책로(34)와 연결	
당초			36	2.0	22.00	44.00	산책로	배드민턴장(3)	다이나트랙(2)	
당초			37	2.0	18.00	36.00	산책로	휴게소(9)	다니아트랙(3)	



달터근린공원 조성계획도(서편)(변경전)
S=1:1,100



달터근린공원 조성계획도(서편)(변경후)
S=1:1,0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3호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경미한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2003.11.18)호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255(2005.03.03)호로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5(2006.06.29) 지구변경(확장) 지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5(2008.12.11)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0(2010.03.18)호로 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2014.01.23)호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2014.07.03.)호 정비구역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4(2016.03.31)호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미아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 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	기존	강북구 미아동 438번지 일대	979,909.7	감)41,734.0	938,175.7	일부 존치관리구역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미아1재정비촉진구역을 지구에서 제척
			606,185.7	감)27,578.0	578,607.7	
	확장		373,724.0	감)14,156.0	359,568.0	

나. 재정비 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

- 기준연도 : 2004년
- 목표연도 : 기정 2019년 → 변경 2021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 기존지구

1)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606,185.7	감) 27,578.0	578,607.7	-	-
촉진 구역	소 계		230,917.7	-	230,917.7	-	-
	미아6구역	미아동 1268-1 일대	77,557.2	-	77,557.2	주택 재개발	-
	미아8구역	미아동 653 일대	83,752.8	-	83,752.8	주택 재개발	-
	미아12구역	미아동 1265-42 일대	69,607.7	-	69,607.7	주택 재개발	-
존치 관리 구역	소 계		375,268.0	감) 27,578.0	347,690.0	-	-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아동 688 일대	27,578.0	감) 27,578.0	-	지구단위	지구제척
	기존 아파트 (SK, 풍림)	미아동 852 일대 미아동 1266-82 일대	342,292.0	-	342,292.0	-	-
	기타 존치지역	미아동 1341-2 일대 미아동 1267-19 일대	5,398.0	-	5,398.0	-	-

2)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주거지형	미아재정비 촉진(기존)지구	미아동 1268번지일대	606,185.7	감) 27,578.0	578,607.7	지구제척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반경	변경 후	
미아재정비 촉진(기존)지구	606,185.7	감) 27,578.0	578,607.7	일부 존치관리구역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

나) 용도지역 결정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제척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환원)조서 (변경없음)

■ 확장지구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73,724	감) 14,156	359,568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43,987	감) 9,966	234,021	65.1	
	주거용지	234,021	—	234,021	65.1	
	주거복합	9,966	감) 9,966	—	—	
기반 시설 용지	소계	124,746	감) 4,190	120,556	33.5	
	공공시설	2,031	—	2,031	0.6	
	문화시설	3,926	—	3,926	1.1	복합커뮤니티센터
	학교	46,608	—	46,608	13.0	여성문화체육센터
	유치원	1,269	—	1,269	0.3	
	도서관	1,500	—	1,500	0.4	
	공원	18,576	감) 775	17,801	5.0	청소년정보도서관
	녹지	1,223	—	1,223	0.3	
	공공공지	2,566	감) 309	2,257	0.6	
	광장	491	—	491	0.1	유보지(1,602㎡)
	도로	46,556	감) 3,106	43,450	12.1	
종교용지		4,991	—	4,991	1.4	

2) 인구·주택 수용계획 : 6,010호 / 15,866인(변경)

구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6,010	감) 268	5,742	15,866	감) 708	15,158	2.64인/가구
촉진 구역	소계	4,984	감) 268	4,716	13,158	감) 708	12,450	
	60㎡이하	2,737	감) 209	2,528	7,226	감) 552	6,674	
	60㎡~85㎡이하	1,865	감) 46	1,819	4,923	감) 122	4,801	
	85㎡초과	382	감) 13	369	1,009	감) 34	975	
존치지역		1,026	—	1,026	2,708	—	2,708	

3) 교육시설,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 가) 교육시설 (변경없음)
- 나) 공공시설 (변경없음)
- 다) 문화시설 (변경없음)

라) 공공공지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 공지	미아동 670-52 일대	309	감) 309	-	2010.3.18	-
기정	②	공공 공지	미아동 679 일대	109	-	109		-
기정	③	공공 공지	미아동 438 일대	433	-	433		-
기정	④	공공 공지	미아동 462-27 일대	1,602	-	1,602		-
기정	⑤	공공 공지	미아동 1261-253 일대	113	-	113		-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시설폐지 - 면적 309㎡ → 0㎡ (감 309㎡)	미아1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에 따 른 폐지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

구분	개소		면적(㎡)			특성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	6	19,799	감) 775	19,024	전체구역면적의 5.7%, 세대당 3.4㎡	
① 생활권공원	1	-	775	감) 775	-	소공원(폐지)	미아1
② 주제공원	1	1	7,870	-	7,870	청소년교육문화공원	미아2
③ 생활권공원	1	1	2,267	-	2,267	어린이공원	미아2
④ 주제공원	1	1	3,140	-	3,140	송천문화공원	미아3
⑤ 주제공원	1	1	3,668	-	3,668	삼각산문화공원	미아4
⑥ 생활권공원	1	1	856	-	856	소공원	미아5
녹지	1	1	1,223	-	1,223	경관녹지 (기 설치)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소공원	· 시설폐지 - 면적 775㎡ → 0㎡ (감 775㎡)	미아1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에 따 른 폐지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평균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폐지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미아동	681-26	1.4	270	-	60	3	-	

나) 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없음)

다) 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373,724	감) 14,156	359,568	－	－
촉진 구역	소 계		298,557	감) 14,156	284,401	－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미아동 681－26	14,156	감) 14,156	－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제척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미아동 403－44	179,566	－	179,566	주택재개발	－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미아동 636－32	57,558	－	57,558	주택재개발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미아동 1261－376	28,802	－	28,802	주택재건축	－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미아동 476	18,475	－	18,475	주택재개발	사업완료
존치관리구역			75,167	－	75,167	－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

가) 미아1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재정비촉진지구 제척

나) 미아2~5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 (변경)

가) 미아1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재정비촉진지구 제척

나) 미아2~5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상한	평균/최고 (층수)	최고높이 (m)	
폐지	미아1재정비촉진 구역	주거복합	60이하	270	400.0	30.4/35	115	정비구역 해제
기정	미아2재정비촉진 구역	공동주택 (아파트)	60이하	190	235.0	15.8/35	105	
기정	미아3재정비촉진 구역	공동주택 (아파트)	60이하	190	244.4	17.5/29	90	
기정	미아4재정비촉진 구역	공동주택 (아파트)	50이하	210	250.0	23.0/29	90	
기정	미아5재정비촉진 구역	공동주택 (아파트)	60이하	190	230.0	14.0/15	48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가) 촉진지구 기반시설 (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24,746	감) 4,190	120,556	
공공시설	2,031	—	2,031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시설	3,926	—	3,926	여성문화체육센터
학교	46,608	—	46,608	
유치원	1,269	—	1,269	
도서관	1,500	—	1,500	청소년정보도서관
공원·녹지	19,799	감) 775	19,024	
공공공지	2,566	감) 309	2,257	유보지(1,602)포함
광장	491	—	491	
도로	46,556	감) 3,106	43,450	

나)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면적(㎡)					순부담율 (%)
			계획 기반시설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기존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계획 기반시설중 유상매입시설	순부담 면적	
폐지	미아1재정비 촉진구역	14,156	4,190	885	1,041	—	2,264	16.0
기정	미아2재정비 촉진구역	179,566	56,824	21,179	13,397	—	22,248	12.4
기정	미아3재정비 촉진구역	57,558	15,912	5,027	3,502	—	7,383	12.8
기정	미아4재정비 촉진구역	28,802	9,300	3,095	3,324	—	2,881	10.0
기정	미아5재정비 촉진구역	18,475	2,294	383	309	—	1,602	10.0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

구분	구역명	임대주택(호)			
		전용면적 40㎡	전용면적 40~50㎡	전용면적 50㎡초과	계
폐지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	-	33	33
기정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204	204	96	504
기정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72	86	21	179
기정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	-	38	38
기정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70	-	-	70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

구분	단계	사업기간			해당구역	비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기정	기착공	2006	이주완료	2010.9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기착공
기정	1단계	2010	2012.3이후	2015.6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
변경	1단계	2010	2012.3이후	2021.6		
기정	2단계	2011	2013.9이후	2017.6	미아3,4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
변경	2단계	2011	2013.9이후	2021.6		
기정	3단계	2012	2015.3이후	2018.6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	-	-	-		

15)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변경없음)

16)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7)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8)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가) 미아1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제척)

(1)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 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미아1재정비 촉진구역	미아동 681-26	14,156	감) 14,156	-	서고 2014-248호(2014.7.3.) 정비구역해제

(2)정비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4,156	감) 14,156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기반 시설	소계	4,190	감) 4,190	-		
	도로	3,106	감) 3,106	-		
	공원	775	감) 775	-		
	공공공지	309	감) 309	-		
택지 (획지)	소계	9,966	감) 9,966	-		
	1-1	9,966	감) 9,966	-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①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9-1	20~23	보조 간선	2,050 (184)	중로1-48	중로1-47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533호 (68.09.02)	일부 확폭 구간 변경
변경	중로	1	1-9-1	20~23	보조 간선	2,050	중로1-48	중로1-47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533호 (68.09.02)	
기정	중로	1	47	20~26 (26)	보조 간선	5,055 (193)	미아동	수유동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738호 (63.12.24)	
변경	중로	1	47	20~26	보조 간선	5,055	미아동	수유동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738호 (63.12.24)	
기정	중로	3	481	12	국지 도로	182	미아동 682-12 중로1-47	미아동 860-66 중로1-9-1	일반 도로			노선 분리 및 폭원 변경
변경	소로	2	114	8~ 10	국지 도로	99	미아동 673-1 중로3-481	미아동 681	일반 도로		서고3 (69.01.18)	
변경	소로	3	-	6	국지 도로	115	미아동 682-1	미아동 874-7	일반 도로		서고354 (90.10.24)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93	미아동 883 중로1-47	미아동 673-1 중로3-481	일반 도로			연장 변경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90	미아동 883 중로1-47	미아동 673-1 소로2-114	일반 도로			

※ ()는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 및 폭원 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9-1	-	일부확폭구간 변경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변경 (1구역 내 도로부분에 한함)
중로 1-47	-		
중로 3-481	소로 2-114 소로 3-	노선분리 및 폭원변경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소로 1-1	소로 1-1	연장변경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②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폐지	①	공원	소공원	미아동 687-1일대	775	감) 775	-	서고2008-445 (08.12.11)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소공원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라 폐지 - 775㎡ → 0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지구 제 척으로 폐지

③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폐지	①	공공공지	미아동 670-52일대	309	감)309	-	서고2008-445 (08.12.11)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정비구역 해제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지구 제척으 로 폐지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폐지)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폐지)

② 건축시설계획 (폐지)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폐지)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폐지)

나)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변경)

(1)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정비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①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458	22	보조 간선	596	미아동 637-359 중로1-47	미아동 862-1 소로1-814	일반 도로		서고3 (69.01.18)	
기정	중로	1	1-9-1	20~23	보조 간선	2,050 (493)	중로1-48	중로1-47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533호 (68.09.02)	구역내 3m확폭
기정	중로	1	47	20~26 (26)	보조 간선	5,055 (203)	미아동	수유동	일반 도로			구역내 3m확폭
기정	중로	2	483	18	집산 도로	143	미아동 637-359 중로1-458	미아동 437-11	일반 도로		서고 2008-445 (08.12.11)	
기정	중로	3	481	12	국지 도로	182	미아동 682-12 중로1-47	미아동 860-66 중로1-9-1	일반 도로			노선 분리 및 폭원 변경
변경	소로	2	114	8 ~10	국지 도로	99	미아동 673-1 중로3-481	미아동 681	일반 도로		서고3 (69.01.18)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93	미아동 883 중로1-47	미아동 673-1 중로3-481	일반 도로			연장 변경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90	미아동 883 중로1-47	미아동 673-1 소로2-11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230	미아동 455-25	미아동 415-1	일반 도로		서고354 (90.10.24)	

※ ()는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 및 폭원 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481	소로 2-114	폭원변경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촉진2구역 내 도로면적 및 연장에 대한 변 경없음)
소로 1-1	소로 1-1	연장변경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촉진2구역 내 도로면적 및 연장에 대한 변 경없음)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다) 미아3~5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19)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주거지형	미아재정비 촉진(확장)지구	미아동 438번지 일대	373,724	감) 14,156	359,568	미아1재정비 촉진구역 해제로 인한 지구제척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후	
미아재정비 촉진(확장)지구	373,724	감) 14,156	359,568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

나) 용도지역 결정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73,724	감) 14,156	359,568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0,988	-	10,988	3.1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59,772	-	59,772	16.6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199,905	감) 990	198,915	55.3	-
제3종일반주거지역	91,271	감) 1,378	89,893	25.0	-
준주거지역	11,788	감) 11,788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치	변경사유
미아동 438번지 일대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제척부지는 촉진구역 지정 전 용도지역으로 환원

다) 용도지구 결정 (변경)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비 고
기정	①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삼양로변	11,990	803	15	-
변경	①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삼양로변	12,230 (10,002)	817 (667)	15	-

※ ()는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내 연장 및 폭원 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사유
①	미관지구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체척부지는 촉진구역 지정 전 용도지구 면적 및 연장으로 환원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1) 교통시설 : 변경

(가) 도로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58	22	보조 간선	596	미아동 637-359 중로1-47	미아동 862-1 소로1-814	일반 도로		서고3 (69.01.18)	
기정	중로	1	1-9- 1	20~23	보조 간선	2,050 (814)	중로1-48	중로1-47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533호 (68.09.02)	일부 구간 폭원 변경
변경	중로	1	1-9- 1	20~23	보조 간선	2,050 (630)	중로1-48	중로1-47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533호 (68.09.02)	
기정	중로	1	47	20~26 (26)	보조 간선	5,055 (659)	미아동	수유동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738호 (63.12.24)	일부 구간 폭원 변경
변경	중로	1	47	20~26 (26)	보조 간선	5,055 (466)	미아동	수유동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738호 (63.12.24)	
기정	중로	1	503	20	보조 간선	724 (580)	미아동 560-30	미아동 126-337	일반 도로		서고387 (78.08.03)	
기정	중로	2	483	18	집산 도로	143	미아동 637-359 중로1-458	미아동 437-11	일반 도로		서고2008-445 (08.12.11)	
기정	중로	2	484	18	집산 도로	174	미아동 1261-280 중로1-503	미아동 1261-72	일반 도로		서고3 (69.01.18)	
기정	중로	2	486	15	집산 도로	125	미아동 460-131 중로1-9-1	미아동 62-3 중로1-458	일반 도로		서고2002-260 (02.07.02)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481	12	국지 도로	182	미아동 682-12 중로1-47	미아동 860-66 중로1-9-1	일반 도로		서고354 (90.10.24)	노선 분리 및 폭원 변경
변경	소로	2	114	8~10	국지 도로	99	미아동 673-1 중로3-481	미아동 681	일반 도로		서고3 (69.01.18)	
변경	소로	3	-	6	국지 도로	115	미아동 682-1	미아동 874-7	일반 도로		서고354 (90.10.24)	
기정	중로	3	482	12~16	국지 도로	273	미아동 862-1 중로1-458	미아동 480-7 중로1-503	일반 도로		서고354 (90.10.24)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93	미아동 883 중로1-47	미아동 673-1 중로3-481	일반 도로		서고3 (69.01.18)	연장 변경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90	미아동 883 중로1-47	미아동 673-1 소로2-114	일반 도로		서고3 (69.01.18)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39	미아동 474-4 중로2-484	미아동 471-14 중로3-482	일반 도로		서고105 (83.02.24)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248	미아동 474-4 중로2-484	미아동 471-14 중로3-482	일반 도로		서고2008-445 (08.12.11)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59	미아동 61-86	미아동 468-10	일반 도로		서고2008-445 (08.12.11)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10	미아동 637-440 중로1-47	미아동 1261-634 중로2-484	일반 도로		서고105 (83.02.24)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230	미아동 455-25	미아동 415-1	일반 도로		서고354 (90.10.24)	

※ ()는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내 연장 및 폭원 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9-1	중로 1-1-9-1	미아1재정비촉진구역의 확폭구간 변경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변경 (구역내 도로부분에 한함)
중로 1-47	중로 1-47		
중로 3-481	소로 2-114	노선분리 및 폭원변경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지구제척에 따른 환원
	소로 3-		
소로 1-1	소로 1-1	연장변경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지구제척에 따른 환원

(2) 공간시설 : 변경

(가) 광장 (변경없음)

(나) 공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원	소공원	미아동 687-1일대	775	감) 775	-	서고2008-445 (08.12.11)	
기정	②	공원	문화 공원	미아동 439-181일대	7,870	-	7,870	서고2008-445 (08.12.11)	-
기정	③	공원	어린이 공원	미아동 455-1일대	2,267	-	2,267	서고2008-445 (08.12.11)	-
기정	④	공원	문화 공원	미아동 637-56일대	3,140	-	3,140	서고2008-445 (08.12.11)	-
기정	⑤	공원	문화 공원	미아동 1261-364일대	3,668	-	3,668	서고2008-445 (08.12.11)	-
기정	⑥	공원	소공원	미아동 476-252일대	856	-	856	서고2008-445 (08.12.11)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 폐지 - 면적: 감 775㎡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나) 공공공지 (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 공지	미아동 670-52 일대	309	감) 309	-	서고2008-445 (08.12.11)	
기정	②	공공 공지	미아동 679 일대	109	-	109	서고2008-445 (08.12.11)	-
기정	③	공공 공지	미아동 438 일대	433	-	433	서고2008-445 (08.12.11)	-
기정	④	공공 공지	미아동 462-27 일대	1,602	-	1,602	서고2008-445 (08.12.11)	
기정	⑤	공공 공지	미아동 1261-253 일대	113	-	113	서고2008-445 (08.12.11)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시설폐지 - 면적: 감 309㎡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가) 학교 (변경없음)

(나) 공공청사 (변경없음)

(다) 도서관 (변경없음)

(라) 문화시설 (변경없음)

20) 재정비촉진지구 제척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환원)조서

가) 용도지역 (환원)

(1) 미아1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환원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환원	환원 후		
계	14,156	-	14,15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990	감) 99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378	증) 3,384	4,762	33.6	
준주거지역	11,788	감) 2,394	9,394	66.4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환원)

(1) 교통시설 : 환원

(가) 도로 (환원)

- 도로 결정(환원)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9-1	20~23	보조 간선	2,050 (184)	중로1-48	중로1-47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533호 (68.09.02)	일부 확폭 구간 환원
환원	중로	1	1-9-1	20~23	보조 간선	2,050	중로1-48	중로1-47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533호 (68.09.02)	
기정	중로	1	47	20~26 (26)	보조 간선	5,055 (193)	미아동	수유동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738호 (63.12.24)	
환원	중로	1	47	20~26	보조 간선	5,055	미아동	수유동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738호 (63.12.24)	
기정	중로	3	481	12	국지 도로	182	미아동 682-12 중로1-47	미아동 860-66 중로1-9-1	일반 도로		서고3 (69.01.18)	노선 분리 및 폭원 환원
환원	소로	2	114	8 ~10	국지 도로	99	미아동 673-1 중로3-481	미아동 681	일반 도로		서고3 (69.01.18)	
환원	소로	3	-	6	국지 도로	115	미아동 682-1	미아동 874-7	일반 도로		서고354 (90.10.24)	

※ ()는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 및 폭원 임

- 도로 결정(환원)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9-1	중로 1-1-9-1	도로환원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일부 도로 환원
중로 1-47	중로 1-47		
중로 3-481	소로 2-114 소로 3-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환원)조서

구분	면적(㎡)			비고
	기정	환원	환원후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65,276	증) 9,394	74,670	환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환원)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환원내용	환원사유
환원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아동 688번지 일대	•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 : 65,276㎡ → 74,670㎡ (증 9,394㎡)	•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

마.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미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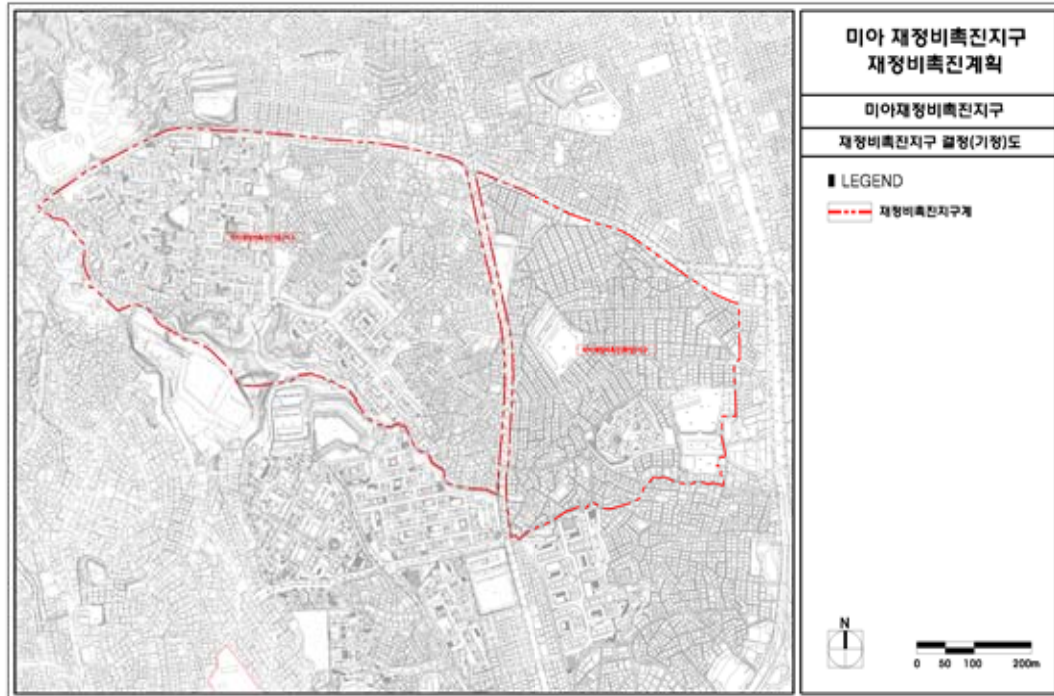
바.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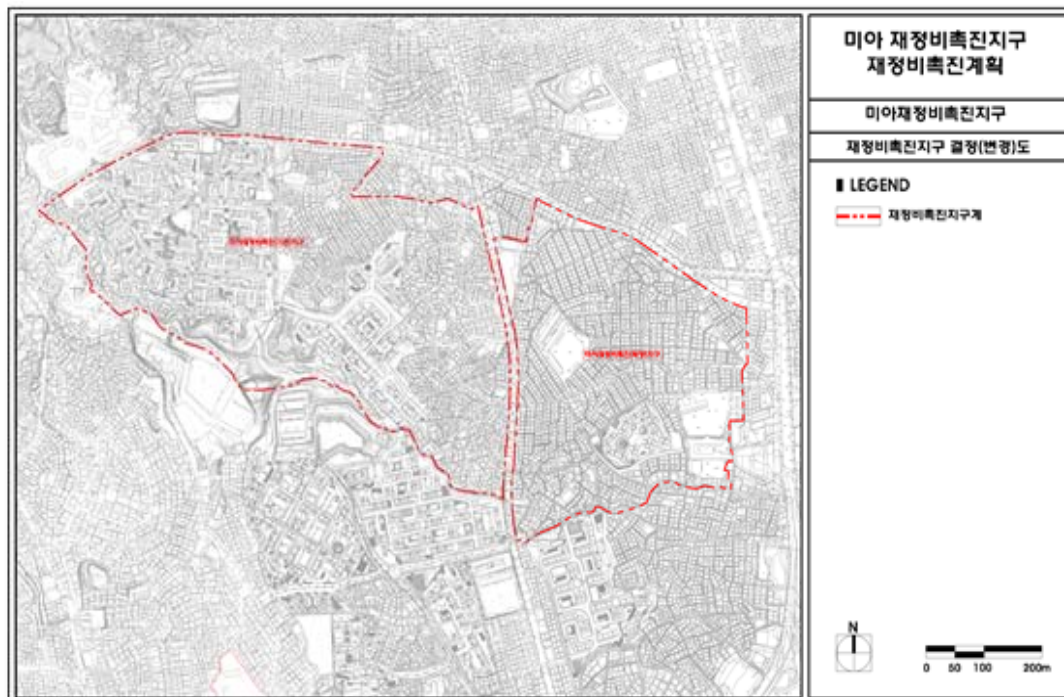
※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7 및 강북구 도시계획과 (☎ 02)-901-686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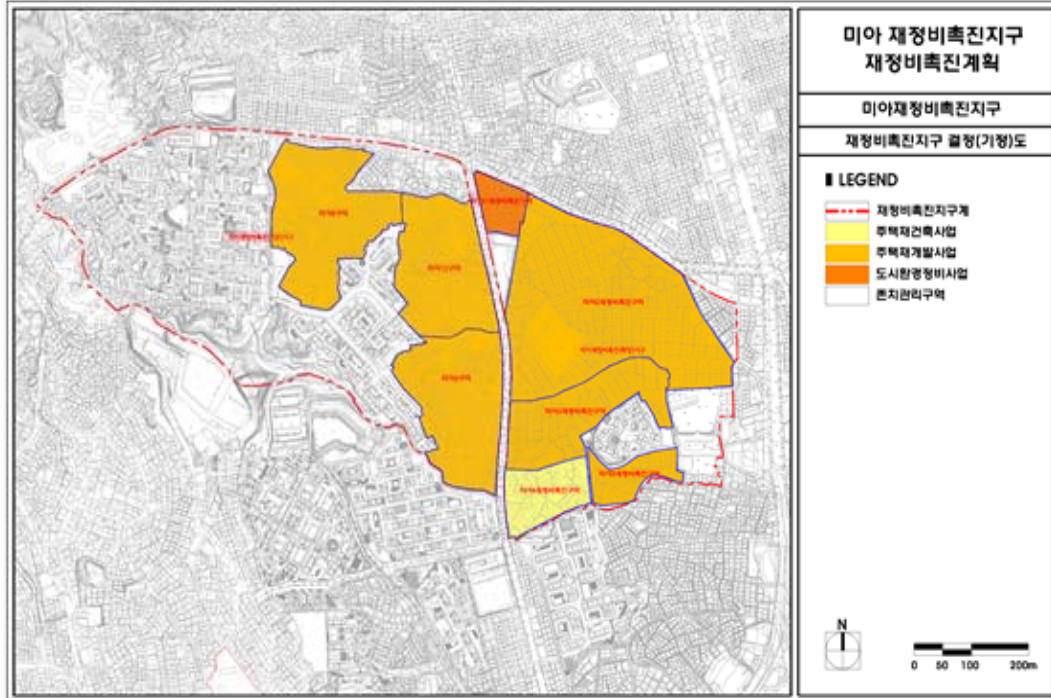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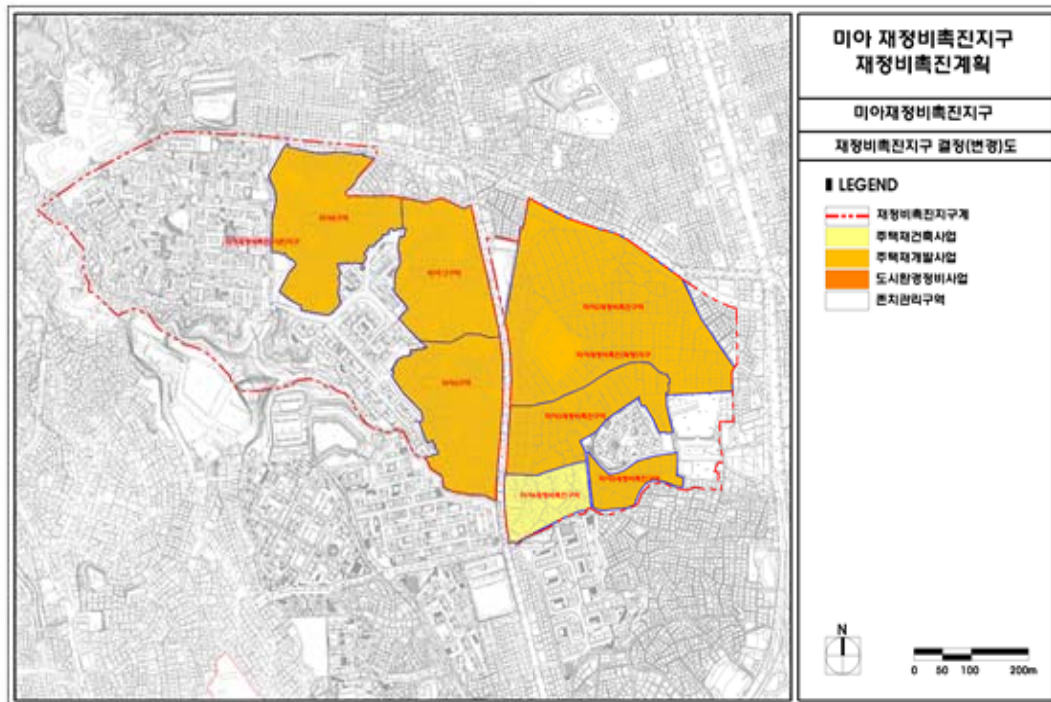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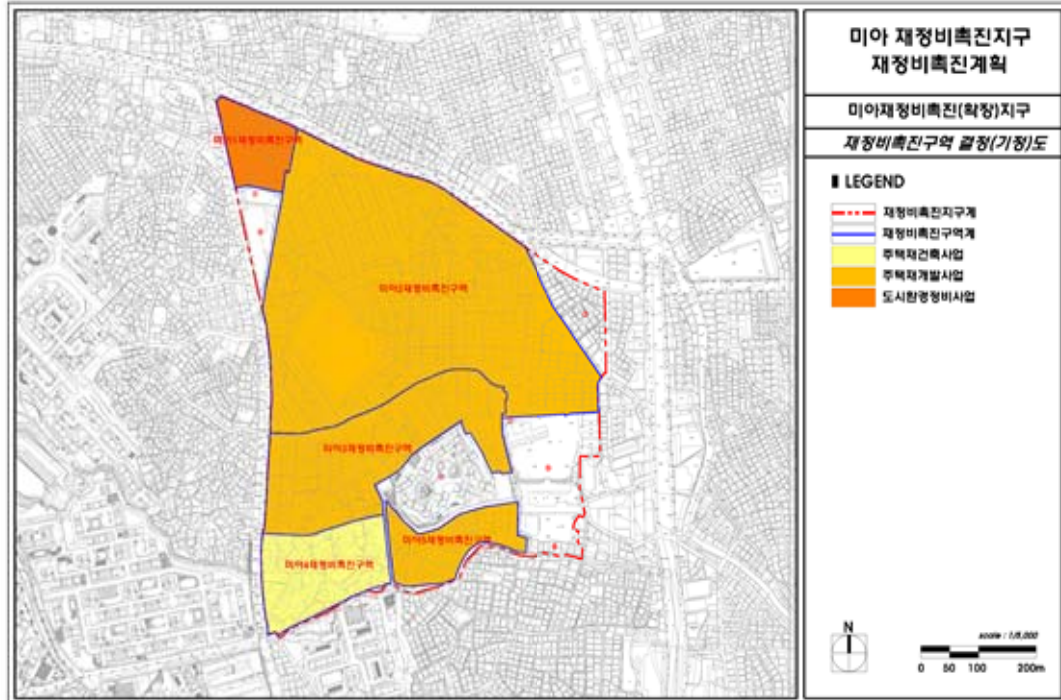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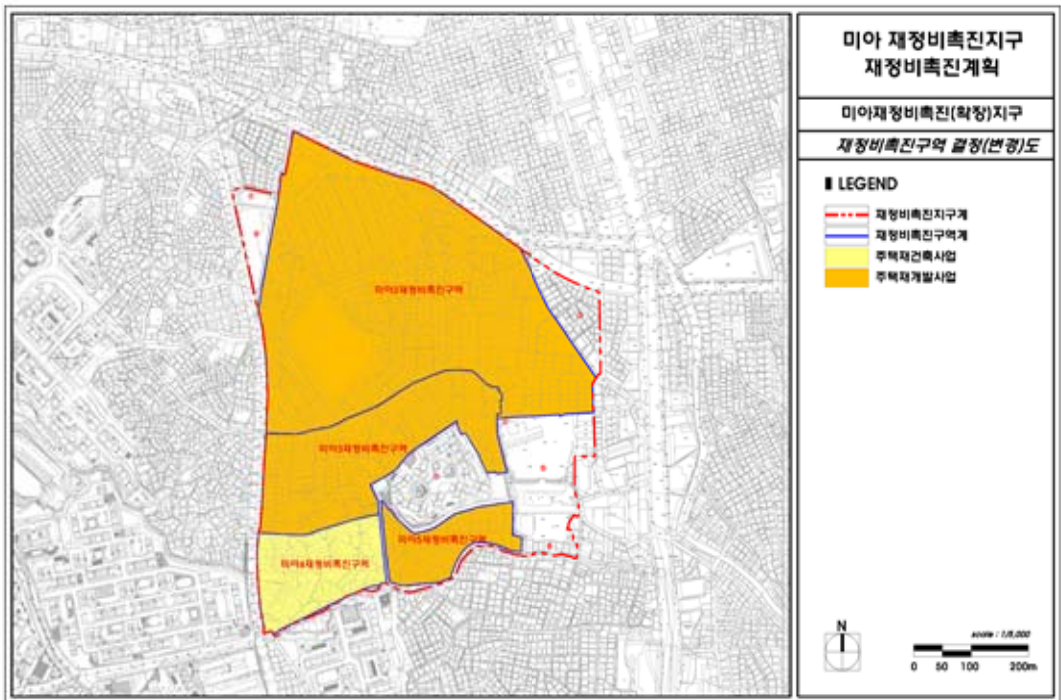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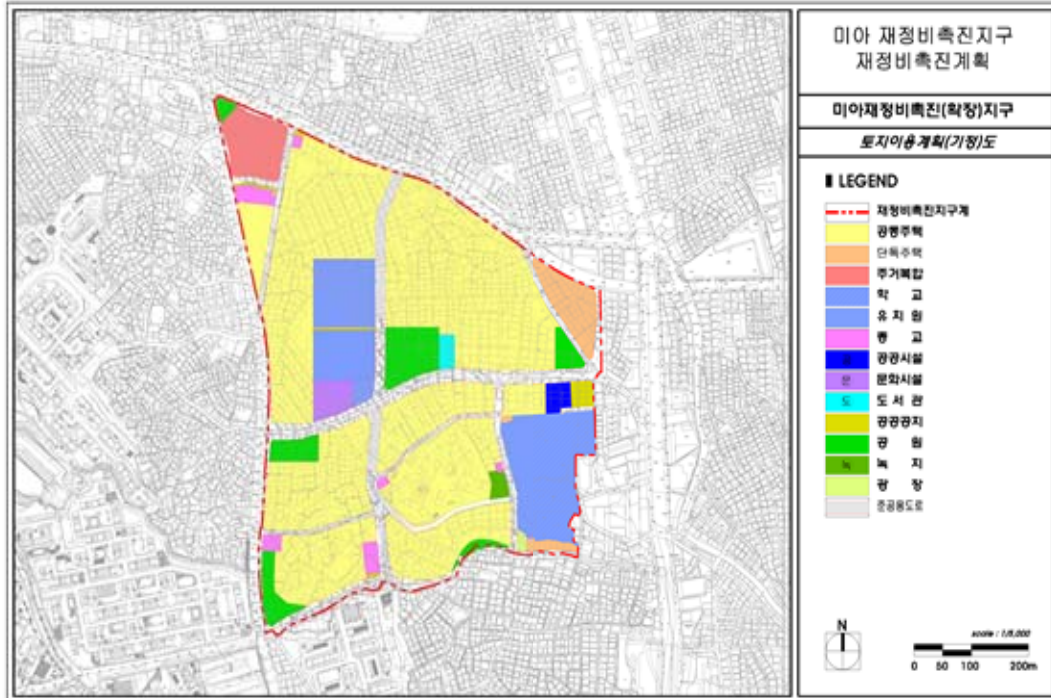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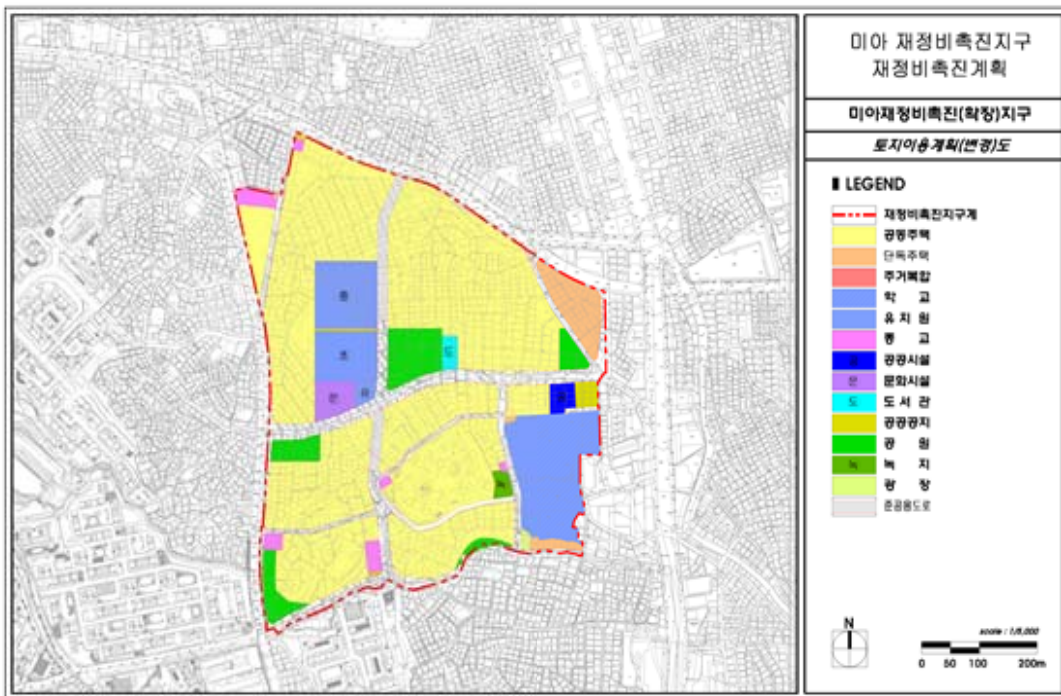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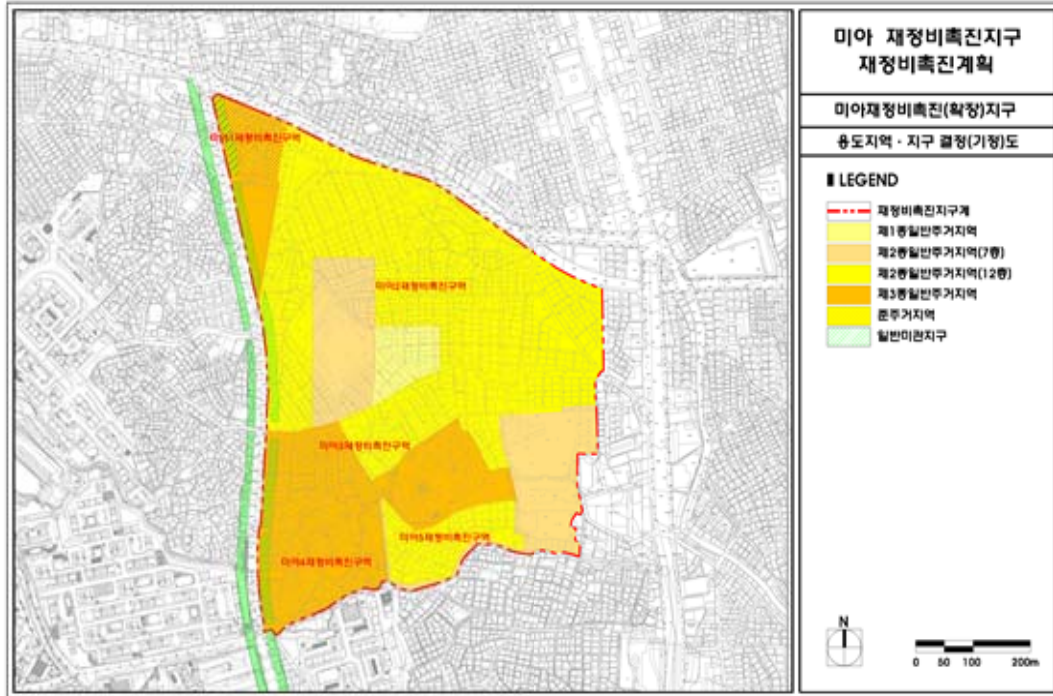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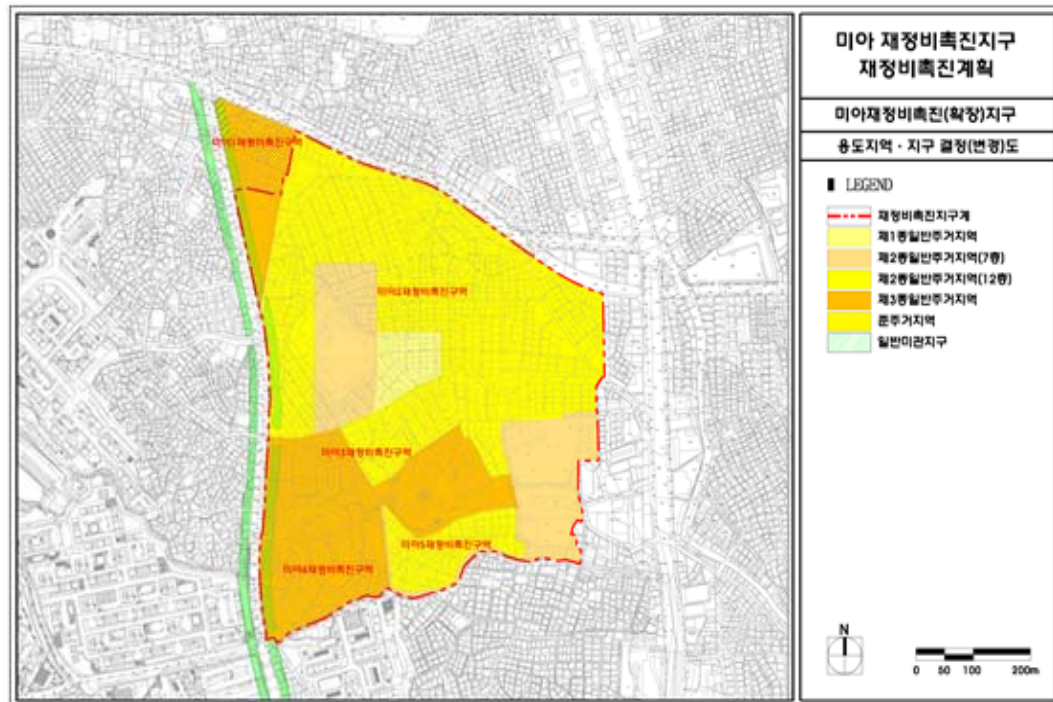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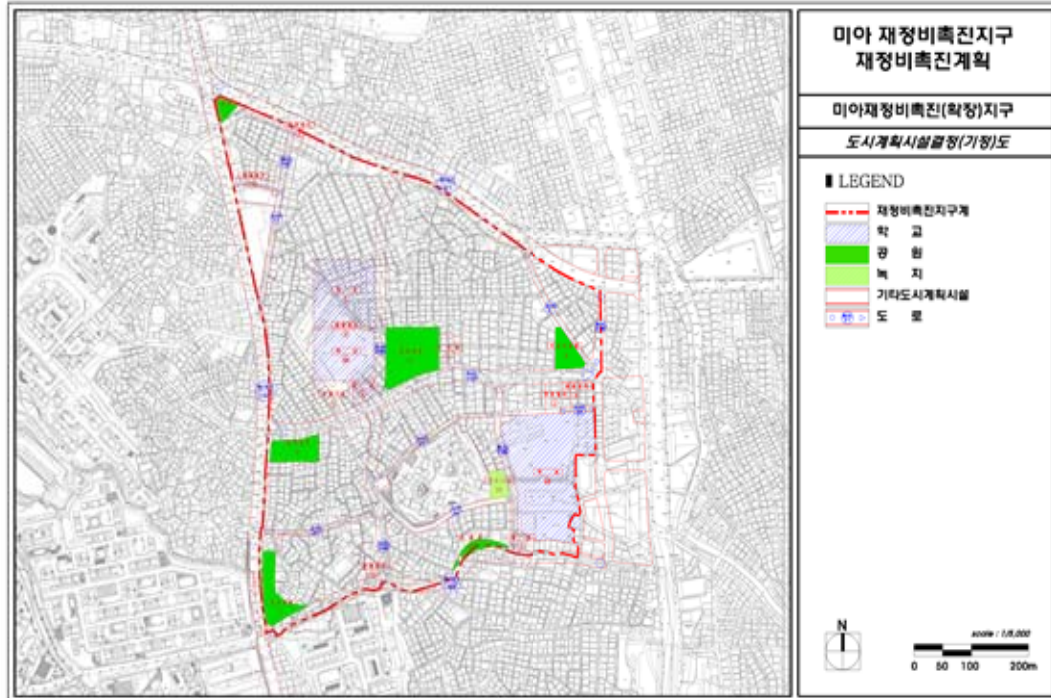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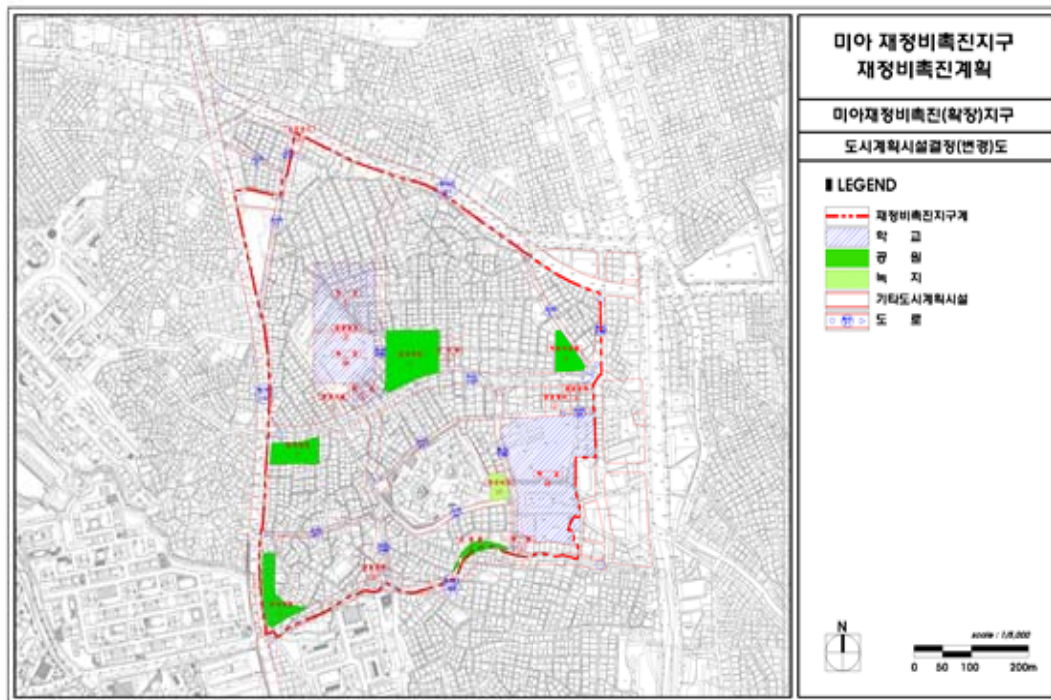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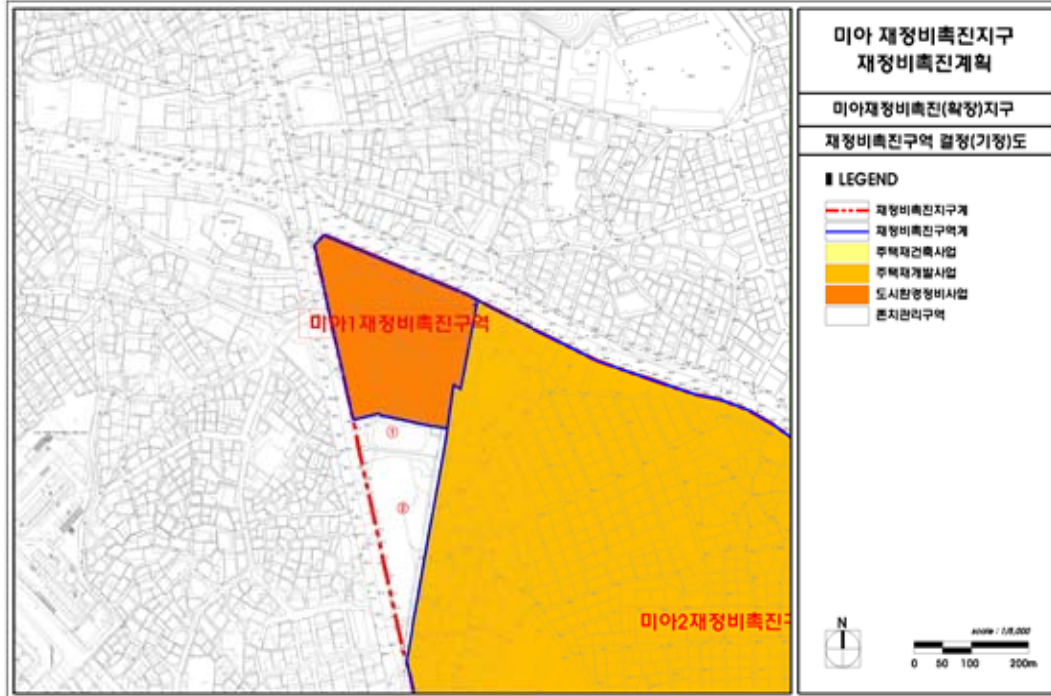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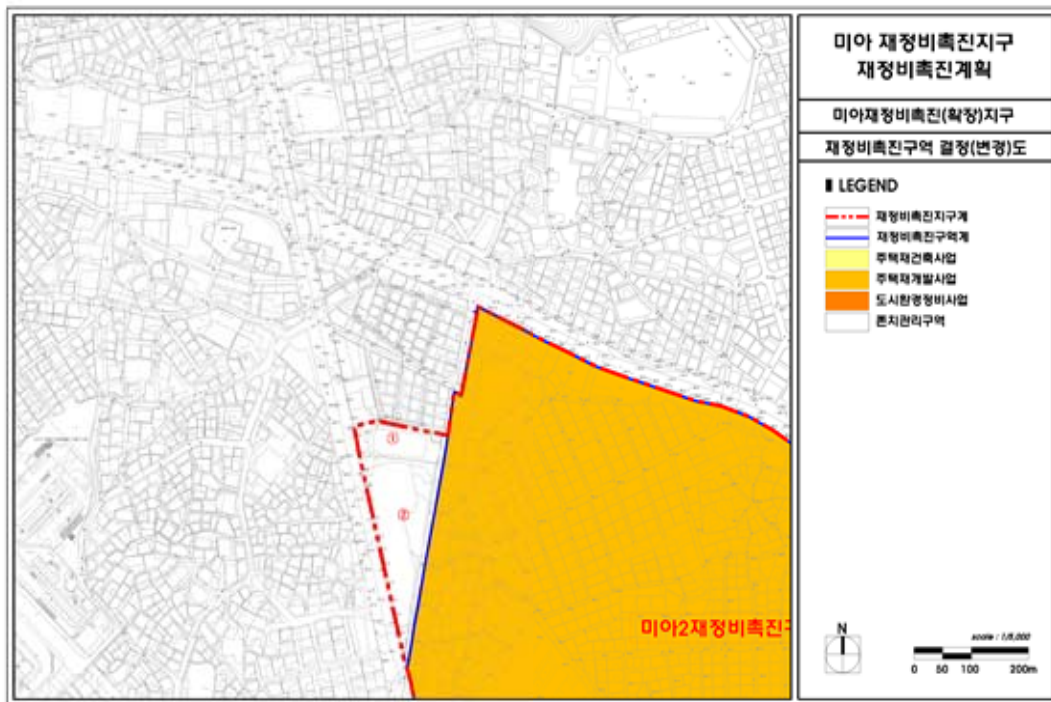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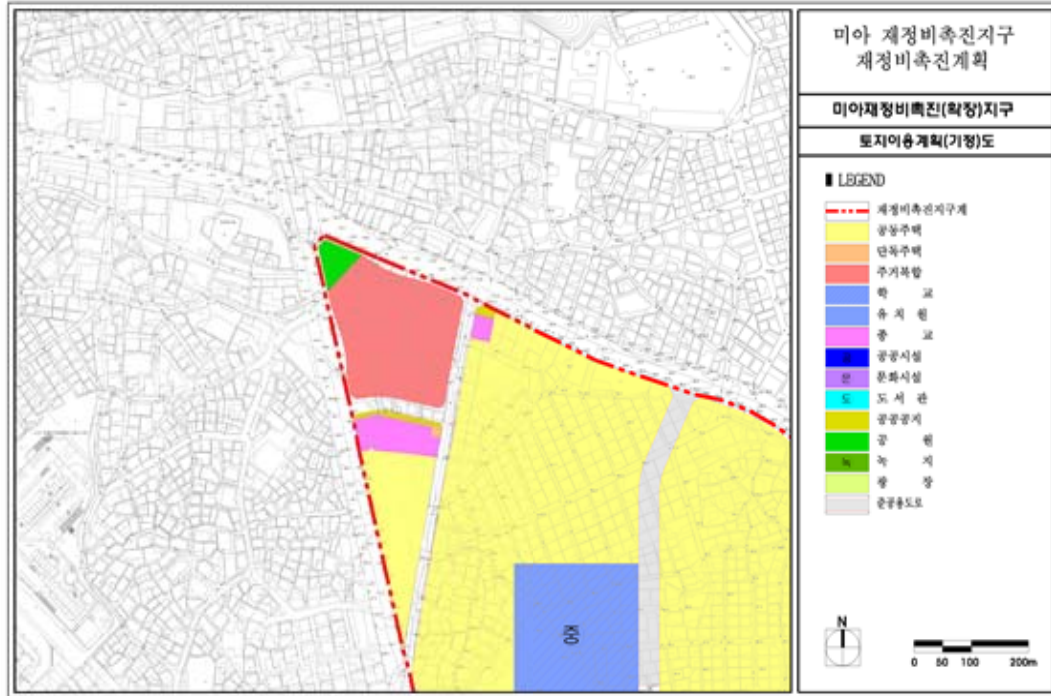
■ 확장지구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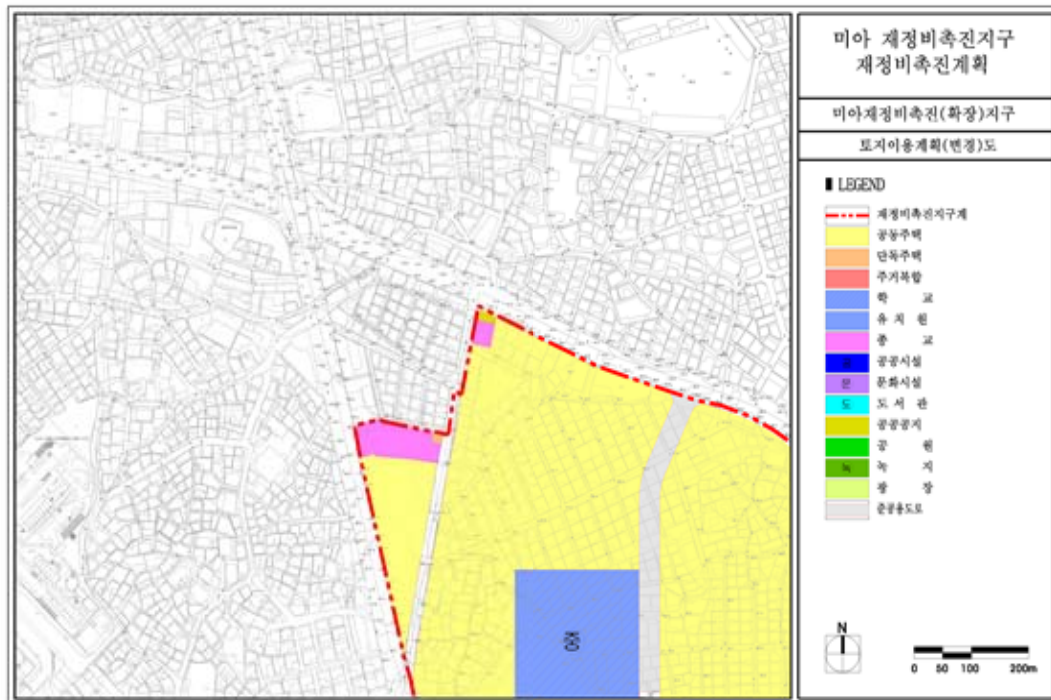
■ 확장지구 미아1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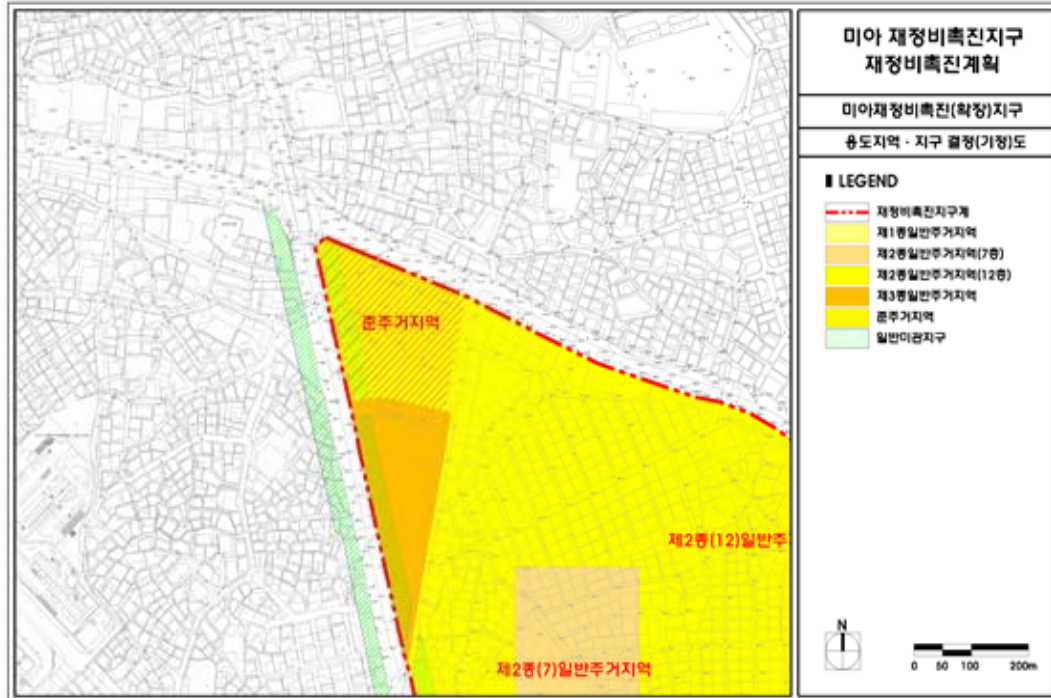
■ 확장지구 미아1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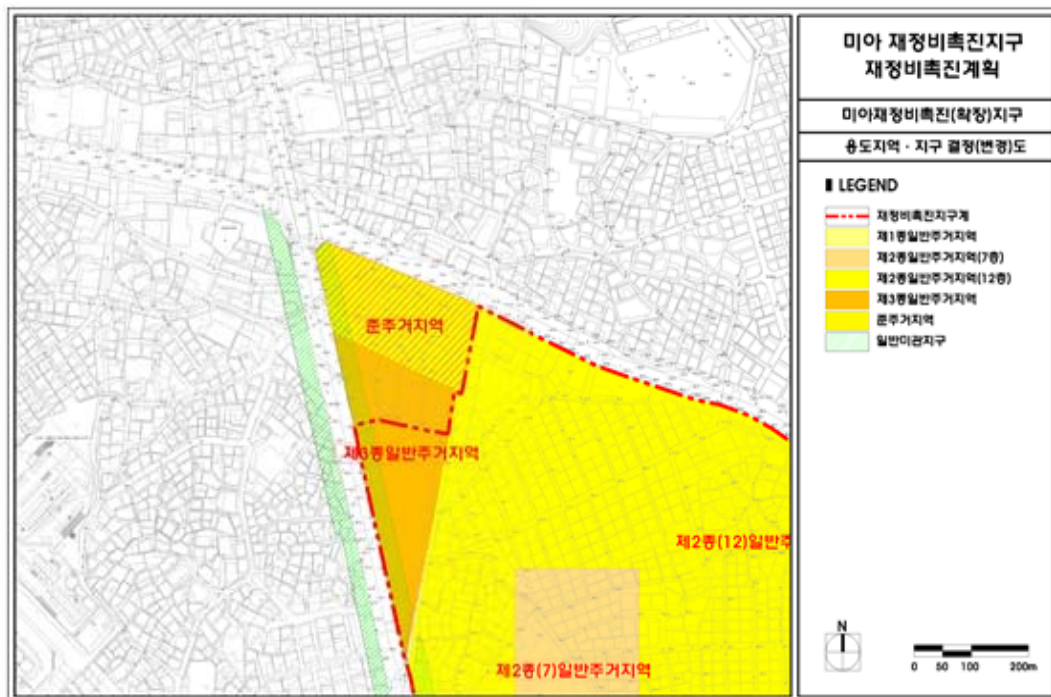
■ 확장지구 미아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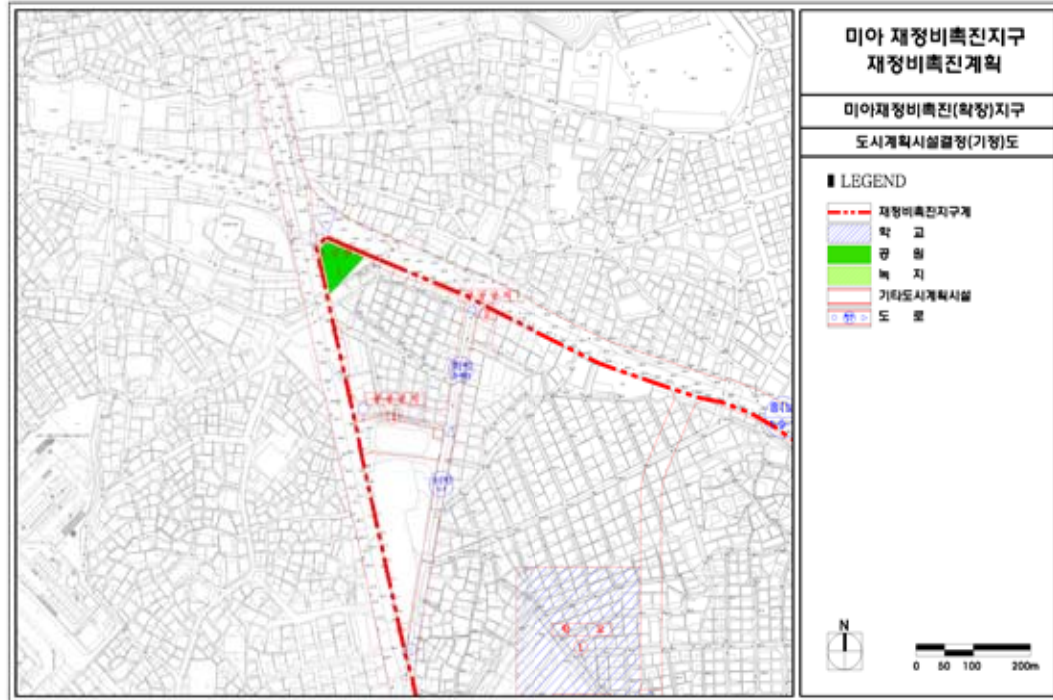
■ 확장지구 미아1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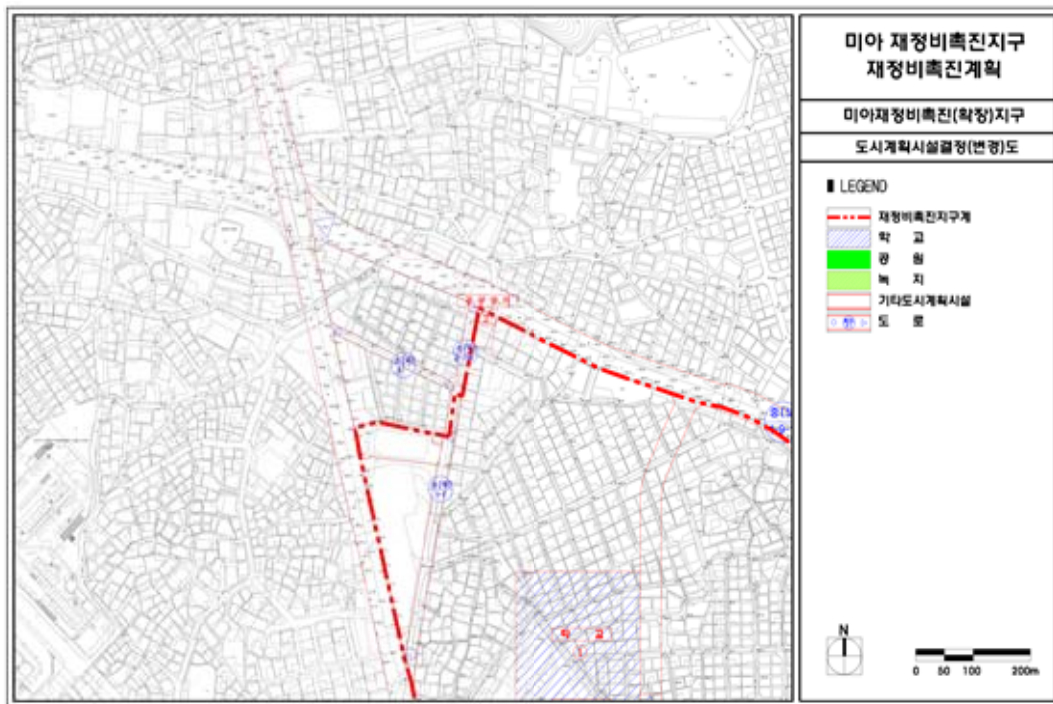
■ 확장지구 미아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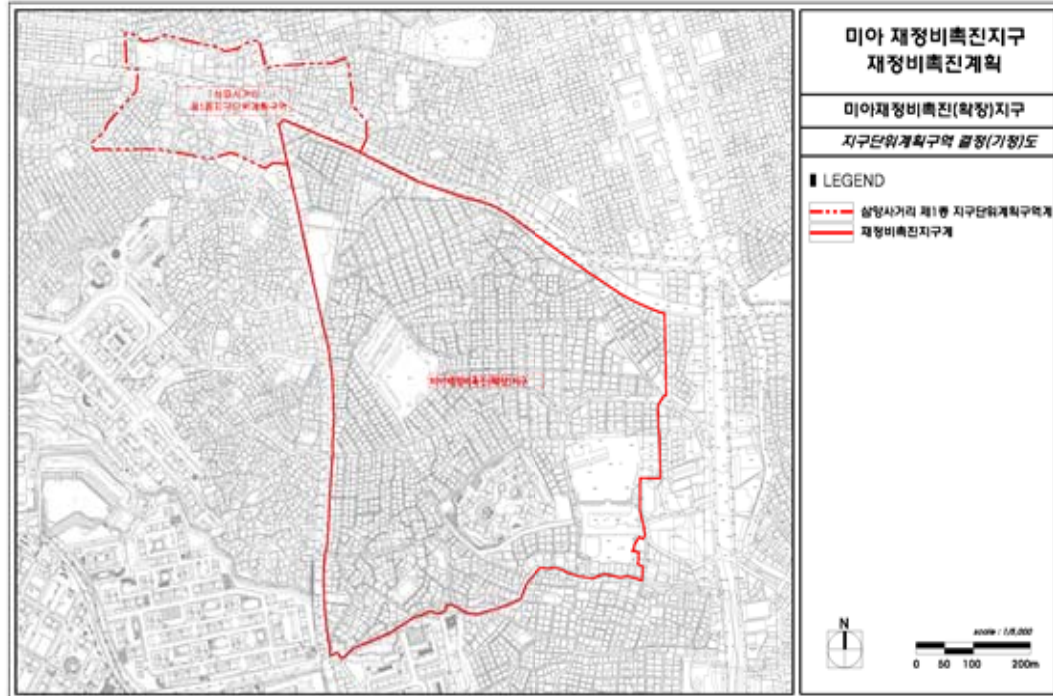
■ 확장지구 미아1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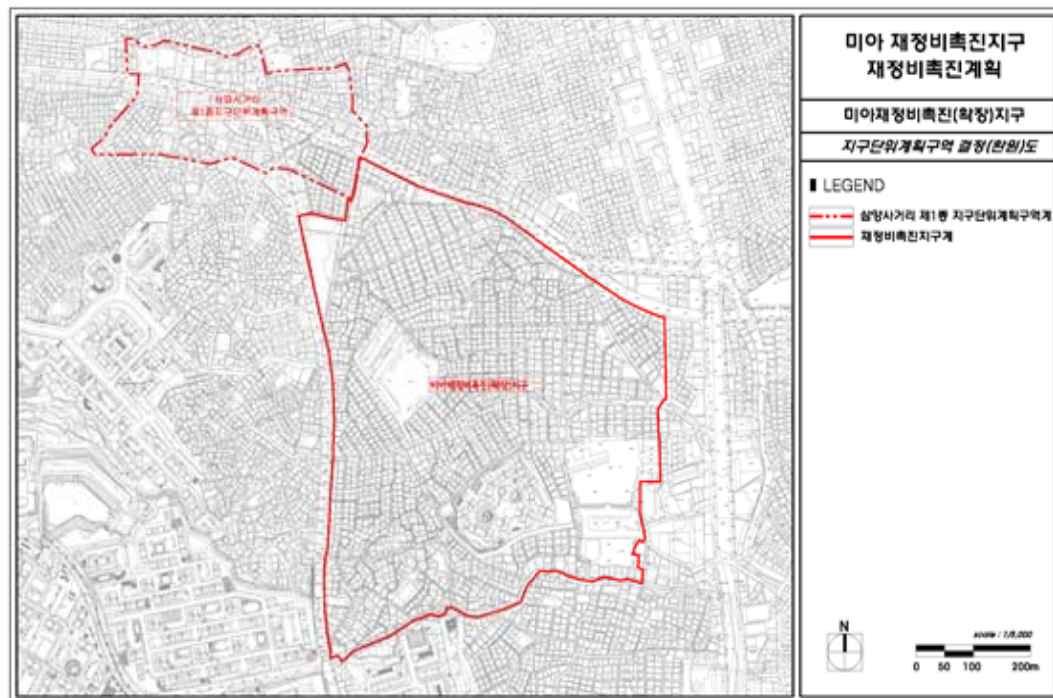
■ 확장지구 미아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삼양사거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삼양사거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환원)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4호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고시

공공지원에 의하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0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0조의3에 따른 공공지원에 의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설립주민협의체”라 함은 정비구역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공공지원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의견 수렴 등 창립총회 개최 준비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위원장”이라 함은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위원장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공공지원자, 변호사·건축사·도시계획기술사·공무원(현직제외)등의 전문가(정비사업에 3년이상 유경험자)를 말한다.
3. “부위원장”이라 함은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선출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4. “위원”이라 함은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공공지원자가 선임한 자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기준에 따른 업무수행 주체인 조합설립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와 공공지원자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그 밖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 토지등소유자는 제3조에 의한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공공지원자

제5조(조합설립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공공지원자는 당해 구역의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역의 명칭, 면적, 토지등소유자수 등 사업개요
2. 조합설립 일정(기간)
3.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4. 소요예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공공지원자는 조합설립 지원을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무는 용역수행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② 공공지원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공관리(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다.

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공공지원 조합설립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하거나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등) ① 공공지원자는 위원장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위반 등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해촉을 명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촉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자진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사전선거운동 또는 특정인이나 집단을 추대·구성 등의 행위와 이를 자처하는 행위 등 주민협의체 구성 취지나,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회의시 진행방해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 등이 궐위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즉시 선임한다.

제3장 조합설립주민협의체

제8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설립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협의체를 둔다. 당해 주민협의체의 명칭은 “○○정비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라 한다.

②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가 중에서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로 공공지원자가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주민대표자로 선임한다. 이 경우 서면 및 현장 투표의 방법을 통해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주민대표로 선출(단일 후보자인 경우 찬반 투표)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인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하

되 토지등소유자가 20분의 1이 50인을 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0분의 1 범위안에서 5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최소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며 주거유형 및 동별, 통·반별, 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 토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역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공공지원자가 선임한다. 다만, 모집인원 초과 시 공고문에 따라 연장자 순 또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⑤ 공공지원자는 주민협의체 회의 안전에 따라 변호사·감정평가사·설계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의결권은 부여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 부재 또는 결위시 공공지원자는 지체없이 외부전문가를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주민협의체 회의의 개최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⑧ 공공지원자는 위원장과 위원 등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인원에 한한다.

⑨ 제5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는 회의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참석이 용역 등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표준안 공고 등) 주민협의체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안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합 업무규정(안) 등을 서울특별시 표준(안)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행정업무규정
2. 예산·회계규정
3. 선거관리규정
4. 그 밖에 필요한 규정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 등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위원 등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위원 등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를 대표하고, 주민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설계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주민협의회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공지원자에게 알리어 회의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협의회 운영과 회의개최 등 직무수행에 대하여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주민협의회 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 등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 등은 동일한 목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3조(주민협의회 업무) ①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략적 추정분담금 산정
2. 조합정관(안) 작성
3. 조합의 행정업무, 예산·회계, 선거관리규정(안) 등의 작성
4.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5.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 제3호 등은 창립총회 처리안건으로 확정하고 결의한다.

제1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주민협의회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되, 7일전에 위원 등에게 장소, 시간, 안건 등을 통보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출석위원은 토지등소유자에 한한다.

제15조(주민설명회 등) 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 의사 결정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략적인 추정부담금 산정 등이 결정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법 시행령 제27조의2 각호에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정보 공개 등) ① 위원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주민협의회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 관련자료를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위원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 제17조(조합 설립동의서 징구)** ① 주민협의체는 법 제16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② 주민협의체는 조합 설립동의서의 내용 및 징구 방법, 홍보 등에 대하여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③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동의 및 철회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장 창립총회

- 제18조(창립총회의 소집 등)** ① 주민대표자인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이하 “주민대표”이라 한다)은 공공지원 창립총회의 소집권한을 갖는다.
- ② 주민대표는 공공지원 창립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주민대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주민협의체에서 선임된 위원이 위의 사무를 대신할 수 있다
1. 자진사퇴 또는 사망 하였을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7조에 의거 해촉된 경우

- 제19조(창립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조합정관의 확정
 2.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의 확정
 3. 조합의 예산·회계규정의 확정
 4. 조합선거관리규정의 확정
 5. 조합임원의 선임
 6. 대의원의 선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친 사항

- 제20조(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은 법 제16조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르며, 정관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5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

정비사업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7조의4제1항·제7항·제8항·제9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제46조제8호·제48조제4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7조의4제1항·제7항·제8항·제9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제46조제8호·제48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지원을 하는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건설업자의 선정 및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업시행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7조의4제8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조합과 건설업자를 말한다.
2.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설계도서”란 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4. “물량내역서”란 해당 정비사업의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과 규격 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5. “공사비 내역서”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내역서를 말한다.
6. “사업비”란 정비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사업비”는 “대여금”과 “공사비”로 구분한다.
 - 가. “대여금”이란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조합운영비, 이주비, 용역비 등을 조합에 대여하는 비용을 말한다.
 - 나. “공사비”란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액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 제한) 법 제77조의4제8항제1호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공동사업시행협약을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해제 또는 취소된 후에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비용지원 제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7조의4제8항제1호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간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2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융자금은 제21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융자금

제5조(관계법령 등의 적용)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장 공동사업시행자 업무 및 부담

제6조(조합 및 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과 조합원은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이익이나 편익 등을 제공받아서 안 되며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은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안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구분) ① 조합과 건설업자간 공동사업시행의 대표자는 조합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정비사업에 적합하고, 어떠한 권리상의 제한이나 토지 자체에 일체의 하자가 없는 온전한 소유권을 가진 택지와 사업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등 관련서류 일체)를 건설업자에게 제공한다.

③ 건설업자는 대여금을 조합에 제공하고, 건축물 철거, 사업시행인가된 내용대로 건축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공사 등을 완료하여 준공한다.

제8조(용역업체 선정) ① 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용역시행 가능 여부 및 시행중인 용역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는 용역시행 가능여부 및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복잡한 용역시행인 경우에는 협의하여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재해위험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연명 날인하여 체결하고,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약 체결 이전에 조합이 체결한 설계용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 등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연명 날인하여 변경한다.

- 제9조(사업비 조달 및 부담)** ①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입찰 제안서 내용에 대여금과 공사비를 구분하여 조합원들이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대여금과 공사비를 합한 금액) 내역 및 조달계획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달되는 대여금은 건설업자가 직접 차입하여 조합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지급 보증하여 조합이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대출이자 중 입찰시 건설업자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③ 공사비는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하여야 하며, 조합의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대출이자 전액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건설업자는 공동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건설업자가 제안하는 조합운영비 및 이주비, 용역비 등 대여하는 비용은 금리 및 상환기간, 상환조건을 구분 제시하도록 한다.
- ⑥ 공사비는 순공사비(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조합원들이 건설업자 공사비 제안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안한 설계도서와 산출내역에 따른 공사비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건설업자가 입찰시 제안한 공사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조합이 요구하는 설계변경과 자연재해,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공사비 증가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건설업자가 입찰시 제안한 공사비를 초과할 수 있다.
- ⑧ 건설업자 선정시 조합은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내용에 건설업자가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⑨ 제7항에 따라确定的한 공사비 내에서 건설업자가 공기단축 및 신공법 등의 노력으로 절감한 금액은 건설업자의 수익으로 한다.

- 제10조(미분양 부담)** ① 조합은 준공인가시까지 미분양으로 인하여 건설업자의 대여금이나 공사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 현물로 전액 상환한다.
- ② 상환가격은 분양당시의 분양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건설업자 선정 입찰방법

- 제11조(입찰의 방법)** ① 조합이 건설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

- 제12조(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① 조합은 제11조에 따라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따로 승인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5명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① 조합은 제11조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명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건설업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업자 선정 절차 등

제14조(선정계획 결정) ① 조합은 건설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입찰참여자격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건설업자 선정방법 및 입찰에 관한 사항
4.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방법
5.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관한 사항
6. 사업비(대여금, 공사비)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거친 경우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건설업자 선정계획에 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15조(조합원의 동의) ① 법 제77조의4제8항제1호에 따라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의 동의방법(동의를 철회를 포함한다)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법 제17조에 따른다.

③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조합은 공공지원자에게 과반수 동의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제18조에 따른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6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사업시행자 선정시기 등) ① 조합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사업비(공사비 및 대여금)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의 작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도면 작성방법에 따른다.

제17조(공사원가 자문) 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라 설계도서 및 사업비가 산정된 경우에는 입찰 공고 30일 전에 공공지원자,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 전문기관(공사도면, 공사시방서, 물량 내역서 등 제공)에 공사원가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조합 부담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에 대한 자문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자 선정 시 공사비 예정 가격 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입찰공고) 조합은 건설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 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19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조에 따른 입찰공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개요
 - 공사개요(규모, 면적, 공사기간 등)
 - 사업비(대여금, 공사비) 조달 및 집행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예정가격
 - 공사비 예정가격
 - 대여금 예정가격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30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조합이 정하는 사항

제20조(현장설명회) ① 조합은 입찰일 45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심의를 득한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 가.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의결서

- 나. 공사도면
 - 다. 공사시방서
 - 라. 물량내역서(공사 항목별 세부 물량내역을 포함한다.)
 - 마.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설계도서 열람방법(도면과 시방서 등은 현장설명회 참여자에게 정보저장매체로 제공할 것)
 - 2. 사업비 조달 및 상환에 관한 사항
 - 가. 대여금 조달 방법 및 상환에 관한 사항
 - 나. 공사비의 조달 및 상환에 관한 사항
 - 다. 연차별 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
 - 3. 입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여안내서
 - 가. 입찰제안서 작성방법 · 제출서류 · 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예입조치에 관한 사항
 - 다.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라. 건설업자의 공동홍보방법 및 위반 시 제재사항
 - 마. 건설업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 4. 공동사업시행 협약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 나. 공동사업시행 공사계약조건 및 특수조건
 - 다. 공동사업시행 공사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라.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공사협약조건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 입찰참여 의향서를 작성 · 제출토록 하여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입찰신청서 제출) ① 조합은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에게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참여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하고,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여자는 제20조제2항제1호라목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한 공사비 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제19조제5호의 공사비 예정가격 이하여야 하고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③ 입찰참여자는 제20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제19조제5호의 대여금 예정가격에 대한 대여주체, 대여기간, 이율 등이 기재된 대여금 조달계획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대여금 조달계획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제22조(협약서 작성 및 배부) ① 조합은 제20조에 따른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고시하는 「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를 기본으로 본 기준의 내

용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 조합은 밀봉된 상태로 참여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건설업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각 1명과 조합임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제24조(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등) ① 조합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개봉한 때에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입찰서에 따라 입찰제안서 비교표에 준하여 작성하고 건설업자와 각각 확인 날인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입찰제안서 비교표의 사본을 대의원회 또는 총회 개최 안내 시 대의원 또는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 상정할 건설업자 결정) ①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명 이상의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가 5명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6조(건설업자의 홍보) ① 조합은 제25조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가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미리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과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 및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쉽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합은 건설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일체의 개별홍보 활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의 입찰참가자격 박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건설업자 선정)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를 개최하여 건설업자를 선정하며,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석으로 본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직접 참석자의 수에 포함하되, 해당 조합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 시 서면결의서 제출 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조합은 총회에서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업자별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5장 협약의 체결

-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조합은 제27조에 따라 선정된 건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조합과 건설업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체결 시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와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근거, 시방서, 자재사양서 등과 제9조에 따른 사업비 내역 및 조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합은 건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 제29조(입찰보증금)** ① 조합은 건설업자에게 입찰 시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입찰보증금의 예치)** ①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정된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미리 그 뜻을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조합귀속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 등에게 통지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조합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 ③ 조합은 해당 건설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총회 상정할 업체 결정에서 제외된 건설업자 : 대의원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2. 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 협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업자 :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공고 당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조합총회에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선정이 무효로 된 자

2.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로 된 자
3.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로 된 자
- ② 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업체명·무효 사유 및 처분일자 등을 공공지원자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자료의 제출) 조합장은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 선정계획 :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2. 입찰공고 ; 입찰공고 의뢰 전 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전
3. 대의원회 및 총회 상정 자료 : 소집 공고 전
4. 대의원회 및 총회 결과 : 개최 후 지체 없이
5. 현장설명회 결과 : 현장설명 후 지체 없이

제33조(관련자료의 공개) 조합은 건설업자 선정에 관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클린업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3. 현장설명회에 관한 사항
4. 이사회·대의원회 및 조합총회의 의사록
5. 건설업자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제34조(부정행위 단속) ① 조합 및 건설업자 등 누구든지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 또는 승낙하는 행위
2. 제3자를 통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 ② 공공지원자는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각종 서식) 본 건설업자 선정 기준과 관련된 조합원 동의서 등 양약은 별지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36조(감독) 공공지원자는 조합이 이 기준에 따라 건설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2016.11.1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 제 호>

공동사업시행 입찰참여 의향서(예시)

귀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귀 조합에서 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참여 건설업자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팩스번호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귀중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여 의향서 접수증(예시)

당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제 호	접수자 확인	
참여사명		대표자명	

년 월 일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 ○○○

(인)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제 호>

공동사업시행 입찰참여 신청서(예시)

입찰참여자	회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팩스번호	

귀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입찰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귀중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여 확인서(예시)

접수번호	제 호	접수자 확인	(인)
회사명		대표자	
제출자		전화번호	

당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 ○○○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제안서 비교표(예시)

구 분		기호1	기호2	기호3	비고
회사 일반 사항	법인명				
	시공능력 평가순위				
	신용등급/부채비율				
	정비사업 준공실적				
공사비	직접 공사비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간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법정경비			
		기타 간접공사경비			
	소계				
	일반 관리비	○%			
	이윤	○%			
	총원가				
	공사손해 보험료	○%			
	부가가치세	○%			
	총공사비				

구 분			기호1	기호2	기호3	비고
대여금	관리비	조합운영비				
		신탁등기비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소송비용	— ~ —	— ~ —	— ~ —	
		회계감사비/ 세무대행수수료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총회비용				
		소계(조합부담이자)				
	외주 용역비	※ 필요 외주용역 세부내역 작성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 ~ —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 ~ —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 ~ —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소계(조합부담이자)				
	각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상수도공사비	— ~ —	— ~ —	— ~ —	
		하수도부담금	— ~ —	— ~ —	— ~ —	
		지역난방/도시가스 시설부담금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기반시설부담금				
		소계(조합부담이자)				
	제세 공과금	보존등기비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재산세	— ~ —	— ~ —	— ~ —	
		채권매입비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법인세				
		법인세 세무조정료				
		소계(조합부담이자)				
	기타경비	※ 민원처리비용, 일반분양비용 등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 ~ —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 ~ —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 ~ —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소계(조합부담이자)				

구 분		기호1	기호2	기호3	비고	
	보상비	청산대상자 청산금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영업손실 보상비	~	~	~	
		주거이전비	~	~	~	
		기타 이주보상비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소계(조합부담이자)				
예비비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소계(조합부담이자)						
	사업비 대여금 이자 (※ 조합 명의로 금융기관 차입시)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소계(조합부담이자)						
	이주비 대여금 이자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	(금액) 원 (이자율) % (대여기간) ~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직접대여 여부		
		소계(조합부담이자)				
		총 대여금액				
총 조합부담이자금액						
특화계획(무상제공) (주1)		총금액 기재			품목별 규격, 수량, 금액 등 산출조서 및 도면 첨부	
공사 조건	착공시기	이주 완료 후 개월 이내				
	공사기간	착공 후 개월 이내				
사실 확인		본 입찰제안서 비교표는 각 사에서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입찰제안서 등 일체 서류와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 합니다.				
		(인)	(인)	(인)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인) (법인 인감)				

(주1) 조합은 특화계획에 대한 세부 자료를 포함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찰참여 안내서(예시)

20 . .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목 차 -

I. 일반사항

II.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 참여규정

III. 정비구역 현황

IV.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 서식 - 입찰제안서

※ 서식 - 이 행 각 서

※ 서식 - 입찰참여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 서식 - 입찰참여견적서(밀봉)

※ 서식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I. 일 반 사 항

1. 지침의 성격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사업참여 및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인 동시에 총회에서 선정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와의 협약 등을 이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침서이다.

2. 입찰참여자격

- 가. 입찰보증금 _____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 다.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 라. 면허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
- 마.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됨.

3.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추진일정

- 가. 입찰공고 : 20 년 월 일 (요일)
- 나. 입찰참여안내서 배부 (현장설명회시)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00:00(오후 시)
 - 장 소 : 조합 사무실 (☎ :)
- 다. 입찰서 접수 마감
 - (1) 제출시한 : 20 년 월 일(요일)00:00까지 (우편접수 불가)
 - (2) 장 소 : 조합 사무실
- 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방법
 - (1) 입찰방법 : 일반경쟁 ·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 (2) 서울특별시 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따름.

II.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제 1 조】 총 칙

1. 이 규정은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규정은 제1호의 정비사업의 입찰제안서 작성·입찰참여 자격에 관한 사항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3. 이 사업의 계획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결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이 규정 및 낙찰자의 제출서류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의 일부가 된다.
5.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해당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2. “입찰자”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제시된 자격 조건을 갖추고,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발주자의 총회에서 선정되어 공동사업시행 협약의 우선권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4. “사업비 예정가격”이란 “공사비 예정가격”과 “대여금 예정가격”의 합계를 말한다.
5. “공사비 예정가격”이란 발주자인 조합이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공사원가 범위 안에서 입찰공고 시 공표한 입찰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6. “대여금 예정가격”이란 발주자인 조합이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조합 운영비, 이주비, 용역비 등을 산출하여 입찰공고 시 공표한 가격으로서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여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 3 조】 입찰참여 신청 서류

입찰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입찰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제안서 1부
2. 입찰참여 신청서 1부
3. 이행각서 1부
4. 입찰참여 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1부
5. 입찰참여 견적서(대여금 조달 및 상환에 관한 사항 포함) 1부(밀봉)
6. 시공사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1부
7. 특화 및 대안계획서 1부(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를 첨부)
8. 산출내역서 1부(화일 첨부)
9. 법인인감증명서 1부
10.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13. 회사 소개서 1부
14. 입찰보증금 예치 확인자료 및 환급받을 통장 사본 각 1부
15.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단, 사용인감도장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제 4 조】 입찰제안서 및 입찰참여견적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제안서는 조합이 배부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입찰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사용인감 가능)
3. 입찰제안서의 금액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숫자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것에 따른다.
4. 입찰제안서의 제출시 입찰참여견적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조합에 귀속한다.
6. 입찰제안서 제출시 조합이 배부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특화 또는 대안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조합에 귀속되며,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설계변경시 응용 및 활용될 수 있다.

【제 5 조】 입찰의 무효

1.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
2. 공사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
3. 현장설명회 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4. 입찰제안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날인을 누락한 업체
5. 담합·타사의 참여 방해 또는 조합의 입찰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가 속한 업체
6. 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7.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참여규정(제한사항) 및 제반 조건을 위반한 때
8.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입찰참여안내서를 미수령한 업체
9. 우편 또는 FAX로 접수된 입찰제안서
10.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구비서류가 누락된 입찰제안서
11. 2개 이상의 상이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회사
12. 입찰제안서 제출후 제안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업체

【제 6 조】 입찰의 연기 및 재입찰

1. 발주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공고(내용증명) 또는 입찰참여안내서에 기재된 입찰제안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 가. 입찰자의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 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회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포함하여 제공

고 또는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찰을 하여야 한다.

가. 입찰자가 없는 경우

나.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참여조건과 입찰자의 제안내용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재입찰이 불가피한 경우

【제 7 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방법

1. 투표용지의 기호 순번은 입찰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른다.
2.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비밀투표에 따라 선정한다.
3. 서울특별시 고시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등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4.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2명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5.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5명 미만인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6.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3명 미만인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7. 입찰자는 조합이 주관하는 합동홍보설명회 이외의 개별홍보를 할 수 없다.

【제 8 조】 협약체결

1. 낙찰자는 총회에서 선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낙찰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 9 조】 입찰제안서 제출 및 입찰 서류 확인

1. 입찰자는 이 규정과 입찰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 마감 이후 입찰제안서 일체를 개봉하되, 입찰제안서 중 입찰참여견적서 개봉 시기는 조합이 입찰참여 업체에 추후 통지하여 건설업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1인과 조합임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하여 확인·날인 한다.
3. 개봉된 입찰참여견적서의 원본은 해당 입찰자가 모두 인감 날인 후 발주자의 책임하에 보관·관리한다.

【제 10 조】 건설업자의 개별홍보 금지

1.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합동홍보설명회 이외에 임·직원과 홍보요원 등을 동원하여 개별홍보를 하거나 사은품 및 금품제공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무효로 한다.
3. 조합은 합동홍보설명회의 개최 일시·장소 및 방법 등을 설명회 개최 3일 전까지 입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원으로 한다.
 - 금융기관 : 은행
 - 예 금 주 :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계좌번호 :
2. 입찰보증금은 건설업자의 담합 또는 홍보지침 미준수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참여자격의 박탈 등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총회에서 선정이 무효로 된 경우 조합에 귀속된다.
3. 조합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 개최 후 입찰자가 예치한 입찰보증금을 14일 이내 환급하되,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협약 체결 후 14일 이내 환급한다. 이 경우 예치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조합에 귀속된다.

【제 12 조】 관계사항의 숙지 등

1. 입찰자는 입찰참여안내서 등 입찰참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제안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시 입찰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관하여 입찰참여 규정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정관 등과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입찰자는 입찰참여안내서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에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서면으로 입찰자 모두에게 유권해석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 임원 등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

III. 정비구역 현황

1. 일반현황

가. 사 업 명 :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번지 일대

다. 시행면적 : m^2

라. 기존건축물 동수 :

마. 거주가구 및 인구 :

바. 용도지역 :

사. 조합원수 : 명

2. 사업시행계획

가. 공사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부터 개월

나. 건축시설

- 대지면적 : m²

- 주 용 도 :

- 건축면적 : m²(건폐율 %)

- 건축연면적 : m²(용적률 %)

- 층수 및 동수 :

- 주택규모별 건설세대수(전용면적 기준)

공급구분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10㎡이하	10㎡이상 20㎡이하	20㎡이상 30㎡이하	30㎡이상 40㎡이하	40㎡이상 50㎡이하	50㎡이상
합계								
분양								
임대								

다. 정비기반시설

시설구분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비고
	대로	중로	소로						
시설규모									

IV.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1. 입찰제안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입찰자들이 제안하는 공사비 및 대여금 산출내역을 동일한 기준에서 공정하게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에서 배부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비 산출내역
입찰자는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제공한 물량내역서는 단순히 참고용으로서 낙찰자는 향후 협약체결 후 설계도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3. 대여금 대여조건
입찰자는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대여금에 대한 금액, 금리, 상환기간, 상환조건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제공한 대여금 내역서는 단순히 참고용으로서 낙찰자는 향후 협약체결 및 협약 후 조합이 제공한 대여금 내역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을 이유로 사업에 필요한 외주 용역의 시행을 거부할 수 없다.
4. 공사기간
가. 이주 완료 후 철거공사, 부지조성()개월(철거 및 잔재처리 포함) 이내로 한다.
나. 착공 후 준공 시까지 ()개월 이내로 한다.
다. 공사기간은 총 ()개월 이내로 한다.
5. 금리기준
사업비 대여이자와 연체이자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6. 특화 및 대안계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여자는 공사비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 특화 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여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안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나. 특화란 입찰참여자가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 외에 무상제공할 항목으로서 입찰금액과 구분하여 그 품목의 규격, 수량 및 금액 등 산출조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협약 체결시 기초자료가 된다.
다. 대안이란 원안설계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가 있고, 공기단축 또는 비용절감이 가능한 설계를 말하며, 입찰참여자는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등 입찰서와 대안설계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조합총회에서 선정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가 협약 체결 후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입 찰 제 안 서(예시)

입찰공고번호	제20 -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입찰건명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발주방식	공동사업시행		
전용면적별 건축 아파트세대/ 부대복리시설	m^2 - 세대 (임대) m^2 - 세대 m^2 - 세대 m^2 - 세대 부대복리시설 동 평		
공사기간			

당사는 귀 조합의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1. 입찰참여 건적서(대여금 조달 및 상환에 관한 사항 포함) 1부(밀봉)
2.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홍보 지침 및 준수서약서 1부
3. 이행각서 1부
4. 입찰참여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1부
5. 회사소개서
6. 산출내역서 1부(화일첨부, 밀봉)
7. 특화 및 대안계획서 1부(필요시, 밀봉)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9.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12. 입찰보증금 예치 확인자료 및 환급받을 통장 사본 각 1부

20 . . .

입찰참여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입찰참여 견적서(예시)

구 분		입 찰 조 건	비고
회사 일반 사항	법인명		
	시공능력 평가순위		
	신용등급/부채비율		
	정비사업 준공실적		
공사 비	직접 공사비	재료비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첨부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간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법정경비	
		기타 간접공사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	○%	
	총공사비		

구 분			입찰 조 건			비고
대여 금	관리비	조합운영비	(금액) _____원	(이자율) _____%	(대여기간) ____ ~ ____	※건설업자 직접대여, 또는 조합명의 금융기관 차입 여부 명시 ※연체이율 명시
		신탁등기비				
		소송비용				
		회계감사비/ 세무대행수수료				
		총회비용				
		소계(조합부담이자)				
	외주용역비	※ 필요 외주용역 세부내역 작성	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각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_____원	_____%	____ ~ ____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공사비				
		하수도부담금				
		지역난방/도시가스 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소계(조합부담이자)				
	제세 공과금	보존등기비	_____원	_____%	____ ~ ____	
		재산세				
		채권매입비				
		법인세				
		법인세 세무조정료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기타경비	※ 민원처리비용, 일반분양비용 등	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보상비	청산대상자 청산금	_____원	_____%	____ ~ ____	
		영업손실 보상비				
		주거이전비				
		기타 이주보상비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예비비		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사업비 대여금 이자 (※ 조합 명의로 금융기관 차입시)		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이주비 대여금 이자		_____원	_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_원			
	총 대여금액		_____원	_____%	____ ~ ____	
	총 조합부담이자금액		_____원			

구 분		입찰 조 건	비고
특화계획(무상제공)		총금액 기재	품목별 규격, 수량, 금액 등 산출조서 및 도면 첨부
공사 조건	착공시기	이주 완료 후 개월 이내	
	공사기간	착공 후 개월 이내	
사실 확인		당사의 입찰제안내용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를 조합에 제출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작성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업체명 : (인) (법인 인감)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예시)

당사는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귀 조합에서 입찰 지위 및 선정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의 지위를 박탈하여도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귀 조합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적법하게 선정하지 못하거나,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당사는 귀 조합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해 지출한 제반비용의 부담 및 이에 따른 조합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홍보 관련 준수사항 및 위반시 제재조치

연번	구 분	준 수 사 항	제 재 조 치
1	합동설명회	· 1차 : 20 년 ○월 ○일(○) 오후 ○시 · 2차 : 20 년 ○월 ○일(○) 오후 ○시 · 회사소개 및 홍보동영상 : 20분 이내 · 홍보인원 : 회사별 5명 이내 (해당 명단과 증명사진을 조합에 제출)	· 합동설명회 이외 개별홍보활동 일체금지 · 조합에 등록된 인원 외의 홍보자 적발시 입찰자격 또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2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총회일	각사 화환 설치 불가. 총회 당일 전단지·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 설치 금지. 무대·파라솔·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금지	· 임원,공공관리자등 감시단 통제에 불응할 경우, 입찰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3	홍보물	· 홍보물(카다로그) 1종 : 40쪽 이내 (표지포함) · 전단지 1종 : 국전 양면 · 크기 : A4 규격(반드시 준수) · 수량 : 400매 (조합원 우편물 발송용) · 합동설명회 및 총회시 A.V 시스템은 각사 준비	· 홍보물은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 합동설명회 전까지 조합에 신고된 것만 인정하고, 임의변경시 입찰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4	현수막 설치	· 현수막 설치 및 홍보물 부착 일체금지	·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연번	구 분	준 수 사 항	제 제 조 치
5	허위과장 홍보 및 상호비방, 허위사실 유포금지	·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홍보물 제작 금지 · 경쟁사를 비방하는 행위 금지 · 타사를 가장하는 홍보활동 금지	· 타사를 가장하여 고의로 자격박탈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찰참여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6	부정행위	· 금품살포 및 이권약속 금지 ·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 금지	·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 - 입찰 보증금 조합 귀속
7	기 타	· 모텔하우스,무대,파라솔,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금지	·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 - 입찰 보증금 조합 귀속
8	공통사항	·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만 할 수 있음 · 타사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본 조합에 제재조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 서면의 방법으로 하되 반드시 증거자료(사진,녹취,동영상 촬영 등)를 첨부해야 함. · 조합은 제출된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년 월 일

위 확약인 업체명 :

대표자 : (인감)

주 소 :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귀중

이 행 각 서(예시)

귀 조합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참여를 신청함에 있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되기 전이나 선정된 후에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조합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약속하여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제출된 모든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하는 지정 기간일까지 어김없이 이행하겠음.
2. 홍보시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범위 안에서만 홍보하고,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
3. 다른 참여업체를 비방하거나 관련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음.
4. 외부인을 고용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유언비어 유포, 상호비방, 과대선전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
5. 어떠한 경우에도 임원, 대의원, 조합원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금전 등을 일절 제공하지 않겠음.
6. 낙찰에 관계없이 조합의 결정사항을 이의없이 따르겠음.
7. 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된 후 공사 시공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조합이 차순위 협약상대자와 협약을 체결하여도 이의없이 따르겠음.
8. 입찰지침서 상의 입찰보증금 처리 규정에 따라 이의없이 이행하겠음.
9.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정 중 서울특별시 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귀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조합의 결정에 이의없이 따르겠음.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용도 기입요망 :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관련 이행각서용)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귀중

입찰참여안내서에 대한 공람 확인서(예시)

당사는 귀 조합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조합이 작성, 제시한 입찰참여 안내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기에 이에 공람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확인자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구역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귀중

회사 소개서(예시)

- ☐ 회사명 :
☐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비 고
	년	년	년	
총 자 산				
자본총계				
부채비율				
매 출 액				
순 이 익				

- ☐ 시공능력 평가 순위(도급순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비 고
	년	년	년	
순 위				
평가액				

- ☐ 정비사업 실적(최근 3년간)

사업명	대지면적	총연면적	건립세대수	착공/준공일	비 고

첨부 : 증빙서류 각 1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6호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7조의4제8항·제9항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7조의4제8항제1호에 따라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구역 ○○○○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업자”라 한다)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일대 ○○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조합”과 “건설업자”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서”란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이하 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2. “설계도서”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 등)를 말한다.
3. “공사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물량내역서”란 해당 정비사업의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과 규격, 품목, 수량, 단위 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란 물량내역서에 “건설업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또는 “건설업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내역서를 말한다.
6. “사업비”란 정비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사업비”는 “대여금”과 “공사비”로 구분한다.
 - 가. “대여금”이란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조합운영비, 이주비, 용역비 등을 조합에 대여하는 비용을 말한다.
 - 나. “공사비”란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액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8. “공동사업시행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7조의4제8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조합”과 “건설업자”를 말한다.

제3조(공사도급계약으로 전환 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제3조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공동사업시행협약을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적용) ① 이 협약이 관계법령 등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 절차 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조(인·허가 업무의 주관) 이 정비사업의 인·허가 업무는 “조합”이 주관하되 “건설업자”는 이에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지원 용자금 상환) ① “조합”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제3항에 따라 용자받은 용자금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상환하는 용자금을 “건설업자”가 사업비로 대여하는 자금에 포함하며, “조합”이 용자금을 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에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동사업 시행방법 및 권리의무

제7조(협약의 범위 및 기간) ① “조합”과 “건설업자”의 공동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 ○○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3. 사업부지면적 : m² (평)

②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또는 조합해산일)까지로 하되,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는 상호간 협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시행방법) ① “조합”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부지(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비 조달과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건설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부지(토지)라 함은 “조합”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건설업자”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제9조(공동사업시행자의 업무 구분) ① “조합”은 공동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설립 및 정관 등에 관한 사항
 - 가. 조합사무실 운영/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개최
 - 나. 조합설립변경인가

2. 인·허가 등 업무
 - 가. 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건축·교통·문화재·환경영향평가 등 심의에 관한 사항
 - 다.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준공인가/이전고시/조합해산 등
3. 이주 및 토지수용 등 업무
 - 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에 관한 업무
 - 나. 토지의 사용 및 수용(매도청구)에 관한 업무 등
4. 공사 감리·감독
 - 가. 감리업체 선정(구청) 등에 관한사항
 - 나. 공사시공 감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분양 업무 주관
 - 가. 조합원 분양
 - 나. 일반 분양
6. 각종 등기, 공부정리 및 납세 관리
 - 가.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 나. 국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7. “건설업자”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② “건설업자”는 공동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라 “조합”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2. 용역업체 선정지원 및 관리
 - 가. 협약 체결 후 신규용역업체 선정절차 추진
 - 나. 용역수행 관리
 2. 이주지원 및 철거
 - 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지원 및 공가관리
 - 나. 지장물 이설, 석면제거, 철거 등에 관한사항
 3. 일반 분양 지원
 - 가. 건본주택건립 및 관리
 - 나. 분양 홍보, 분양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
 4. 공사 목적물(토목, 건축 등) 시공 및 하자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관리 및 조직구성, 계약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지원자의 중재에 따른다.

【주】 공동사업시행자의 업무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할 수 있음.

제10조(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 및 권리의무) ① 조합과 건설업자간 공동사업 시행의 대표자는 조합으로 하고, “건설업자”는 법제77조의4제8항에 따라 시공자로 본다

② “조합”과 “건설업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③ 본 협약과 관련하여 “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협약조건에 따라 행한 “조합”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한·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조합”의 조합원은 “건설업자”에게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 제11조(용역업체 선정)** ① “조합”은 공동사업시행 협약이후 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용역시행 가능 여부 및 시행중인 용역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는 용역시행 가능여부 및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복잡한 용역시행인 경우에는 협의하여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재해위험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③ 공동사업시행자는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회계감사기관, 감정평가업자 등 관련 법령에서 선정기준을 정한 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업체 선정 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31조를 준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예산·회계규정 제23조는 “조합”이 결정하고,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는 “건설업자”가 “조합”의 의견을 들어 절차를 이행하며,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 및 계약하고 제33조의 계약대가(용역비용)의 지급을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이행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용역비용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건설업자가 제안한 용역비용의 범위안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초과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안된 용역비용이 없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⑥ 사업시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은 공동사업시행자가 연명 날인하여 체결하고,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약 체결 이전에 조합이 체결한 설계용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 등 계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연명 날인하여 변경한다.

제12조(사업비 확정) ①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대여금과 공사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사업비는 “건설업자”가 입찰 참여제안서에 제출한 내용에 따라야 하며, 사업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 3 장 협약의 체결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제1절 협약의 체결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본 협약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본 협약서에 상호 날인함과 동시에 협약 체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본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의를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내용의 변경이 조합원의 부담을 수반할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조합 총회 의결 후 변경한다.

제14조(협약서류 등) ① 정비사업 공동시행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조합”과 “건설업자”가 상호 날인, 간인)
 2.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필요시)
 3.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현장설명서 포함)
 4.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5.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6. 협약이행 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7. 입찰참여제안서, 홍보물 등 “건설업자”가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제출한 문서
 8. 공문서, 대출약정서 등 기타 협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류 상호간에 상충부분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

제15조(협약이행 보증) ①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별도로 정하는 협약이행 보증금(총사업비의 〇〇%)을 협약체결과 동시에 “조합”에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이행 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건설업자”는 사업비의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조합”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협약이행 보증금을 “건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8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협약이행 보증금은 “조합”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협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19조제1항의 사유로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협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협약이행 보증금을 지체 없이 “건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주】 협약이행 보증금의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제16조(손해보험) ①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시 “조합”, “건설업자”, 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조합”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협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순협약금액(협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일 이전까지로 하고, 그 증서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공사 착공시부터 “조합”의 인수시까지로 하여야 한다.
- ⑤ “건설업자”는 손해보험 가입 시 협약의 보증이행 규정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건설업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협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건설업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건설업자”는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건설업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해당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건설업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통지 등의 효력)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하여야 효력이 있다.

- ② 통지 등의 장소는 협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협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④ 협약당사자는 협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협약의 해제 및 해지 등

제18조(“건설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되며, 협약이행 보증금을 “조합”에 귀속 조치한다.

1.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협약이행 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3. 입찰 및 협약이행 과정에서 “조합”의 조합원 또는 용역계약업체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4. “건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갑”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건설업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협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건설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건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대여금 조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협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조합”의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조합”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조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협약이행 보증금상당액 이상에 달하였으나 해당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자”는 잔여 공사비에 대하여 협약이행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조합”의 사정변경에 의한 협약의 해제·해지) ① “조합”은 제18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조합”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제3항 각 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협약이행 보증금과 대여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현재까지 “건설업자”가 투입한 공사비를 제외한 정비사업비
 2. 제6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전체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건설업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해제·해지의 귀책사유가 “조합”에 있는 경우에 “건설업자”는 “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건설업자”에 의한 협약의 해제·해지) ①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56조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공사비가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55조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 ② 제19조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 4 장 사업비 조달 및 상환 등에 관한사항

제 1 절 사업비 조달 및 집행

제21조(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① 공동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내 사용될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매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연차별집행계획은 협약기간 내 사용하는 대여금과 공사비를 합한 모든 사업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사업비 집행 의결) ① 공동사업시행자는 다음 연도 사업비를 대여금과 공사비로 구분하여 집행계획 수립 후 해당년도 10월말까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은 “건설업자”가 작성하여 “조합”의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을 거쳐 총회에 상정·의결 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최소비용만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브랜드 홍보비 부담 제한) ① “조합”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 선정 시 “건설업자”가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제안을 할 경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는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비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4조(대여금 조달 및 관리) ① 사업비 중 대여금은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업자”가 지급 보증하여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대출이자 중 입찰시 “건설업자”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건설업자”가 제안한 이자율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여금 조건과 같이 부담한다. 만약, 이자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로 대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여(상환)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대여이자의 부담은 건설업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균등하게 부담한다.

【주】 사업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여(상환)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이자부담을 부여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 도모

④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자금을 직접 차입하는 경우의 차입금과 분양수입금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명의 은행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비 확정) ① 공사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인가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출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공사비 내역에 따라 확정한다. 공사비의 금액은 본 협약시 정한 공사비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조합이 요구하는 설계변경과 자연재해,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공사비 증가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건설업자가 입찰시 제안한 공사비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조합”의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총회에서 확정한다.

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사비(직접·간접 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는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시 건설업자가 제안한 공사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공사비”는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하여야 하며, “조합”의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전액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명의 은행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공사비 내에서 “건설업자”가 공기단축 등의 노력으로 절감한 금액은 “건설업자”의 수익으로 한다.

제26조(사업비 상환) ① 공동사업시행을 위하여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여한 대여금과 공사비는 분양 등 수입금으로 상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등 수입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동사업시행자”는 협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의 사업비 상환은 조합 명의 차입금, 건설업자 대여금, 공사비, 순으로 지급한다. 다만, “조합”의 대의원회 거쳐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공동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시까지 미분양으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대여한 대여금이나 공사비를 “조합”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의 현물로 전액 상환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현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환가격은 분양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자금관리) ①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분양금(상가 등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임대주택 매각대금 등의 수납관리는 “건설업자”의 공사비와 대여금 등의 상환 및 수분양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때에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의 납입계좌를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계좌로 명기하며, “분양계약서상 명기된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은 이를 정당한 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기한다.
- ③ “조합”의 조합원 청산금, 일반분양금, 수령한 사업경비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예치로 발생하는 이자는 “조합”에게 귀속한다.
- ④ 공동명의로의 통장 잔고에 “조합”과 “건설업자”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수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의 전환은 제한한다. 이 경우에도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공동명의 계좌의 입·출금은 공동사업시행자의 공동날인 없이는 입·출금할 수 없다.

【주】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의하여 공동명의로의 통장 잔고에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조합”의 수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도록 한 취지임.

⑥ “조합”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관리는 “조합”이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이 “조합”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조합”은 지체없이 “조합”과 “건설업자”의 공동명의의 계좌로 이체한다.

제28조(연체료 징구) ① “조합”이 본 협약조건에서 정한 기간내에 공사비 및 대여금 등(조합운영비는 제외한다)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〇%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건설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조합원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주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에 정한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조합”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주】 제2항은 “조합”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 또는 총회 의결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할 것임.

제29조(채권확보) ① “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기간 만료일부터 〇〇일까지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및 청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시설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 등을 현물로 상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의 책임하에 “조합원” 부담으로 한다.

제 2 절 대여금 및 이주비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조합운영비 집행) ① “건설업자”는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 의결 및 예산한도 충족여부 등을 여부를 확인한 후 “조합”에 30일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여금은 관련법령 및 조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대여금 지출) ① “조합”은 제30조에 따른 조합운영비 대여금을 제외한 대여금 지출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제1항의 비용에 대한 지출시 총회 의결 여부 및 예산한도 충족 여부,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이주비 대여금 차입 등) ① “건설업자”는 “조합”의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여한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 요청시 “건설업자”는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대여총액 : 원 (조합원 1명 당 원)
2. 이자 및 연체료 : 제24조와 같은 조건으로 함

② 이주비 대여는 계약 체결 후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이주비 대여시기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주비를 대여하기 전에 “조합”은 조합원의 토지·건축물의 소유관계, 거주자의 이주계획, 소유권이외의 권리설정 여부, 공과금 완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건설업자”가 채권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주】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설업자”는 이주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며, “조합”과 조합원은 이를 말소 또는 해지하여야 할 것임.

④ 이주비 대여시 “조합”은 이주비 대여와 관련된 제반서류(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주비 차용증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 지장물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각서 등)를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건설업자”를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주비 총액의 120%를 채권최고금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해지에 따른 비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⑥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이주비에 상응하는 금액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등 “건설업자”가 요구하는 여타의 채권확보 방법에 “조합” 또는 “조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주】 “조합”은 “조합원”이 기본이주비를 지급받지 않거나, 분양대금 등을 선납한 경우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용분담에 관하여 정관에 정하거나 조합총회 의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33조(대여금 상환) ① “조합”은 제24조에 따른 대여금에 대하여 본 협약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만료일까지 “건설업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원할 경우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제외한 대여금 상환은 제26조의 사업비 상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이주비 상환) ① “조합”의 조합원이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조합”의 조합원이 원할 경우 이주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이주비를 대여 받은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기존 조합원의 대여조건에 따라 이주비를 승계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 이행 전에 이주비 승계사실을 확인하여 “조합”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5 장 건축시설의 분양 및 이주 등에 관한 사항

제 1 절 건축시설의 분양

제35조(관리처분계획) ① “조합”은 공사비 등 사업비의 원리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조합” 또는 “조합”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수행하되, “건설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분양업무) ①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조합원 및 일반분양) 업무는 “조합”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은 필요시 “조합”이 지정하는 협력업체 또는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자가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상호 또는 “건설업자”가 등록한 상표(브랜드 등)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건설업자”는 사용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브랜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조합원 분양) ① “조합”의 조합원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가액이 권리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산하여야 하며, 청산금의 납부 또는 지급시점, 납부 또는 지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 “조합”은 입찰시 해당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건설업자”가 충분히 이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계약 체결시 구체적으로 조건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조합”의 조합원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가액이 자신의 권리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시점 및 납부방법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제 사업비 및 공사비 충당시기를 검토하여 부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입주잔금
납부시기	계약체결시	공사기간을 ○회 균등분할한 시점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 만료일 중 앞서는 날
납부금액	분양금액 × ○%	분양금액 × ○%	분양금액 × ○%
납부방법			

2. 계획된 공사일정이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의하여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조합”은 “조합”의 조합원이 부담금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 만큼 납부대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주】 이 계약조건은 “조합”과 “건설업자” 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 등을 정하는 것이며, 제3호는 “조합”과 “조합”의 조합원 관계로서 비용분담 등 청산방법에 대하여 정관에 정하거나 사전에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4. “조합”은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단축될 경우 잔여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시점은 그 단축기간만큼 변경·조정한다.

5. “조합”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분양계약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사업계획변경 등 “건설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조합”의 조합원의 부담금 증가가 예상될 경우 미리 정관에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금을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 시 정산하기로 한다.

제38조(일반 분양) ① “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분양대상 복리시설의 분양시기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분양업무는 “건설업자”가 수행한다.

【주】 “건설업자”의 분양대행 여부와 조건 등을 입찰유의서에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② 준공인가일까지 일반분양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이 미분양되어 공사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물로 상계하여 변제할 수 있으며, 대물변제의 가격 및 방법은 제26조 제5항에 따른다.

【주】 미분양분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물변제조건을 입찰유의서에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제 2 절 이주 및 철거

제39조(거주자의 이주) ① 정비구역안의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주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정한 이주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조합”의 책임 하에 완료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이주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주】 공사기간 연장 또는 지연배상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누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취지이며, “조합”은 이를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대여기간 중에 “건설업자”가 대여한 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임.

② 거주자의 이주 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조합” 및 “조합”의 조합원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조합”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이주가 개시된 날부터 공가관리를 하여야 한다.

【주】 조합원 및 세입자의 원만한 이주를 위하여 이사비용 등에 관하여 세대당 지급하는 경우에는 협약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제40조(지장물의 철거) ① “조합”과 “건설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시하고, 이주완료 후 30일 이내에 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건설업자”는 공가관리 등 지장물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 이주 및 철거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건설업자”가 관련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향후 분쟁의 여지가 있는 물가변동에 따른 협약금액 조정·공사기간 연장 또는 대여자금의 연체이자 납입 등을 미리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 것이며, 제39조제1항의 취지와 같음.

- ② 지장물의 철거 또는 시공중에 발생하는 수목, 골재 등 부산물은 “조합”에게 귀속된다. 단, 이러한 부산물의 귀속에 대하여 “조합”과 “건설업자”가 미리 협의하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③ “조합”과 “건설업자”은 본 사업부지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철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건축물 등에 석면이 있을 경우, 석면처리 및 지하구조물 철거 등의 비용은 “건설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석면제거 등에 따른 철거기간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연장한다.

제 6 장 공사기준 및 설계 등에 관한 사항

제 1 절 공사의 기준

제41조(공사기간 등) ① 공사기간은 “조합”이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일로 부터 ○○개월로 한다. 단, “조합”의 귀책사유 또는 민원 등으로 착공신고일에 착공이 불가능한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한 실착공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주】 정비사업의 특성상 이주가 완료된 후 지장물 철거 잔재처리 완료 후 공사용지가 확보되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착공신고 기준 등을 감안하여 착공일을 정하되, 대여조건과 지연배상금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하여야 것임.

② 공사완공일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날로 한다.

【주】 “건설업자”의 책임있는 본 공사의 목적물 완성을 위하여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날로 하고, 임시사용승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경비등 상환방법, 지연배상금 산정기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제42조(공사자재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건설업자”는 “조합”에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건설업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⑥ “건설업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감리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그 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감리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건설업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조합”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 협약금액을 증감하거나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공사감독원) ① “조합”은 협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지명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조합”이 위임하는 사항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원을 지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건설사업관리자) “조합”은 본 협약 이행의 완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자가 “조합”과의 협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건설업자”는 협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협약문서와 공사감독원 또는 감리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건설업자”는 해당 협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건설업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이 해당 협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인 없이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협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47조(공사감리) ① 본 공사의 감리는 「주택법」 제24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과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에 따른다.

② “건설업자”는 공사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매월 “조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자료의 제출 등) ① “건설업자”는 협약체결 시 제2호, 제3호의 서류를 “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신고서를 “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지정서
2. 공사에정 공정표
3. 제4조에 따른 협약문서

4. 주택법·령에 따른 착공신고서류, 하도급 계약문서 등 기타 “조합”이 지정한 사항

② “건설업자”는 협약의 이행 중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이를 조정 요구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현장관리, 설계변경 등 필요한 경우 “건설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자”는 “조합”에게 지체 없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공사의 하도급 등) ① “건설업자”는 협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조합”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다)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조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본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본 공사의 시공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공능력이 없는 하수급인이 선정되어 공사의 조잡, 부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합이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라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협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주】 하수급인의 적정성 판단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공신력있는 컨설팅기관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임.

제50조(공사의 시정명령) “건설업자”가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또는 협약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조합”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건설업자”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 “조합”에 대한 손해는 “건설업자”

가 부담 또는 배상한다.

제51조(재해방지 및 민원) ① “건설업자”는 공사 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건설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본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의 시공상 직접적인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과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등은 “건설업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하되, 인접도로의 통행 제한, 인접건물의 공사수행방해, TV난시청 등 공사와 무관한 간접피해 및 민원은 “조합”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한다.

【주】 민원의 내용별 해결주체를 분명히 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에 책임소재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③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전에 발생한 공사전반에 관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 “건설업자”가 보상,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 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조합”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건설업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52조(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①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시설의 준공검사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생한 손해가 기성공사금액의 1/3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53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건설업자”는 제68조제3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공사 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 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를 경유하여 “조합”에게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공사기간 내에 발생하여 공사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공사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 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6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합”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제15조에 따른 협약이행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협약목적물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협약이행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협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협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재해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조합”에 필요하여 지시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업자” 및 감리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건설업자”는 협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5조(“조합”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건설업자”의 공사정지) ① “건설업자”는 “조합”이 협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합”에게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조합”은 “건설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조합”이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53조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 2 절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제56조(설계변경)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관계법령의 개정,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 그 밖에 “조합”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지하매설물 등에 따른 설계변경) ① “건설업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조합, 공사감독원 및 감리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8조(신기술 및 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① “건설업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조합”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를 경유하여 “조합”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요청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감리를 경유하여 “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합”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동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

제59조 (“조합” 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 밖에 공사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지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조합”과 감리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조합”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조합”은 제57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과 감리자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협약금액 및 기간

4. 기타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조합”은 제2항제2호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건설업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5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조정) ① “조합”의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 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협약금액을 제25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설계의 협약단가는 “건설업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협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협약금액은 변경할 수 없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협약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변경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조합”이 확정할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따라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협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58조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등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용, 산재보험료
 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승률 비율과 일반관리비용 및 이윤율에 따른다.

④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
 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협약금액을 제25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협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협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협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의결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협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조합”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의 전단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의 협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
 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제출한 대안이 채택되어 협약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조합”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협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⑨ 제8항에 따른 “조합”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조합”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조합”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조합”이 수용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협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조합”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협
 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
 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협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⑩ 제9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
 하여 협약금액을 조정하되, 협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제6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조정은 산출내
 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공사협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에 협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협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금액의 조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수조정률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실적공사비지수 중 변동율이 낮은 것을 적용한다.

【주】“조합”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품목조정률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

③ 제1항에 따라 협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청구에 따르고, “건설업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협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협약금액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협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협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조합”은 물가변동에 따른 협약금액 조정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④ “조합”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협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협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총회 의결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협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업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조합”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협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협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건설업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업자”는 그 반송사유를 반영하여 협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그 밖에 협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조정) ① “조합”은 공사협약에 있어서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변경으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5조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협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협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자”와 협의하여 협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협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협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62조제4항을 준용하며, 협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건설업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64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건설업자”는 제69조제3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공사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를 경유하여 “조합”에게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공사기간 내에 발생하여 공사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공사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 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69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협약금액을 제25조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제69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조합”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제15조에 따른 협약이행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협약 목적물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협약이행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제69조에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절 준공검사 및 공사비 지급

제65조(준공검사) “건설업자”는 협약문서 등의 기준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 신청 예정일로부터 ○일 이전에 준공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제66조(기성검사) ① “건설업자”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조합”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감리가 작성한 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원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가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성검사이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협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7조(공사목적물의 인수) ① “조합”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일 이내에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건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건설업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사업 완료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8조(공사비 지급 등) ① “조합”이 “건설업자”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제26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준공대금인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주】 조합의 공사비 지급은 기성 실적에 따라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고,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

② 제1항에 따른 기성물은 감리의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정한다.

제69조(지연배상금) ① “건설업자”는 협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연배상금률을 협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 지연배상금률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 또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 연체금리 등을 기준으로 “조합”과 “건설업자”의 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② “조합”은 제1항의 지연배상금을 산출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협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협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는 해당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2. “조합”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4. 제56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협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의 구입 곤란 등 그 밖에 “건설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조합”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검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조합”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건설업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7 장 입주 및 하자관리

제70조(입주) ① “건설업자”는 준공검사 완료 즉시 “조합”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한다.

【주】 입주기간을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자의 입주시기, 잔금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이를 조합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토록 한 규정임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의하여 입주예정 ○일 전까지 구체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를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 및 확인하기로 하며, “건설업자”는 입주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각종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을 준비 및 확인한다.

③ “조합”과 “건설업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청산금, 이주비, 연체료 등의 완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주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1조(하자 및 관리) 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조합”은 준공검사 완료 즉시 관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조합원이 사용검사된 건축시설 입주 후 임의 변경하여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8 장 기타사항

제72조(공부정리 등) 관련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조합원 및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정리, 제측량에 의한 지적정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정리, 건축시설의 준공 후 보존등기 및 기타 공부정리는 “조합”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되, “건설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73조(분쟁 및 소송) ① 본 협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되, 쌍방 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자치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본 사업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주1】 조합과 건설업자가 본 협약에 대하여 해석의 견해 및 적용을 달리 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는 우선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그리 하여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한 내용임.

【주2】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아래의 예시와 같이 중재조항을 명시할 수도 있음. 이 경우 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예) “본 협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이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74조(협약외의 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5조(채권의 양도) “건설업자”은 본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본 협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76조(이권개입 금지) ① “조합”은 “조합”의 조합원이나 “건설업자”와 조합정관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③ “건설업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 및 “임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7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동 사업이 완료(조합해산)될 때까지 유효하다. 단, “조합”은 본 협약체결 전에 협약내용에 대하여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를 선행하여 협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은 “조합”의 대표자(조합장) 등의 변경과 “건설업자”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76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불합리한 공사협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면 “조합”과 “건설업자”는 협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78조(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조합”은 이 협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추가 보충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9조(소송 관할법원) “조합”과 “건설업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조 합” 주 소 : ○○시 ○○구 ○○동 ○○번지
 명 칭 : ○○구역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 도시환경) 조합
 조 합 장 : ○○○ (인)

“건설업자” 주 소 : ○○시 ○○구 ○○동 ○○번지
 명 칭 : ○○건설회사
 대표이사 : ○○○ (인)

<별지 제1호 서식>

대여금 조건(양식)

구 분			금액	이자율	기간	비고
대여금	관리비	조합운영비	원	____%	____ ~ ____	※건설업자 직접대여, 또는 조합명의 금융기관 차입 여부 명시
		신탁등기비				
		소송비용				
		회계감사비/ 세무대행수수료				
		총회비용				
		소계(조합부담이자)	※ 금액에 기간과 이자를 곱하여 산정			
	외주 용역비	※ 외주용역 세부내역 작성	____ 원	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 원			
	각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____ 원	____%	____ ~ ____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공사비				
		하수도부담금				
		지역난방/도시가스 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 원			
	제세 공과금	보존등기비	____ 원	____%	____ ~ ____	
		재산세				
		채권매입비				
		법인세				
		법인세 세무조정료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 원			
	기타경비	※민원처리비용, 일반운영비용 등	____ 원	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 원			
	보상비	청산대상자 청산금	____ 원	____%	____ ~ ____	
		영업손실 보상비				
		주거이전비				
		기타 이주보상비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 원			
	예비비		____ 원	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 원			
	사업비 대여금 이자 (※ 조합 명의로 금융기관 차입시)		____ 원	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 원			
	이주비 대여금 이자		____ 원	____%	____ ~ ____	
	소계(조합부담이자)		____ 원			
	총 대여금액		____ 원	____%	____ ~ ____	
	총 조합부담이자금액		____ 원			

<별지 제2호 서식>

공사비 내역(양식)

구 분			금 액	비고
공사 비	직접 공사비	재료비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첨부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간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법정경비		
		기타 간접공사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공사손해보험 료	○%		
	부가가치세	○%		
	총공사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7호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244호(1999.8.11)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대모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대모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개설로 단절된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연결로를 조성하여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내곡동 일대

3. 면 적 : 5,029,258㎡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6) 및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6262)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총괄표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면적 (㎡)	공작물 (기)					
												면적 (㎡)	면적 (㎡)								
	계	5,029,258.0	132,808.0	2동	160.0	160.0	11	5,029,258.0	133,456.0	2동	160.0	160.0	11	11	160.0	160.0	160.0	160.0	11	중 648㎡	
기반 시설	소 계	40,603.0	40,603.0					41,251.0	41,251.0											중 648.0㎡	
	도 로	40,603.0	40,603.0					40,791.0	40,791.0											중 188.0㎡	
	녹지연결로							460.0	460.0											중 460.0㎡	
	조 경 시 설						4												4		
	휴 양 시 설	673.0	673.0				4	673.0	673.0										4		
	교 양 시 설	3,812.0	3,812.0				1	3,812.0	3,812.0										1		
	운 동 시 설	8,437.0	8,437.0					8,437.0	8,437.0												
	편 익 시 설	79,091.0	79,091.0	1동	52.0	52.0		79,091.0	79,091.0	1동	52.0	52.0									
	관 리 시 설	192.0	192.0	1동	108.0	108.0	2	192.0	192.0	1동	108.0	108.0							2		
	녹지 및 기타	4,896,450.0						4,895,802.0												합 648.0㎡	
	시 설 율 (법정 20%)	(132,808 / 5,029,258.0) × 100 = 2.64%						(133,456 / 5,029,258.0) × 100 = 2.65%													
	건 폐 율 (법정 4%)	(160.0 / 5,029,258.0) × 100 = 0.003%						(160.0 / 5,029,258.0) × 100 = 0.003%													

< 시설지구별 >

구	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원 시설 구역	계	5,029,258.0	132,808.0	2동	160.0	160.0	11	5,029,258.0	133,456.0	2동	160.0	160.0	11	증 648㎡
	소 계	317,930	20,943	2동	160.0	160.0	9	317,930	20,943	2동	160.0	160.0	9	
	구룡천의 지구	77,752	3,866				2	77,752	3,866				2	
	옥수천지구	146,278	11,655	1동	108	108	5	146,278	11,655	1동	108	108	5	
	대모천지구	93,900	5,422	1동	52	52	2	93,900	5,422	1동	52	52	2	
시설외지구		4,711,328	111,865				2	4,711,328	112,513				2	증 648㎡
시설구역율 (법정 20%이하)		(317,930 / 5,029,258.0) × 100 = 6.3%						(317,930 / 5,029,258.0) × 100 = 6.3%						

< 구룡·천의지구 >

1. 총괄표(강남구 개포동 산53-22 일대)

구	분	변				전				경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기반 시설	계	77,752	3,866		2					77,752	3,866		2								2		
	소 계	780	780							780	780												
	도 로	780	780							780	780												
	녹지연결로																						
조 경 시 설					1																1		
휴 양 시 설		148	148		1					148	148										1		
교 양 시 설		1,270	1,270							1,270	1,270												
운 동 시 설		1,573	1,573							1,573	1,573												
편 의 시 설		95	95							95	95												
관 리 시 설																							
녹지 및 기타		73,886								73,886													
시 설 물 (법정 40%)		(3,866 / 77,752) × 100 = 4.97%				(3,866 / 77,752) × 100 = 4.97%				(3,866 / 77,752) × 100 = 4.97%				(3,866 / 77,752) × 100 = 4.97%				(3,866 / 77,752) × 100 = 4.97%					
건 폐 율 (법정 10%)		-				-				-				-				-					

2. 시설조서

구 분	번			경			전			번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합 계			77,752	3,866					2			77,752	3,866					2	
기반 시설			780	780								780	780						
도로			780	780								780	780						
조경 시설									1									1	
그늘시령									1									1	
소 계			148	148					1			148	148					1	
휴양 시설	가	개포 산53-22	148	148						가	개포 산53-22	148	148						
장의자									1									1	
소 계			1,573	1,573								1,573	1,573						
체 력 단련장	나	2개소	1,113	1,113						나	2개소	1,113	1,113						
	나-1	개포 산53-28	(869)	(869)						나-1	개포 산53-28	(869)	(869)						
	나-2	개포 산53-22	(244)	(244)						나-2	개포 산53-22	(244)	(244)						
배드민턴장	다	개포 산53-22	460	460						다	개포 산53-22	460	460						
소 계			95	95								95	95						
편의 시설	라	2개소	95	95						라	2개소	95	95						
약수터	라-1	개포 산53-22	(23)	(23)						라-1	개포 산53-22	(23)	(23)						
	라-2	개포 산53-28	(72)	(72)						라-2	개포 산53-28	(72)	(72)						
생태 습지원	마	개포 산53-22	1,270	1,270						마	개포 산53-22	1,270	1,270						
녹지및 기타			73,886									73,886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520	780				
변경					520	780				
당초	소계				520	780				
변경					520	780				
당초	신책로		1	1.5	10	15	신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2	1.5	110	165	신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8	
당초			3	1.5	114	171	신책로	개포 산53-28	개포 산53-22	
당초			4	1.5	52	78	신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5	1.5	14	21	신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6	1.5	220	330	신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당초										

2.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합 계				146,278	11,655	1동	108	108	5			146,278	11,655	1동	108	108	5			
기반 시설	소 계			3,122	3,122							3,122	3,122							
	도로			3,122	3,122							3,122	3,122							
조경 시설	소 계								1								1			
	그늘시설								1								1			
휴양 시설	소 계								1								1			
	장의자								1								1			
운동 시설	소 계			5,614	5,614	5면			1			5,614	5,614	5면			1			
	가	2개소		1,433	1,433					가	2개소	1,433	1,433							
	가-1	일원 산52-1외 1필지	(1,230)	(1,230)						가-1	일원 산52-1외 1필지	(1,230)	(1,230)							
	가-2	개포 산53-22	(203)	(203)						가-2	개포 산53-22	(203)	(203)							
	나	4개소	1,511	1,511						나	4개소	1,511	1,511							
배드민턴장	나-1	일원 산52-1외 1필지	(363)	(363)	1면					나-1	일원 산52-1외 1필지	(363)	(363)	1면						
	나-2	일원 산52-1	(220)	(220)	1면					나-2	일원 산52-1	(220)	(220)	1면						
	나-3	개포 산53-22외 1필지	(928)	(928)	3면					나-3	개포 산53-22외 1필지	(928)	(928)	3면						
	다	개포 산58-4	820	820					1	다	개포 산58-4	820	820					1		
모험놀이시설	라	일원 산52-1외 2필지	1,850	1,850						라	일원 산52-1외 2필지	1,850	1,850							
	소 계			1,371	1,371							1,371	1,371							
교양 시설	임간교육장	개포 산52-1외 1필지	200	200						마	개포 산52-1외 1필지	200	200							
	자연관찰로	개포 산146-1외 3필지	1,171	1,171						바	개포 산146-1외 3필지	1,171	1,17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비대면적 연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편의 시설	소 계		1,356	1,356					
	사	2개소	268	268					
	사-1	일원 산52-1	(160)	(160)					
	사-2	개포 산53-22외 1필지	(108)	(108)					
주차장	아	개포 567-5외 2필지	1,088	1,088					
	소 계		192	192		1동	108	108	2
관리 시설	관리사무소 1	일원 산52-1	192	192		1동	108	108	
	안내판								1
	공원등								1
녹지 및 기타	소 계		134,623						134,623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변경	소로	합 계			1,765	3,122				
					1,765	3,122				
당초 변경	소로	소 계			117	650				
					117	650				
당초	소로	소 계	3	1	8	117	650	진입로	개포 산144-1	
당초 변경					1,648	2,472				
	신책로	합 계			1,648	2,472				
당초			1	1.5	38	57	신책로	개포 108	개포 산56-4	
당초			2	1.5	226	339	신책로	개포 산67-1	개포 산56-1	
당초			3	1.5	440	660	신책로	개포 산51-1	개포 산53-22	
당초			4	1.5	228	342	신책로	개포 산52-1	개포 산53-22	
당초			5	1.5	32	48	신책로	개포 산55-1	개포 산55-1	
당초			6	1.5	120	180	신책로	개포 산55-1	개포 산53-22	
당초			7	1.5	68	102	신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8	1.5	72	108	신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9	1.5	36	54	신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10	1.5	44	66	신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11	1.5	12	18	신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12	1.5	258	387	신책로	개포 443	개포 산52-1	
당초			13	1.5	38	57	신책로	개포 산52-1	개포 산52-1	
당초			14	1.5	36	54	신책로	개포 산52-1	개포 산52-1	

< 대포천지구 >
1. 총괄표(강남구 일원동 산63-47 일대)

구		분	경						변						경				변				비	고		
			면			전			면			전			면		전		면		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		단	계	93,900	5,422	1	52	52	2	2	93,900	5,422	1	52	52	2	2	93,900	5,422	1	52	52	2	2		
				소		2,281	2,281						2,281	2,281					2,281	2,281						
						2,281	2,281							2,281	2,281					2,281	2,281					
						노																				
			조																							
			휴	80	80				1	1	80	80					80	80				1	1			
			교	1,171	1,171						1,171	1,171					1,171	1,171								
			운	1,250	1,250						1,250	1,250					1,250	1,250								
			편	640	640	1	52	52			640	640	1	52	52		640	640	1	52	52					
			관																							
			노	88,478							88,478						88,478									
			시	(5,422 / 93,900) × 100 = 5.77%						(5,422 / 93,900) × 100 = 5.77%						(5,422 / 93,900) × 100 = 5.77%										
			건	(52 / 93,900) × 100 = 0.05%						(52 / 93,900) × 100 = 0.05%						(52 / 93,900) × 100 = 0.05%										

2.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경				변 경				후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93,900	5,422	1동	52	52	2			93,900	5,422	1동	52	52	2	
	기반 시설		2,281	2,281							2,281	2,281					
	도로		2,281	2,281							2,281	2,281					
	조경 시설							1								1	
	그늘시설							1								1	
휴양 시설			80	80				1			80	80				1	
	가	일원 산63-33임	80	80					가	일원 산63-33임	80	80					
	장외자							1								1	
운동 시설			1,250	1,250							1,250	1,250					
	나	일원 산63-29	495	495					나	일원 산63-29	495	495					
	다	일원 산63-47	315	315					다	일원 산63-47	315	315					
체력단련장		일원 산63-29외 1필지	440	440					라	일원 산63-29외 1필지	440	440					
			1,171	1,171							1,171	1,171					
	마	일원 산63-47외 1필지	571	571					마	일원 산63-47외 1필지	571	571					
교양 시설	바	일원 산63-47외 1필지	600	600					바	일원 산63-47외 1필지	600	600					
	사	일원 산63-47외 9필지	(1,041)	(1,041)					사	일원 산63-47외 9필지	(1,041)	(1,041)					
			640	640	1동	52	52				640	640	1동	52	52		
편의 시설	마	일원 산63-47외 2필지	550	550					마	일원 산63-47외 2필지	550	550					
	바	일원 산63-29	20	20					바	일원 산63-29	20	20					
	1	일원 산63-47	70	70	1동	52	52		1	일원 산63-47	70	70	1동	52	52		
독지및 기타			88,478								88,478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변경	소로	합 계			1,129	2,281				
					1,129	2,281				
당초 변경		소 계			431	1,234				
					431	1,234				
당초	소로	3	1	3~9	84	193	진입로	일원 산63-47	일원 산63-47	
당초		3	2	3	347	1,041	연결로	일원 산63-47	일원 산52-10	
당초 변경		소 계			698	1,047				
					698	1,047				
당초	산책로		1	1.5	48	72	산책로	일원 산63-29	일원 산63-29	
당초			2	1.5	54	81	산책로	일원 236-2	일원 산63-29	
당초			3	1.5	108	162	산책로	일원 236-2	일원 산63-33	
당초			4	1.5	86	129	산책로	일원 산63-29	일원 산63-33	
당초			5	1.5	72	108	산책로	일원 산63-33	일원 산63-33	
당초			6	1.5	76	114	산책로	일원 산63-35	일원 산63-35	
당초			7	1.5	134	201	산책로	일원 산53	일원 산63-35	
당초			8	1.5	42	63	연결로	일원 산63-47	일원 산63-29	
당초			9	1.5	38	57	연결로	일원 산63-47	일원 산63-29	
당초			10	1.5	40	60	연결로	일원 산63-47	일원 산63-29	

< 시설외지구 >

1. 총괄표

구	분	변				경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반 시설	계	4,711,328	111,865				2					4,711,328	112,513				2	증	648㎡
	소 계	34,420	34,420									35,068	35,068					증	648㎡
	도 로	34,420	34,420									34,608	34,608					증	188㎡
	녹지연결로											460	460					증	460㎡
조 경 시 설							1										1		
휴 양 시 설		445	445				1					445	445				1		
교 양 시 설																			
운 동 시 설																			
편 의 시 설		77,000	77,000									77,000	77,000						
관 리 시 설																			
녹 지 및 기 타		4,599,463										4,598,815						감	648㎡
시 설 율 (법정 20%)		(111,865 / 4,711,328) × 100 = 2.37%						(112,513 / 4,711,328) × 100 = 2.39%											
건 폐 율 (법정 4%)		-						-											

2.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경				변 경				후 경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비담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비담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합 계			4,711,328	111,865				2				4,711,328	112,513			2	증648㎡
	소 계		34,420	34,420								35,068	35,068				증648㎡
	기반 도로 시설		34,420	34,420								34,608	34,608				증188㎡
조경 시설	녹지연결로											460	460				증460㎡
	소 계							1								1	
	그늘시령							1								1	
휴양 시설	소 계		445	445				1			445	445				1	
	휴게소 가	2개소	445	445					가	2개소	445	445					
	가-1	개포 산53-22	(290)	(290)					가-1	개포 산53-22	(290)	(290)					
	가-2	개포 산53-22	(155)	(155)					가-2	개포 산53-22	(155)	(155)					
장의자								1								1	
소 계			77,000	77,000							77,000	77,000					
약수터	나	5개소	77,000	77,000					나	5개소	77,000	77,000					
·	나-1	개포 산53-22	(15,000)	(15,000)					나-1	개포 산53-22	(15,000)	(15,000)					
·	나-2	개포 산53-1	(15,000)	(15,000)					나-2	개포 산53-1	(15,000)	(15,000)					
·	나-3	개포 산12-7	(17,000)	(17,000)					나-3	개포 산12-7	(17,000)	(17,000)					
·	나-4	개포 산63-35외 1필지	(15,000)	(15,000)					나-4	개포 산63-35외 1필지	(15,000)	(15,000)					
·	나-5	개포 산53-1	(15,000)	(15,000)					나-5	개포 산53-1	(15,000)	(15,000)					
소 계			4,599,463								4,598,815						증648㎡
녹지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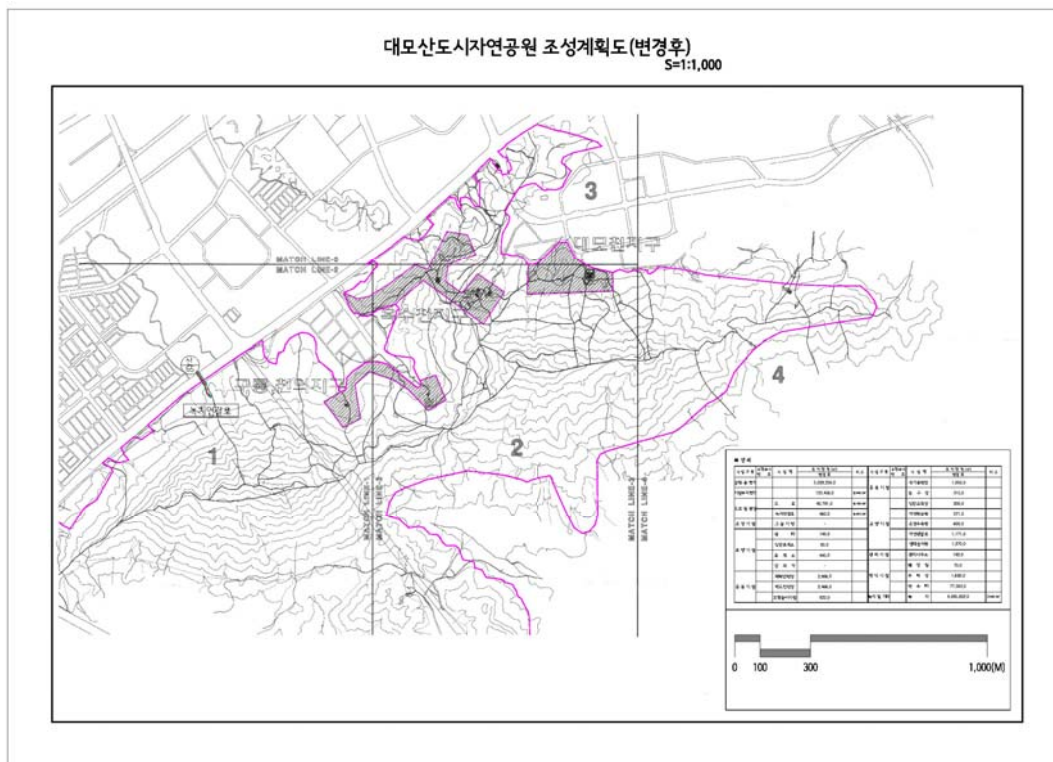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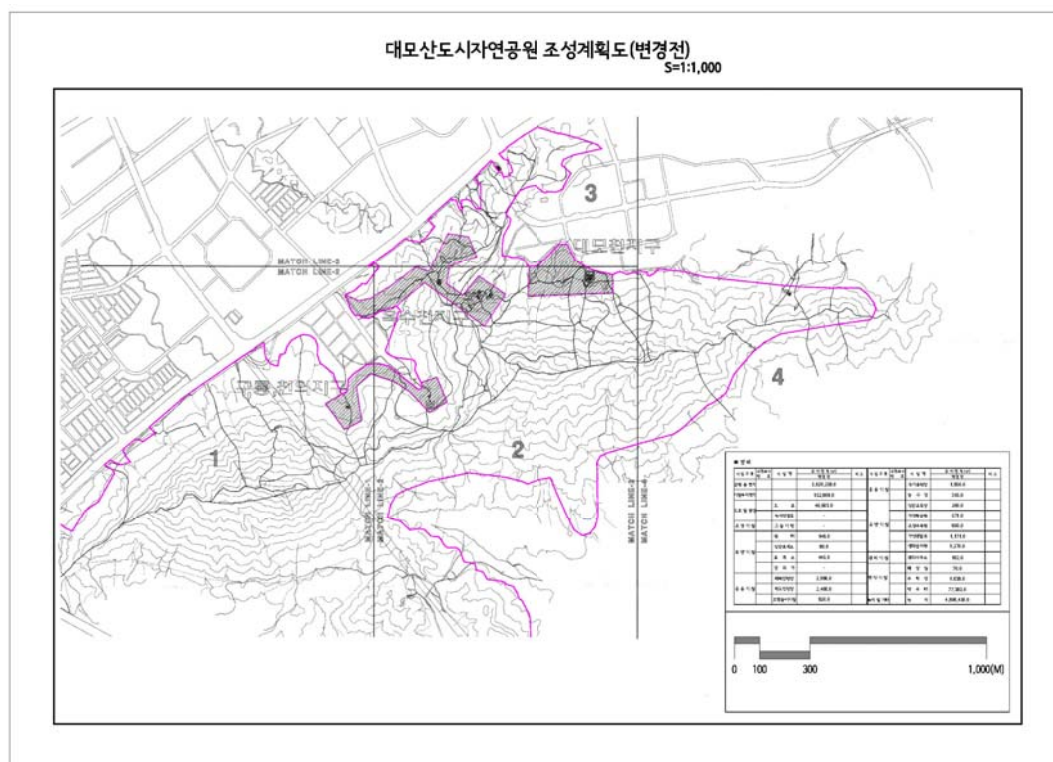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변경	소로	합 계			22,563	34,420				증188㎡
당초 변경		소 계			22,657	34,608				
당초		3	1	3	411	1,192				
당초		3	2	3	411	1,192				
당초		3	3	3~9	306	918	순환로	일원 산52-9	일원 422	
당초	산책로	소 계			53	159	순환로	일원 산52-1	일원 산52-1	
당초		소 계			52	115	진입로	개포 산176-7	개포 산176-6	
당초 변경		소 계			22,152	33,228				증188㎡
당초		소 계			22,246	33,416				
당초		소 계			410	615	산책로	개포 산51-5	개포 산21-1	
당초		소 계			4,210	6,315	산책로	개포 산21-1	일원 산46-43	
당초		소 계			24	36	산책로	개포 산11	개포 산11	
당초	산책로	소 계			40	60	산책로	개포 산11	개포 산11	
당초		소 계			310	465	산책로	개포 산11	개포 산11	
당초		소 계			632	948	산책로	개포 산180-11	개포 산25-1	
당초		소 계			810	1,215	산책로	개포 산176-6	개포 산53-22	
당초		소 계			234	351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소 계			260	390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소 계			808	1,212	산책로	개포 산157-2	개포 산53-22	
당초		소 계			302	453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5	
당초		소 계			124	186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소 계			44	66	산책로	개포 산53-25	개포 산53-25	
당초		소 계			258	387	산책로	개포 산53-25	개포 산53-2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신책로		15	1.5	538	807	산책로	개포 산53-25	개포 산53-25	
당초			16	1.5	424	636	산책로	개포 산53-25	개포 산53-22	
당초			17	1.5	474	711	산책로	개포 산53-25	개포 산53-1	
당초			18	1.5	110	165	산책로	개포 산53-28	개포 산53-22	
당초			19	1.5	128	192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20	1.5	32	48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21	1.5	16	24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22	1.5	1,008	1,512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23	1.5	670	1,005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24	1.5	116	174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2-1	
당초			25	1.5	556	834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1	
당초			26	1.5	138	207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27	1.5	92	138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28	1.5	186	279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29	1.5	26	39	산책로	개포 산53-22	개포 산53-22	
당초			30	1.5	106	159	산책로	개포 산52-1	일원 442	
당초			31	1.5	120	180	산책로	일원 433	일원 52-9	
당초			32	1.5	268	402	산책로	일원 산52-9	일원 산63-36	
당초			33	1.5	448	672	산책로	일원 산52-10	일원 산63-35	
당초			34	1.5	480	720	산책로	개포 144-1	개포 산148-3	
당초			35	1.5	210	315	산책로	개포 산69-2	개포 산67-1	
당초			36	1.5	162	243	산책로	개포 산67-1	개포 산55-1	
당초			37	15	628	942	산책로	일원 산26-3	개포 산49	
당초			38	1.5	172	258	산책로	일원 산46-4	일원 산46-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39	1.5	298	447	산책로	일원 산36-1	일원 산41	
당초			40	1.5	42	63	산책로	개포 산46-16	개포 산46-16	
당초			41	1.5	234	351	산책로	개포 산46-16	개포 산46-12	
당초			42	1.5	190	285	산책로	개포 97	개포 산49	
당초			43	1.5	128	192	산책로	개포 산48-1	개포 산50	
당초			44	1.5	450	675	산책로	개포 산48-1	개포 산50	
당초			45	1.5	108	162	산책로	개포 산50	개포 152-2	
당초			46	1.5	48	72	산책로	일원 463	일원 463-32	
당초			47	1.5	420	630	산책로	일원 441	일원 산63-35	
당초			48	1.5	42	63	산책로	일원 산63-35	일원 산63-39	
당초			49	1.5	268	402	산책로	일원 산63-39	일원 산63-39	
당초			50	1.5	522	783	산책로	일원 산63-39	일원 산63-39	
당초			51	1.5	438	657	산책로	일원 산63-31	세곡 산46-1	
당초			52	1.5	304	456	산책로	일원 산63-31	일원 산4-7	
당초			53	1.5	16	24	산책로	일원 산63-1	일원 산63-1	
당초			54	1.5	552	828	산책로	일원 산63-1	세곡 산46-43	
당초			55	1.5	300	450	산책로	세곡 산46-43	세곡 산46-43	
당초			56	1.5	980	1,470	산책로	세곡 산46-43	세곡 산35	
당초			57	1.5	272	408	산책로	일원 547-2	세곡 산46-43	
당초			58	1.5	206	309	산책로	일원 산3-20	개포 산39-1	
당초			59	1.5	38	57	산책로	일원 산3-20	일원 산3-20	
당초			60	1.5	58	87	산책로	세곡 산39-1	세곡 산39-1	
당초			61	15	126	189	산책로	일원 산3-20	세곡 산37	
당초			62	1.5	66	99	산책로	세곡 산34-1	세곡 산34-1	

구분	등급	루벨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63	1.5	196	294	진입로	개포 108	개포 산56-4	
당초	신책로		64	1.5	276	414	진입로	개포 산62-2	개포 113	
신설			65	2.0	94	188	신책로	개포 1277-1	개포 산20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8호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5호(2013.9.23.)로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0호(2015.12.31.) 개정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비용 보조 대상 확대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제1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되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제 1 장 총 칙**제 1 절 (목적)**

1-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4항, 제1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되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사용비용을 조례 제15조의4에 따라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검증기준을 마련하여 검증위원회 검증의 일관성 유지 및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고, 사용비용의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정의)

이 업무처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1 추진위원회 :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조합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창립총회 등의 준비업무를 하기 위한 구성체를 말한다.
- 1-2-2 조합 :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득한 구성체를 말한다.
- 1-2-3 해산추진위원회 :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해산 신청하여 승인이 취소되거나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내지 제2호,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직권 해제되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 1-2-4 해산조합 :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내지 제2호,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직권해제되어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으로서 조례 부칙 제3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에 의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하며 일몰기한이 경과한 구역,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이 공동(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지정개발자)으로 시행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 1-2-5 해산추진위원회 대표자 및 해산조합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권 해제에 의해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조합장을 대표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2-6 사용비용 : 조례 제15조의4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 1-2-7 보조금 : 사용비용 보조 범위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 법 제16조의2,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조례 제15조의4 제5항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 및 제6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 까지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 1-2-8 사전검토 : 구청장이 대표자로부터 신청된 증빙자료에 대하여 검증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세무·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를 통해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 1-2-9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대여해 주거나, 용역 업무를 제공한 자 등 사용비용에 대하여 해산추진위원회 또는 해산조합에게 채권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1-2-10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 : 조례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구청장이 구성·운영하는 구성체를 말하며,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자료의 적정성 검토, 보조금 결정(과다비용조정), 증빙자료 및 사용금액의 적정여부 등의 검증업무를 수행한다.
- 1-2-11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이하 “재검증위원회”라 한다) : 조례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부터 보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구청장이 구성·운영하는 구성체를 말하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재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절 (적용원칙)

- 1-3-1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에서 보조금 신청 시 법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수립기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3-2 보조금 신청을 하는 대표자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청장은 이 업무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 1-3-3 구청장은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의 보조금 신청이 업무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1-3-4 업무처리기준은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에게 보조금을 보조하고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조례 부칙(제6188호, 2016.3.24.) 제3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에 의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하며 일몰기한이 경과한 구역,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이 공동(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지정개발자) 시행하는 구역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2 장 사용비용 보조 및 신청대상

제 1 절 (사용비용 보조 대상 및 범위)

- 2-1-1 사용비용이란 조례 제15조의4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주민총회)의 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하며, 사용비용 보조 대상은 그 비용을 사용한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을 말한다. 사용비용 보조 범위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조례 제15조의4 제5항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 및 제6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 까지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 2-1-2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의 업무 항목별 사용비용 보조 내역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업무항목의 기타운영비, 기타사업비의 경우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① 운영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회의비, 기타운영비로 구분한다.
 - ② 사업비는 조사측량비, 설계감리비, 공사비, 각종보상비, 외주용역비, 각종부담금,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타사업비, 총회비로 구분한다.
 - ③ 외주용역비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계획, 건축설계, 세무·회계, 소송 및 법무, 안전진단비, 경영향평가비, 기타외주용역비로 구분한다.
 - ④ 기타외주용역비는 [별첨2]의 표로 구분한다.
- 2-1-3 직권해제에 의해 인가 취소된 해산조합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인계받은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에 근거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자료 및 증빙서류를 검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1-4 직권해제에 의해 인가 취소된 해산조합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 ①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용비용’에 관하여 안전으로 의결 받았으나, 사용비용 보조 신청 시 증빙자료 미 제출한 경우
: 신청금액의 10%범위 이내에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지급
 - ②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용비용’에 관하여 안전으로 의결 받았거나, 안전으로 상정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용비용 보조 신청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 검증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지급
 - ③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용비용’에 관하여 안전으로 상정하지 못하여 의결 받지 못하고 사용비용 보조 신청 시 증빙자료도 미제출한 경우
: 사용비용 보조 불가
- 2-1-5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의 총회(주민총회)에서 예산 의결 시 예산안의 단서조항으로 총회 미개최에 따른 준예산 적용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예산의 인정범위는 당해 회계년도부터 다음 회계연도까지 2년 이내로 한정하여 인정한다.

제 2 절 (대표자 선정)

- 2-2-1 해산추진위원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 해산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

청자는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원칙으로 하되, 추진위원장의 궐위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각 호의 순으로 선정된 자를 말하며, 보조금 신청, 사용계획서 작성, 결정금액 이의신청, 지급계획서 작성, 보조금 지급이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운영규정이 정한 직무대행자

나. 해산 추진위원회의에서 보조금신청 관련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자

2-2-2 해산조합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 해산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자는 직권 해제에 의해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조합장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장의 궐위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각 호의 순으로 선정된 자를 말하며, 보조금 신청, 사용계획서 작성, 결정금액 이의신청, 지급계획서 작성, 보조금 지급이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조합정관이 정한 직무대행자

나. 해산 대의원회의에서 보조금신청 관련 의결을 거쳐 대의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다. 조합의 조합장 또는 대의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자

2-2-3 해산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해산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경우의 대표자 선정은 2-2-4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단,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을 대표자로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의(대의원회의) 소집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의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4 대표자 선정 등을 위한 추진위원회의(대의원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사용비용 보조절차 및 보조금 결정

제 1 절 (사용비용 신청)

3-1-1 조례 제15조의4 제5항에 따라 해산추진위원회의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조례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가이드 별지 제1호서식]와 증빙자료 목록 및 증빙자료[별지 제3호서식]

②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현황과 증빙자료[별지 제4호서식]

③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④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⑤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원본과 원본을 스캔한 파일, 사용비용 업무 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한 파일(한글, 엑셀 등)을 CD 또는 USB로 저장하여 제출

3-1-2 조례 제15조의4 제6항에 따라 해산조합의 보조금 신청은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대표

자가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조례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조합 사용비용 업무 항목별 세부내역서[가이드 별지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 목록 및 증빙자료[별지 제3호서식]
- ②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현황과 증빙자료[별지 제4호서식]
- ③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④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⑤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원본과 원본을 스캔한 파일, 사용비용 업무 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한 파일(한글, 엑셀 등)을 CD또는 USB로 저장하여 제출

3-1-3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검증위원회 검증이전에 관련분야 전문가(세무·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를 통해 사전검토할 수 있다.

3-1-4 구청장은 증빙자료의 오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대표자에게 보완 요청 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및 보완 요청에 따른 절차는 보조금 신청서 처리기한 내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으며, 처리기한은 추진주체 및 자치구 상황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3-1-5 증빙자료의 사전검토를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는 자치구별로 구청장이 지명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를 한 관련 전문가는 검증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1-6 구청장은 필요시 각호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전검토 수행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

: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

② 사전검토 세부 수행 업무

- 비용지출 확인 업무 : 세무기장 및 영수증 확인, 지출계정과목 분류 확인 및 검토

- 정비사업 단계별 적법 여부 및 총괄 검토 업무 : 정비사업 전 단계 검토

③ 사전검토 비용

세무분야 검토		정비분야 검토		비고
증빙자료 분량 (영수증 등)	검토비용 (만원)	사업기간 (추진위 승인~해산)	검토비용 (만원)	
2,000건 미만	300	5년 미만	700	VAT 별도
2,000건 미만 ~ 4,000건 미만	500	5년 이상 ~7년 미만	1,000	
4,000건 이상	700	7년 이상	1,300	

※ 예시) 영수증 총 3,200건 : 500만원, 사업기간 8년 : 1,300만원 → 사전검토 비용 총 1,800만원

제 2 절 (신청내용의 공고 및 통보)

- 3-2-1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의4 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 (조례 제15조의4 제5항제3호 및 제6항제3호의 의결 및 의사록, 증빙자료는 제외한다)을 클린업시스템 및 구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3-2-2 구청장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직권해제에 의해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통보시 보조금 신청인, 신청금액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3 절 (사용비용 보조기준)

- 3-3-1 보조금은 조례 제15조의5 제3항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임금 통계(이하 “고용노동통계”이라 한다)를 기준하여 작성한 ‘사용비용 보조 인건비 기준값’을 적용하고 최종 확정금액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 ② 외주용역비 중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계획, 건축설계는 본 업무처리기준 고시 시점에서 정한 금액(외주용역비 평균값)을 기준하여 계약서에 따른 실질적 업무진행 여부 및 그에 따른 성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첨부될 경우 인정한다.
- ③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하여 선정한 기타 외주용역업체는 ‘별첨2’에 제시한 용역을 기준하여 인정한다.
- ④ ‘별첨2’ [기타 외주용역 발주표 및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외주용역업체의 선정, 용역비의 적정성의 여부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에 따라 결정한다
- ④ 각 기타외주 용역별 업무 인정기준은 총회 의결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용역을 우선 인정한다.
- ⑤ 업무의 검증 기준과 지급비율은 건축설계 세부검증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에 명기한 내용과 실수행업무에 따른 증빙자료가 첨부되었을 시 인정한다.
- ⑥ 사업 장기화 등으로 해당용역의 외주용역업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최초 용역업체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업체당 업무 인정비율은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기준하여 전 용역업체의 기 수행업무를 제외한 부분부터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3-3-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출내역서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 3-3-3 조례 제15조의4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검증된 내역에 따라 항목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 동의 등 별도의 합의 절차를 거쳤다면 지급신청내역이 변경될 수 있다.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70% 이내
- ② 조례 제4조의3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70%

이내

③ 조례 제4조의3제3항제6호에 해당되어 법 제4조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검증된 금액 범위 내

제 4 절 (사용비용의 결정)

- 3-4-1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의4 제7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가이드 별지 제6호서식]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4-2 구청장은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과 이해관계자에게 검증내역에 따라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금액, 결정금액(항목별 내역포함), 보조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용비용 지급

제 1 절 (사용비용의 지급)

- 4-1-1 대표자는 조례 제15조의4 제8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제3호 내지 제6항제3호의 통장사본과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 지급계획서[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1-2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의4 제9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클린업시스템 및 구보에 공고하며 공고 시 인적사항 등을 제외한 지급대상자, 지급예정일자, 지급방법, 사용비용 지급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사용비용지급 이해관계자 현황 등을 명기하며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 4-1-3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미납부 된 세금부과가 가능하도록 국세청 및 세무서에 사용비용 지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4-1-4 구청장이 영 제27조의3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사전검토 비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2 절 (사용비용 결과보고)

- 4-2-1 대표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후 지급계획서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은 검증내역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항목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에 대한 증빙을 위해 보조금 지급은 이해관계자의 통장계좌로 이체하도록 한다. 다만, 대표자가 검증내역별 항목집행이 어려울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동의사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4-2-2 대표자는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 지급완료 후, 구청장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이행이 되지 않거나 결과보고가 없을 시 구청장은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 4-2-3 구청장은 대표자가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 절 부정신청에 따른 조치

- 4-3-1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관계자를 처벌 조치할 수 있다.

제 5 장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1 절 (검증위원회 구성)

- 5-1-1 조례 제15조의5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5-1-2 조례 제15조의5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동일분야 종사자 2명 이내로 제한)으로 한다.
- ①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 ②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타 기관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다만, 공무원의 직급 규정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 5-1-3 검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검증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한다.

제 2 절 (위원장의 직무)

- 5-2-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5-2-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절 (위원장의 권한)

- 5-3-1 조례 제15의5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 ②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 ③ 업무처리기준의 해석·적용에 있어 불명확·모호·모순된 점 등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

시에 유권해석 요청

제 4 절 (검증위원회의 운영)

5-4-1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사용비용 보조신청이 접수되어 심의가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4-2 검증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각 호의 검증을 위해 최소 1회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①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의 검증
- ② 보조금 신청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설명
- ③ 보조금 결정금액 및 보조비율

5-4-3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절 (검증위원회의 기능)

5-5-1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의결한다.

- ①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자료의 적정성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 ② 증빙자료 및 사용금액의 적정여부 등 검증(필요시 과다 비용 조정)
- ③ 보조금 결정
- ④ 기타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증 후 결정
 - 예) - 영수증 및 업체선정과정, 업무수행인정여부 및 비율 결정
 - 사업비, 운영비 지출의 합법적 절차수행여부 판단 및 결정
 - 사업비 지출에 관한 항목별 검증 결정

제 6 절 (위원의 수당)

5-6-1 조례 제15조의5 제5항에 따라 검증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검증 내용의 민감성, 방대한 검토자료 등으로 인해 서면검증이 필요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1 절 (재검증위원회 구성)

6-1-1 구청장은 대표자로부터 조례 제15조의4제8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재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6-1-2 조례 제15조의6 제2항에 따라 재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공무원은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동일분야 종사자 2명 이내로 제한)으로 한다.

- ①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 ②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타기관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다만, 공무원의 직급 규정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6-1-3 재검증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2회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6-1-4 조례 제15조의6 제3항에 따라 그 밖에 재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검증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13. 9.23. >

이 기준은 조례 개정(2012.12.31.)이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6.11. >

- ① 이 기준은 조례 개정(2016.3.24.)이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 ③ 조례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조례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 법 제4조의3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제한 정비구역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⑤ 조례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해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5조의4제5항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 및 제6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을 각각 이 조례 시행일로 본다.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명칭)				취소일자
취소사유 및 근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추진위원 중 대표 선정자)	주소	(전화:)		
	신청금액	(백만원)		

1. 추진위원회 일반 현황

구역 위치			
구역 면적		m ²	구역 지정일자
추진위원회 승인일자		토지등소유자 수	
해산신청 (법 제16조의2에 따른 해산신청의 경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	
	해산동의율	%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 사용비용 신청내역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4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한은 구역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인가 취소 조합(명칭)			취소일자	
취소사유 및 근거				
신청인 (조합 중 대표 선정자)	성 명	김 추 진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신청금액	(백만원)		

1. 조합 일반 현황

구역 위치			
구역 면적	m²	구역 지정일자	
조합설립 인가일자		조합원 수	

2. 사용비용 신청내역

[illegible]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4제6항에 따라 조합 사용비용 보
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한은 구역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2쪽 중 1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용금액	비고	신청안내
운 영 비	인 건 비	급 여	추진위원 장			추진위원장 급여(상여금 포함)
			상근위원			추진위원회 임원 급여(상여금 포함)
			직 원			사무실 경리직원 등 급여(상여금 포함)
		퇴직금 및 예치금				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기타인건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소 계				
	일 반 운 영 비	자산취득비				집기비품 등 유형자산 취득비
		임차료				사무실 임대(임차)료
		도서인쇄비				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실 각종 사무용품구입비
		소모품비				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 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수 선 비				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광고선전비				업체선정광고, 분양광고 등
		소 계				
	제 세 공 과 금	통 신 비				소식지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
		여비교통비				재건축 유관기관 방문 교통비, 주유비, 주차비등
		보 험 료				조합부담 4대 보험료 등
		수도광열비				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 등
		지급수수료				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
		소 계				

(2쪽중 2쪽)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용금액	비고	신청안내
운 영 비	업무추진비				위원장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상근직 식대 등
	회 의 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회의비용
		감사비			내부감사 수당
		기타 회의비			협상 등 기타회의 다과 등
		소 계			
	기 타 운 영 비				
		소 계			
사 업 비	외 주 용 역 비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용역비
		건축설계			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세무·회계			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소송 및 법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 신탁등기비용
		안전진단비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비용
		기타외주용역비			상기 이외의 용역비
		소 계			
	기 타 사 업 비	민원처리비			정비사업 진행시 각종민원에 소요된 사업비
		총회비			주민총회 소요비용
		기타사업비			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사용비용 보조 신청서류 작성비 포함)
		소 계			
	합 계				

※ 업무추진비, 판공비, 기밀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하며 유사한 사용용도의 예산과목을 추가편성할 수 없으며,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월별자금입출금내역 및 연간자금운영계획 서식의 과목과 일치하여야 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추진위원회>

(5쪽 중 1쪽)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용금액	비고	신청안내
운 영 비	인 건 비	급 여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 급여 (상여금 포함)
			상근위원				추진위원회 임원 급여 (상여금 포함)
			직 원				사무실 경리직원 등 급여 (상여금 포함)
		퇴직금 및 예치금					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기타인건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소 계					
	일 반 운 영 비	자산취득비					집기비품 등 유형자산 취득비
		임차료					사무실 임대(임차)료
		도서인쇄비					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실 각종 사무용품구입비
		소모품비					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 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수 선 비					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광고선전비					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소 계					
	제 세 공 과 금	통 신 비					소식지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
		여비교통비					채건축 유관기관 방문 교통비, 주유비, 주차비등
		보 험 료					조합부담 4대 보험료 등
		수도광열비					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 등
		지급수수료					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
		소 계					

(5쪽 중 2쪽)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 용금액	비고	신청안내
운 영 비	업무추진비					위원장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상근직 식대 등
	회 의 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회의비용
		감사비				내부감사 수당
		기타 회의비				협상 등 기타회의 다과 등
		소 계				
	기 타 운 영 비					
		소 계				
사 업 비	외 주 용 역 비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용역비
		건축설계				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세무·회계				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소송 및 법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법무사 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 신탁 등기비용
		안전진단비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기타외주용역비				상기 이외의 용역비
		소 계				
	기 타 사 업 비	민원처리비				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사업비
		총회비				주민총회 소요비용
		기타사업비				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사용비용 보조 신청서류 작성비 포함)
		소 계				
합 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합>

(5쪽 중 3쪽)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용 금액	비고	신청안내
운 영 비	인 건 비	급여	조합장				조합장 급여 (상여금 포함)
			상근임원				상근임원 급여 (상여금 포함)
			직 원				정리직원 등 급여 (상여금 포함)
		퇴직금 및 예치금					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기타인건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소 계					
	일 반 운 영 비	자산취득비					집기비품 등 유형자산 취득비
		임차료					사무실 임대(임차)료
		도서인쇄비					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실 각종 사무용품구입비
		소모품비					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 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수 선 비					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광고선전비					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소 계					
	제 세 공 과 금	통 신 비					소식지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통신비
		여비교통비					재건축 유관기관 방문 교통비, 주유비, 주차비등
		보 험 료					조합부담 4대 보험료 등
		수도광열비					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 등
		지급수수료					각종 자문비, 송금수수료, 공부발급수수료, 운반비 등
		소 계					
	업무추진비						임직원 업무추진비(관공비 등)
	복리후생비						상근직 식대 등
	회 의 비		이사회비				이사회 회의 시 다과, 수당 등
			대의원회비				대의원회 회의 시 다과, 수당 등
			감사비				내부감사 수당
			기타 회의비				협상 등 기타회의 다과 등
		소 계					
	기 타 운 영 비						상기 이외의 운영비
		소 계					
운영비 계							

<조합>					
(5쪽 중 4쪽)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용	비고	신청안내
사업비	조사측량비	측량비			지적 측량등 각종 측량비
		문화재지표조사비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지질조사비			지질조사용역비
		소계			
	설계감리비	건축설계비			건축설계비(조경설계 등 각종 설계비포함금액)
		감리비			건축감리, 소방감리, 전기감리 등 감리비
	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시공자 공사비 지급액
		건축물철거비			종전건물, 석면 등 각종 철거비 ('10. 4. 15이전 조합설립인가분 해당)
		추가공사비			기타 추가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사업시행인가시 도로, 공원, 학교 등 인허가 요건상 공공시설 공사비
		이설비			지장전주, 통신케이블, 가스관, 수도관 등 이설공사비
		미술장식품공사비			
		인입공사비			가스, 수도, 지장전주 등 각종 인입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부대시설공사비			
		단지외부공사비			
		기타공사비			
		소계			
사업비	각종보상비	국공·사용지 매입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진입로 등 개인토지 구입비
		손실보상비			형의 매수·매도청구·수용 손실보
		영업손실보상			임차상인 영업 손실보상비
		기타손실보상			
	이주비	조합원 청산환급금			종전재산이 분양금을 초과하여 반환되는 조합원 청산금
		주거이전비			세입자 등 주거이전비 등
		이주비이자			이주비 대여금 이자비용
		기타이주보상비			
	외주용역비	소계			
		감정평가수수료			관리처분시 종전 종후 감정평가비, 국공유지 감정평가비 등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비
		정비계획			도시설계를 위해 도시계획업체에 지급한 용역비
		세무·회계			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소송 및 법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신탁등기비용
		안전진단비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비

(5쪽 중 5쪽)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용 금액	비고	신청안내
사 업 비	외 주 용 역 비	교통영향평가			법정 부담비용
		환경영향평가			법정 부담비용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법정 부담비용
		기타외주용역비			상기 이외의 기타 용역비
		소 계			
	각 종 부 담 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법정 부담비용
		학교용지부담금			법정 부담비용
		상수도공사비			법정 부담비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법정 부담비용
		개발부담금			법정 부담비용
		교통유발부담금			법정 부담비용
		도시가스시설분담금			법정 부담비용
		기타부담금			기타 부담비용
		소 계			
	제 세 · 공 과 금	보전등기비			준공 후 이전고시시점 보존등기 비용
		재산세			조합이 취득한 재산(부동산 등) 에 부과되는 세금
		채권매입비			보존등기 시 채권매입 비용
		법인세			조합이 부담하는 법인세
		주민세			조합이 부담하는 주민세
		부가가치세			일반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액
		소 계			
	금 융 비 용	정비업체차입금이자			정비업체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설계자차입금이자			설계자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시공자차입금이자			시공자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금융기관차입금이자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서울시차입금이자			서울시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기타차입금이자			기타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소 계			
	기 타 사 업 비	분양보증수수료			
		민원처리비			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 요된 사업비
		기타사업비			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로 소요액 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사용비용 보조 신청서류 작성비 포함)
		소 계			
	총회비				조합의 각종 총회비 소요액
	사업비 계				
	총 계(사업비+운영비)				

※ 조례 제 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월별자금입출금내역 및 연간자금운영계획 서식의 과목과 일치하여야 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증빙자료 목록

[연번] 표준항목 기재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연번	시행일자	적요	금액(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계				
※ 연번에 따라 사용비용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증빙자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과 증빙자료					
연번	성명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금액(원)	채무사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 이해관계자의 채무사유 증빙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증빙자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					취소일자		
연번	표준항목	사용예정대상자	사용금액(원)	사용방법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서울특별시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1 및 3-1-2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결정금액 이의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			보조금 결정일자				
이의신청인 (대표 선정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신청금액						
	결정금액						
	보조금액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요지 작성					
이의신청의 이유		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가능)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결정금액 통보내역							
업무명	신청금액(원)	결정금액(원)	보조금액(원)	업무명	신청금액(원)	결정금액(원)	보조금액(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제8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구청장 귀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신청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			보조금 결정일자	
지급신청인 (대표 선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결정금액			
	보조금액			
	지급신청금액			
	지급계좌번호			

지급신청내역

[illegible]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제9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뒤 쪽)

통 장 사 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					취소일자		
연번	표준항목	지급대상자	지급예정일자	지급계좌번호	지급금액(원)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서울특별시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4-1-1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			보조금 결정일자	
신청인 (대표 선정자)	성 명			
	주 소			
	결정금액			
	보조금액			
상기 본인은 귀 구에서 보조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구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비용을 신청하지 않겠음. 2.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급완료 후 구청장에게 결과보고 하겠음. 3. 구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검증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음. 4. 구청장이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구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음. 「서울특별시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4-1-1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구청장 귀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호(2009.01.08), 서울특별시고시 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06.2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관악구 신림동 일원	529,517.20	-	529,517.20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림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 18,982인/6,458호(기정) → 18,987인/6,460호(변경)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6,458	증)2	6,460	18,982	증)5	18,987	※세대(호)당 인구수 :2.7인/세대 (2020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 세대당 인구 적용)
촉진 구역	소 계	4,811	증)2	4,813	12,991	증)5	12,996	
	40㎡이하	337	-	337	910	-	910	
	40~50㎡	332	-	332	897	-	897	
	50~60㎡	944	증)1	945	2,549	증)2	2,551	
	60~85㎡	2,476	증)1	2,477	6,685	증)3	6,688	
85㎡초과		722	-	722	1,950	-	1,950	
존치지역		1,647	-	1,647	5,991	-	5,991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없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기타 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신림1,2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사항 없음
 나.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기정	신림3 재정비 촉진 구역	35,140	3-1	22,293	관악구 신림동 316-62번지 일대	52,573.96	공동주택	22.36%	235.83	15/17
	3-2		1,300	관악구 신림동 산69-16번지 일대	2,600.00	사회복지 시설	60% 이하	200% 이하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단, 종전 주택규모가 115㎡ 초과시 165㎡ 범위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30% 이상 ● 건립예정세대수 : 569세대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림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기타 사항	기준용적률 20%상향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조정계획 (행정부시장 방침 제96호, 2010.3.9) - 기준용적률 상향 170% → 180%							
		상한용적률	● 기정 : 220%이하, 변경 : 236%이하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 소형주택 건설규모 = (변경용적률 - 기정용적률) = (235.83%-219.98%) = 15.85%								
확보방법		● 기준용적률 10%상향 조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변경	신림3 재정비 촉진 구역	35,140	3-1	22,293	관악구 신림동 316-62번지 일대	52,589.8738	공동주택	23.29%	235.90	15/17
	3-2		1,300	관악구 신림동 산69-16번지 일대	2,600.00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200% 이하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단, 종전 주택규모가 115㎡ 초과시 165㎡ 범위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30% 이상 ● 건립예정세대수 : 571세대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림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기타 사항	기준용적률 20%상향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조정계획 (행정부시장 방침 제96호, 2010.3.9) - 기준용적률 상향 170% → 180%							
		상한용적률	● 기정 : 220%이하, 변경 : 236%이하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 소형주택 건설규모 = (변경용적률 - 기정용적률) = (235.90%-219.98%) = 15.92%								
확보방법		● 기준용적률 10%상향 조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계획								

※ 변경사유 : 신림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한 촉진계획(경미한) 변경에
따른 건축시설계획 변경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다. 신림4재정비촉진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

○ 변경사항 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
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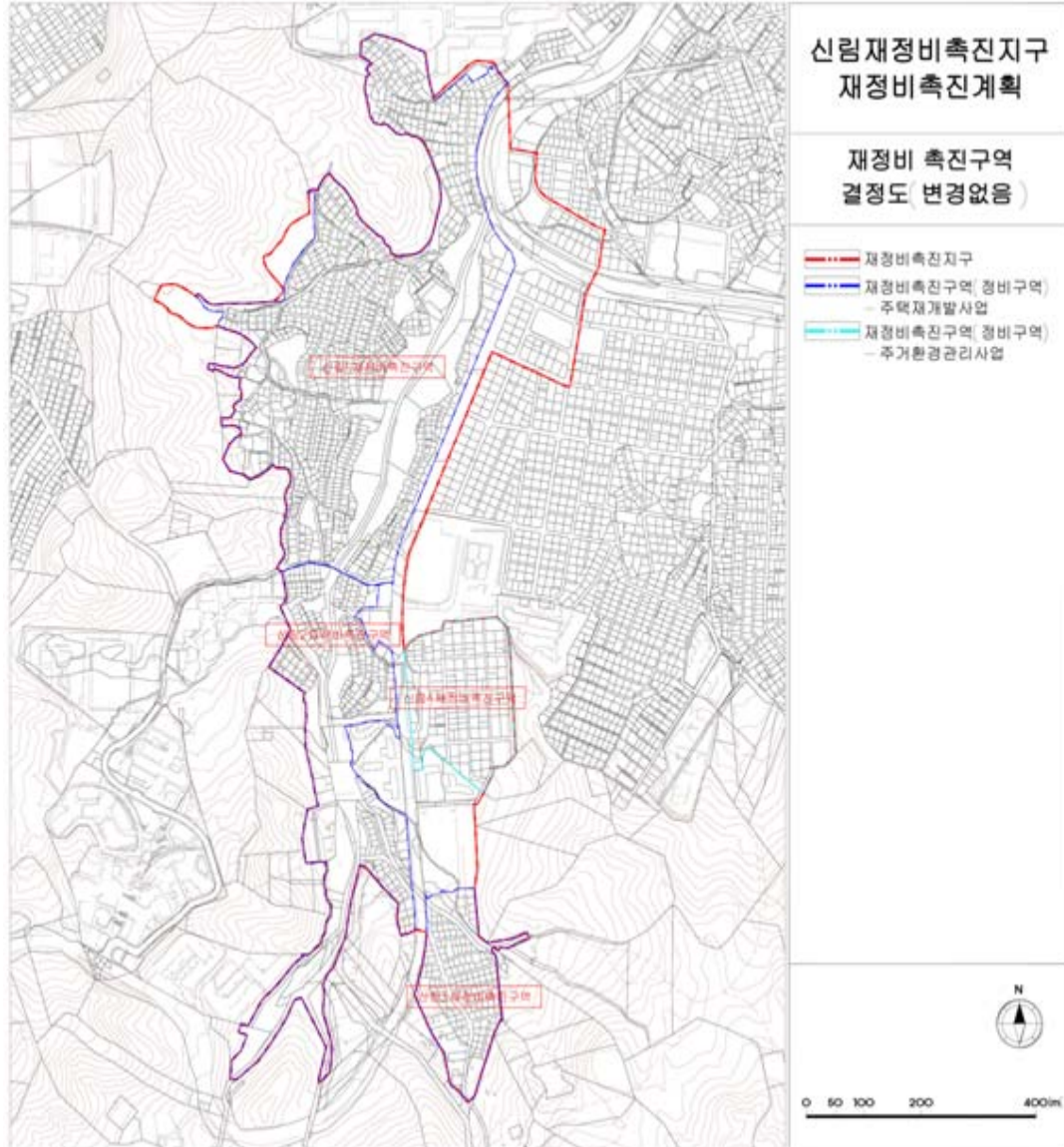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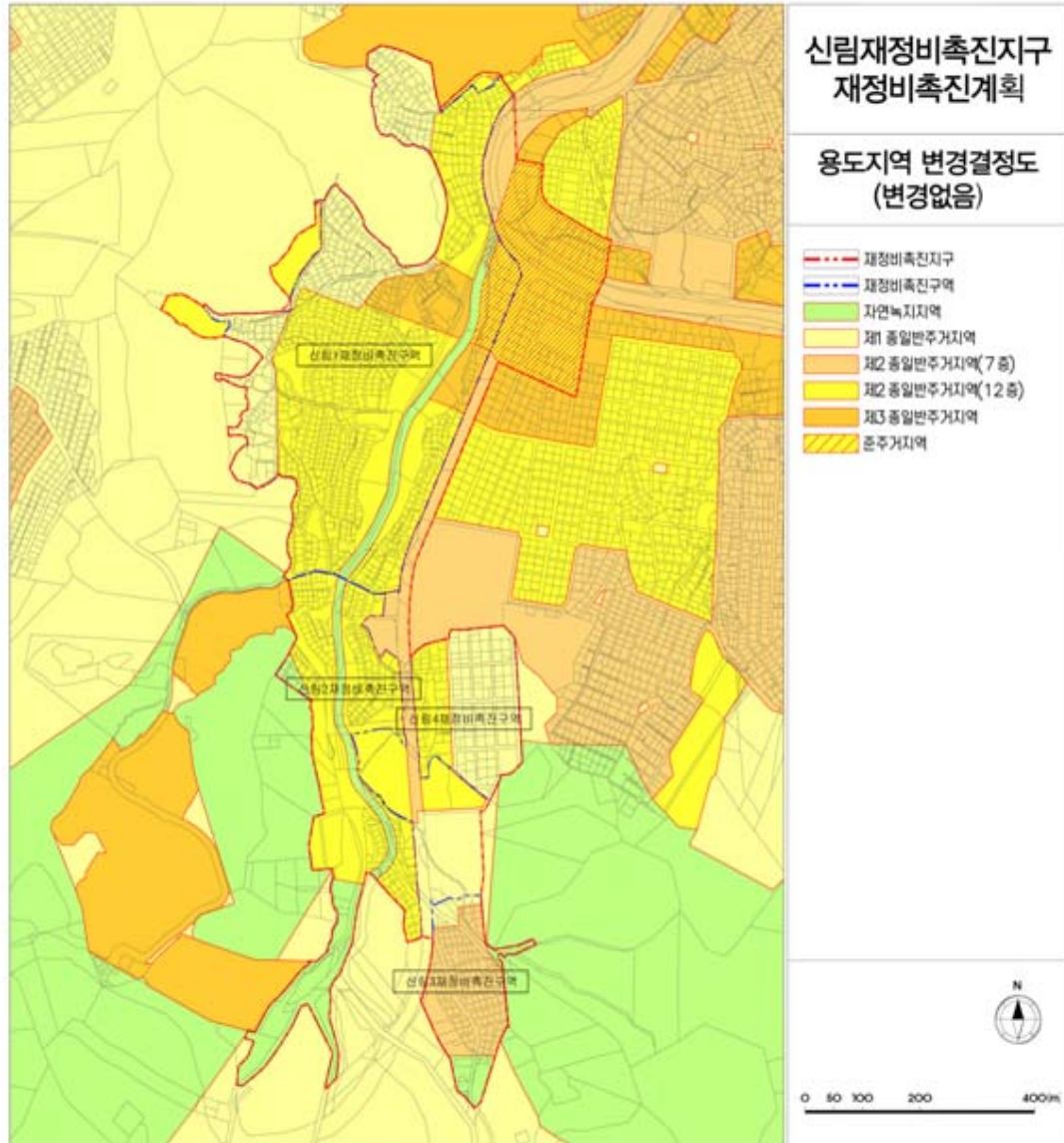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2) 및 관악
구 도시계획과(☎ 02-879-638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형도면]

-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결정도(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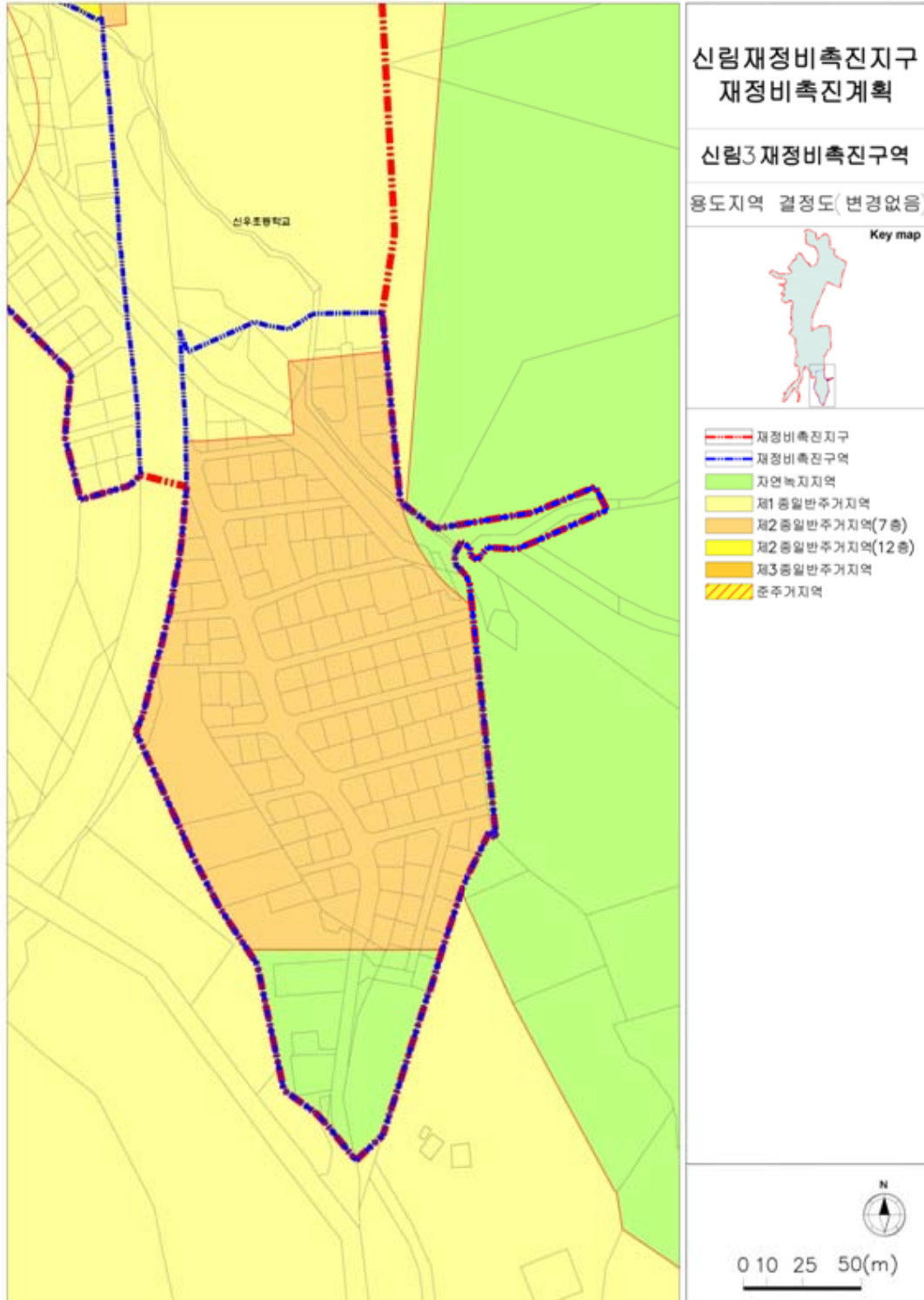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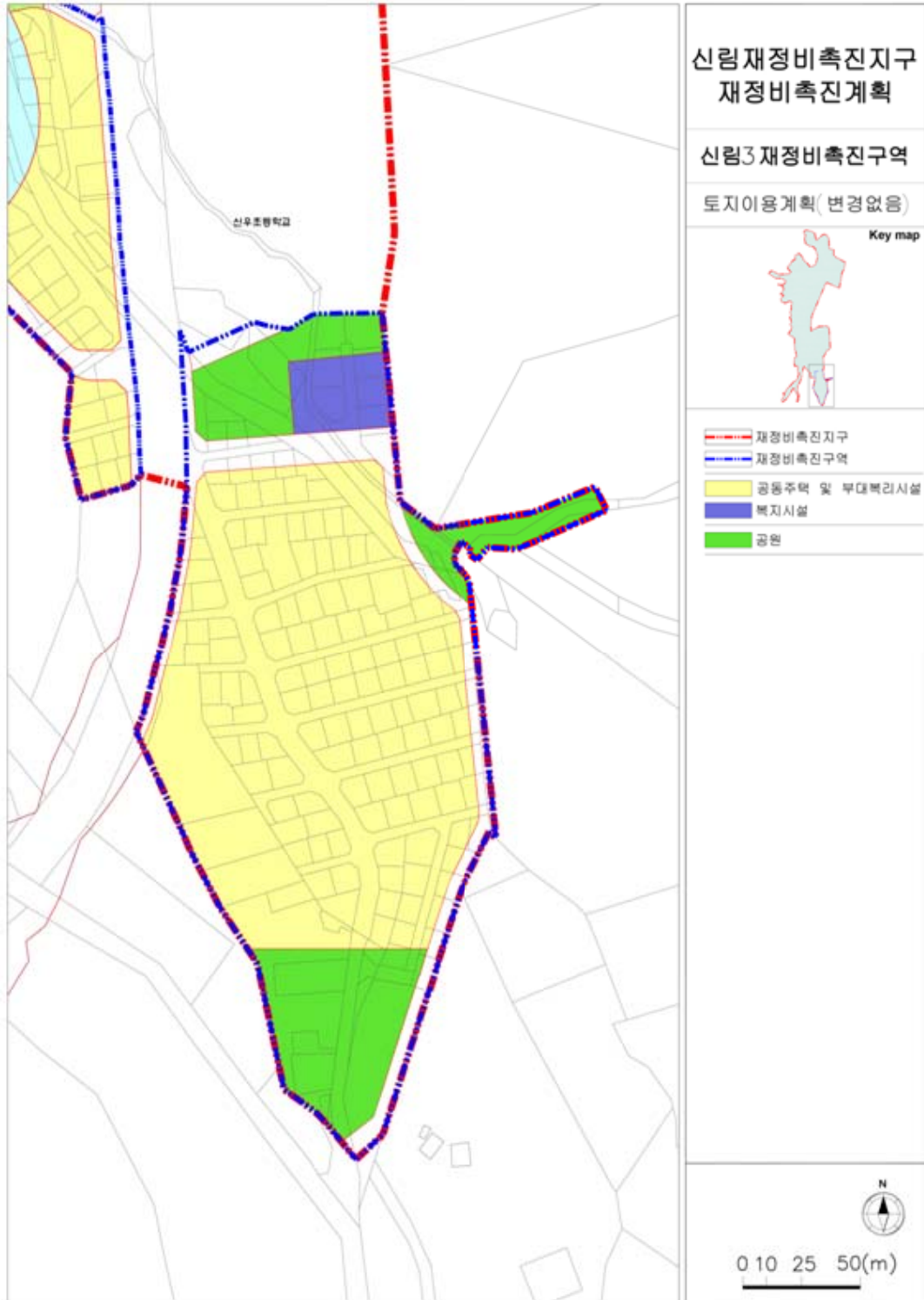
- 신림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 정비구역결정(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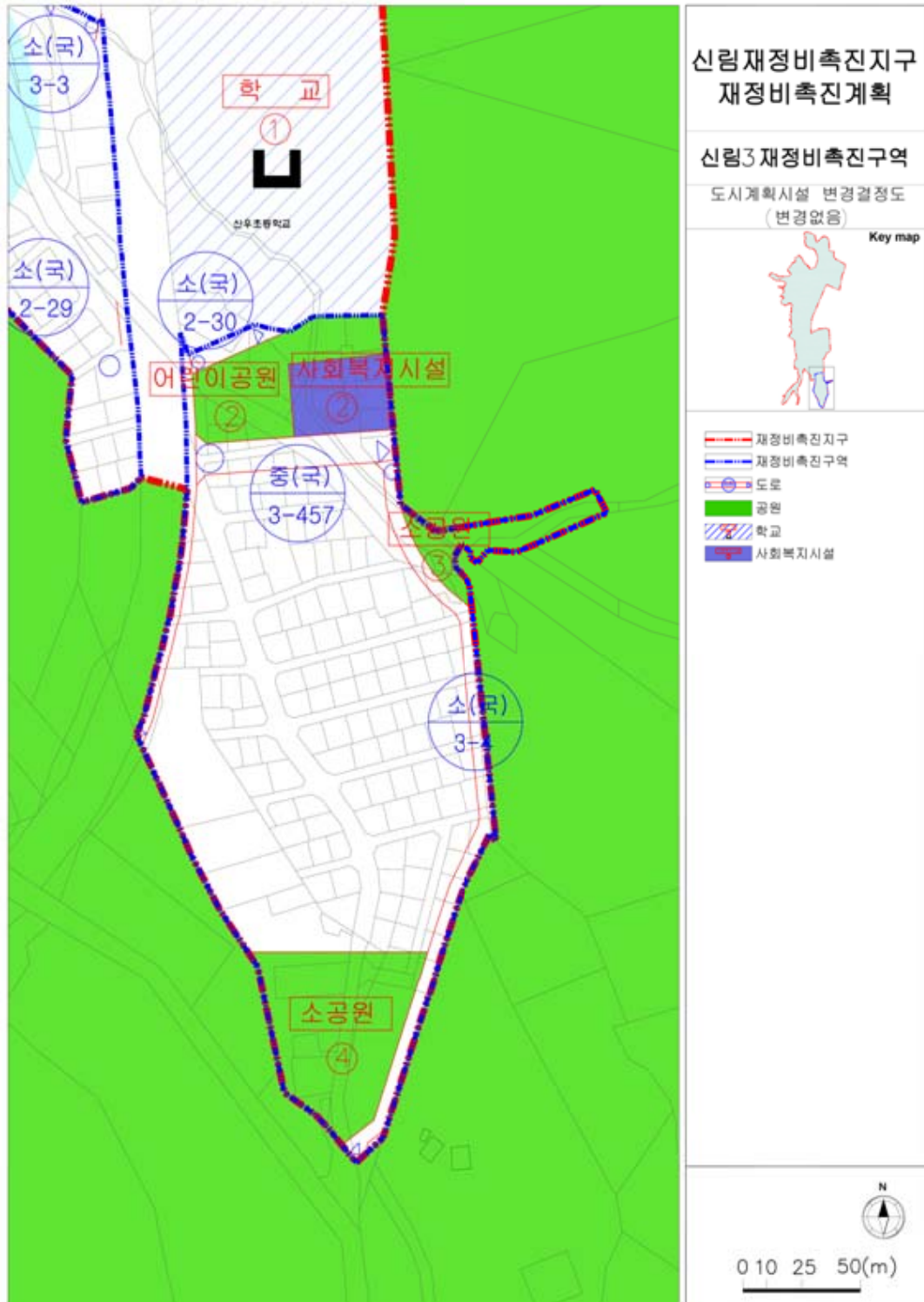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60호

이문·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회기외 2개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2.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2016-148호(2016.5.26.), 제2016-233호(2016.08.04), 제2016-269호(2016.09.01), 제2016-285호(2016.09.08)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문·환경재정비촉진계획(회기외 2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칭	유형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이문·환경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이문·환경동 일원	966,570.5	감)26,871.5	939,699.0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사유
변경	동대문구 이문동 256-371번지 일대	- 구역제척 - 면적 966,570.5㎡ → 939,699.0㎡ (감 26,871.5㎡)	- 촉진지구 결정 당시 특별계획구역2개소를 지정하여 구역내 편입되었으나, 이후 개발답보로 인한 건축물 노후 및 신축 불가 등 주민 생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 당초 계획의 실현성 재검토 및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비 촉진지구 제척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환원)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0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기본방향 (변경없음)

- 2) 개발방향 (변경없음)
3) 주요 지표 설정 : 변경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인구 및 가구	인구	기정	38,162인	기정	44,284인	• 촉진지구 축소에 따른 인구 축소
		변경	38,073인	변경	43,387인	
	세대수	기정	17,435세대 (2.19인/세대)	기정	19,187세대 (2.30인/세대)	• 촉진지구 축소에 따른 세대수 축소 • 존치지역 및 미취사세대 수용임대주택 계획 포함 • 세대수 현황 – 1인 세대 : 46.2% – 2인 세대 : 17.3%
		변경	17,385세대 (2.19인/세대)	변경	18,797세대 (2.30인/세대)	
	주택호수	기정	8,110호	기정	19,614호	• 촉진지구 축소에 따른 주택호수 축소
		변경	7,885호	변경	19,068호	
기반시설	도로	기정	15.4%	기정	15.2%	•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 촉진지구 축소에 따른 현황 도로비율 축소
		변경	15.8%	변경	15.6%	
	공원녹지	0.3% (세대당 0.2㎡)		기정	7.6% (세대당3.9㎡)	• 중앙공원(1개소), 어린이공원(6개소), 소공원(4개소), 연결녹지, 철도변완충녹지
				변경	8.0% (세대당4.0㎡)	
교육시설	초등학교	1개소		2개소		• 기존 1개소 : 이문초등학교 • 신설 1개소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공공편의 시설	공공청사	4개소		3개소		• 이문1동, 휘경1동 동사무소 존치 • 건강증진센터 이전 설치 (이문3-1구역)
	복합커뮤니티센터	—		5개소		• 생활권단위별 노인복지, 유아보육, 주민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설치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966,570.5	감)26,871.5	939,699.0	100.0%	
주거 용지	소 계	547,646.3	감)17,171.0	530,475.3	56.5%	
	공동주택 ¹⁾	517,562.8	감)5,669.0	511,893.8	54.5%	중앙·삼익·금호(사업완료) 포함
	주상복합 ²⁾	23,123.5	감)11,502.0	11,621.5	1.3%	KCC 웰츠타워 등
	종교시설	6,960.0	—	6,960.0	0.7%	7개소
근생 용지	소계	104,838.0	증)895.0	105,733.0	11.2%	
	상업업무 ³⁾	104,838.0	증)895.0	105,733.0	11.2%	신이문·이문·회기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14,086.2	감)10,595.5	303,490.7	32.3%	
	도 로 ³⁾	147,095.2	감)1,335.0	145,760.2	15.5%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철 도 ⁴⁾	51,845.0	감)7,626.5	44,218.5	4.7%	
	공 원 ⁵⁾	38,824.0	감)1,417.0	37,407.0	4.0%	
	녹 지	34,217.0	—	34,217.0	3.6%	연결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학 교	23,534.0	—	23,534.0	2.5%	기존(이문초등학교), 신설(초등학교 1개교)
	복합커뮤니티센터	9,781.0	—	9,781.0	1.0%	5개소
	공공청사 등 ⁶⁾	5,400.0	감)217	5,183.0	0.6%	공공청사, 광장, 공공공지, 방수설비
	주 차 장	3,390.0	—	3,390.0	0.4%	

※ 변경사유 : 이문·회기재정비촉진지구 및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와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축소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

- 1) 특별계획구역5 해제 및 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
- 2) 특별계획구역2,3 해제 및 특별계획구역4 해제 및 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
- 3) 촉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
- 4) 특별계획구역2,3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주상복합 → 상업업무)
- 5) 특별계획구역4 해제 및 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 (1,417㎡)
- 6) 공공공지 해제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공공지 → 상업업무 및 도로)

2)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9,187	감)390	18,797	44,284	감)897	43,387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계	14,216	—	14,216	32,697	—	32,697	
	60㎡ 이하	7,162	—	7,162	16,473	—	16,473	미취사가구 수용 -20㎡(200호), 30㎡(100호)
	60㎡~85㎡	5,331	—	5,331	12,261	—	12,261	
	85㎡ 초과	1,723	—	1,723	3,963	—	3,963	
준치지역	소계	4,971	감)390	4,581	11,587	감)897	10,690	
	단독주택	3,455	감)390	3,065	8,082	감)897	7,185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1,516	—	1,516	3,505	—	3,505	준치건축물

주) 세대당 인구 2.30인 적용 (미취사가구 수용주택 별도 적용)

※ 변경사유 : 촉진지구 및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에 인한 주택수인구수 축소

-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촉진지구		966,570.5	감) 26,871.5	939,699.0	100.0%	
	촉진구역	668,509.0	—	668,509.0	71.1%	
	이문1구역	144,964.0	—	144,964.0	15.4%	
	이문2구역	93,975.0	—	93,975.0	10.0%	구역지정 요건완화
	이문3구역	157,814.0	—	157,814.0	16.8%	결합개발 구역
	이문3-1구역	136,573.0	—	136,573.0	14.5%	구역지정 요건완화, 역세권
	이문3-2구역	21,241.0	—	21,241.0	2.3%	구릉지
	이문4구역	151,388.0	—	151,388.0	16.1%	
	휘경1구역	12,915.0	—	12,915.0	1.4%	정비구역 기지정
	휘경2구역	43,329.0	—	43,329.0	4.6%	
	휘경3구역	64,124.0	—	64,124.0	6.8%	
존치지역		298,061.5	감) 26,871.5	271,190.0	28.9%	
지구단위 계획구역	소 계	212,486.5	감) 26,871.5	185,615.0	19.8%	
	①	29,567.0	—	29,567.0	3.1%	신이문지구단위계획 (촉진지구내)
	②	67,183.0	—	67,183.0	7.1%	이문지구단위계획
	③	115,736.5	감) 26,871.5	88,865.0	9.6%	회기지구단위계획 (촉진지구내)
존치시설 및 건축물	소 계	85,575.0	—	85,575.0	9.1%	
	④	15,534.0	—	15,534.0	1.7%	이문초등학교
	⑤	4,877.0	—	4,877.0	0.5%	웰츠타워(주상복합) 등
	⑥	12,993.0	—	12,993.0	1.4%	이문로
	⑦	11,776.0	—	11,776.0	1.3%	중앙하이츠 아파트
	⑧	17,118.0	—	17,118.0	1.8%	경원선
	⑨	8,446.0	—	8,446.0	0.9%	삼익아파트
	⑩	1,319.0	—	1,319.0	0.1%	빗물펌프장(방수설비)
	⑪	7,228.0	—	7,228.0	0.8%	중앙선
	⑫	6,284.0	—	6,284.0	0.7%	기타 존치건축물

※ 변경사유 : 촉진지구 및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제척 반영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966,570.5	감)26,871.5	939,699.0	100.0%	
주거지역	소 계	950,513.5	감)24,153.5	926,360.0	98.6%	
	제1종 일반주거지역	21,241.0	-	21,241.0	2.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40,261.0	감)7,092.0	233,169.0	24.8%	
	제2종일반주거지역	405,338.0	감)13,503.0	391,835.0	41.7%	
	제3종일반주거지역	152,120.0	감)31.0	152,089.0	16.2%	
	준주거지역	131,553.5	감)3,527.5	128,026.0	13.6%	
상업지역	소 계	16,057.0	감)2,718.0	13,339.0	1.4%	
	일반상업지역	16,057.0	감)2,718.0	13,339.0	1.4%	

※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나 촉진지구 및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에 따른 면적 감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가) 촉진지구 계획기반시설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촉진지구면적		966,570.5	감)26,871.5	939,699.0	100.0%	
기반시설	소 계	314,086.2	감)10,595.5	303,490.7	32.3%	
	도 로	147,095.2	감)1,335.0	145,760.2	15.5%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철 도	51,845.0	감)7,626.5	44,218.5	4.7%	
	공 원	38,824.0	감)1,417.0	37,407.0	4.0%	
	녹 지	34,217.0	-	34,217.0	3.6%	연결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학 교	23,534.0	-	23,534.0	2.5%	기존(이문초등학교), 신설(초등학교 1개교)
	복합커뮤니티센터	9,781.0	-	9,781.0	1.0%	5개소
	공공청사 등	5,400.0	감)217	5,183.0	0.6%	공공청사, 광장, 공공공지, 방수설비
	주 차 장	3,390.0	-	3,390.0	0.4%	

나) 부담주체별 설치계획

구 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사업주체	공공시행	민간(조합)시행
사업내용	• 이문로 도로확장 (L=1,040m) • 중로2-142 (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L=231) • 소로1-1 (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L=113m) • 소로3-7 (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L=10m) • 소로3-8 (신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L=171m) • 중로1-437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L=307m) • 소로2-4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L=153m) • 지하차도 1개소 (L=307.5m) • 보도육교 1개소 (B=4.0m, L=35.0m) • 주차장(신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공공지(신이문·이문 지구단위계획구역) • 초등학교 1개소 •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	• 촉진구역내 정비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 복합커뮤니티센터 2개소(회경3구역)

주) 지구외 남측 지하보·차도(M1-370)는 중장기적으로 개설 검토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기타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없음)

18) 재정비촉진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 :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결정

명칭	유형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이문·회경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이문·회경동 일원	966,570.5	감)26,871.5	939,699.0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결정사유
변경	동대문구 이문동 256-371번지 일대	• 구역제척 - 면적 966,570.5㎡ → 939,699.0㎡ (감 26,871.5㎡)	• 촉진지구 결정 당시 특별계획구역2개소를 지정하여 구역내 편입되었으나, 이후 개발답보로 인한 건축물 노후 및 신축 불가 등 주민 생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 당초 계획의 실현성 재검토 및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비 촉진지구 제척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환원)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966,570.5	감)26,871.5	939,699.0	100.0%	
주거지역	소 계	950,513.5	감)24,153.5	926,360.0	98.6%	
	제1종 일반주거지역	21,241.0	-	21,241.0	2.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40,261.0	감)7,092.0	233,169.0	24.8%	
	제2종일반주거지역	405,338.0	감)13,503.0	391,835.0	41.7%	
	제3종일반주거지역	152,120.0	감)31.0	152,089.0	16.2%	
	준주거지역	131,553.5	감)3,527.5	128,026.0	13.6%	
상업지역	소 계	16,057.0	감)2,718.0	13,339.0	1.4%	
	일반상업지역	16,057.0	감)2,718.0	13,339.0	1.4%	

※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나 촉진지구 및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에 따른 면적 감소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①	신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문동 217-8 일원	39,678.0	
기정	②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문동 305-151 일원	67,183.0	
기정	③	회기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회경동 319-5 일원	130,701.5	
변경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103,830.0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44	5,344	126,001	12	1,306	80,464	15	1,616	34,638	17	2,422	10,899
대로	2	158	493	0	0	0	1	13	89	1	145	404
중로	17	1,408	100,623	10	938	76,432	6	383	23,147	1	87	1,044
소로	25	3,778	24,885	2	368	4,032	8	1,220	11,402	15	2,190	9,451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	30~35	주 간선	3,200	청량리역 광장	중랑천	일반 도로		1936.12.26 (총독부고시722)	망우로
변경	대로	2	2	30~35	주 간선	3,200 (13)	청량리역 광장	중랑천	일반 도로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공공공지 폐지로 인한 도로선형 일부 변경
기정	대로	3	40	25~30	보조 간선	11,600 (145)	군자동 광로5호선	수유동 중1-47호선	일반 도로		건고시177 (1962.12.8)	
기정	중로	1	9	20~25	보조 간선	4,000 (818)	회경지서앞 중1-8호선	변동98-1 대3-39호선	일반 도로		총고시722 (1936.12.26)	
기정	중로	1	10	21.3	집산 도로	595	이문동 288-65번지	회경동 147-6번지	일반 도로	-	건고시177 (1962.12.8)	
기정	중로	1	63	20	집산 도로	2,250 (220)	이문동 255-2	석관동 247-1	일반 도로		건고시2493 (1966.6.21)	
기정	중로	1	432	20	집산 도로	378	이문동 291-26	이문동 264-3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1	433	20	집산 도로	463	이문동 86-139	이문동 258-25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1	434	20~23	집산 도로	407	회경동 150-26번지	이문동 105-18번지	일반 도로		1976.4.7 (건고 46)	
기정	중로	1	435	20	특수 도로	185	회경동 147-6	회경동 119-46	보행자 도로		건고시177 (1962.12.8)	
기정	중로	1	365	20	집산 도로	260	회경동 328-1	회경동 319-9	일반 도로		서고 271 (1994.8.11)	
기정	중로	1	437	18~20	집산 도로	307	회경동 77-7	회경동 255-39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변경	중로	1	437	20	집산 도로	307	회경동 77-7번지	회경동 255-39번지	일반 도로	-	-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공공공지 폐지로 인한 도로선형 일부 변경
기정	중로	1		15~21	집산 도로	273	이문동 304-14	이문동 292-178	일반 도로		서고2002-143 (2002.05.02)	
기정	중로	2	142	15~20	집산 도로 (231)	427	회경2동 42-4번지	회경동 139-27번지	일반 도로		1976.4.7 (건고 46)	
기정	중로	2	143	15	집산 도로	200	회경동 101-10번지	회경동 175-4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2	451	18	국지 도로	120	이문동 255-7	이문동 255-12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2	452	15	집산 도로	216	이문동 256-128	이문동 164-15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중로	2	453	15	집산 도로	228	이문동 150-6	이문동 256-127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54	15~19	집산 도로	472	이문동 175-31	이문동 255-187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450	12	국지 도로	87	이문동 87-1	이문동 89-3	일반 도로	-	동고 1994-29 (1994.6.24)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13	이문동 85-26	이문동 78-6	일반 도로	-	서고 2002-143 (2002.05.02)	
기정	소로	1	3	8~14	국지 도로	200	회경동 154-8번지	회경동 146-127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3	회경동 317-1	회경동 267-128	일반 도로	-	서고 2000-242 (2000.8.22)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23	회경동 317-1번지	회경동 267-128번지	일반 도로		-	불필요한 가각제척
기정	소로	2	2	9	국지 도로	62	회경1동 109-1	회경1동 42-9	일반 도로	-	서고 2005-408 (2005.12.22)	
기정	소로	2	3	8~15	국지 도로	276 (180)	이문동 264-203	이문동 398-8	일반 도로		건고 521 (1981.12.31)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62	회경1동 86-6	회경1동 255-9	일반 도로	-	서고 2005-408 (2005.12.22)	
변경	소로	2	4	6~8	국지 도로	262 (153)	회경1동 86-6번지	회경1동 255-9번지	일반 도로	-	-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도로폭원 축소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75	회경동 192-6	회경동 192-8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폐지	소로	2	5	8	국지 도로	75	회경동 192-6번지	회경동 192-8번지	일반 도로	-	-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도로 폐지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48	회경동 259	회경동 244-1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폐지	소로	2	7	8	국지 도로	48	회경동 259번지	회경동 244-1번지	일반 도로	-	-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도로 폐지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57	회경동 254	회경동 247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폐지	소로	2	8	8	국지 도로	57	회경동 254번지	회경동 247번지	일반 도로	-	-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도로 폐지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30	회경동 336	회경동 338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폐지	소로	2	9	8	국지 도로	30	회경동 336번지	회경동 338번지	일반 도로	-	-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도로 폐지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80	이문동 120-36	이문동 354-5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73	이문동 264-420	이문동 264-420	일반 도로		건고 521 (1981.12.31)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2	8~12	국지 도로	300 (220)	이문2동 271-7	이문2동 291-67	일반 도로		건고 768 (1964.1.24)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230	휘경동 267-42	휘경동 255-40	일반 도로	-	건고1997-194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1	이문동 305-94번지	이문동 305-93번지	일반 도로		서고 2002-143 (2002.05.02)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45	이문동 309-11	이문동 309-3	일반 도로	-	서고 2002-143 (2002.05.02)	
기정	소로	3	5	4	국지 도로	30	이문동 288-63	이문동 288-64	일반 도로	-	서고 2002-143 (2002.05.02)	
기정	소로	3	6	4	국지 도로	21	휘경동 161-1번지	휘경동 154-18번지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7	4	국지 도로	10	이문동 78-9번지	이문동 78-8번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8	2~6	국지 도로	171	이문동 220-26	이문동 167-1	일반 도로		2002.6.12 (서고 211)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900 (370)	휘경동 192-19	휘경동 145-40	일반 도로	-	건고1997-194	
기정	소로	3	11	4	특수 도로	245	이문동 170-130	이문동 220-363	보행자 전용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2	4	특수 도로	345	이문동 135-138	이문동 170-123	보행자 전용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3	4	특수 도로	346	이문동 120-35	이문동 173-35	보행자 전용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4	4	특수 도로	248	이문동 304-14	이문동 135-117	보행자 전용	-	서고2007-496 ('08.1.7)	
기정	소로	3	15	2~4	특수 도로	205	이문동 78-7	이문동 121-78도	보행자 전용	-	건고1994-116 (1994.4.18)	
기정	소로	3	18	4	국지 도로	10.7	휘경동 319-22	휘경동 319-22	일반 도로	-	동고2006-50호 (2006.5.4)	
기정	소로	3	19	4	국지 도로	51	중로 1-365	휘경동 183-113	일반 도로	-	서고2000-242 (2000.8.22)	
정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23	이문동 240-8번지	이문동 242-53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지구 외 도로
기정	소로	3	21	4~8	국지 도로	120	이문동 292-46	이문동 292-70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08.1.7)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축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2	대로2-2	• 선형변경 : 30~35m	• 회기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해제 및 공공공지 폐지에 따른 도로 선형 일부 변경
중로1-437	중로1-437	• 선형 및 폭원변경 : 18~20m → 20m	• 회기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해제 및 공공공지 폐지에 따른 도로 선형 일부 변경
소로2-1	소로2-1	• 선형변경	• 일방통행도로의 불필요한 가각제척
소로2-4	소로2-4	• 일부구간 폭원축소 : 8m→6m	• 회기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해제에 따른 도로 폭원 축소
소로2-5	-	• 노선폐지	• 회기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해제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7	-	• 노선폐지	• 회기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해제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8	-	• 노선폐지	• 회기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해제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9	-	• 노선폐지	• 회기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해제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3-20	소로 3-20	• 정정 : 노선폐지 → 노선환원	• 축진지구 축소(제척)에 따라 축진지구에서 제척되는 도로를 착오로 폐지하여 종전대로 환원 정정

②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주차장	이문동 220-20 일원	1,422	서고 2002-211 (2002.6.12)	
기정	②	주차장	이문동 306-14 일원	1,276	동고-8 (1995.2.24)	
기정	③	주차장	휘경동 165-15 일원	692		

③ 철도 : 변경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변경	①	철도	일반 철도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중랑구 망우동 도시계획구역계	청량리역 회기역 망우역 송곡여고	7,230 (800)	248,958.3 (24,140)	서고74-154 (74.10.23)	중앙선
							7,230 (600)	248,958.3 (16,710)		
기정	②	철도	일반 철도	한강로3가 (용산역)	성북역 도봉구시계	-	25.7km	- (17,118)	건고64 (78.1.29)	경원선
기정	③	철도	일반 철도	이문동 220일대	-	-	-	4,400	건고64 (78.3.29)	신이문역
기정	④	철도	일반 철도	이문동 134, 135일대	-	-	-	9,200	서고289 (79.6.30)	이문역
기정	⑤	철도	일반 철도	휘경동 317-101일대	-	-	520	18,184	건고64 (78.3.29)	회기역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축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주2) 철도 변경은 없으나, 축진지구 및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으로 인한 연장, 면적 감소

(2) 공간시설

① 녹지 (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168-20 일원	6,769	서고2007-496 ('08.1.7)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116-12 일원	3,79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135-52 일원	2,83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이문동 78-7 일원	31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⑤	녹지	완충녹지	휘경동 194-1 일원	7,20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⑥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 256-303 일원	84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⑦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256-124 일원	1,853	서고2007-496 (2008.01.07)	
기정	⑨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 292-42 일원	1,492	서고2007-496 ('08.1.7)	
기정	⑩	녹지	연결녹지	이문동 86-141 일원	4,36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⑪	녹지	연결녹지	휘경동 150-9 일원	1,31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⑫	녹지	연결녹지	휘경동 140-18 일원	3,438	서고2007-496 ('08.1.7)	

②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중앙공원	근린공원	이문동 138-1 일원	11,924	-	11,924	서고2007-496 ('08.1.7)	
기정	②	회기공원	소공원	휘경동 194-28 일원	647	-	647	서고2007-496 ('08.1.7)	
기정	③	신이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256-225 일원	1,850	-	1,85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④	해누리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256-313 일원	2,005	-	2,005	서고2007-496 ('08.1.7)	
기정	⑤	새롭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175-1 일원	4,360	-	4,36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⑥	달누리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264-421 일원	1,749	-	1,749	서고2007-496 ('08.1.7)	
기정	⑨	별누리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86-36 일원	3,190	-	3,19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⑫	아름공원	어린이공원	휘경동 118-10 일원	3,402	-	3,402	서고2007-496 ('08.1.7)	
기정	⑬	소공원13	소공원	이문동 255-116 일원	1,479	-	1,479	서고2007-496 ('08.1.7)	
기정	⑭	독구말공원	소공원	이문동 294-2 일원	1,181	-	1,181	서고2007-496 ('08.1.7)	
기정	A	마을 오름공원	소공원	이문동 393-1 일원	5,620	-	5,620	서고2014-290 ('14.8.21)	

③ 공공공지 : 변경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폐지	①	공공공지	휘경동 269-2 일원	217	감)217	-	서고2000-242 (2000.08.29)	
기정	②	공공공지	이문동 82-45 일원	240	-	240	서고 1974-108 (1974.08.06)	
기정	⑤	공공공지	이문동 88-24 일원	380	-	380	서고2007-496 ('08.1.7)	
기정	⑥	공공공지	휘경동 104-9 일원	788	-	788	서고2007-496 ('08.1.7)	
기정	⑦	공공공지	이문동 220-282일원	108	-	108	서고2002-211 (2002.06.12)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차로 변 차량회전 반경 확보를 위해 일부 도로로 변경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① 열공급설비

■ 열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열공급설비	이문동 138-1 일원	11,912	-	11,912	서고2007-496 ('08.1.7)	시설중복결정 -중앙공원(지하)

(4)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①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동사무소	이문동 120-1 일원	1,202	-	1,202	동고 83 (2001.10.27)	이문1동 동사무소
기정	②	공공청사	동사무소	회경동 135-9 일원	803	-	803	동고 107 (1997.11.6)	회경1동 동사무소
기정	③	공공청사	-	이문동 304-6 일원	343	-	343	서고2007-496 ('08.1.7)	건강증진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②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A	사회복지시설	이문동 264-120 일원	2,176	-	2,176	서고2014-290 ('14.8.21)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기정	B	사회복지시설	회경동 100-35 일원	2,300	-	2,300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기정	C	사회복지시설	회경동 100-41 일원	1,200	-	1,200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③ 학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초등학교	이문동 164-26 일원	15,534	-	15,534	서고 439 (1977.12.19)	
기정	③	학교	초등학교	이문동 87-14 일원	8,000	-	8,000	서고2007-496 ('08.1.7)	

(5) 방재시설 (변경없음)

① 방수설비

■ 방수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방수설비	휘경동 146-104 일원	1,319	-	1,319	동고 2002-81 (2002.09.24)	

(5)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①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이문동 145-4 일원	700	-	700	서고2007-496 ('08.1.7)	시설중복결정 -중앙공원(지하)

19) 신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20) 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21)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회기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휘경동 319-5번지 일대	130,701.5	-	130,701.5	서고시 제2000-242호 (2000.08.30)	
변경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130,701.5	감) 26,871.5	103,830.0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	• 구역명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2.4.15)으로 제1종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을 삭제하였으므로, 구역명 변경
	㉔	동대문구 휘경동 340번지 일대	• 구역 제척 - 면적 : 26,871.5㎡	• 촉진지구 결정 당시 특별계획구역2개소를 지정하여 구역내 편입되었으나, 이후 개발담보로 인한 건축물 노후 및 신축 불가 등 주민 생활의 제약요소로 작용하여 • 당초 계획의 실현성 재검토 및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비 촉진지구 제척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환원)

(2)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0,701.5	감)26,871.5	103,830.0	100.0	
주거지역	소 계	126,439.5	감)24,153.5	102,286.0	98.5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26,582.0	감)7,092.0	19,490.0	18.8	
	제2종일반주거지역	14,058.0	감)13,503.0	555.0	0.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177.0	감)31.0	25,146.0	24.2	
	준주거지역	60,622.5	감)3,527.5	57,095.0	55.0	
상업지역	소 계	4,262.0	감)2,718.0	1,544.0	1.5	
	일반상업지역	4,262.0	감)2,718.0	1,544.0	1.5	

주)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나 촉진지구 및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으로 인한 면적 감소

■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이문로)	중심지 미관지구	시조사~ 이문동	48,000 (1,680)	2,000 (140)	양측 12	1982.4.22 (서고164호)	
기정	②	미관지구 (망우로)	중심지 미관지구	청량리~ 망우동	136,800 (6,000)	5,700 (500)	양측 12	1982.4.22 (서고164호)	

주1)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연장 및 면적임

주2) 용도지구 변경은 없으나 촉진지구 및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으로 인한 연장, 면적 감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9	1,669.7	30,671.0	2	567.0	9,912.0	4	901.0	19,616.0	3	201.7	1,143.0
대로	1	495.0	17,414.0	-	-	-	1	495.0	17,414.0	-	-	-
중로	2	567.0	9,912.0	2	567.0	9,912.0	-	-	-	-	-	-
소로	6	607.7	3,345.0	-	-	-	3	406.0	2,202.0	3	201.7	1,143.0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	30~35	주 간선	3,200 (495)	청량리역 광장	중랑천	일반 도로		1936.12.26 (총독부고시722)	망우로
변경	대로	2	2	30~35	주 간선	3,200 (13)	청량리역 광장	중랑천	일반 도로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공공공지 폐지로 인한 도로선형 일부 변경
기정	중로	1	365	20	집산 도로	260	휘경동 328-1번지	휘경동 319-9번지	일반 도로		1994.8.11 (서고 271)	
기정	중로	1	437	18~20	집산 도로	307	휘경동 77-7번지	휘경동 255-39번지	일반 도로	-	2008.01.07 (서고2007-496)	
변경	중로	1	437	20	집산 도로	307	휘경동 77-7번지	휘경동 255-39번지	일반 도로	-	-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공공공지 폐지로 인한 도로선형 일부 변경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3	휘경동 317-1번지	휘경동 267-128번지	일반 도로	-	2000.8.22 (서고 2000-242)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23	휘경동 317-1번지	휘경동 267-128번지	일반 도로			불필요한 가각제척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62 (153)	휘경1동 86-6번지	휘경1동 255-9번지	일반 도로	-	2005.12.22 (서고 2005-408)	
변경	소로	2	4	6~8	국지 도로	262 (153)	휘경1동 86-6번지	휘경1동 255-9번지	일반 도로	-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도로폭원 축소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75	휘경동 192-6번지	휘경동 192-8번지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2	5	8	국지 도로	75	휘경동 192-6번지	휘경동 192-8번지	일반 도로	-	-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도로 폐지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48	휘경동 259번지	휘경동 244-1번지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2	7	8	국지 도로	48	휘경동 259번지	휘경동 244-1번지	일반 도로	-	-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도로 폐지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57	휘경동 254번지	휘경동 247번지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2	8	8	국지 도로	57	휘경동 254번지	휘경동 247번지	일반 도로	-	-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도로 폐지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30	회경동 336번지	회경동 338번지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2	9	8	국지 도로	30	회경동 336번지	회경동 338번지	일반 도로	-	-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도로 폐지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230	회경동 267-42번지	회경동 255-40번지	일반 도로	-	1997.06.17 (건고1997-194)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900 (140)	회경동 192-19번지	회경동 145-40번지	일반 도로	-	1997.06.17 (건고1997-194)	
기정	소로	3	18	4	국지 도로	10.7	회경동 319-22번지	회경동 319-22번지	일반 도로	-	2006.5.4 (동고2006-50호)	
기정	소로	3	19	4	국지 도로	51	중로 1-365	회경동 183-113번지	일반 도로	-	2000.8.22 (서고2000-242)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연장과 면적임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2	대로2-2	• 선형변경 : 30~35m	• 회기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해제 및 공공공지 폐지에 따른 도로 선형 일부 변경
중로1-437	중로1-437	• 선형 및 폭원변경 : 18~20m→20m	• 특별계획구역2,3 해제 및 소공원 조성에 따른 도로 선형 일부 변경
소로2-1	소로2-1	• 선형변경	• 일방통행도로의 불필요한 가각제척
소로2-4	소로2-4	• 일부구간 폭원축소 : 8m→6m	• 특별계획구역2,3 해제에 따른 도로 폭원 축소
소로2-5	-	• 노선폐지	• 특별계획구역2,3 해제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7	-	• 노선폐지	• 특별계획구역2,3 해제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8	-	• 노선폐지	• 특별계획구역2,3 해제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9	-	• 노선폐지	• 특별계획구역5 해제에 따른 도로 폐지

② 철도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①	철도	일반 철도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중랑구 망우동 도시계획구역계	청량리역 회기역 망우역 송곡여고	7,230 (800)	248,958.3 (24,140)	서고74-154 (74.10.23)	중앙선
변경							7,230 (600)	248,958.3 (16,710)		
기정	②	철도	일반 철도	한강로3가 (용산역)	성북역 도봉구시계	-	25.7km	-	건고64 (78.1.29)	경원선
기정	⑤	철도	일반 철도	휘경동 317-101번지일대	휘경동 344번지 일대	-	520	18,184 (역사면적)	건고64 (78.3.29)	회기역

주1)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주2) 철도 변경은 없으나, 촉진지구 및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으로 인한 연장, 면적 감소

2. 공간시설 : 변경

①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휘경동 269-2 일원	217	감)217	-	서고2000-242 (2000.08.29)	
폐지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차로변 차량회전 반경 확보를 위해 일부 도로로 변경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최대개발규모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기정	변경	
간선변	이문로변, 망우로변	2,000	2,000	
	망우로21길변	1,000	2,000	
	회기로변	1,000	1,000	
이면부		600	800	

주1)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주2) 적용제외

- 기 개발된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상 최대개발규모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된 필지

② 가구 및 획지계획

■ 계획기준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획지 계획	• 연접한 동일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 된 2이상의 필지 • 연접한 동일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 되지 않은 2이상의 필지 • 개별소유필지로서 기공동개발된 2이상의 필지(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 것만 획지로 계획) • 개별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법적 \최소대지분 할 규모이하, 맹지 등)가 필요한 2이상의 필지	• 연접한 동일소유의 기 공동개발 필지 중 계획적 유도가 필요한 필지	

■ 기정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①	H1	2,182	휘경동 335-37대	69	1,123	
			휘경동 339-3대	26		
			휘경동 340-4대	192		
			휘경동 340-7대	69		
			휘경동 340대	767		
②			휘경동 336-1도	27	483	
			휘경동 336-2대	456		
①	H2	3,913	휘경동 333-12차	224	736	
			휘경동 333-5차	311		
			휘경동 333-7차	132		
			휘경동 333-8차	29		
			휘경동 335-35차	40		
②			휘경동 333-3대	139	208	
			휘경동 333-4대	69		
③			휘경동 330대	451	1,048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④			휘경동 331대	557	1,921				
			휘경동 332대	40					
			휘경동 328-1대	112					
			휘경동 328대	30					
			휘경동 329대	1,729					
			휘경동 333-10대	50					
①	H3	6,205	휘경동 319-14대	46	212				
휘경동 319-15대			7						
휘경동 319-16대			159	265					
②			휘경동 319-4대		182				
휘경동 319-10대			83						
③			휘경동 319-2대	281	380				
휘경동 319-40대			99						
④			휘경동 319-12대	337	968				
			휘경동 319-36대	555					
			휘경동 319-38대	76					
⑤			휘경동 319-1대	236	289				
			휘경동 319-55대	53					
⑥			휘경동 319-30대	126	291				
			휘경동 319-34대	139					
			휘경동 319-35대	26					
⑦			휘경동 319-31대	175	317				
			휘경동 319-32대	142					
⑧			휘경동 319-23도	22	318				
			휘경동 319-23도	28					
			휘경동 319-24대	86					
			휘경동 319-25대	86					
			휘경동 319-26대	96					
⑨	휘경동 319-19대	66	142						
	휘경동 319-29대	76							
①	H4	4,920	휘경동 320-6대	357	559				
			휘경동 320-7대	202					
휘경동 191-36대			62	1,724					
휘경동 321-27대			205						
휘경동 322-2대			1,280						
휘경동 322-39대			30						
휘경동 322-43대			33						
휘경동 322-4대			114						
③			휘경동 320-2대	159	178				
			휘경동 320-21대	18					
			휘경동 320-24대	1					
④			휘경동 183-110대	165	215				
			휘경동 321-14대	50					
①			H5	3,708	휘경동 191-2대		76	155	
-			H6	936	휘경동 191-10대		79		
①			H7	1,191	휘경동 183-167대		145	290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휘경동 183-168대	145		
①	H8	2,409	휘경동 183-126대	119	238	
			휘경동 183-200대	119		
-	H9	2,437	-	-	-	
-	H10	1,143	-	-	-	
①	H11	1,232	휘경동 317-106대	29	343	
			휘경동 317-28대	245		
휘경동 317-33대			42			
휘경동 317-39대			2			
휘경동 317-71대			23			
휘경동 317-72대			2			
②			휘경동 317-105대	210	889	
			휘경동 317-11대	611		
			휘경동 317-12대	3		
			휘경동 317-1대	38		
			휘경동 319-53구	24		
			휘경동 319-58구	3		
①	H12	481	휘경동 267-71대	6	108	
		휘경동 267-73대	102			
①	H13	2,305	휘경동 267-120대	285	324	
			휘경동 267-121대	39		
②			휘경동 267-78대	39	161	
			휘경동 267-79대	122		
①	H14	14,084	휘경동 267-5대	185	965	
			휘경동 267-115대	780		
②			휘경동 267-8대	150	2,552	
			휘경동 267-9대	2,402		
③			휘경동 262-4대	331	2,683	
			휘경동 262-5대	367		
			휘경동 262-6대	347		
			휘경동 262-7대	357		
			휘경동 262-8대	443		
			휘경동 264-2대	264		
			휘경동 267-1대	83		
			휘경동 267-7대	347		
			휘경동 267-142대	144		
④			휘경동 265-1대	66	265	
			휘경동 265-11대	43		
			휘경동 265-2대	106		
			휘경동 265-9대	50		
⑤			휘경동 264-3대	215	235	
			휘경동 264-9대	20		
-	H15	3,043	-	-	-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①	H1	6,156.8	휘경동 319-4대	182	265	
			휘경동 319-10대	83		
②			휘경동 319-2대	281	380	
			휘경동 319-40대	99		
①	H2	4,798.8	휘경동 320-6대	357	559	
			휘경동 320-7대	202		
②			휘경동 322-2대	1,280	1,456	
			휘경동 322-4대	114		
			휘경동 191-36대	62		
③			휘경동 183-110대	165	215	
			휘경동 321-14대	50		
-	H3	3,911.7	-	-	-	
-	H4	941.0	-	-	-	
①	H5	1,215.3	휘경동 183-167대	145	290	
			휘경동 183-168대	145		
-	H6	2,391.8	-	-	-	
-	H7	2,403.7	-	-	-	
-	H8	1,115.3	-	-	-	
-	H9	475.1	-	-	-	
-	H10	2,286.1	-	-	-	
①	H11	14,212.1	휘경동 267-7대	347	2,683	※최대개발규모 제외
			휘경동 262-8대	443		
			휘경동 267-142대	144		
			휘경동 262-7대	357		
			휘경동 262-5대	367		
			휘경동 262-6대	347		
			휘경동 262-4대	331		
			휘경동 264-2대	264		
			휘경동 267-1대	83	319	
②			휘경동 265-2대	210		
			휘경동 265-1대	66		
			휘경동 265-11대	43	256	
③			휘경동 264-9대	20		
			휘경동 264-11대	236		
-	H12	3,007.3	-	-	-	
①	H13	7,889.5	휘경동 258대	1,334	1,347	※최대개발규모 제외
			휘경동 257-1대	13		
②			휘경동 256대	205	380	
			휘경동 257대	175		

주) cad구적 면적임

③ 공동개발계획

■ 계획기준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기 정	변 경	
공동개발 (지정)	-	• 획지계획이 지정되지 않은 연접한 동일소유 필지로서 기 공동개발 된 2이상의 필지 중 다른 소유 필지와 공동개발(권장)으로 계획된 필지 • 연접한 동일소유 필지로서 미 공동개발 된 2이상의 필지	
공동개발 (권장)	• 적정규모·정형화·이면도로에서의 주차출입유도 등을 계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연접한 개별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부정형세장형, 과소필지, 맹지 등)가 필요한 2이상의 필지 • 건축선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단일 필지의 건축효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필지와 연접한 2이상의 필지 • 도시계획시설 잔여부지와 연접한 필지	
자율적 공동개발	-	• 연접한 2이상의 필지 (공동개발 지정/권장 계획된 필지 포함 가능)	

■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계		
기정	-	휘경동	336-3	245	576	•공동개발(권장)	
폐지			336-4	33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으로 인한폐지	
신설	H1	휘경동	319-14	46	331	•319-14, 319-15, 319-17은 공동개발(지정) •319-16은 공동개발(권장)	
			319-15	7			
			319-17	119			
			319-16	159			
신설	H1	휘경동	319-12	337	968	•공동개발(지정) ※최대개발규모 제외	
			319-36	555			
			319-38	76			
신설	H1	휘경동	319-1	236	289	•공동개발(지정)	
			319-55	53			
기정	H1	휘경동	319-3	165	595	•공동개발(권장)	
			319-13	430			
변경				319-3	165	165	•단독개발
				319-13	430	430	•단독개발
기정	H1	휘경동	319-8	175	357	•공동개발(권장)	
			319-37	182			
변경				319-8	175	175	•단독개발
				319-37	182	182	•단독개발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계	
기정	H2	휘경동	183-112	146	292	•공동개발(권장)
			183-425	146		
변경			183-112	146	146	•단독개발
			183-425	146	146	•단독개발
기정	H2	휘경동	183-432	132	244	•공동개발(권장)
			183-433	112		
변경			183-432	132	132	•단독개발
			183-433	112	112	•단독개발
기정	H2	휘경동	320-4	129	281	•공동개발(권장)
			320-5	152		
변경			320-4	129	129	•단독개발
			320-5	152	152	•단독개발
기정	H2	휘경동	321-26	245	394	•공동개발(권장)
			321-57	149		
변경			321-26	245	245	•단독개발
			321-57	149	149	•단독개발
신설	H2	휘경동	320-2	159	178	•320-2, 320-21은 공동개발(지정) •320-24는 공동개발(권장)
			320-21	18		
			320-24	1		
신설	H2	휘경동	321-27	205	268	•공동개발(지정)
			322-39	30		
			322-43	33		
기정	H3	휘경동	183-113	121	240	•공동개발(권장)
			191-28	119		
변경			183-113	121	121	•단독개발
			191-28	119	119	•단독개발
기정	H3	휘경동	191-20	112	254	•공동개발(권장)
			191-32	142		
변경			191-34	13	112	•공동개발(권장)
			191-32	142	142	
			191-20	112	112	•단독개발
기정	H3	휘경동	191-22	112	443	•공동개발(권장)
			191-23	212		
			191-29	119		
변경			191-5	1,539	1,870	•공동개발(지정) ※최대개발규모 제외
			191-23	212		
			191-29	119		
			191-22	112	112	•단독개발
신설	H3	휘경동	191-2	76	154	•공동개발(권장)
			191-10	79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계		
기정	H5	휘경동	183-195	73	149	•공동개발(권장)	
			183-116	76			
기정	H5	휘경동	183-115	152	307	•공동개발(권장)	
				183-188			155
변경				183-115	152	152	•단독개발
				183-188	155	155	•단독개발
기정	H5	휘경동	183-169	145	290	•공동개발(권장)	
				183-170			145
변경				183-169	145	145	•단독개발
				183-170	145	145	•단독개발
기정	H6	휘경동	183-117	146	291	•공동개발(권장)	
				183-163			145
변경				183-117	146	146	•단독개발
				183-163	145	145	•단독개발
기정	H6	휘경동	183-164	145	290	•공동개발(권장)	
				183-165			145
변경				183-164	145	145	•단독개발
				183-165	145	145	•단독개발
기정	H6	휘경동	183-121	149	301	•공동개발(권장)	
				183-183			152
변경				183-121	149	149	•단독개발
				183-183	152	152	•단독개발
기정	H6	휘경동	183-122	153	308	•공동개발(권장)	
				191-31			155
변경				183-122	153	153	•단독개발
				191-31	155	155	•단독개발
기정	H6	휘경동	183-123	152	380	•공동개발(권장)	
				183-201			228
변경				183-123	152	152	•단독개발
				183-201	228	228	•단독개발
기정	H7	휘경동	183-130	126	252	•공동개발(권장)	
				183-196			126
변경				183-130	126	126	•단독개발
				183-196	126	126	•단독개발
기정	H7	휘경동	183-131	116	248	•공동개발(권장)	
				183-172			132
변경				183-131	116	116	•단독개발
				183-172	132	132	•단독개발
기정	H7	휘경동	183-132	119	215	•공동개발(권장)	
				183-155			132
변경				183-132	119	119	•단독개발
				183-155	132	132	•단독개발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계		
기정	H7	휘경동	183-133	152	274	•공동개발(권장)	
			183-199	122			
변경			183-133	152	152	•단독개발	
			183-199	122	122	•단독개발	
기정	H7	휘경동	183-206	102	214	•공동개발(권장)	
			183-207	112			
변경			183-206	102	102	•단독개발	
			183-207	112	112	•단독개발	
기정	H8	휘경동	183-135	122	319	•공동개발(권장)	
			183-203	197			
변경			183-135	122	122	•단독개발	
			183-203	197	197	•단독개발	
기정	H8	휘경동	183-203	197	320	•공동개발(권장)	
			183-204	123			
변경			183-203	197	197	•단독개발	
			183-204	123	123	•단독개발	
기정	H8	휘경동	183-189	109	215	•공동개발(권장)	
			183-139	106			
변경			183-189	109	109	•단독개발	
			183-139	106	106	•단독개발	
기정	H8	휘경동	183-141	179	291	•공동개발(권장)	
			183-197	112			
변경			183-141	179	179	•단독개발	
			183-197	112	112	•단독개발	
신설	H9	휘경동	267-71	6	108	•공동개발(권장)	
			267-73	102			
신설	H10	휘경동	267-78	39	161	•공동개발(권장)	
			267-79	122			
기정	H11	휘경동	264-1	189	503	•공동개발(권장)	
			269-9	168			
			269-18	146			
변경			264-1	189	189	•단독개발	
			269-9	168	168	•단독개발	
			269-18	146	146	•단독개발	
기정	H11	휘경동	262-1	393	629	•공동개발(권장)	
			264-11	236			
변경			262-1	393	393	•단독개발	
			264-11	236	236	•단독개발	
기정	H11	휘경동	262-2	231	433	•공동개발(권장)	
			262-3	202			
변경			262-2	231	231	•단독개발	
			262-3	202	202	•단독개발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동명	지번	필지	계	
신설	H13	휘경동	192-1	552	764	•공동개발(권장)
			192-6	212		
신설	H13	휘경동	192-7	111.8	344.3	•공동개발(권장) •192-7(구적면적) •192-8(구적면적)
			192-8	103.5		
			192-9	129		
신설	H13	휘경동	255-14	3.9	156.9	•공동개발(지정) •255-14(구적면적)
			261-3	153		
신설	H13	휘경동	261-1	115	122.9	•공동개발(지정) •261-1(구적면적) •261-4(구적면적)
			261-4	7.9		
신설	H13	휘경동	246	536	1,191	•246, 246-1, 255는공동개발(지정) •254는 공동개발(권장) 254(구적:59.1)
			246-1	142		
			255	430		
			254	83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건축물용도

■ 지정

● 불허용도

구분	도면표시	전층
불허용도	1 (간선변)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내에 해당하는 획지에 한함) •단독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2 (이면부)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 권장용도

구분	도면표시	전층
권장용도1)	A (간선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B (이면부)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주1) 권장용도의 경우 전층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 변경

● 불허용도

구분	도면표시		용도
불허 용도	1 (간선변)	전층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내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함) •장례식장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1층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중 금융업소(ATM기 제외)
	2 (이면부)	전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함) •장례식장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권장용도

구분	도면표시		용도
권장 용도1)	A (간선변)	전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의료시설 중 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2)(1층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학원(입시학원 제외), 연구소, 도서관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B (이면부)	전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2)(1층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학원(입시학원 제외), 연구소, 도서관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주1) 권장용도의 경우 전층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주2)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20%이상) 설치시 도입 가능

● 지정용도

구분	도면표시		용도
지정 용도1)	a (간선변)	1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 중 상점

주1) 공용면적(승강기, 계단, 화장실 등 설비시설 포함)을 제외한 바닥면적 70%이상 설치시 준수된 것으로 봄

※ 지정용도 중 일부 용도만 도입가능

② 건축물의 개발밀도

■ 건폐율계획 (변경없음)

구 분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	건폐율 변경은 없으나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 적용
	준주거지역	60%이하	60%이하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이하	60%이하	

주)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 용적률계획 : 변경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	－	－	－	구역 제척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 및 이면부	300%이하	360%이하	400%이하	300%이하	360%이하	400%이하	
	이면블록	300%이하	330%이하	400%이하				
일반상업지역	이문로변	600%이하	800%이하	－	600%이하	800%이하	법정용적률 2배이하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주2)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에 따르며, 조례 개정시 개정된 규정에 따른다.

주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기준 준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단,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용적률 10%이상 설치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주4) 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말함

주5)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건축물 건립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300%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	300%	36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alpha/\beta$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beta - \alpha)/\beta$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 역	600%	80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7/1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times 3/10$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제 적용	

주6) 상업지역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준용

③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기정

항 목			완화조건	산 정 방 식	비 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 2필지 $\alpha = 0.1$ • 3필지 $\alpha = 0.15$ • 4필지 이상 $\alpha = 0.2$ (동일소유자는 1필지로 계산, 국공유지는 필지계산에서 제외)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5 \alpha$	• 2필지 $\alpha = 0.2$ • 3필지 이상 $\alpha = 0.3$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전층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div \text{주차장제외건축면적}) \times 0.2$	• 건축면적의 20% 이상시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 \text{의무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피로티구조 $\alpha = 0.5$ • 개방형구조 $\alpha = 1$ • 건축법상 설치의무면적은 제외
	쌈지형공지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피로티구조 $\alpha = 0.5$ • 개방형구조 $\alpha = 1$
	침상형공지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1$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침상형구조 $\alpha = 0.8$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발생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1층부벽면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0.5$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피로티구조 $\alpha = 0.5$ • 개방형구조 $\alpha = 1$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건축물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야간경관조명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 건축물 시공 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건축물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0.2$	• 서울시 보급형옥상녹화기준 준수시
	벽면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3$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내용 준수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등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생태면적률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 기준 준수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신·재생에너지시설비에 투자할 경우 또는 계획 총 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변경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친환경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전층권장용도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4. 1층지정용도의 경우는 공용면적(승강기, 계단, 화장실 등 설비시설 포함)을 제외한 바닥면적 7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5.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부분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다.
6.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7. 공동개발 등으로 서로 다른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이 적용될 경우 전면도로가 넓은 필지의 인센티브 유형을 적용하며, 도로의 폭원,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유리한 인센티브 유형을 적용한다.
8.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환경친화 및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 우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우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 2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x 0.25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 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x (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1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 / 대지면적) x 0.2	-기준용적률 x 0.05 이내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

용도지역	공간 특성	유형	건폐율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계획방향
일반상업지역	간선변 (이문로변)	D1	60%	600% 300%	800% 360%	• 획지계획, 쌈지형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주차통로 등
		D2	60%	600% 300%	800% 360%	• 공동개발, 쌈지형공지, 권장용도 등
준주거지역	간선변 (회기로 망우로 망우로21길)	D3	60%	300%	360%	• 획지계획, 쌈지형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주차통로 등
		D4	60%	300%	360%	• 공동개발, 쌈지형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주차통로 등
		D5	60%	300%	360%	• 공동개발, 쌈지형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등
	이면부	D6	60%	300%	360%	• 공동개발,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등
		D7	60%	300%	360%	• 공동개발, 권장용도 등
		D8	60%	300%	360%	• 획지계획,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등

▷ 인센티브 유형 (D1)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간선변 (이문로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600%/800%,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획지계획, 쌈지형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주차통로 등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획지 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01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개방형구조 : $\alpha=1.0$ 피로티구조 : $\alpha=0.5$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5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면적) ×0.1	
		1층 지정	기준용적률×(지정용도면적/1층바닥면적)×0.25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기준용적률×0.0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 (D2)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간선변 (이문로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600%/800%,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쌈지형공지, 권장용도 등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times 0.01$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주차장 제외한 건축면적}) \times 0.3$
		1층 지정	기준용적률 $\times (\text{지정용도면적} / \text{1층바닥면적}) \times 0.2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 (D3)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간선변 (회기로, 망우로, 망우로21길)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획지계획, 쌈지형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주차통로 등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획지 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 $\times 0.01$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0.2$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주차장 제외한 건축면적}) \times 0.1$
		1층 지정	기준용적률 $\times (\text{지정용도면적} / \text{1층바닥면적}) \times 0.2$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기준용적률 $\times 0.0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 (D4)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간선변 (회기로, 망우로, 망우로21길)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쌈지형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주차통로 등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times 0.01$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times 0.02$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0.1$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주차장 제외한 건축연면적}) \times 0.1$
		1층 지정	기준용적률 $\times (\text{지정용도면적} / \text{1층바닥면적}) \times 0.2$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기준용적률 $\times 0.0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 (D5)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간선변 (회기로, 망우로, 망우로21길)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쌈지형공지,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등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times \alpha$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times 0.01$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0.6$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주차장 제외한 건축연면적}) \times 0.15$
		1층 지정	기준용적률 $\times (\text{지정용도면적} / \text{1층바닥면적}) \times 0.2$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기준용적률 $\times 0.05$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 (D6)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등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times 0.02$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1.5$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주차장 제외한 건축면적}) \times 0.6$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 (D7)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공동개발, 권장용도 등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공동 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times 0.1$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주차장 제외한 건축면적}) \times 0.7$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 인센티브 유형 (D8)

구 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	이면부
건폐율	60%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인센티브 유도계획	획지계획,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등

항목		세분	완화기준	비고
계획 유도	획지 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01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2.0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한 건축면적) ×0.7	
친환경	환경친화		녹색건축물 인증, 자연지반보존, 중수로 또는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④ 높이계획

위 치		기정		변경		비 고
		기준높이	최고높이	기준높이	최고높이	
간선변	이문로변	50m 이하	60m 이하	50m 이하	60m 이하	특별계획구역 해제 필지는 간선/이면에 따라 구분
	망우로변	80m 이하	96m 이하	80m 이하	96m 이하	
	회기로 망우로21길	—	40m 이하	—	40m 이하	
이면부, 이면블럭		—	30m 이하	—	30m 이하	
특별계획구역 2,3		—	80m 이하	—	—	
특별계획구역 4			120m 이하	—	—	
특별계획구역 5			60m 이하	—	—	

■ 높이계획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변경없음)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준높이 완화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조성시1) - 기준높이×(공개공지 등의 면적÷대지면적) • 저층부(5층, 20m이하) 건폐율 40%이하 조성시 - 기준높이×0.1 • 완화차선 조성시 - 기준높이×0.1	
최고높이 완화2)	• 기부채납 - 기준높이 또는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주1)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설치의무면적을 전부 포함

주2)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변경	
배치	벽면한계선	• 신규로 지정되는 특별계획구역내 벽면한계선 일부 폐지	• 공공보행통로변 벽면한계선 폐지 및 건축한계선으로 변경 • 망우로21길변 가각부 일부 지정 : 2m	
	건축한계선	• 회기역사 동측 중로 1-437호선변 추가지정 - 도로중심선 기준 양측 12.5m - 총 폭원 25m 건축한계선 지정	• 이문로, 망우로, 회기로변 : 3m • 망우로21길변 : 2m • 이면부 : 1~2m	
형태	고층부 탐상형 건축물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10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5층이상 부분에 대하여 고층부 탐상형 권장 • 고층부 탐상형의 경우 고층부의 건폐율은 40%이하 및 장변과 단변의 길이 2분의1 이상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10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5층이상 부분에 대하여 고층부 탐상형 권장 • 고층부 탐상형의 경우 고층부의 건폐율은 40%이하 및 장변과 단변의 길이 2분의1 이상	
	1층부 형 태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대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하여야 함 •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1층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간선도로로 1층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설치해서는 아니됨 (단, 부득이한 경우, 1층부 벽면에 조경 및 벽화처리계획을 제출하여 구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투시벽 설치 : 간선도로변 1층벽면의 50% 이상 • 투시형 서터 설치 : 간선도로변의 1층 설치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대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하여야 함 •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1층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간선도로로 1층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설치해서는 아니됨 (단, 부득이한 경우, 1층부 벽면에 조경 및 벽화처리계획을 제출하여 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투시벽 설치 : 간선도로변 1층벽면의 50% 이상 • 투시형 서터 설치 : 간선도로변의 1층 설치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제 어 기 준		비고
		기정	변경	
대지내 공지	쌔지형 공지	- 최소면적 25㎡, 최소폭 5m로 간선변 및 가각부의 정해진 위치에 조성 -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전구역 : 5개소 (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쌔지형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 최소면적 25㎡, 최소폭 5m로 간선변 및 가각부의 정해진 위치에 조성 -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전구역 : 3개소 (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쌔지형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결정도 참조
	공공공지	차량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시설변경	폐지	
	전면공지	- 이문로, 망우로변 : 3m - 휘경일길변 : 2~4m - 이면부 : 1~3m	- 이문로, 망우로, 회기로변 : 3m - 망우로21길변 : 2m - 이면부 : 1~2m	결정도 참조
	공개공지	- 쌔지공원 형태로 조성 - 전면공지 및 쌔지형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쌔지형 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 전면공지 및 쌔지형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쌔지형 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침상형 공지	지하보도와 연계하여 지상연결	쌔지형공지로 변경	결정도 참조
통로	공공보행 통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 전구간 : 5개소(폭6m이상,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 특별계획구역내 도로신설에 따라 1개소 폐지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 전구간 : 4개소(폭4~6m)	결정도 참조
	보행자 우선도로	8개소	3개소	결정도 참조

②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도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 불허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 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 간선도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 불허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 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결정도 참조
(공동)주차출입구	• 간선변 연결한 2필지의 공동주차출입 유도 하여 간선변 접속 최소화	•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일부 필지 지정	결정도 참조
주차장 설치방식	• 이면부 영세필지의 공동주차장 설치 유도 • 차량통행이 어려운 4m 도로변 영세필지의 경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적용	•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함	
주차장 설치완화1)	-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필지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100%완화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이 가능한 필지 중 주변 여건, 대지 현황 등 고려시 주차출입이 어려운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이문로변 망우로변

주1) 주차장 설치완화 대상 필지 중 간선-이면간 필지 또는 간선-간선간 필지의 공동개발로 이면도로에서 주차출입이 가능할 경우 주차장 설치완화 미적용

■ 주차장 설치완화시 설치비용 면제 항목

항목	계획내용	비고
주차장 설치비용 면제 항목	• 하단의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 준수시 주차장 설치비용 100% 면제하고, 2가지 준수시 주차장 설치비용 50% 면제 (설치비용은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에 따름) ① 간선변 1층부 지정용도 100% 도입시 (공용면적 제외) ② 간선변 건축한계선 1m이상 추가 확보시 ③ 공개공지(쌈지형공지) 설치시 - 설치의무 대상인 경우 : 법적 설치기준의 50% 추가 설치시 - 설치의무 비대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이상 또는 25㎡이상 중 큰면적으로 설치시 ④ 개방화장실 설치시 (개방화장실 인지할 수 있는 표지 부착) ⑤ 대지내 또는 건축물내 가로지장물(분전반 등) 수용시	이문로변 망우로변

주) 상기 항목은 용적을 인센티브 및 기준높이 완화 항목과 중복계상 불가

③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벽면녹화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생태면적률	•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4.6)’에 의해 적용할 것을 권장	•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4.6)’에 의해 적용할 것을 권장	
옥외광고물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2004-158호)” 기준을 준수	-	
건축물외관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관은 조립식, 무피복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 -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를 사용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관은 조립식, 무피복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 -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를 사용	
빛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빛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빛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 서울특별시 빛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빛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신·재생 에너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조명	- 간선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히는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권장	- 간선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히는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권장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특별계획구역의 총괄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1	휘경동 267-61 일대	2,002.5	-	2,002.5	
폐지	특별계획구역 2	휘경동 244번지 일대	4,726	감)4,726	-	
폐지	특별계획구역 3	휘경동 258번지 일대	3,352	감)3,352	-	
폐지	특별계획구역 4	휘경동 343번지 일대	5,991	감)5,991	-	
폐지	특별계획구역 5	휘경동 335-18번지 일대	5,921	감)5,921	-	

■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특별계획구역 2	휘경동 244번지 일대	• 구역폐지 -감)4,726㎡	• 장기간 개발지연으로 열악한 환경이 가중되고, 사업진행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미약하여 해제
특별계획구역 3	휘경동 258번지 일대	• 구역폐지 -감)3,352㎡	
특별계획구역 4	휘경동 343번지 일대	• 구역폐지 -감)5,991㎡	
특별계획구역 5	휘경동 335-18번지 일대	• 구역폐지 -감)5,921㎡	

②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 특별계획구역 1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9호(2016.09.01)로 고시된 세부개발계획 준용

■ 특별계획구역 2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 휘경동 244번지 일대	
면 적			• 4,726㎡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지구			-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 (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 8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 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휘경일길변 : 3m • 이면도로변 : 2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에 의한 전면 공지 조성	
	쌈지형 공지		• 지정된 위치에 1개소 지정(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지정대상일 경우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 특별계획구역 2 : 변경

- 폐지

■ 특별계획구역 3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 휘경동 258번지 일대	
면 적			• 3,352㎡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구역내 (연장 25m, 면적 300㎡)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 8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 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휘경일길변 : 3m • 이면도로변 : 2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쌈지형 공지		• 지정된 위치에 1개소 지정(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지정대상일 경우 공개 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 특별계획구역 3 : 변경

- 폐지

■ 특별계획구역 4 : 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휘경동 343번지 일대	
면 적			• 5,991㎡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사업시행 가시화시 변경검토)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구역내 (연장 120m, 면적 1,430㎡)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20%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 공동개발에 따라 망우로변 세장형 필지 공원조성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허용 용적률(%)	• 360% 이하	
		상한 용적률(%)	•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기준높이	–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	• 12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이문로변 : 3m • 교차로 각각부 : 1~15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 주차출입구 지정 • 중앙차로 노선설계시 가감속차선 확보를 위해 공원일부 도로로 시설변경 (사업시행 가시화시 변경 검토)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쌈지형 공지		• 지정된 위치에 1개소 지정(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지정대상일 경우 공개공지 에 관한 규정 적용)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 특별계획구역 4 : 변경

- 폐지

■ 특별계획구역 5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 회경동 335-18번지 일대	
면 적		• 5,921㎡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구역내 (연장 20m, 면적 237㎡)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0%이상 설치(기반시설 순부담비율 기준) • 공공시설 조성후 기부채납(지침도 참조)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B
		권장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
	용적률	기준 용적률(%)	• 190%
		상한 용적률(%)	• 230%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준용)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 6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최고높이 × [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 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이문로변 : 3m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에서 차량출입불허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변 및 이면부의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쌈지형 공지		• 지정된 위치에 1개소 지정(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지정대상일 경우 공개 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허용용적률 360%중 주거복합건물에서는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이하에서, 오피스텔 등 기타용도는 잔여 용적률 이하로 결정한다

■ 특별계획구역 5 : 변경

- 폐지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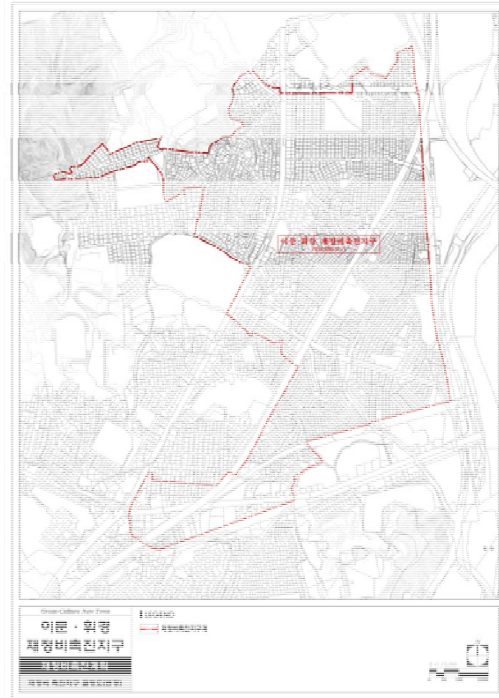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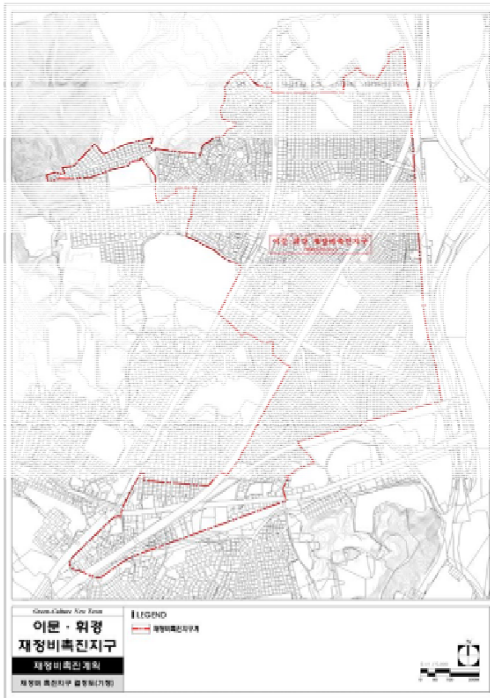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 씀지형공지,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신설·폐지 포함)의 변경
3.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을 전제함)
4. 지정된 차량출입구 위치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신설, 폐지 제외)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계획 내용은 「이문·회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도서」에 명시
6.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문·회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도서」 참조 : 생략
(비치한 도서와 같음)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 2133-7228)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02) 2127-494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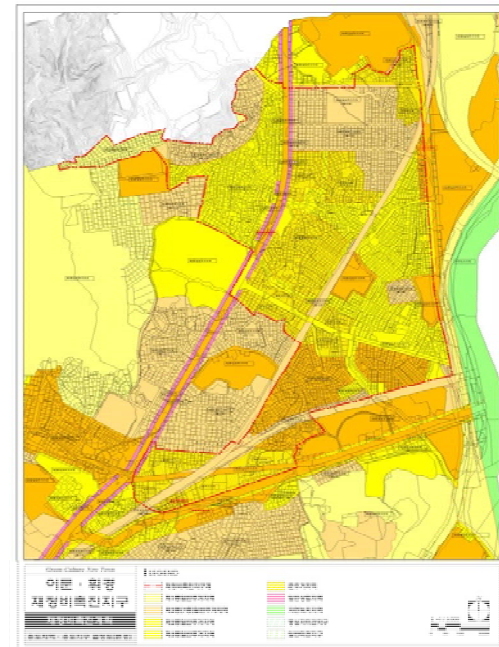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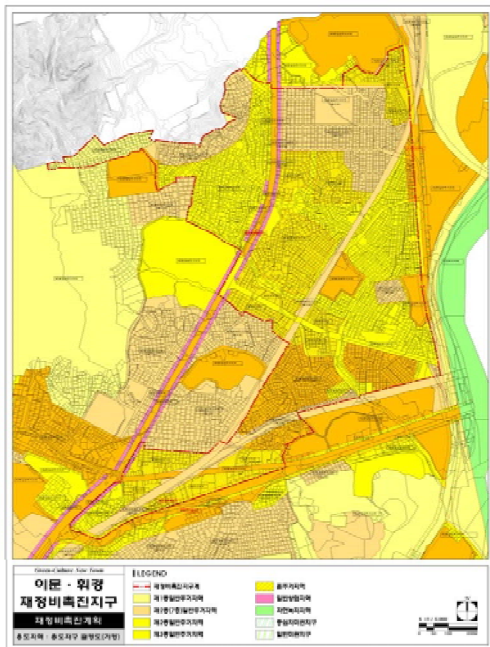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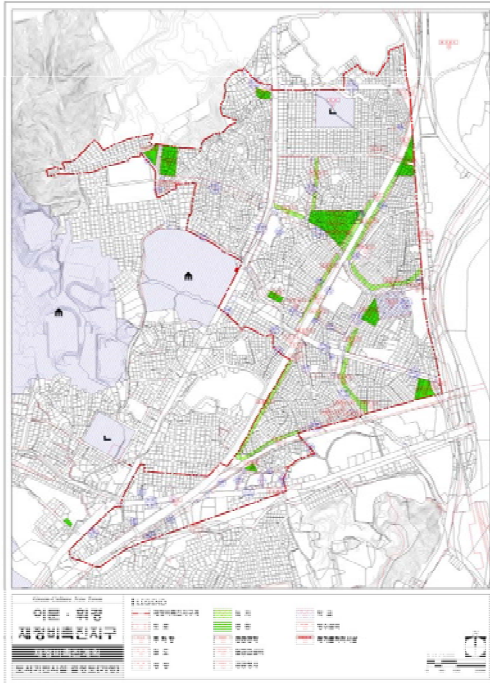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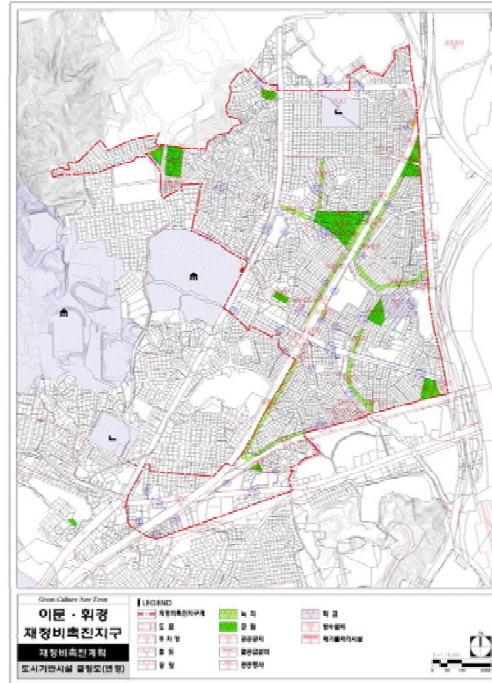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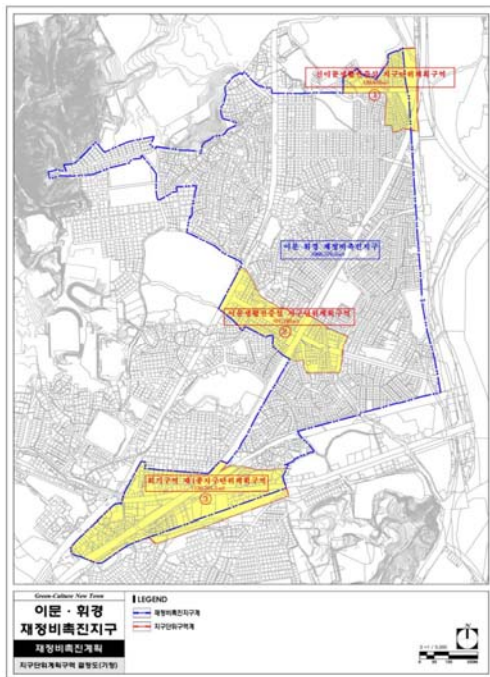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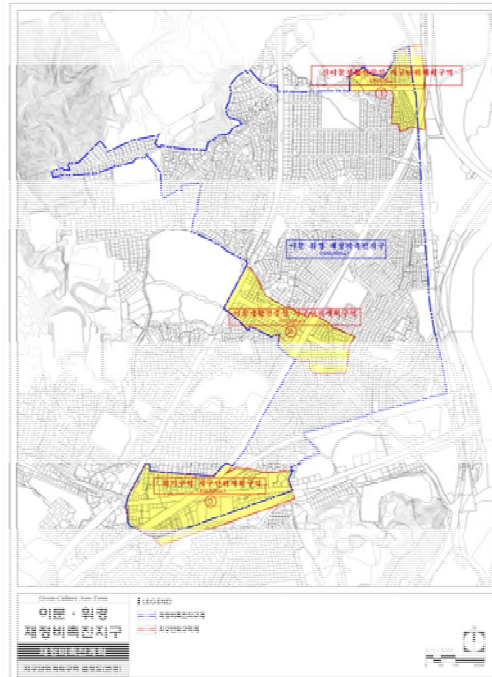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외기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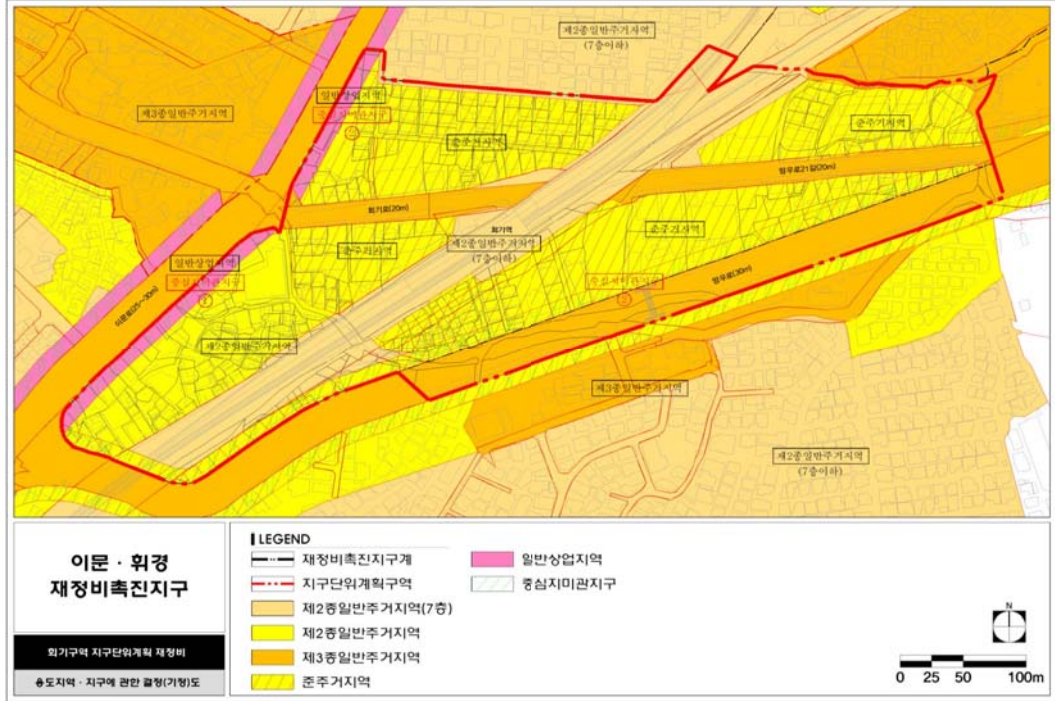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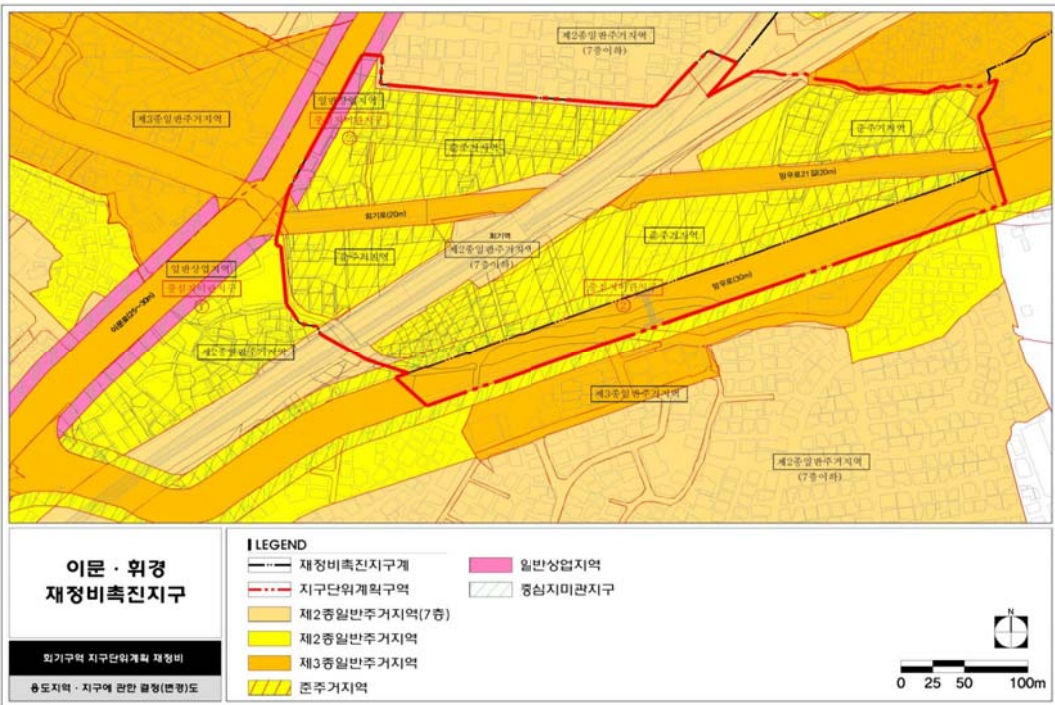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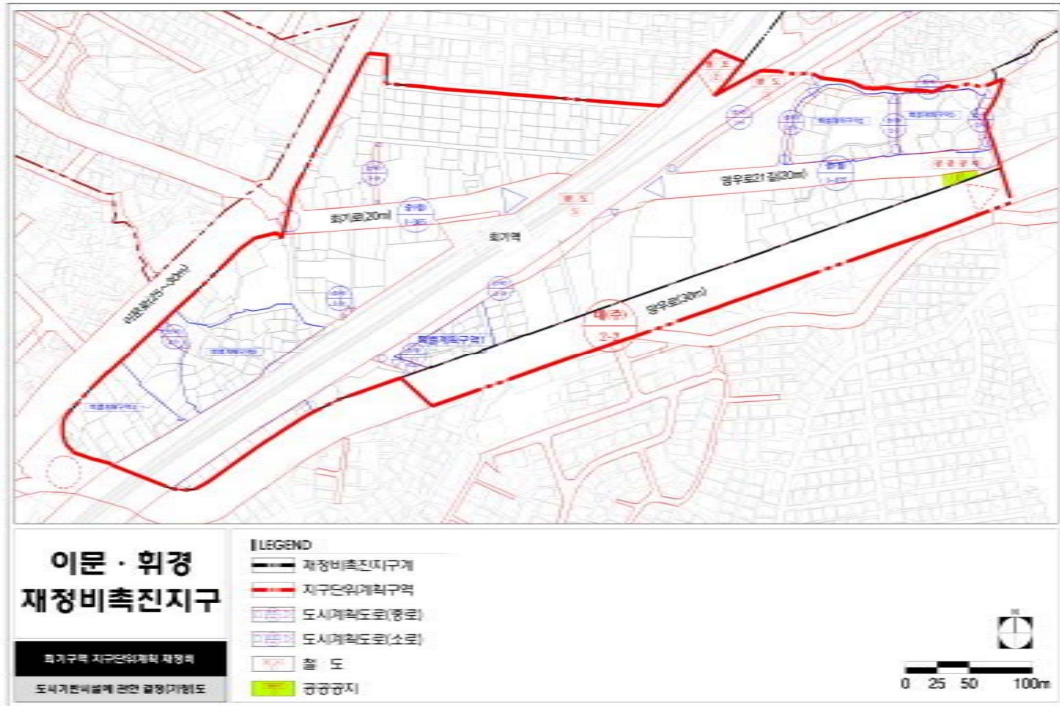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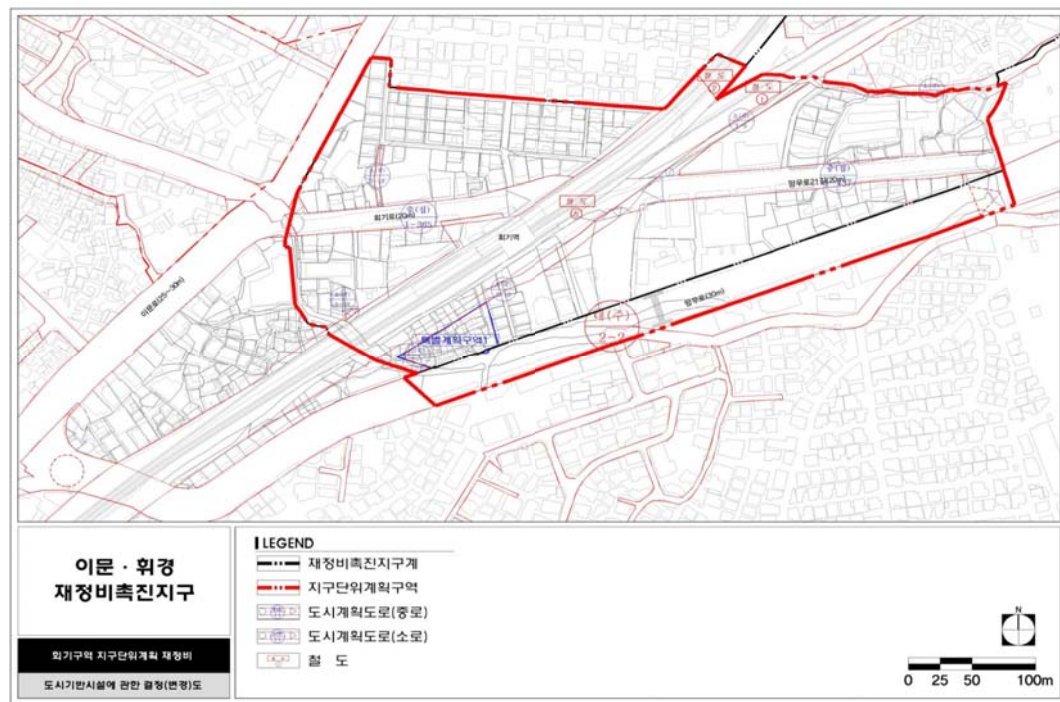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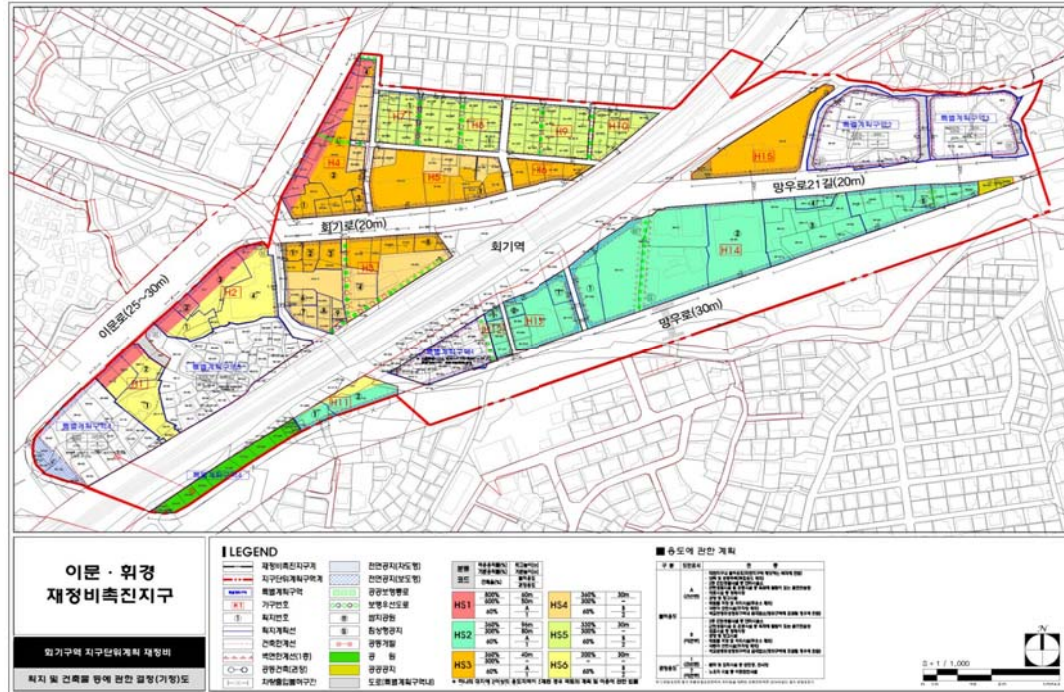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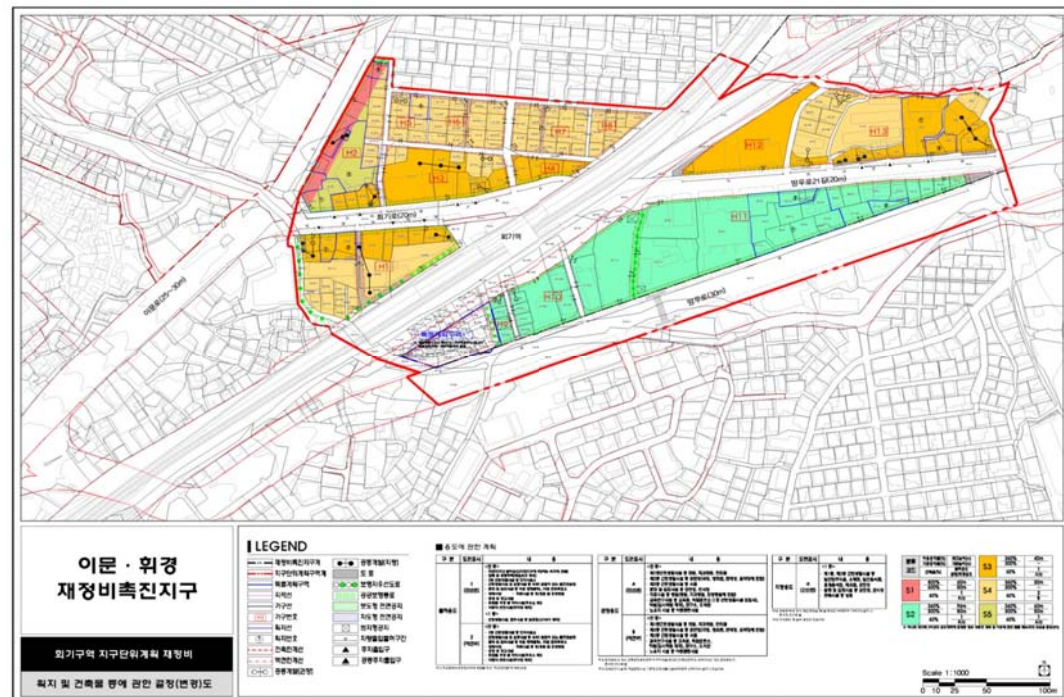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61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일부 지하 공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여의대로 지하병커의 유희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조서
○ 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문화 시설	문화 시설	여의대로 버스환승센터 일부 지하공간 (IFC빌딩 앞)	-	증) 957	957	여의대로(광로1-92)와 중복결정

○ 문화시설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사유
①	문화 시설	VIP 경호용 비밀시설로 1970년대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의도 지하병커를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시설계획과 (☎ 2133-8412) 및 서울특별시청 안전총괄과

(☎ 2133-8041) 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62호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2010.11.25)로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7-9일대(산업인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경미한사항 변경)

구분	자치구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구로구	8	고척동	57-9	2.0ha ¹⁾	190%	60%	7	2	공동	녹지 원형보전 및 공원 확보 산업인아파트
변경	구로구	8	고척동	57-9	1.7ha ²⁾	190%	60%	7	2	공동	남측 임야와 동측 공장부지 토지 일부 제척 (57-161,123,131번지-제척 : 3,082.0㎡) (57-134번지-제척 : 86.0㎡)

※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결과, 정비예정구역 면적오기인 것으로 판단됨 (1.7ha → 2.0ha)
2) 기정 20,220㎡ → 변경 17,052㎡ (감 3,168㎡)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구로구 고척동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구로구 고척동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로구 고척동 57-9 일대	-	증)17,052.0	17,052.0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7,052.0	100.0	-
획지		15,047.5	88.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2,004.5	11.8	· 순부담 면적: 1,706.5㎡(10.008%)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면적 = 2,004.5㎡ - 298.0㎡ - 0㎡ = 1,706.5㎡
	소공원	851.9	5.0	
	도로	1,152.6	6.8	

2)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4,929.0	-	4,929.0	28.9	-
	소계	4,929.0	-	4,929.0	28.9	-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2,123.0	-	12,123.0	71.1	-
	소계	12,123.0	-	12,123.0	71.1	-
합계		17,052.0	-	17,052.0	100.0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55	10	국지 도로	349	고척동 60-14	고척동 57-126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55	10	국지 도로	349	고척동 60-14	고척동 57-7	일반 도로	-	-	일부확폭 ²⁾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145	고척동 57-63	고척동 57-63	일반 도로	-	서고시 제3호 (' 69.1.18)	-

※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어 있는 고시문을 기준으로 기·종점 파악 및 기입

2) 기존 도로 현황 폭원(6~8M)을 대상지 구역내로 확폭하여 10M로 결정

나) 공원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고척동 57-65번지 일대	-	증) 851.9	851.9	-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시 변경될 수 있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어린이놀이터	고척동 57-9번지 일대	-	증) 590.0	590.0㎡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의거 주민공동시설 = 387×2.5×1.25 = 1,209.375㎡이상설치 ⇒ 계획 1,286.0㎡
	주민운동시설		-	증) 220.0	220.0㎡	
	경로당		-	증) 156.0	156.0㎡	
	어린이집		-	증) 200.0	200.0㎡	
	작은도서관		-	증) 120.0	120.0㎡	
부대 시설	관리사무소	고척동 57-9번지 일대	-	증) 100.0	100.0㎡	-
	경비실		-	증) 20.0	20.0㎡	-
	근린생활시설		-	증) 307.7	307.7㎡	-
-	종합복지관		343.2	-	343.2㎡	• 기존 종합복지관 이설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고척동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7,052.0	획지	15,047.5	고척동 57-9번지 일대	12	-	-	12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 (최고)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고척동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7,052.0	획지	15,047.5	고척동 57-9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13 이하	13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구 분		계			비고	
					세대수	비율(%)			
			계		387	100.00			
			50㎡이하		319	82.43			
			50㎡초과 ~ 60㎡이하		40	10.34			
60㎡초과 ~ 85㎡이하		28	7.23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건축법 등 관계법규 및 지침에 의함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17,052.0㎡	15,047.5㎡	2,004.5㎡	298.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1,706.5㎡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면적) = 2,004.5㎡ - 298.0㎡ = 1,706.5㎡				
개발가능 용적률 산 정	○ 계획(기준)용적률 = 190% ○ 허용용적률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1.3α×가중치) = 190% + (190%×1.3×0.1134×0.8301) = 213.25%				
	※ α = 순부담면적 ÷ (구역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 1,706.5 ÷ (17,052.0 - 2,004.5) = 0.1134 ※ 가중치 = 정비기반시설 가중평균 용적률 ÷ 획지 가중평균 용적률 = [(906.9×50%)+(1,097.6×190%)] ÷ 2,004.5 ÷ [(4,022.1×50%)+(11,025.4×190%)] ÷ 15,047.5 = 0.8301				
	○ 정비계획용적률 = 213%이하 적용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환경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공간확장	
	생활환경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구릉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 호우 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산사태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화재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7)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1)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고척동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증) 45세대 - 현황 : 342세대 - 계획 : 387세대	-

8)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2016년 제14차(2016.08.17.)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가결>

※ 조치사항 : 구로구 공고 제2016-1125호(2016. 9. 8) 재공람 참조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서 참조

4.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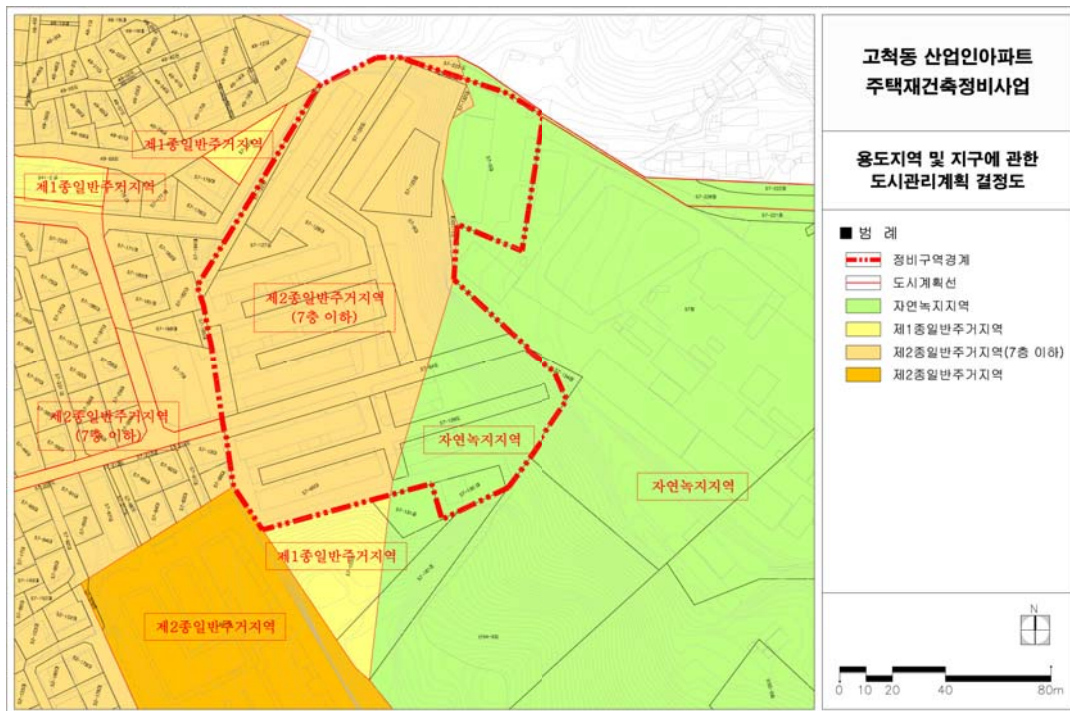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7) 및 구로구 주택과(☎02-860-294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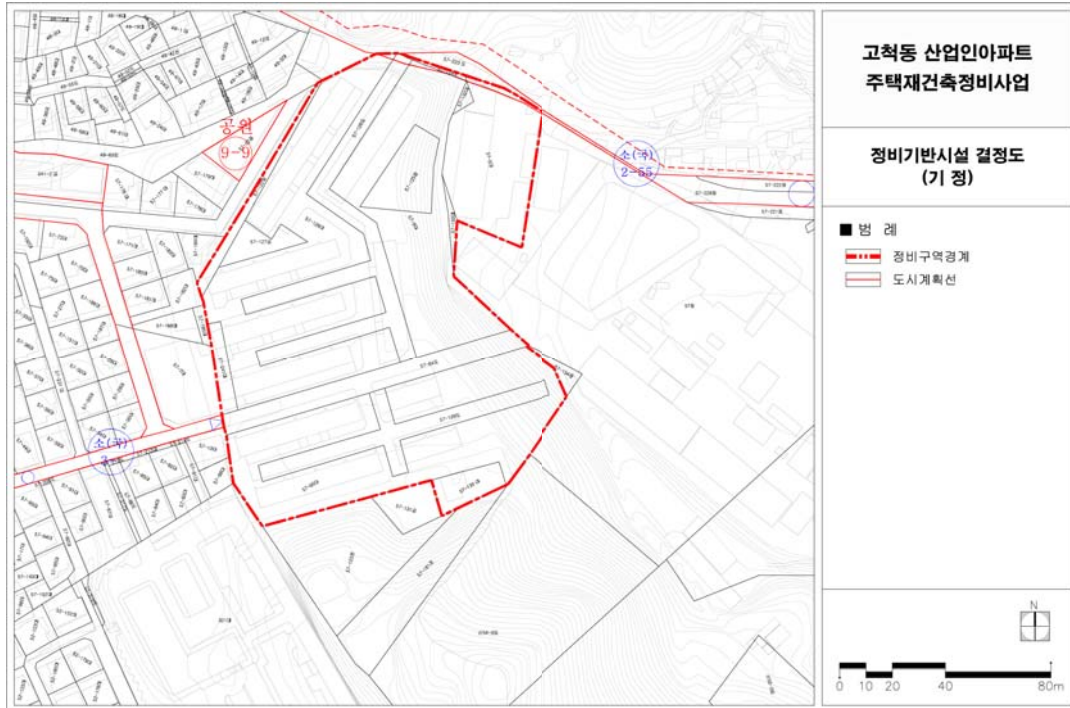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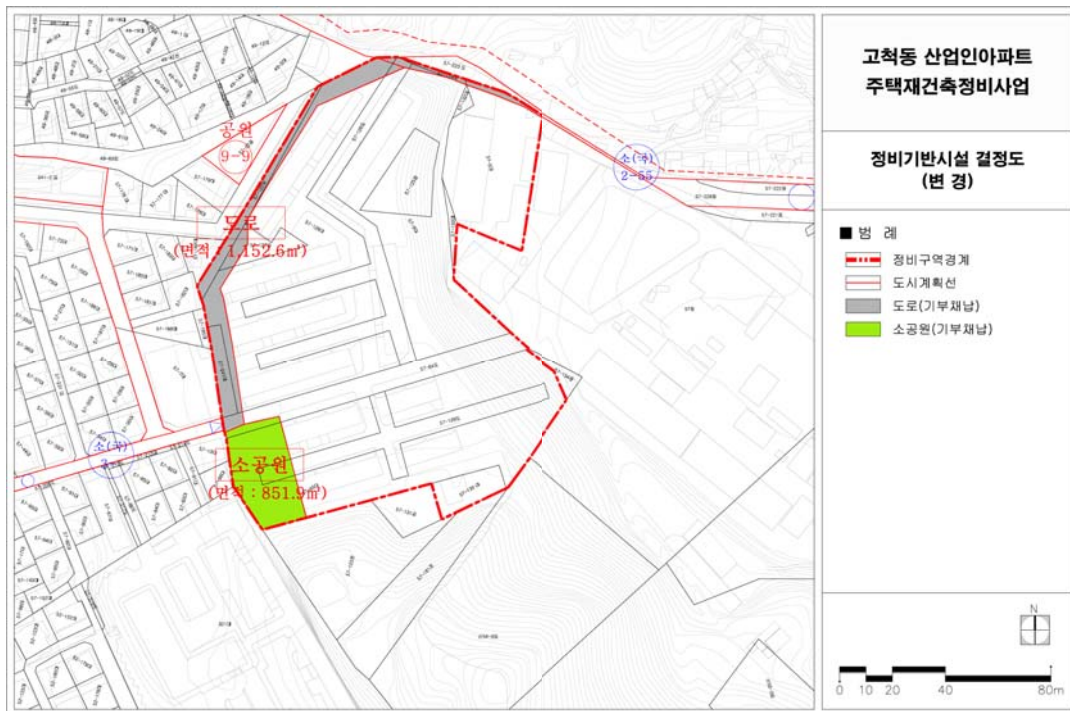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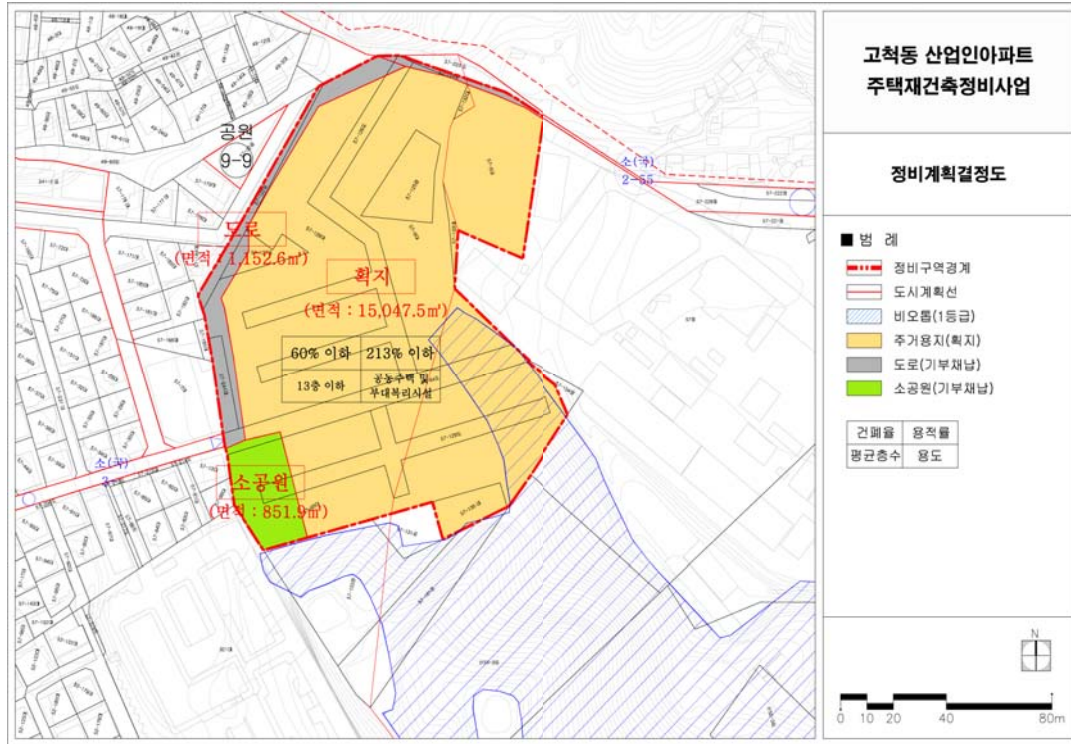
[정비기반시설 결정도(기정)]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



[정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63호

도로 노선의 [] 지정
[○] 변경 고시
[] 폐지

도로법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 제21조제3항

[] 지정
다음과 같이 [○]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폐지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특별시도	특별시도
노선번호		4801	4801
노선명		상왕~동소문선	금호~동소문선
기점		상왕로타리 (상왕십리 806-2)	금호삼거리 (금호동1가 596-1)
종점		동소문동R (동소문동3가72)	동소문동R (동소문동3가72)
주요 통과지		난계로, 보문로	난계로, 보문로
총연장 (킬로미터)		2.89	4.41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
	연장 (킬로미터)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64호

☐ 지정
도로 노선의 ☐ 변경 **고시**
☐ 폐지

도로법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 제21조제3항

☐ 지정
 다음과 같이 ☐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폐지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특별시도	
노선번호		5118	
노선명		장한평~사가정선	
기점		장한평역 (장안3동 464-1)	
종점		장안동삼거리 (장안2동 313-2)	
주요 통과지		장한로	
총연장 (킬로미터)		1.84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연장 (킬로미터)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65호

☐ 지정
도로 노선의 ☐ 변경 **고시**
☐ 폐지

도로법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 제21조제3항

☐ 지정
 다음과 같이 ☐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폐지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특별시도	특별시도
노선번호		4204	4204
노선명		남부순환로~공항로	남부순환로~양천로
기점		남부순환로 (외발산동 213)	남부순환로 (외발산동 213)
종점		공항로 (내발산동 312-16)	양천로 (마곡동 407-39)
주요 통과지		수명로	수명로, 마곡중앙로
총연장 (킬로미터)		1.50	3.58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국도 제6호선(내발산동, 외발산동)
	연장 (킬로미터)	—	1.5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66호

☐ 지정
도로 노선의 ☐ 변경 고시
☐ 폐지

도로법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 제21조제3항

☐ 지정
 다음과 같이 ☐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폐지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특별시도	특별시도
노선번호		4203	4203
노선명		공항~내발산선	공항~발산선
기점		공항동시계 (공항동406-2)	공항동시계 (공항동406-2)
종점		내발산삼거리로타리 (내발산동320-4)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외발산동 427-11)
주요 통과지		남부순환로	남부순환로
총연장 (킬로미터)		3.68	2.79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국도 제6호선(내발산동, 외발산동)	-
	연장 (킬로미터)	3.68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67호

☐ 지정
도로 노선의 ☐ 변경 고시
☐ 폐지

도로법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 제21조제3항

☐ 지정
 다음과 같이 ☐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폐지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 지정 [O] 기존		[] 폐지 [O] 변경	
도로의 종류		특별시도		특별시도	
노선번호		42		42	
노선명		방화~사가정선		방화~사가정선	
기점		행주대교		행주대교	
종점		면목동 (면목동 524-33)		면목동 (면목동 524-33)	
주요 통과지		개화동길, 남부순환로, 둔촌로, 암사동연결, 사가정길		개화동길, 남부순환로, 둔촌로, 암사동연결, 사가정길	
총연장 (킬로미터)		51.76		51.76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국도 제48호선 (개화동, 방화동)	—	국도 제48호선 (개화동, 방화동)	국도 제6호선 (내발산동, 외발산동)
	연장 (킬로미터)	2.69	—	2.69	0.4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68호

**도시관리계획[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31호(2008.7.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2호(2011.7.7.)로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일대	148,400	-	148,400	서고 2008-231호 (2008.07.10.)

주)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8	1,901	40,107	3	685	21,275	2	584	8,871	3	632	9,961
대로	2	622	21,018	1	405	15,593	-	-	-	1	217	5,425
중로	5	1,164	18,293	1	165	4,886	2	584	8,871	2	415	4,536
소로	1	115	796	1	115	796	-	-	-	-	-	-

주) 상기사항은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 도로	5,910 (405)	행당동 (제39광장)	자양동강변	일반 도로	건고 2493 ('66.6.21)	왕십리길, 구의로
변경	대로	1	16	35 (35~40)	주간선 도로	5,910 (405)	행당동 (제39광장)	자양동강변	일반 도로	건고 2493 ('66.6.21)	왕십리길, 구의로
기정	대로	3	125	25	주간선 도로	1,200 (217)	경마장입구 656-75	뚝도 수원지	일반 도로	서고 131 ('78.3.29)	왕십리길
기정	중로	1	133	20	집산 도로	2,270 (165)	성동교	성수동1가	일반 도로	건고198 ('71.4.7)	광나룻길
변경	중로	1	133	20 (30)	집산 도로	2,270 (165)	성동교	성수동1가	일반 도로	건고198 ('71.4.7)	광나룻길
기정	중로	2	75	15	집산 도로	600 (440)	성수동1가 656-1827	성수동1가 685-125	일반 도로	서고 522 ('78.10.23)	성수중길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302	4~25	-	652 (-)	성수동1가 694-3	성수동1가 694-3	-	서고 2011-182 ('11.7.7)	-
기정	소로	3	-	6	집산 도로	258	성수동1가 674-12	성수동1가 685-199	일반 도로	서고 1994-30 ('94.5.13)	유수지길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258	성수동1가 674-12	성수동1가 685-199	일반 도로	서고 1994-30 ('94.5.13)	유수지길
신설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44	성수동1가 670-155	성수동1가 671-289	일반 도로	-	하수도1-1과 일부 중복결정
신설	중로	3	2	12	집산 도로	157	성수동1가 656-741	성수동1가 685-62	일반 도로	-	하수도1-3과 일부 중복결정

주) 특별계획구역의 도로변경 및 신설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하며, ()는 구역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16	대로 1-16	· 도로 폭원 확폭 - 폭원 : 35m → 40m	·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수립 등에 따른 도로 확폭
중로 1-133	중로 1-133	· 도로 폭원 확폭 - 폭원 : 20m → 30m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도로 확폭
소로 3-	중로 3-1	· 도로 폭원 확폭 - 폭원 : 6m → 12m	·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도로 확폭
-	중로 2-1	· 도로 신설 - 폭원 : 15m / 연장 : 144m	·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3-2	·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157m	·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 등에 따른 도로 신설

(2) 철도 : 변경없음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1) 공공청사 : 신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공공 청사	복합청사	성수동1가 670-27 번지 일원	면적(㎡)	-	증) 2,226	2,226	-	-
					높이	-	증) 지하1층,지하3층, 지상1~2층	지하1층,지하3층, 지상1~2층		

주1) 입체적 결정하는 공공청사 면적은 수평투영 면적이며, 공공청사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순부담률 기준(20% 이상)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주2) 공공청사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관할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시 확정하여 준공시 기부채납

주3) 필요시 공공청사 운영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자치구를 포함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추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성수동 일대 필요한 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청사 결정

다. 환경기초시설 결정조서

(1) 하수도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가구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GR-①	GR-①	12,544	-	12,544	◦ 가구(필지)계획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SR-①	SR-①	23,370	증)98	23,468	◦ 특별계획구역②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SR-②	SR-②	24,928	감)1,365	23,563	◦ 특별계획구역① ③, 획지계획	준주거지역
SR-③	SR-③	5,890	-	5,890	◦ 가구(필지)계획	준주거지역
MR-①	MR-①	61,926	-	61,926	◦ 특별계획구역④ ⑤	제1종 · 제2종(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가구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SR-①	SR-①	23,468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 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변경	SR-②	SR-②	23,563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 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나. 획지 및 공동개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용적률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 지정

구 분	완 화 량	완 화 조 건				비 고	
우수 디자인	5%	◦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시					
		구 분		세부항목	적용방법(단위:유형)		
					최소기준	권장기준	
		주동 형식 다양화	1.주거형태 다양화 (1가지유형 10%이상)	가. 3백세대 미만이고 5동 미만	-	2 이상	
				나. 3백세대 또는 5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 1천세대 또는 10동 이상	3 이상	4 이상	
				라. 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4 이상	5 이상	
			2.높이 다양화 (1가지유형 10%이상)	가. 3백세대 미만이고 5동 미만	-	2 이상	
				나. 3백세대 또는 5동 이상	2 이상	3 이상	
		3.평면 및 단면 형태 다양화 (1가지유형 10%이상)	가. 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나. 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다. 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 (복층형, 디자인된 혼합형 등)							
입면의 다양화	4.입면디자인 다양화	가. 벽면율		40% 이상	50% 이상		
		나. 디자인 다양화					
	5.발코니 형태 다양화	가. 세대별 외벽길이 30%이상 지양		30% 이상	30% 이상		
나. 발코니 형태 다양화 (돌출형, 개방형 등)							
〈예외 규정〉							
－ 구청장 등이 동 심의기준을 준용, 설계경기를 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2/3이상 인정시							
－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4/5이상 인정시							
지속 가능형 건축구조 (10%이내)	라멘구조 (10%)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세부평가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무량판 구조 (7%)	분 야		완 화 조 건	비 고		
		건축구조	◦ 철골콘크리트, 철골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 기둥과보가 일체화된 라멘구조 － 기둥과 슬래브가 일체화된 무량판구조 ◦ 계단실, 엘리베이터 코어, 외기에 면한 축벽, 기타 평면계획상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력벽체 설치 허용				
		공용설비	◦ 각 세대별 공용설비공간은 구조체에서 분리 시공하고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점검구를 확보할 것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5%이내)	신재생 에너지 (2%)	◦ 건축비의 1%이상 － 신재생에너지 설계는태양광,태양열, 지열, 연료전지,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한함					
	친환경 최우수 등급 (3%)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최우수(85점 이상)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 변경

구 분		완화량	완화조건		
인 센 티 브	우수디자인 (지역특성반영)	10%	◦ 주변지역과 연계한 동선계획 수립시(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 저층부와 고층부의 용도를 분리할 수 있는 배치계획 수립 ◦ 저층부 붉은벽돌을 활용한 디자인 계획 수립 ※ 공공건축가 자문을 거친 경우 우수디자인 인센티브를 인정함		
	장수명주택	3%	우수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최대 12%	구 분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2%	8%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8%	4%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최대 3%	20% 초과	20%이하 15%초과	15%이하10%초과
			3%	2%	1%
허용용적률 최대		☐ 최대 20%이내에서 적용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결정(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체계 변경	◦ 도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반영에 따른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항목 적용	

(3)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 높이 결정조서 - 기정

구 분		최 고 높 이	비 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0m 이하	◦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적용 ◦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 선제한(H≤1.5D) 배제
	1종·2종(7층이하)·2종 → 3종	90m 이하	
기타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사선제한 H≤1.5D 적용	GR-①

주)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공공용지의 최고높이는 90m이하

■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최 고 높 이	비 고
특별계획구역1		110m 이하	
특별계획구역2	준주거지역	110m 이하	
	자연녹지지역	4층 이하	
특별계획구역3, SR-②-1, SR-②-2, SR-③		90m 이하	◦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적용
1종·2종(7층이하)·2종 → 3종		90m 이하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사선제한 H≤1.5D 적용	GR-①

주)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공공용지의 최고높이는 90m이하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특별계획구역1 최고높이 변경 (90m 이하 → 110m 이하)	◦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최고높이 변경	
◦ 특별계획구역2 준주거지역 최고높이 변경 (90m 이하 → 110m 이하)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최고높이 변경	
◦ 특별계획구역2 자연녹지지역 최고층수 적용 (4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최고층수 적용	

3)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축한계선 결정조서 - 기정

구 분		건축한계선	비 고
간선부	간선도로변 (왕십리길)	3m, 5m	◦ 주요 간선도로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상징성 있는 가로경관 형성
이면부	서울숲 및 유수지, 특점상업지역 연접부	10m	◦ 서울숲과 연계한 보행 및 녹지의 연속성 확보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성수중길	3m, 6m	◦ 보행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도모
	이면도로변	2m, 3m	◦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1m	◦ 협소한 보도 및 이면도로 확보

■ 건축한계선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건축한계선	비 고
간선부	간선도로변 (왕십리길)	3m, 5m	◦ 주요 간선도로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상징성 있는 가로경관 형성
이면부	서울숲 및 유수지, 특점상업지역 연접부	6m, 10m	◦ 서울숲과 연계한 보행 및 녹지의 연속성 확보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성수중길	3m, 6m	◦ 보행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도모
	이면도로변	2m, 3m, 6m	◦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1m	◦ 협소한 보도 및 이면도로 확보
	획지 SR-②-1 (특별계획구역1과 연접부)	3m	◦ 가로활성화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신설 공간 확보

■ 건축한계선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이 면 부	유수지	◦ 특별계획구역1, 2 유수지변 건축한계선 폭원 변경 (10m → 6m)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 1,2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건축한계선 폭원 변경 및 신설	
	이면도로변	◦ 특별계획구역1, 2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폭원 변경 - 중로2-1호선변 양측(3m → 6m) - 특별계획구역1 남측 중로3-2호선변(3m 신설)		
	특별계획구역1 획지 SR-②-1 연접부	◦ SR-②-1 획지내 특별계획구역1과 연접부 3m 건축한계선 신설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 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건축한계선 신설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대지내 공지 및 통로 - 지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인도 부속형)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3m, 5m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인도/차도 부속형) ◦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1m
공개공지 위치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3개소)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 주요 보행결절점, 전면도로 가각부 및 전면도로변에 설치	도면참고
공공보행통로		◦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및 보행우회 방지 ◦ 주요 녹지체계와의 연계성 고려 - 특별계획구역①~③, 특별계획구역⑤ : 폭 8m	사업시행시 설치 및 조성

■ 대지내 공지 및 통로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인도 부속형)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3m, 5m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인도/차도 부속형) -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1m, 3m, 6m
공개공지 위치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3개소)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 주요 보행결절점, 전면도로 각각부 및 전면도로변에 설치	도면참고
공공보행통로		-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및 보행우회 방지 - 주요 녹지체계와의 연계성 고려 - 특별계획구역③, 특별계획구역⑤ : 폭 8m - 특별계획구역①, ② 유수지변 공공보행통로(폭 8m) 계획 폐지 - 특별계획구역①과 SR-②-1 획지 연접부에 왕십리로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신설(폭15m) - 특별계획구역① : SR-②-1 획지와 연접부 12m, 그 외 : 15m - SR-②-1 획지 : 특별계획구역①과 연접부 : 3m	사업시행시 설치 및 조성

■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공공보행통로	특별계획구역①, ② 공공보행통로 계획 폐지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공공 보행통로 계획 폐지	
	특별계획구역①과 SR-②-1 획지 연접부에 공공보행통로 신설(폭15m)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유수지변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폐지하고 왕십리로로 연결되는 가로 활성화측에 공공보행통로 신설	

2) 차량동선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가. 특별계획구역1 : 변경

■ 개요

구역명	위 치	면 적 (㎡)
특별계획구역1	성수동1가 671-178 일대	17,329㎡

■ 계획지침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용도지역 / 지구		◦ 준주거지역/중심지 미관지구 (왕십리변 12m)	◦ 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4%이상 순부담(조성후 기부채납) ◦ 도로, 공원, 공공공지 위치지정(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도로 변경(확폭)2개소, 도로 신설(일부)1개소 / 공원 1개소 / 공공공지 1개소	◦ 구역면적의 14% 이상 순부담(조성후 기부채납) ◦ 도로 변경(확폭) 2개소, 도로 신설(일부) 2개소 / 공공청사 공공기여 / 공원계획 폐지 / 공공공지계획 폐지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소매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변경없음	
	불허용도	◦ 해당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불허용도 ◦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식장, 정신병원, 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 세부개발계획수립 전, 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허용되는 용도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상가용도의 용도변경을 불허함	◦ 변경없음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변경없음	
	용적률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사항 : 기준 300% / 허용 320% / 상한 400% 이하 - 일반건축물 : 기준 300% / 허용400% / 상한 법적용적률 2배 이하	◦ 기준300% / 허용320% / 상한400% 이하	
	최고높이	◦ 90m 이하	◦ 110m 이하	
기타 사항	대지교환	◦ 획지 ㉒-1번과 대지교환(구역정형화)	◦ 대지교환계획 폐지	
	건축 한계선	◦ 왕십리길변:5m / 이면도로변:3m / 유수지 변:10m	◦ 왕십리길변:5m / 이면도로변:3m, 6m / 유수 지변:6m	
	공공 보행통로	◦ 공원을 연계하는 남북공공보행통로 (폭8m)	◦ 공원을 연계하는 남북공공보행통로 계획 폐지, 중로 3-2에서 왕십리길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신설 - SR-㉒-1 획지 연결부 : 폭12m, 그 외 : 15m	
	차량출입 금지구간	◦ 왕십리길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변경없음	

※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 용적률의 10%이상을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로 계획하여야 한다.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채납 면적 및 선형 변경가능

나. 특별계획구역2 : 변경

■ 개요

구역명	위 치	면 적 (㎡)
특별계획구역2	성수동1가 670-27 일대	27,341㎡

■ 계획지침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용도지역 / 지구		◦ 준주거지역 / 중심지 미관지구 (왕십리변 12m)		◦ 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20% 이상 순부담(조성후 기부채납) ◦ 도로, 공원 위치지정(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도로 변경(확폭)3개소, 도로 신설(일부)1개소 / 공 원 1개소)		◦ 구역면적의 20% 이상 순부담(조성후 기부채납) ◦ 도로 변경(확폭)3개소, 도로 신설(일 부) 1개소 / 공공청사 1개소 결정 / 공원 1개소 계획 폐지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소매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변경없음	
	불허 용도	◦ 해당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불허용도 ◦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 식장, 정신병원, 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안마원, 단란 주점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 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 세부개발계획수립 전, 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 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허용되는 용 도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본 지구단위계획에 서 결정한 상기용도의 용도변경을 불허함		◦ 변경없음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준주거	60% 이하	
			자연녹지	20% 이하	
	용적률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사항 : 기준 300% / 허용 320% / 상한 400% 이하 － 일반건축물 : 기준 300% / 허용 400% / 상한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준주거	기준300% / 허용320% / 상한400% 이하	
			자연녹지	50% 이하	
	최고 높이	◦ 90m 이하	준주거	110m 이하	
			자연녹지	4층 이하	
기타 사항	건축 한계선	◦ 왕십리길변:5m / 이면도로변:3m / 유수지변:10m	◦ 왕십리길변:5m / 이면도로변:6m / 유수지변:6m		
	공공보행 통로	◦ 공원을 연계하는 남북공공보행통로(폭8m)	◦ 남북공공보행통로 계획 폐지		
	차량출입 금지구간	◦ 왕십리길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변경없음		

※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 용적률의 10%이상을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로 계획하여야 한다.

※ 도시기본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채납 면적 및 선형 변경가능

다. 특별계획구역3 : 변경

■ 개요

구역명	위 치	면 적 (㎡)
특별계획구역3	성수동1가 685-295 일대	7,214㎡

■ 계획지침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정	변경	
용도지역 / 지구	◦ 준주거지역 / 중심지 미관지구 (왕십리변 12m)	◦ 준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4%이상 순부담(조성후 기부 채납) ◦ 도로(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도로 변경(확폭)2개소)	◦ 구역면적의 14%이상 순부담(조성후 기부 채납) ◦ 도로(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도로 신설(일부) 1개소, 변경(확폭)2개소)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소매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변경없음	
	불허용도 ◦ 해당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불허용도 ◦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 설, 장례식장, 정신병원, 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 습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 원, 단란주점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 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 세부개발계획수립 전, 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에 허용되는 용도는 용도변경이 가능하 나,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상기 용도의 용도변경을 불허함	◦ 변경없음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변경없음
	용적률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사항 : 기준 300% / 허용 320% / 상한 400% 이하 - 일반건축물 : 기준 300% / 허용 400% / 상한 법적용적률 2배 이하	◦ 변경없음
	최고높이	◦ 90m 이하	◦ 변경없음
기타 사항	건축 한계선	◦ 왕십리길변 : 5m / 이면도로변 : 3m, 10m	◦ 서울숲길변 : 3m / 유수지변 : 10m
	공공 보행통로	◦ 공원을 연계하는 남북공공보행통로(폭8m)	◦ 변경없음
	공개공지	◦ 공원을 연계토록 공개공지 조성(약557㎡ 이상)	◦ 변경없음
	차량출입 금지구간	◦ 왕십리길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 ※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 용적률의 10%이상을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로 계획하여야 한다.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가(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채납 면적 및 선형 변경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기존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및 하수관거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및 선형변경이 가능할 경우 변경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상부는 공공공지 또는 도로로 결정한다.

라. 특별계획구역4, 특별계획구역5 : 변경없음

6.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III.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사항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1	성동구 성수동1가 671-178 일대	17,329	-	17,329	2011.07.07. (서고 2011-182호)

주)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329	-	17,329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7,329	-	17,329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구의로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성동교 ~잠실교	141,600 (1,216)	5,900 (101)	12	서고 제164호 (1982.4.22.)	

주) ()는 특별계획구역내 사항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4	467	3,739	1	108	504	1	144	1,494	2	215	1,741
대로	1	108	504	1	108	504	-	-	-	-	-	-
중로	3	359	3,225	-	-	-	1	144	1,494	2	215	1,741
소로	-	-	-	-	-	-	-	-	-	-	-	-

주) 상기사항은 특별계획구역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 도로	5,910	행당동 (제39광장)	자양동강변	일반 도로	건고 2493 ('66.6.21)	왕십리길, 구의로
변경	대로	1	16	35 (35~40)	주간선 도로	5,910 (108)	행당동 (제39광장)	자양동강변	일반 도로	건고 2493 ('66.6.21)	왕십리길, 구의로
기정	소로	3	-	6	집산 도로	258	성수동1가 674-12	성수동1가 685-199	일반 도로	서고 1994-30 ('94.5.13)	유수지길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258 (107)	성수동1가 674-12 (671-289)	성수동1가 685-199	일반 도로	서고 1994-30 ('94.5.13)	유수지길
신설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44	성수동1가 670-155	성수동1가 671-289	일반 도로	-	하수도 1-1과 일부 중복결정
신설	중로	3	2	12	집산 도로	157 (108)	성수동1가 656-741	성수동1가 685-62	일반 도로	-	하수도 1-3과 일부 중복결정

주) ()는 특별계획구역1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16	대로 1-16	· 도로 폭원 확폭 - 폭원 : 35m → 40m	·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 등에 따른 도로 확폭
소로 3-	중로 3-1	· 도로 폭원 확폭 - 폭원 : 6m → 12m	·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 등에 따른 도로 확폭
-	중로 2-1	· 도로 신설 - 폭원 : 15m / 연장 : 144m	·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 등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3-2	·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157m (구역내 108m)	·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 등에 따른 도로 신설

나. 환경기초시설 결정조서

(1) 하수도 : 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1-1	하수도 (뚝도유수로)	성수동1가 671-346	성수동1가 671-289	536 (150)	1,286	건고 709 ('67.10.25.)	중로2-1과 중복결정
기정	1-3	하수도 (뚝도유수로)	성수동1가 671-29	성수동1가 685-199	168	(1,325)	건고 709 ('67.10.25.)	중로3-2와 중복결정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가구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SR-㉒	SR-㉒	24,928	감)1,365	23,563	◦ 특별계획구역① ③, 획지계획	준주거지역

■ 가구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SR-㉒	SR-㉒	23,563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 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2)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A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소매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좌동	왕십리부도심과 독섬상업지역을 연계

■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I (공 통)	·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불허용도 · 단독주택 ·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식장, 정신병원, 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좌동	전구역
II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좌동	준주거지역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 변경없음

■ 건폐율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준주거지역	60% 이하	60% 이하	

(2) 용적률

■ 용적률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준용적률	300%	300%	
허용용적률	320%	320%	
상한용적률	400% 이하	400% 이하	

주) 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 용적률의 10%이상을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로 계획하여야 함

주) 상한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 × (1+1.3×가중치× α) (단,공동주택(주거복합 포함)수립시 적용 용적률은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가중치× α))

-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가중치란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 변경

구 분		완화량	완화조건		
인센티브	우수디자인 (지역특성반영)	10%	◦ 주변지역과 연계한 동선계획 수립시(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 저층부와 고층부의 용도를 분리할 수 있는 배치계획 수립 ◦ 저층부 붉은벽돌을 활용한 디자인 계획 수립 ※ 공공건축가 자문을 거친 경우 우수디자인 인센티브를 인정함		
	장수명주택	3%	우수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최대 12%	구 분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2%	8%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8%	4%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최대 3%	20% 초과	20%이하 15%초과	15%이하10%초과
			3%	2%	1%
허용용적률 최대		☐ 최대 20%이내에서 적용			

(3) 건축물의 높이 : 변경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최 고 높 이		비 고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특별계획구역1	90m 이하	110m 이하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 최고높이 변경 (90m 이하 → 110m 이하)	○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최고높이 변경	

3)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축한계선 결정(변경)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간선부	간선도로변 (왕십리길)	5m	5m	- 주요 간선도로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상징성 있는 가로경관 형성
이면부	유수지	10m	6m	- 서울숲과 연계한 보행 및 녹지의 연속성 확보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이면도로변	3m	중로2-1호변 6m 중로3-2호변 3m	-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 건축한계선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이면부	유수지	특별계획구역1 유수지변 건축한계선 폭원 변경 (10m → 6m)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건축한계선 폭원 변경 및 신설	
	이면도로변	- 특별계획구역1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폭원 변경 및 신설 - 중로2-1호변 : 3m → 6m - 중로3-2호변 : 3m 신설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위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물의 형태	저층부	전구역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금지	좌동	
	고층부	폭20m이상 도로변 서울숲 인접	가로변 개방감 확보 및 미관증진을 위해 탑상형 및 고층부 탑상형 권장	좌동	
건축물의 외관	외벽면	전구역	-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는 주변건축물과 조화 - 외벽면 전체의 원색 페인트 마감 금지	좌동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폭20m이상 도로변	1층 벽면 투시벽 처리 및 1층 투시형 셔터 설치	좌동	
	야간조명	폭20m이상 도로변	10층 이상 건축시 상향식 조명 설치 - 옥외 설치 미술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설치 권장	좌동	
기타사항	옥외 광고물	전구역	서울특별시 및 성동구 옥외광고물 관리지침 준용	좌동	
	미관 저해시설	전구역	옥탑층 미관저해시설의 도로변 설치 금지	좌동	
	담장	특별계획구역 수립지역	무(無)담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으로 조성함	좌동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주) 저층부(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공공청사)는 붉은벽돌을 이용하여 주변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는 입면계획 수립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계획 : 변경

■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인도 부속형)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대로1-16호선변(5m) 건축한계선 내 인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건축한계선 5m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인도/차도부속형) -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중로2-1호선변(6m) 및 중로3-1호선변(6m), 중로3-2호선변(3m) 건축한계선 내 인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건축한계선 3m, 6m
공개공지 위치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3개소)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 주요 보행결절점, 전면도로 가각부 및 전면도로변에 설치	해당없음	
공공보행통로		-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및 보행우회 방지 - 주요 녹지체계와의 연계성 고려 - 특별계획구역①~③, 특별계획구역⑤ : 폭 8m	- 유수지변 공공보행통로(8m) 폐지 - 특별계획구역①과 SR-②-1 획지 연결부에 왕십리로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신설(폭 15m) - 특별계획구역① : SR-②-1 획지와 연결부 12m, 그 외 : 15m - SR-②-1 획지 : 건축한계선 내 3m	

■ 대지내 통로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공공보행통로	특별계획구역1 구역내 유수지변 공공보행통로 계획 폐지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유수지변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폐지하고 왕십리로로 연결되는 가로활성화촉에 공공보행통로 신설	
	특별계획구역①과 SR-②-1 획지 연결부에 공공보행통로 신설(폭15m)		

2) 차량동선 계획 : 변경없음

■ 차량출입금지구간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 주요 간선도로의 원활한 차량흐름 유도 및 보행단절 최소화 - 간선도로에서 차량출입을 허용한 필지라도 공동개발을 통해 이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간선도로 차량출입 불허	대로1-16호선변 및 중로2-1호선 일 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간선도로변 (왕십리길)

3) 공공시설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 구역면적의 총 14% 이상 순부담

구 분	산출값	산출식	
공공 청 사	대지지분	788.21㎡	공동주택 대지면적 : 13,590㎡ 공공청사 전용면적 : 2,325.28㎡ (5.80%) 공공청사 대지지분 : 13,590㎡ X 5.80% = 788.21㎡
	연면적	4,858.16㎡	주거전용면적 : 33,713.60㎡ (84.09%) 판매 및 근생 전용면적 : 4,052.71㎡ (10.11%) 공공청사 전용면적 : 2,325.28㎡ (5.80%) 전용면적 합계 : 40,091.59㎡ (100.00%)
	건축비	2,313,000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안) 공공업무사무소 적용
	부지가액	12,294,000원/㎡	성수동1가 671-28 6,147,000원/㎡ X 2 = 12,294,000원/㎡
	환산부지면적	914.02㎡	연면적 X 건축비 ÷ 부지가액 = 4,858.16㎡ X 2,313,000원/㎡ / 12,294,000원/㎡
	기부채납	1,702.23㎡	대지지분 + 환산부지면적 = 788.21㎡ + 914.02㎡
도 로	1,178㎡	총 도로면적 : 3,739㎡ 도로 기부채납면적 : 1,178㎡ (도로내 국공유지 제외면적 : 2,561㎡)	
합 계	2,880.23㎡	(공공청사 + 도로) / 구역면적 → (1,702.23㎡ + 1,178㎡) / 14,768㎡ X 100% = 19.5%	

주1) 공공청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로 공공기여

주2) 공공청사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순부담률 기준(14% 이상)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주3) 공공청사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관할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시 확정하여 준공시 기부채납

주4) 필요시 공공청사 운영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자치구를 포함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추진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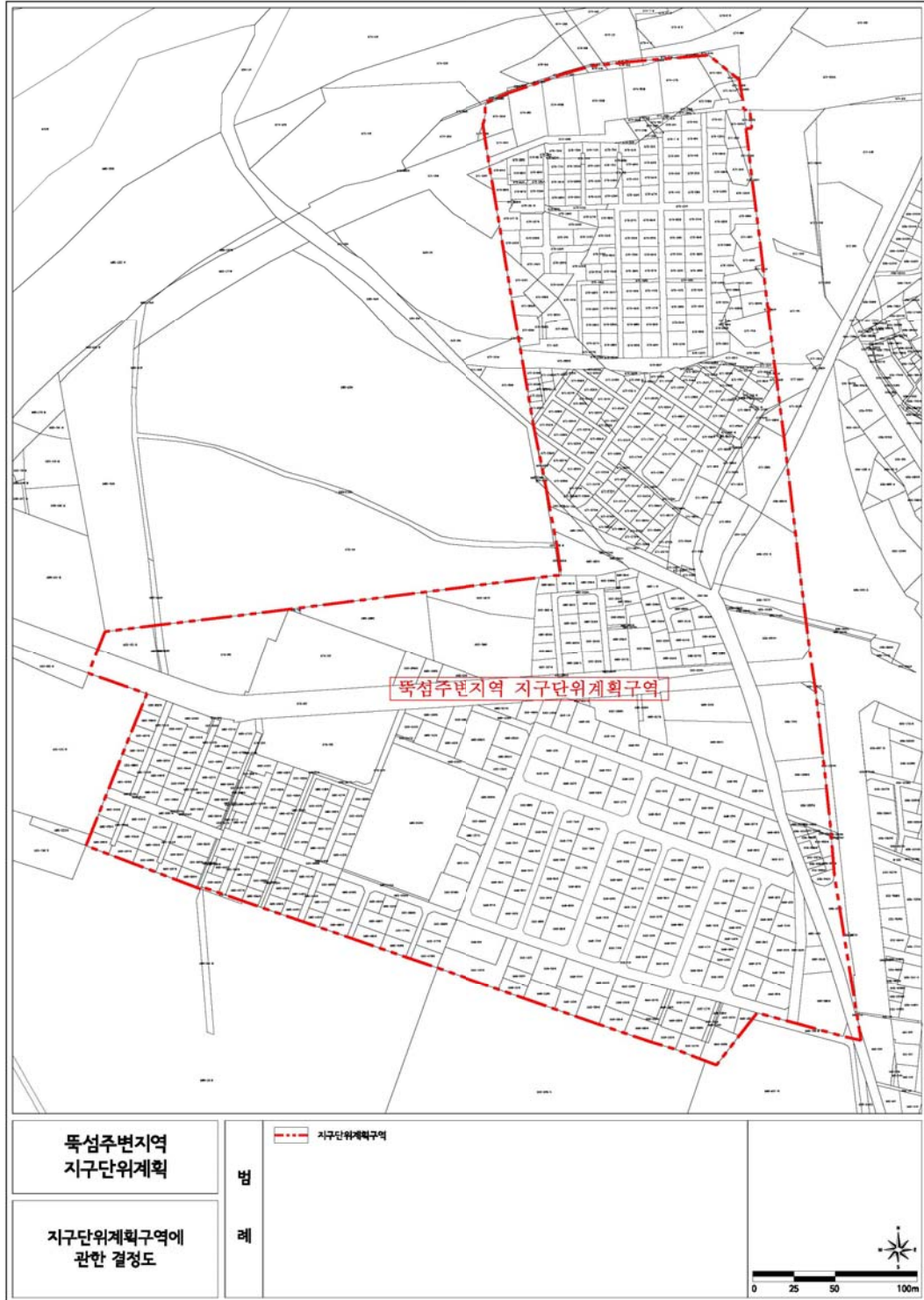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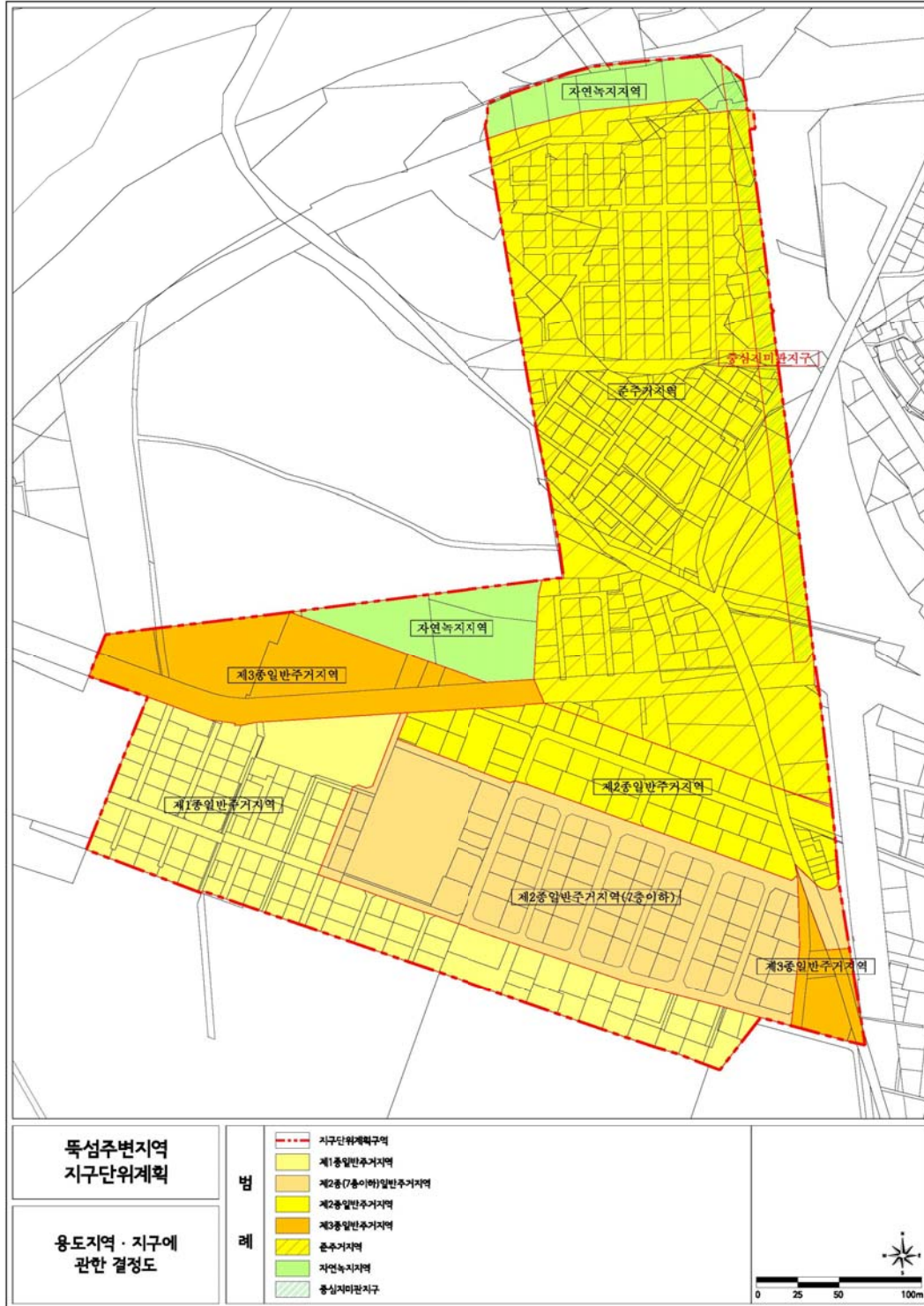
VI.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동구 도시계획과(☎02-2286-5561) 및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ultn.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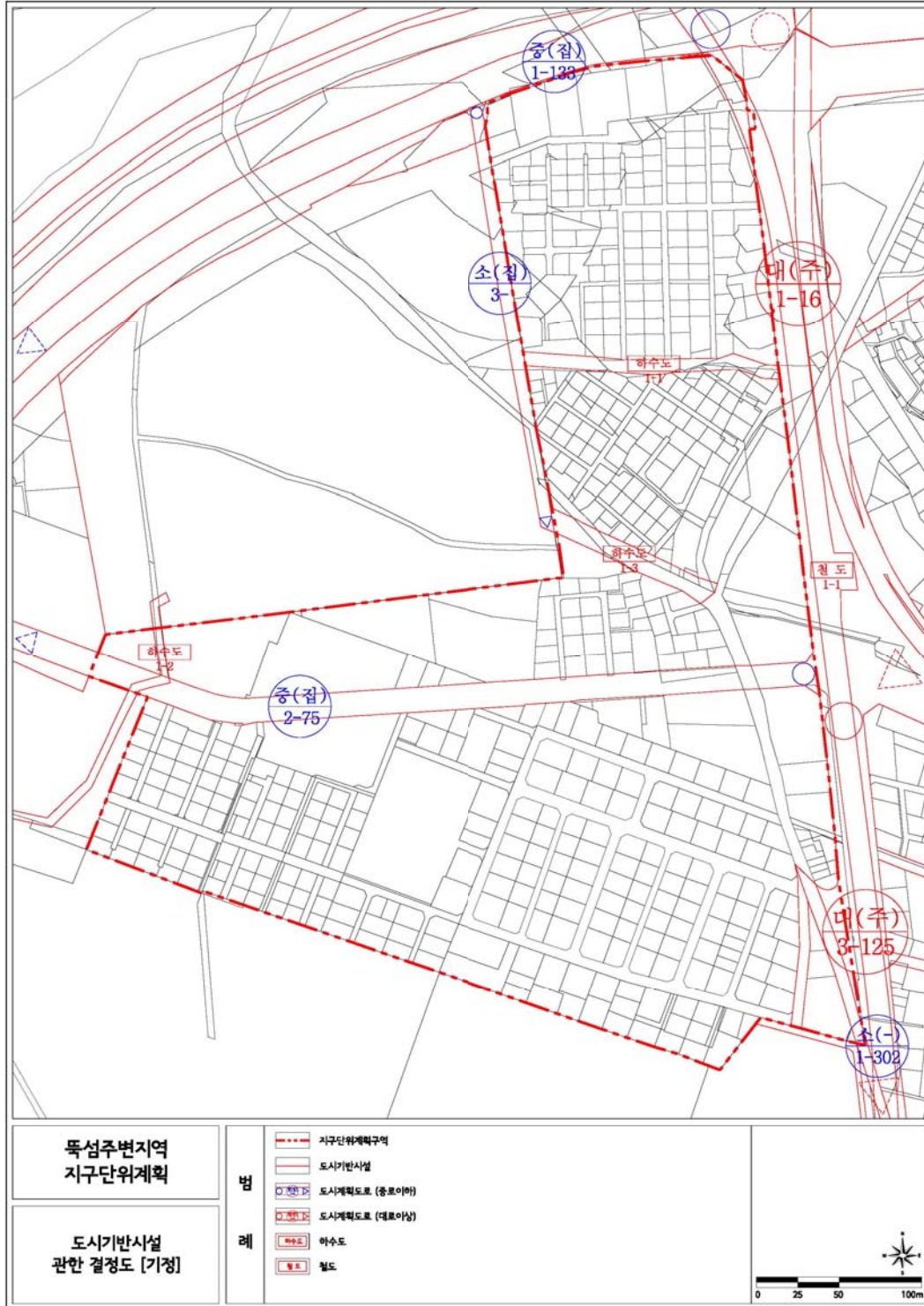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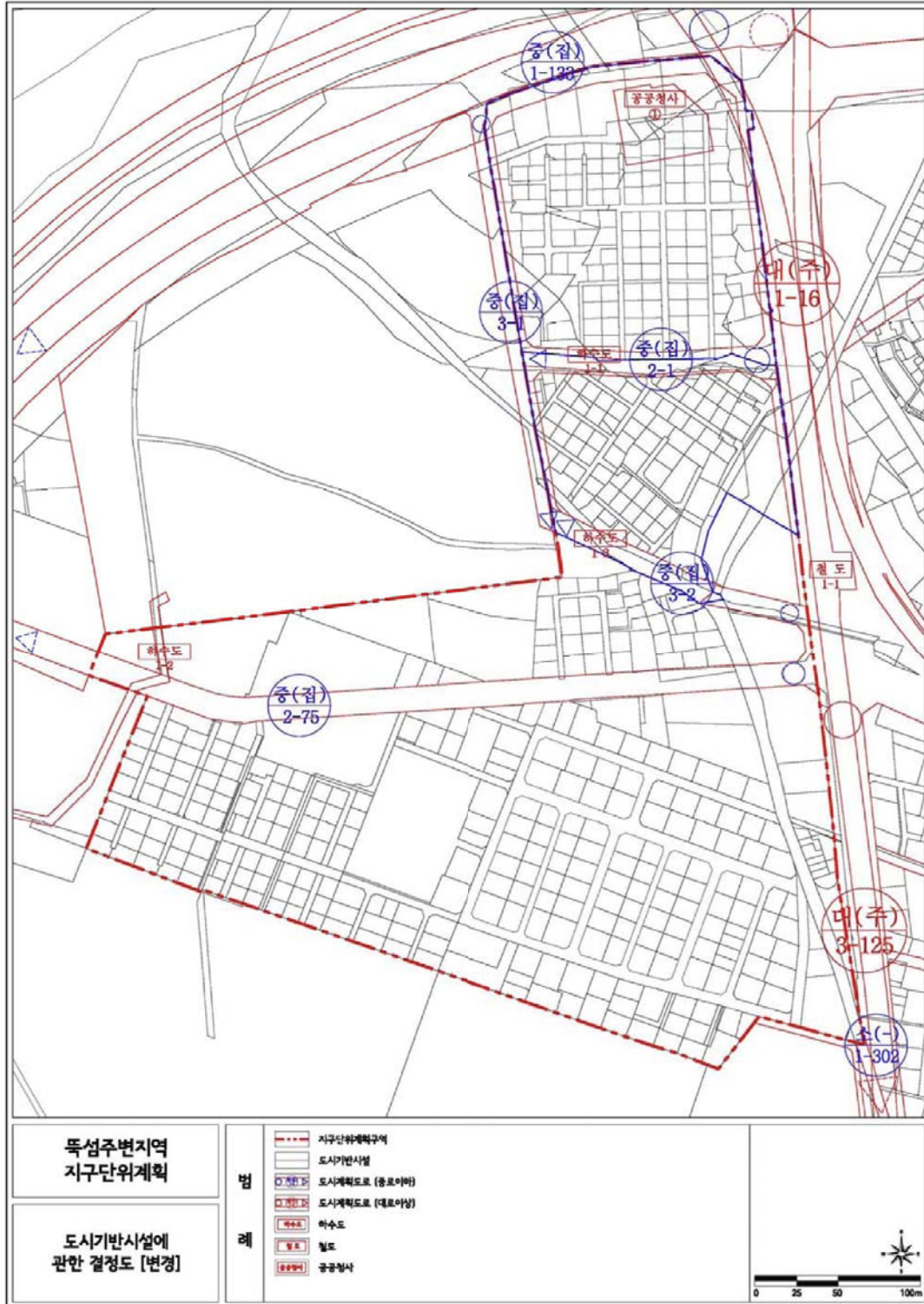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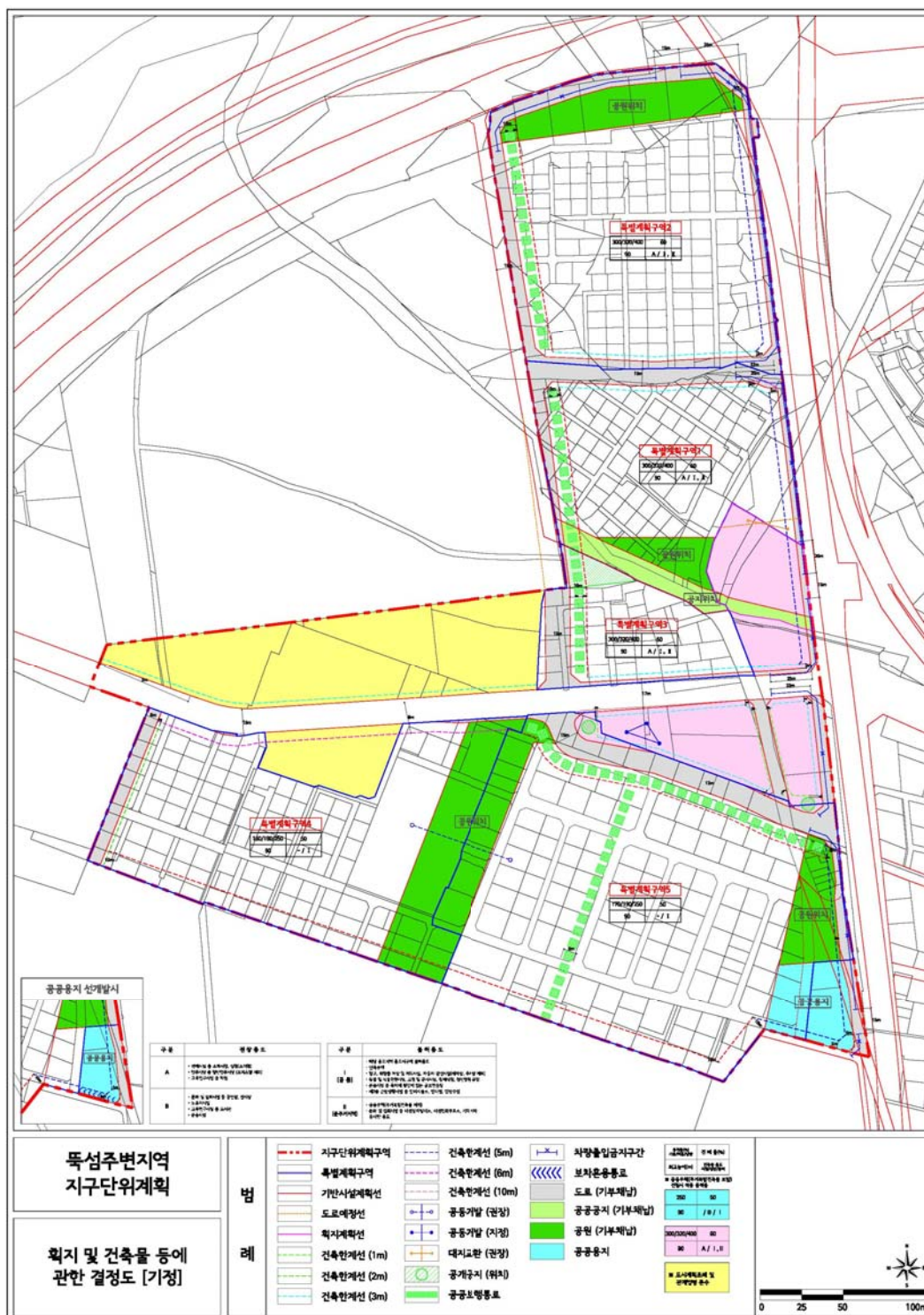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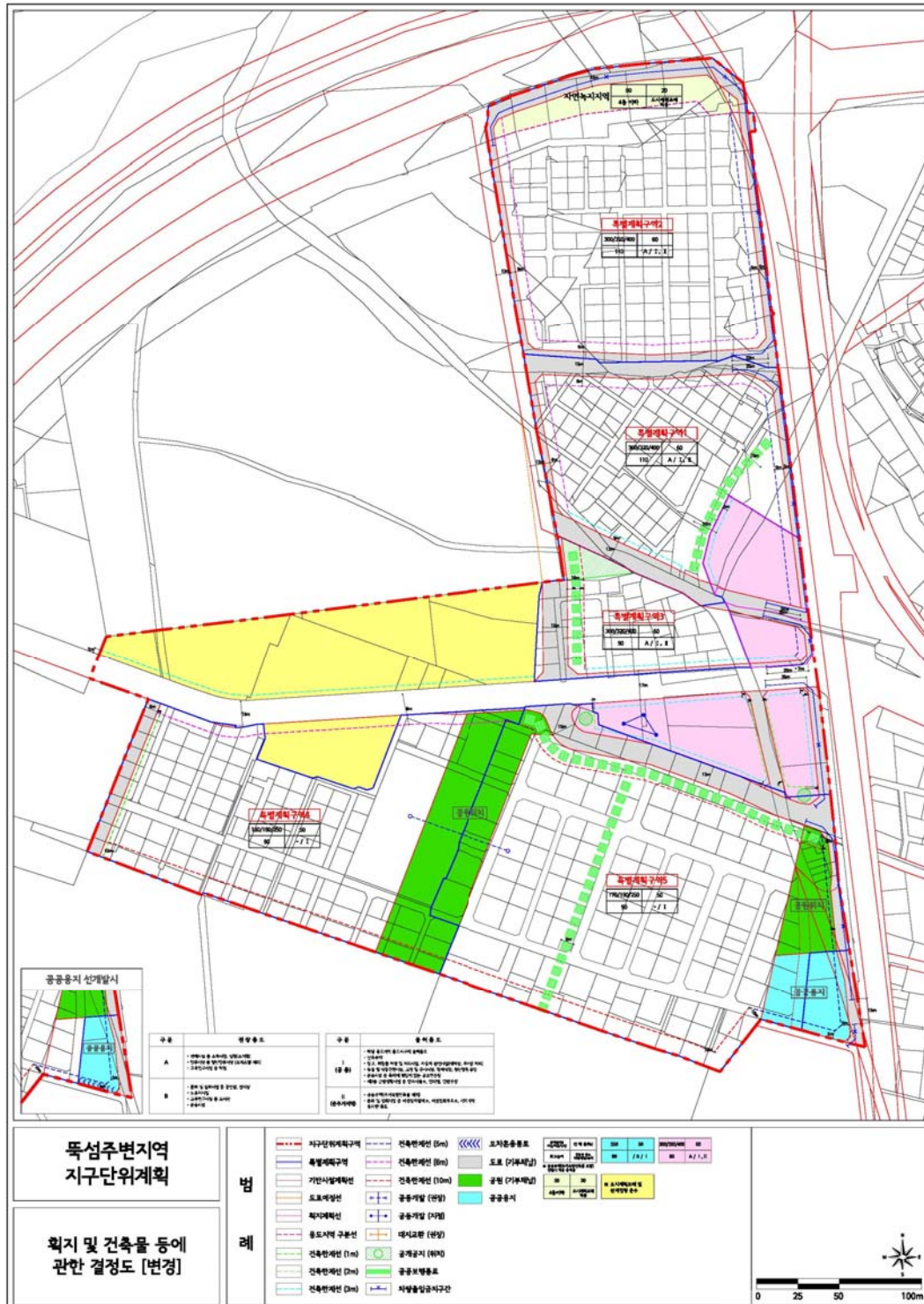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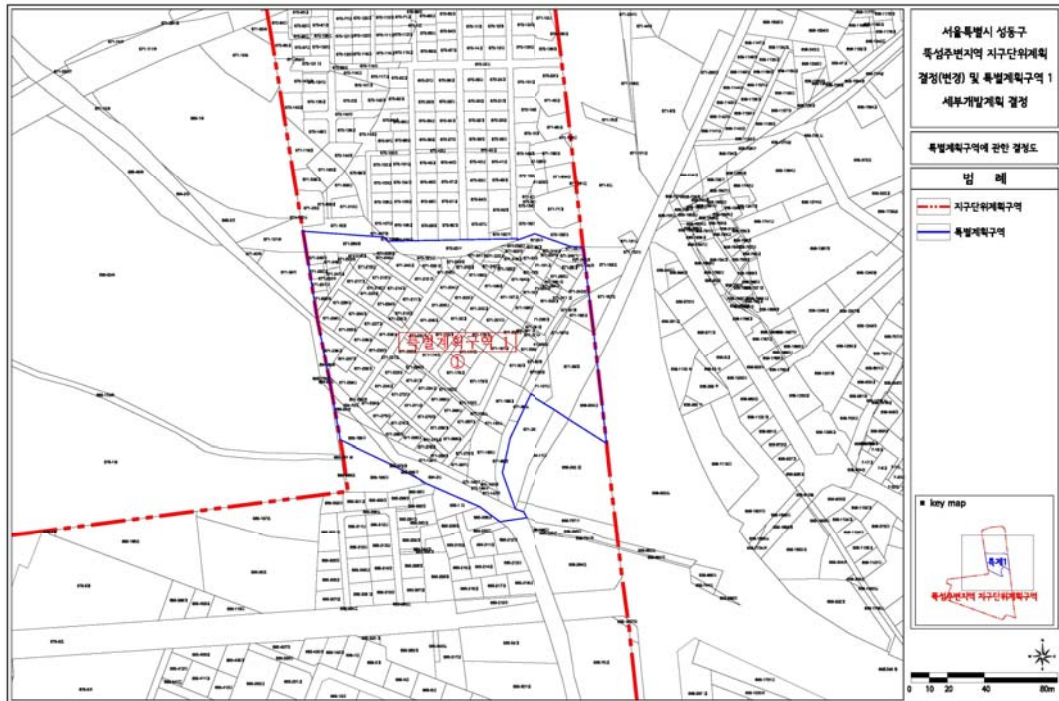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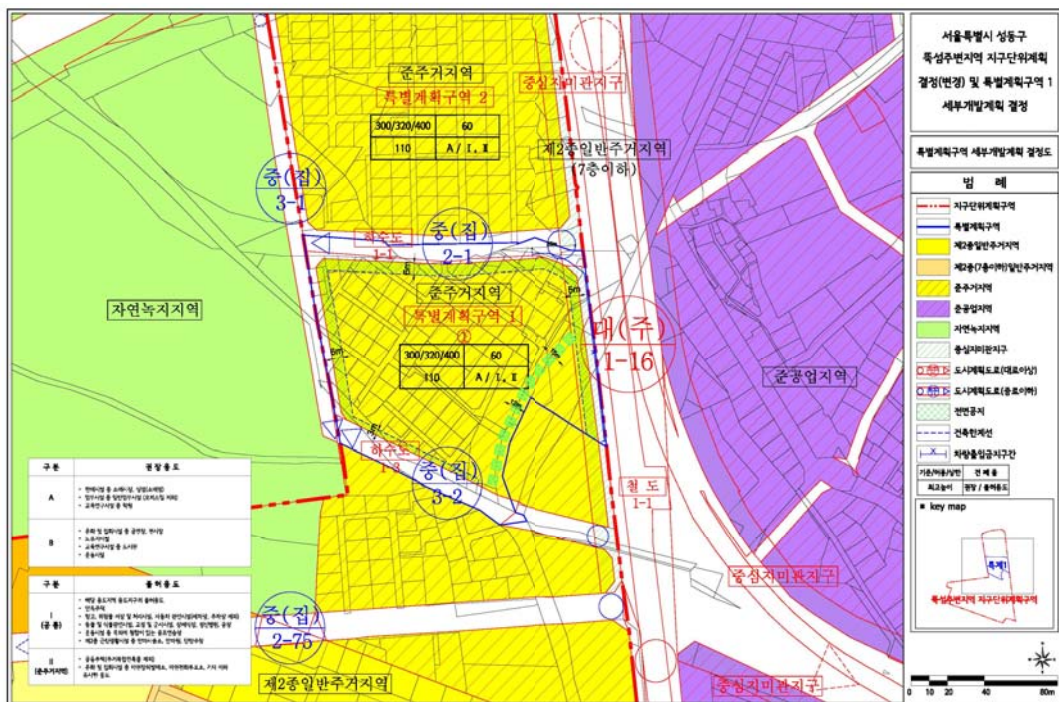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



◆ 특별계획구역1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69호

도시관리계획[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31호(2008.7.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2호(2011.7.7.)로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일대	148,400	-	148,400	서고 2008-231호 (2008.07.10.)

주)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8	1,901	40,107	3	685	21,275	2	584	8,871	3	632	9,961
대로	2	622	21,018	1	405	15,593	-	-	-	1	217	5,425
중로	5	1,164	18,293	1	165	4,886	2	584	8,871	2	415	4,536
소로	1	115	796	1	115	796	-	-	-	-	-	-

주) 상기사항은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 도로	5,910 (405)	행당동 (제39광장)	자양동강변	일반 도로	건고 2493 ('66.6.21)	왕십리길, 구의로
변경	대로	1	16	35 (35~40)	주간선 도로	5,910 (405)	행당동 (제39광장)	자양동강변	일반 도로	건고 2493 ('66.6.21)	왕십리길, 구의로
기정	대로	3	125	25	주간선 도로	1,200 (217)	경마장입구 656-75	독도 수원지	일반 도로	서고 131 ('78.3.29)	왕십리길
기정	중로	1	133	20	집산 도로	2,270 (165)	성동교	성수동1가	일반 도로	건고198 ('71.4.7)	광나룻길
변경	중로	1	133	20 (30)	집산 도로	2,270 (165)	성동교	성수동1가	일반 도로	건고198 ('71.4.7)	광나룻길
기정	중로	2	75	15	집산 도로	600 (440)	성수동1가 656-1827	성수동1가 685-125	일반 도로	서고 522 ('78.10.23)	성수중길
기정	소로	1	302	4~25	-	652 (-)	성수동1가 694-3	성수동1가 694-3	-	서고 2011-182 ('11.7.7)	-
기정	소로	3	-	6	집산 도로	258	성수동1가 674-12	성수동1가 685-199	일반 도로	서고 1994-30 ('94.5.13)	유수지길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258	성수동1가 674-12	성수동1가 685-199	일반 도로	서고 1994-30 ('94.5.13)	유수지길
신설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44	성수동1가 670-155	성수동1가 671-289	일반 도로	-	하수도1-1과 일부 중복결정
신설	중로	3	2	12	집산 도로	157	성수동1가 656-741	성수동1가 685-62	일반 도로	-	하수도1-3과 일부 중복결정

주) 특별계획구역의 도로변경 및 신설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하며, ()는 구역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16	대로 1-16	· 도로 폭원 확폭 - 폭원 : 35m → 40m	·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수립 등에 따른 도로 확폭
중로 1-133	중로 1-133	· 도로 폭원 확폭 - 폭원 : 20m → 30m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도로 확폭
소로 3-	중로 3-1	· 도로 폭원 확폭 - 폭원 : 6m → 12m	·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도로 확폭
-	중로 2-1	· 도로 신설 - 폭원 : 15m / 연장 : 144m	·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3-2	·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157m	·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 등에 따른 도로 신설

(2) 철도 : 변경없음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1) 공공청사 : 신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공공 청사	복합청사	성수동1가 670~27 번지 일원	면적(㎡)	-	증) 2,226	2,226	-	-
					높이	-	증) 지하1층,지하3층, 지상1~2층	지하1층,지하3층, 지상1~2층		

주1) 입체적 결정하는 공공청사 면적은 수평투영 면적이며, 공공청사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순부담률 기준(20% 이상)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주2) 공공청사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비용도 등은 관할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시 확정하여 준공시 기부채납

주3) 필요시 공공청사 운영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자치구를 포함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추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성수동 일대 필요한 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청사 결정

다. 환경기초시설 결정조서

(1) 하수도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가구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GR-①	GR-①	12,544	-	12,544	◦ 가구(필지)계획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SR-①	SR-①	23,370	증)98	23,468	◦ 특별계획구역②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SR-②	SR-②	24,928	감)1,365	23,563	◦ 특별계획구역① ③, 획지계획	준주거지역
SR-③	SR-③	5,890	-	5,890	◦ 가구(필지)계획	준주거지역
MR-①	MR-①	61,926	-	61,926	◦ 특별계획구역④ ⑤	제1종·제2종(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가구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SR-①	SR-①	23,468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 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변경	SR-②	SR-②	23,563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 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나. 획지 및 공동개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용적률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 기정

구 분	완 화 량	완 화 조 건	비 고																																																																																									
우수 디자인	5%	◦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시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세부항목</th><th colspan="2">적용방법(단위:유형)</th></tr><tr><th colspan="2"></th><th>최소기준</th><th>권장기준</th><th colspan="2"></th></tr><tr><td rowspan="8">주동 형식 다양화</td><td rowspan="4">1.주거형태 다양화 (1가지유형 10%이상)</td><td>가. 3백세대 미만이고 5동 미만</td><td>-</td><td>2 이상</td><td colspan="2"></td></tr><tr><td>나. 3백세대 또는 5동 이상</td><td>2 이상</td><td>3 이상</td><td colspan="2"></td></tr><tr><td>다. 1천세대 또는 10동 이상</td><td>3 이상</td><td>4 이상</td><td colspan="2"></td></tr><tr><td>라. 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td><td>4 이상</td><td>5 이상</td><td colspan="2"></td></tr><tr><td rowspan="3">2.높이 다양화 (1가지유형 10%이상)</td><td>가. 3백세대 미만이고 5동 미만</td><td>-</td><td>2 이상</td><td colspan="2"></td></tr><tr><td>나. 3백세대 또는 5동 이상</td><td>2 이상</td><td>3 이상</td><td colspan="2"></td></tr><tr><td>다. 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td><td>3 이상</td><td>4 이상</td><td colspan="2"></td></tr><tr><td rowspan="2">3.평면 및 단면 형태 다양화 (17가지유형 10%이상)</td><td colspan="5">가. 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td></tr><tr><td colspan="5">나. 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td></tr><tr><td rowspan="3">입면의 다양화</td><td rowspan="2">4.입면디자인 다양화</td><td colspan="5">다. 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 (복층형, 디자인된 혼합형 등)</td></tr><tr><td>가. 벽면을</td><td>40% 이상</td><td>50% 이상</td><td colspan="2"></td></tr><tr><td colspan="2">나. 디자인 다양화</td><td colspan="4"></td></tr><tr><td rowspan="2">5.발코니 형태 다양화</td><td>가. 세대별 외벽길이 30%이상 지양</td><td>30% 이상</td><td>30% 이상</td><td colspan="2"></td></tr><tr><td colspan="5">나. 발코니 형태 다양화 (돌출형, 개방형 등)</td></tr></table>	구 분		세부항목	적용방법(단위:유형)				최소기준	권장기준			주동 형식 다양화	1.주거형태 다양화 (1가지유형 10%이상)	가. 3백세대 미만이고 5동 미만	-	2 이상			나. 3백세대 또는 5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 1천세대 또는 10동 이상	3 이상	4 이상			라. 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4 이상	5 이상			2.높이 다양화 (1가지유형 10%이상)	가. 3백세대 미만이고 5동 미만	-	2 이상			나. 3백세대 또는 5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 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3 이상	4 이상			3.평면 및 단면 형태 다양화 (17가지유형 10%이상)	가. 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나. 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입면의 다양화	4.입면디자인 다양화	다. 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 (복층형, 디자인된 혼합형 등)					가. 벽면을	40% 이상	50% 이상			나. 디자인 다양화						5.발코니 형태 다양화	가. 세대별 외벽길이 30%이상 지양	30% 이상	30% 이상			나. 발코니 형태 다양화 (돌출형, 개방형 등)					
		구 분		세부항목	적용방법(단위:유형)																																																																																							
				최소기준	권장기준																																																																																							
		주동 형식 다양화	1.주거형태 다양화 (1가지유형 10%이상)	가. 3백세대 미만이고 5동 미만	-	2 이상																																																																																						
				나. 3백세대 또는 5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 1천세대 또는 10동 이상	3 이상	4 이상																																																																																						
				라. 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4 이상	5 이상																																																																																						
			2.높이 다양화 (1가지유형 10%이상)	가. 3백세대 미만이고 5동 미만	-	2 이상																																																																																						
				나. 3백세대 또는 5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 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3 이상			4 이상																																																																																								
3.평면 및 단면 형태 다양화 (17가지유형 10%이상)	가. 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나. 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입면의 다양화	4.입면디자인 다양화	다. 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 (복층형, 디자인된 혼합형 등)																																																																																										
		가. 벽면을	40% 이상	50% 이상																																																																																								
	나. 디자인 다양화																																																																																											
5.발코니 형태 다양화	가. 세대별 외벽길이 30%이상 지양	30% 이상	30% 이상																																																																																									
	나. 발코니 형태 다양화 (돌출형, 개방형 등)																																																																																											
◁예외 규정▷																																																																																												
- 구청장 등이 동 심의기준을 준용, 설계경기를 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2/3이상 인정시																																																																																												
-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4/5이상 인정시																																																																																												
지속 가능형 건축구조 (10%이내)	라멘구조 (10%)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세부평가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무량판 구조 (7%)	분 야	완 화 조 건	비 고																																																																																								
		건축구조	◦ 철골콘크리트, 철골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 기둥과보가 일체화된 라멘구조 - 기둥과 슬래브가 일체화된 무량판구조 ◦ 계단실, 엘리베이터 코어, 외기에 면한 축벽, 기타 평면계획상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력벽체 설치 허용																																																																																									
		공용설비	◦ 각 세대별 공용설비공간은 구조체에서 분리 시공하고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점검구를 확보할 것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5%이내)	신재생 에너지 (2%)	◦ 건축비의 1%이상 - 신재생에너지 설계는태양광,태양열, 지열, 연료전지,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한함																																																																																										
	친환경 최우수 등급(3%)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최우수(85점 이상)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 변경

구 분		완화량	완화조건		
인 센 티 브	우수디자인 (지역특성반영)	10%	◦ 주변지역과 연계한 동선계획 수립시(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 저층부와 고층부의 용도를 분리할 수 있는 배치계획 수립 ◦ 저층부 붉은벽돌을 활용한 디자인 계획 수립 ※ 공공건축가 자문을 거친 경우 우수디자인 인센티브를 인정함		
	장수명주택	3%	우수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최대 12%	구 분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2%	8%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8%	4%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최대 3%	20% 초과	20%이하 15%초과	15%이하 10%초과
			3%	2%	1%
허용용적률 최대		최대 20%이내에서 적용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결정(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체계 변경	◦ 도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반영에 따른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항목 적용	

(3)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 높이 결정조서 - 기정

구 분		최 고 높 이	비 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0m 이하	-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적용 -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 배제
	1종·2종(7층이하)·2종 → 3종	90m 이하	
기타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사선제한 H≤1.5D 적용	GR-①

주)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공공용지의 최고높이는 90m이하

■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최 고 높 이	비 고
특별계획구역1		110m 이하	
특별계획구역2	준주거지역	110m 이하	
	자연녹지지역	4층 이하	
특별계획구역3, SR-②-1, SR-②-2, SR-③		90m 이하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적용
1종 · 2종(7층이하) · 2종 → 3종		90m 이하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사선제한 H≤1.5D 적용	GR-①

주)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공공용지의 최고높이는 90m이하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특별계획구역1 최고높이 변경 (90m 이하 → 110m 이하)	◦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최고높이 변경	
◦ 특별계획구역2 준주거지역 최고높이 변경 (90m 이하 → 110m 이하) ◦ 특별계획구역2 자연녹지지역 최고층수 적용 (4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최고높이 변경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최고층수 적용	

3)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축한계선 결정조서 - 기정

구 분		건축한계선	비 고
간선부	간선도로변 (왕십리길)	3m, 5m	◦ 주요 간선도로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상징성 있는 가로경관 형성
이면부	서울숲 및 유수지, 독섬상업지역 연결부	10m	◦ 서울숲과 연계한 보행 및 녹지의 연속성 확보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성수중길	3m, 6m	◦ 보행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도모
	이면도로변	2m, 3m	◦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1m	◦ 협소한 보도 및 이면도로 확보

■ 건축한계선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건축한계선	비 고
간선부	간선도로변 (왕십리길)	3m, 5m	◦ 주요 간선도로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상징성 있는 가로경관 형성
이면부	서울숲 및 유수지, 독섬상업지역 연결부	6m, 10m	◦ 서울숲과 연계한 보행 및 녹지의 연속성 확보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성수중길	3m, 6m	◦ 보행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도모
	이면도로변	2m, 3m, 6m	◦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1m	◦ 협소한 보도 및 이면도로 확보
	획지 SR-2-1 (특별계획구역1과 연결부)	3m	◦ 가로활성화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신설 공간 확보

■ 건축한계선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이 면 부	유수지	◦ 특별계획구역1, 2 유수지변 건축한계선 폭 원 변경 (10m → 6m)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건축한계선 폭원 변 경 및 신설	
	이면도로변	◦ 특별계획구역1, 2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폭 원 변경 - 중로2-1호선변 양측(3m → 6m) - 특별계획구역1 남측 중로3-2호선변(3m 신설)		
	특별계획구역1 획지 SR-②-1 연접부	◦ SR-②-1 획지내 특별계획구역1과 연접부 3m 건축한계선 신설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 획 수립에 따른 건축한계선 신설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대지내 공지 및 통로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인도 부속형)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3m, 5m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인도/차도 부속형) ◦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1m
공개공지 위치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 성(3개소)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 주요 보행결절점, 전면도로 가각부 및 전면도로변에 설치	도면참고
공공보행통로		◦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및 보행우회 방지 ◦ 주요 녹지체계와의 연계성 고려 - 특별계획구역①~③, 특별계획구역⑤ : 폭 8m	사업시행시 설치 및 조성

■ 대지내 공지 및 통로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인도 부속형)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3m, 5m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인도/차도 부속형) ◦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1m, 3m, 6m
공개공지 위치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3개소)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 주요 보행결절점, 전면도로 가각부 및 전면도로변에 설치	도면참고
공공보행통로		◦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및 보행우회 방지 ◦ 주요 녹지체계와의 연계성 고려 - 특별계획구역③, 특별계획구역⑤ : 폭 8m ◦ 특별계획구역①, ② 유수지변 공공보행통로(폭 8m) 계획 폐지 ◦ 특별계획구역①과 SR-②-1 획지 연결부에 왕십리도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신설(폭15m) - 특별계획구역① : SR-②-1 획지와 연결부 12m, 그 외 : 15m - SR-②-1 획지 : 특별계획구역①과 연결부 : 3m	사업시행시 설치 및 조성

■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공공보행 통로	◦ 특별계획구역①, ② 공공보행 통로 계획 폐지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공공 보행통로 계획 폐지	
	◦ 특별계획구역①과 SR-②-1 획지 연결부에 공공보행통로 신설(폭15m)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유수지변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폐지하 고 왕십리도로 연결되는 가로활성화축에 공공보행통로 신설	

2) 차량동선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가. 특별계획구역1 : 변경

■ 개요

구역명	위 치	면 적 (㎡)
특별계획구역1	성수동1가 671-178 일대	17,329㎡

■ 계획지침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용도지역 / 지구	◦ 준주거지역/중심지 미관지구 (왕십리변 12m)	◦ 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4%이상 순부담(조성후 기부채납) ◦ 도로, 공원, 공공공지 위치지정(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도로 변경(확폭)2개소, 도로 신설(일부)1개소 / 공원 1개소 / 공공공지 1개소	◦ 구역면적의 14% 이상 순부담(조성후 기부채납) ◦ 도로 변경(확폭) 2개소, 도로 신설(일부) 2개소 / 공공청사 공공기여 / 공원계획 폐지 / 공공공지계획 폐지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소매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변경없음	
	불허용도 ◦ 해당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불허용도 ◦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식장, 정신병원, 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 세부개발계획수립 전, 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허용되는 용도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상기용도의 용도변경을 불허함	◦ 변경없음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변경없음	
	용적률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사항 : 기준 300% / 허용 320% / 상한 400% 이하 - 일반건축물 : 기준 300% / 허용400% / 상한 법적용적률 2배 이하	◦ 기준300% / 허용320% / 상한400% 이하	
	최고높이 ◦ 90m 이하	◦ 110m 이하	
기타 사항	대지교환 ◦ 획지 ㉒-1번과 대지교환(구역정형화)	◦ 대지교환계획 폐지	
	건축 한계선 ◦ 왕십리길변:5m / 이면도로변:3m / 유수지 변:10m	◦ 왕십리길변:5m / 이면도로변:3m, 6m / 유수지변:6m	
	공공 보행통로 ◦ 공원을 연계하는 남북공공보행통로 (폭8m)	◦ 공원을 연계하는 남북공공보행통로 계획 폐지, 중로 3-2에서 왕십리길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신설 - SR-㉒-1 획지 연결부 : 폭12m, 그 외 : 15m	
	차량출입 금지구간 ◦ 왕십리길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변경없음	

※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 용적률의 10%이상을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로 계획하여야 한다.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가(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채납 면적 및 선형 변경가능

나. 특별계획구역2 : 변경

■ 개요

구역명	위 치	면 적 (㎡)
특별계획구역2	성수동1가 670-27 일대	27,341㎡

■ 계획지침

구 분		계 획 지 침		비고
		기정	변경	
용도지역 / 지구		◦ 준주거지역 / 중심지 미관지구 (왕십리변 12m)	◦ 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20% 이상 순부담(조성후 기부채납) ◦ 도로, 공원 위치지정(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도로 변경(확폭)3개소, 도로 신설(일부)1개소 / 공원 1개소)	◦ 구역면적의 20% 이상 순부담(조성후 기부채납) ◦ 도로 변경(확폭)3개소, 도로 신설(일부) 1개소 / 공공청사 1개소 결정 / 공원 1 개소 계획 폐지	
건축물 용도	관광용도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소매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변경없음	
	불허용도	◦ 해당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불허용도 ◦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 설(세차장,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 식장, 정신병원, 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안마원, 단 란주점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 세부개발계획수립 전, 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 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허용되는 용도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본 지구단위계획 에서 결정한 상기용도의 용도변경을 불허함	◦ 변경없음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준주거 60% 이하 자연녹지 20% 이하	
	용적률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사항 : 기준 300% / 허용 320% / 상한 400% 이하 - 일반건축물 : 기준 300% / 허용 400% / 상한 법적용적률 2배 이하	준주거 기준300% / 허용320% / 상한400% 이하 자연녹지 50% 이하	
	최고높이	◦ 90m 이하	준주거 110m 이하 자연녹지 4층 이하	
기타 사항	건축 한계선	◦ 왕십리길변:5m / 이면도로변:3m / 유수지변:10m	◦ 왕십리길변:5m / 이면도로변:6m / 유 수지변:6m	
	공공 보행통로	◦ 공원을 연계하는 남북공공보행통로(폭8m)	◦ 남북공공보행통로 계획 폐지	
	차량출입 금지구간	◦ 왕십리길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변경없음	

※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 용적률의 10%이상을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로 계획하여야 한다.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채납 면적 및 선형 변경가능

다. 특별계획구역3 : 변경

■ 개요

구역명	위 치	면 적 (㎡)
특별계획구역3	성수동1가 685-295 일대	7,214㎡

■ 계획지침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기정	변경	
용도지역 / 지구		◦ 준주거지역 / 중심지 미관지구 (왕십리변 12m)	◦ 준주거지역	
도시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4%이상 순부담(조성후 기부채납) ◦ 도로(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도로 변경(확폭)2개소)	◦ 구역면적의 14%이상 순부담(조성후 기부채납) ◦ 도로(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도로 신설(일부) 1개소, 변경(확폭)2개소)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소매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변경없음	
	불허용도	◦ 해당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불허용도 ◦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식장, 정신병원, 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 세부개발계획수립 전, 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허용되는 용도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상기용도의 용도변경을 불허함	◦ 변경없음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변경없음	
	용적률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사항 : 기준 300% / 허용 320% / 상한 400% 이하 - 일반건축물 : 기준 300% / 허용 400% / 상한 법적용적률 2배 이하	◦ 변경없음	
	최고높이	◦ 90m 이하	◦ 변경없음	
기타 사항	건축 한계선	◦ 왕십리길변 : 5m / 이면도로변 : 3m, 10m	◦ 서울숲길변 : 3m / 유수지변 : 10m	
	공공 보행통로	◦ 공원을 연계하는 남북공공보행통로(폭8m)	◦ 변경없음	
	공개공지	◦ 공원을 연계토록 공개공지 조성(약557㎡이상)	◦ 변경없음	
	차량출입 금지구간	◦ 왕십리길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 용적률의 10%이상을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로 계획하여야 한다.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시 원인자(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채납 면적 및 선형 변경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기존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및 하수관거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및 선형변경이 가능할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상부는 공공공지 또는 도로로 결정한다.

라. 특별계획구역4, 특별계획구역5 : 변경없음

6.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Ⅲ.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사항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2	성동구 성수동1가 670-27 일대	27,341	-	27,341	2011.07.07. (서고 2011-182호)

주)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7,341	-	27,341	100.0	
주거지역	소 계	23,346	-	23,346	85.4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40	-	40	0.2	
	준주거지역	23,306	-	23,306	85.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995	-	3,995	14.6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구의로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성동교 ~잠실교	141,600 (2,154)	5,900 (180)	12	서고 제164호 (1982.4.22.)	

주) ()는 특별계획구역내 사항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4	631	3,873	2	336	2,500	1	144	777	1	151	596
대로	1	171	914	1	171	914	-	-	-	-	-	-
중로	3	460	2,959	1	165	1,586	1	144	777	1	151	596
소로	-	-	-	-	-	-	-	-	-	-	-	-

주) 상기사항은 특별계획구역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 도로	5,910	행당동 (제39광장)	자양동강변	일반 도로	건고 2493 ('66.6.21)	왕십리길, 구의로
변경	대로	1	16	35 (40)	주간선 도로	5,910 (171)	행당동 (제39광장)	자양동강변	일반 도로	건고 2493 ('66.6.21)	왕십리길, 구의로
기정	중로	1	133	20	집산 도로	2,270	성동교	성수동1가	일반 도로	건고198 ('71.4.7)	광나룻길
변경	중로	1	133	20 (30)	집산 도로	2,270 (165)	성동교	성수동1가	일반 도로	건고198 ('71.4.7)	광나룻길
기정	소로	3	-	6	집산 도로	258	성수동1가 674-12	성수동1가 685-199	일반 도로	서고 1994-30 ('94.5.13)	유수지길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258 (151)	성수동1가 674-12	성수동1가 685-199 (671-289)	일반 도로	서고 1994-30 ('94.5.13)	유수지길
신설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44	성수동1가 670-155	성수동1가 671-289	일반 도로	-	하수도 1-1과 일부 중복결정

주) ()는 특별계획구역2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16	대로 1-16	· 도로 폭원 확폭 - 폭원 : 35m → 40m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 등에 따른 도로 확폭
중로 1-133	중로 1-133	· 도로 폭원 확폭 - 폭원 : 20m → 30m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도로 확폭
소로 3-	중로 3-1	· 도로 폭원 확폭 - 폭원 : 6m → 12m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 등에 따른 도로 확폭
-	중로 2-1	· 구역내 도로 신설 - 폭원 : 15m / 연장 : 144m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 등에 따른 도로 신설

(2) 철도 : 변경없음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연장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1	철도	고속철도	왕십리역	송파구 잠지동 596-21	-	16,661	-	건고592 ('91.10.11)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1) 공공청사 : 신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공공 청사	복합청사	성수동1가 670-27 번지 일원	면적(㎡)	-	증) 2,226	2,226	-	-
					높이	-	증) 지하1층,지하3층, 지상1~2층	지하1층,지하3층, 지상1~2층		

주1) 입체적 결정하는 공공청사 면적은 수평투영 면적이며, 공공청사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순부담률 기준(20% 이상)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주2) 공공청사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관할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시 확정하여 준공시 기부채납

주3) 필요시 공공청사 운영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자치구를 포함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추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성수동 일대 필요한 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청사 결정

다. 환경기초시설 결정조서

(1) 하수도 : 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1-1	하수도 (뚝도유수로)	성수동1가 671-346	성수동1가 671-289	536 (150)	1,286	건고 709 ('67.10.25.)	중로2-1과 중복결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가구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SR-Ⅰ	SR-Ⅰ	23,370	증)98	23,468	◦ 특별계획구역②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가구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SR-Ⅰ	SR-Ⅰ	23,468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 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2)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A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소매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좌동	왕십리부도심과 독섬상업지역을 연계

■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I (공 통)	·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불허용도 · 단독주택 ·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식장, 정신병원, 공장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좌동	전구역
II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좌동	준주거지역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 변경없음

■ 건폐율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준주거지역	60% 이하	60%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20% 이하	

(2) 용적률

■ 용적률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주거지역	기준용적률	300%	300%
	허용용적률	320%	320%
	상한용적률	400% 이하	40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하	50% 이하	

주) 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 용적률의 10%이상을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로 계획하여야 함

주) 상한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 × (1+1.3×가중치× α) (단,공동주택(주거복합 포함)수립시 적용 용적률은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가중치× α))

-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가중치란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 변경

구 분		완화량	완화조건		
인 센 티 프	우수디자인 (지역특성반영)	10%	◦ 주변지역과 연계한 동선계획 수립시(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 저층부와 고층부의 용도를 분리할 수 있는 배치계획 수립 ◦ 저층부 붉은벽돌을 활용한 디자인 계획 수립 ※ 공공건축가 자문을 거친 경우 우수디자인 인센티브를 인정함		
	장수명주택	3%	우수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최대 12%	구 분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2%	8%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8%	4%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최대 3%	20% 초과	20%이하 15%초과	15%이하10%초과
			3%	2%	1%
	허용용적률 최대		☐ 최대 20%이내에서 적용		

(3) 건축물의 높이 : 변경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최 고 높 이			비 고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특별계획구역2	90m 이하	준주거지역	110m 이하	
		자연녹지지역	4층 이하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 준주거지역 최고높이 변경 (90m 이하 → 110m 이하)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최고높이 변경	
◦ 자연녹지지역 최고층수 적용 (4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최고층수 적용	

3)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축한계선 결정(변경)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간 선 부	간선도로변 (왕십리길)	5m	5m	◦ 주요 간선도로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상징성 있는 가로경관 형성
	유수지	10m	6m	◦ 서울숲과 연계한 보행 및 녹지의 연속성 확보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이 면 부	이면도로변	3m	6m	◦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유도

■ 건축한계선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이면부	유수지 ◦ 특별계획구역2 유수지변 건축한계선 폭원 변경 (10m→ 6m)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건축한계선 폭원 변경	
	이면도로변 ◦ 특별계획구역2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폭원 변경 (3m→ 6m)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위 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물의 형태	저층부	전구역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인접 건축물과 조화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금지	좌동	
	고층부	폭20m이상 도로변 서울숲 인접	가로변 개방감 확보 및 미관증진을 위해 탑상형 및 고층부 탑상형 권장	좌동	
건축물의 외관	외벽면	전구역	-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는 주변건축물과 조화 - 외벽면 전체의 원색 페인트 마감 금지	좌동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폭20m이상 도로변	1층 벽면 투시벽 처리 및 1층 투시형 셔터 설치	좌동	
	야간조명	폭20m이상 도로변	10층 이상 건축시 상향식 조명 설치 - 옥외 설치 미술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설치 권장	좌동	
기타사항	옥외 광고물	전구역	서울특별시 및 성동구 옥외광고물 관리 지침 준용	좌동	
	미관 저해시설	전구역	옥탑층 미관저해시설의 도로변 설치 금지	좌동	
	담장	특별계획구역 수립지역	무(無)담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으로 조 성함	좌동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주) 저층부(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공공청사)는 붉은벽돌을 이용하여 주변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는 입면계획 수립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계획 : 변경

■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전면 공지	간선 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인도 부속형)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대로1-16호선변(5m) 건축한계선 내 인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건축한계선 5m
	이면 도로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인도/차도부속형) -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중로2-1호선변(6m) 및 중로3-1호선변(6m) 건축한계선 내 인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건축한계선 6m
공개공지 위치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3개소)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 주요 보행결절점, 전면도로 가각부 및 전면도로변에 설치	해당없음	
공공 보행통로		-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및 보행우회 방지 - 주요 녹지체계와의 연계성 고려 - 특별계획구역② : 폭 8m	공공보행통로 계획 폐지	

■ 대지내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공공보행통로	유수지번 공공보행통로 계획 폐지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 구역2 세부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계획 폐지	

2) 차량동선 계획 : 변경없음

■ 차량출입금지구간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 주요 간선도로의 원활한 차량흐름 유도 및 보행단절 최소화 - 간선도로에서 차량출입을 허용한 필지라도 공동개발을 통해 이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간선도로 차량출입 불허	- 대로1-16호선변 및 중로1-133호선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중로2-1호선변 및 중로3-1호선변 일 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간선도로변 (왕십리길)

3) 공공시설등 설치 및 제공에 관한 계획

■ 구역면적의 총 20% 이상 순부담

구 분	산출값	산출식
공공 청 사	대지지분	1,160.63㎡ 공동주택 대지면적 : 23,468㎡ 공공청사 전용면적 : 3,233.34㎡ (4.95%) 공공청사 대지지분 : 23,468㎡ X 4.95% = 1,160.63㎡
	연면적	5,957.75㎡ 준주거지역 : 4,401.47㎡, 자연녹지지역 : 1,556.28㎡
	건축비	2,267,000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안) 공공업무사무소 적용
	부지가액	8,843,190원/㎡ 준주거지역 : 성수동1가 670-155 4,580,000원/㎡ X 2 = 9,160,000원/㎡ 자연녹지지역 : 성수동1가 674-45 2,930,000원/㎡ X 2 = 5,860,000원/㎡ 공동주택부지내 용도지역별 면적대비 가중평균 (9,160,000원/㎡ X 21,215㎡ + 5,860,000원/㎡ X 2,253㎡) / 23,468㎡ = 8,843,190원/㎡
	환산부지면적	1,527.30㎡ 연면적 X 건축비 ÷ 부지가액 = 5,957.75㎡ X 2,267,000원/㎡ / 8,843,190원/㎡
	기부채납	2,687.93㎡ 대지지분 + 환산부지면적 = 1,160.63㎡ + 1,527.30㎡
도 로	3,612㎡	총 도로면적 : 3,873㎡ (준주거지역 : 2,091㎡, 2종(7층) : 40㎡, 자연녹지지역 : 1,742㎡) 도로내 국공유지 제외면적 : 261㎡ (준주거지역 : 56㎡, 자연녹지지역 : 205㎡) 도로 기부채납면적 : 3,612㎡
합 계	6,299.93㎡	= 6,299.93㎡ / 27,080㎡ X 100% = 23.3%

주1) 입체적 결정하는 공공청사 면적은 수평투영 면적이며, 공공청사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순부담률 기준(20% 이상)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주2) 공공청사 제공위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관할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시 확정하여 준공시 기부채납

주3) 필요시 공공청사 운영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자치구를 포함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추진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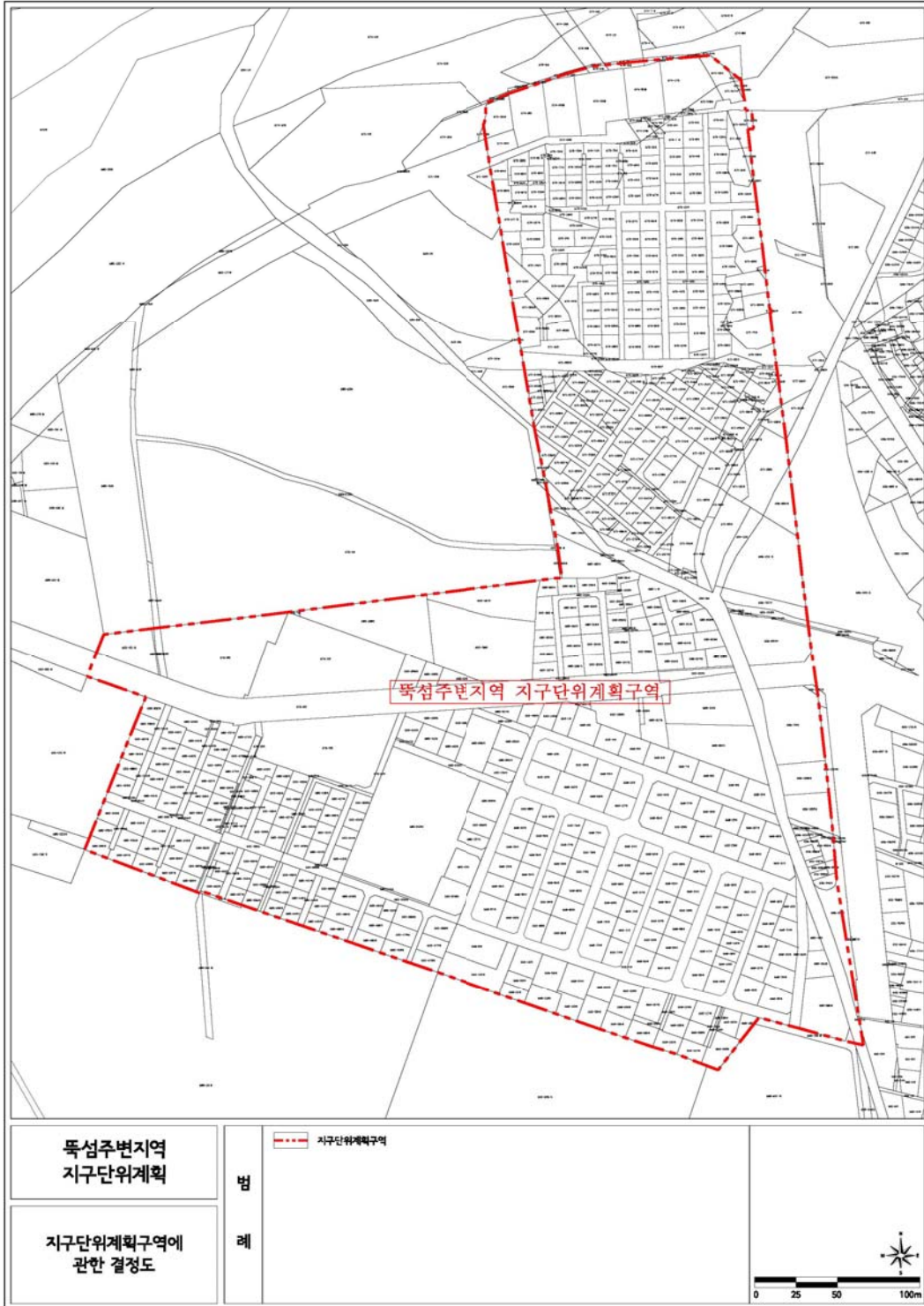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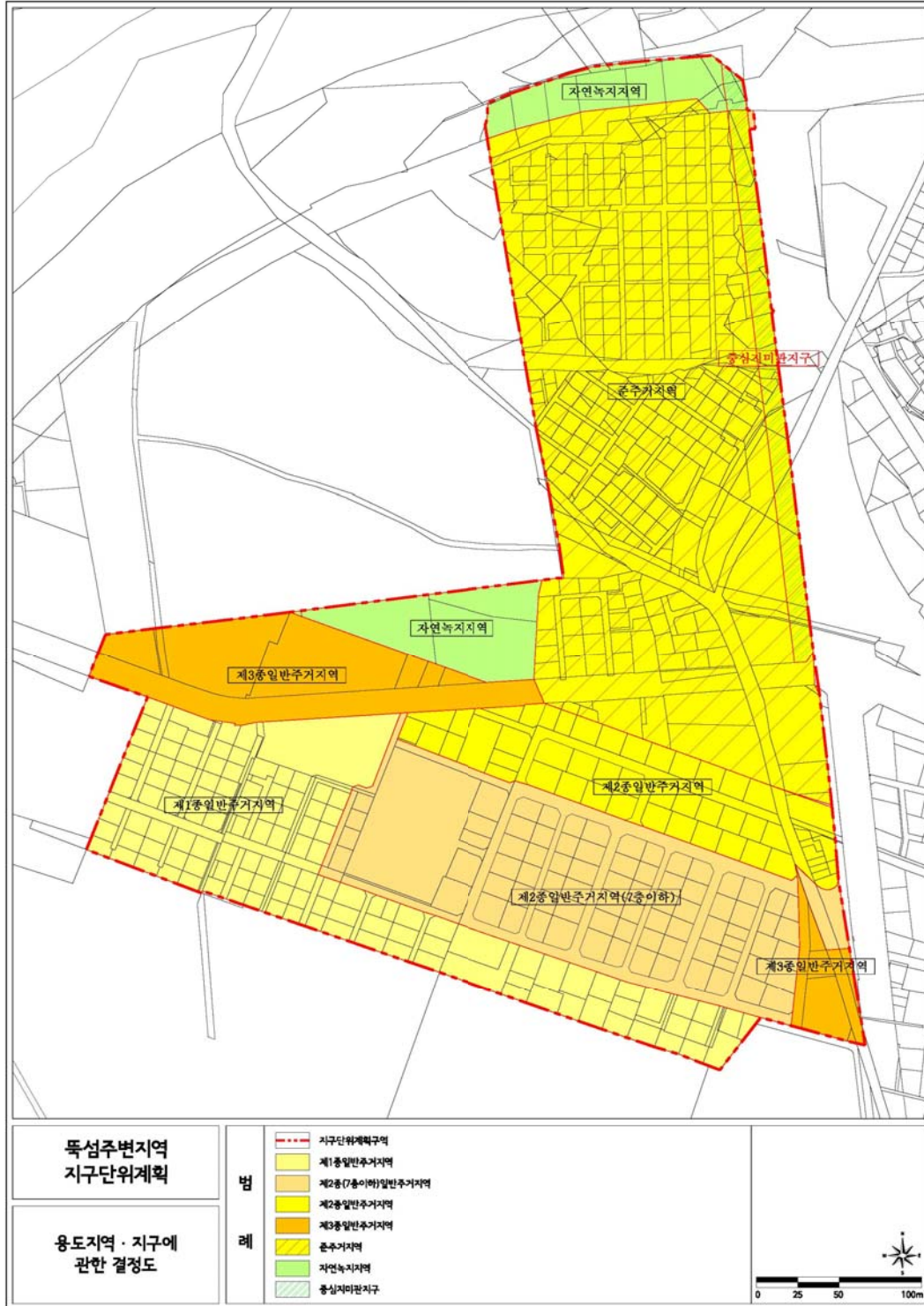
VI.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동구 도시계획과(☎02-2286-5561) 및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ultn.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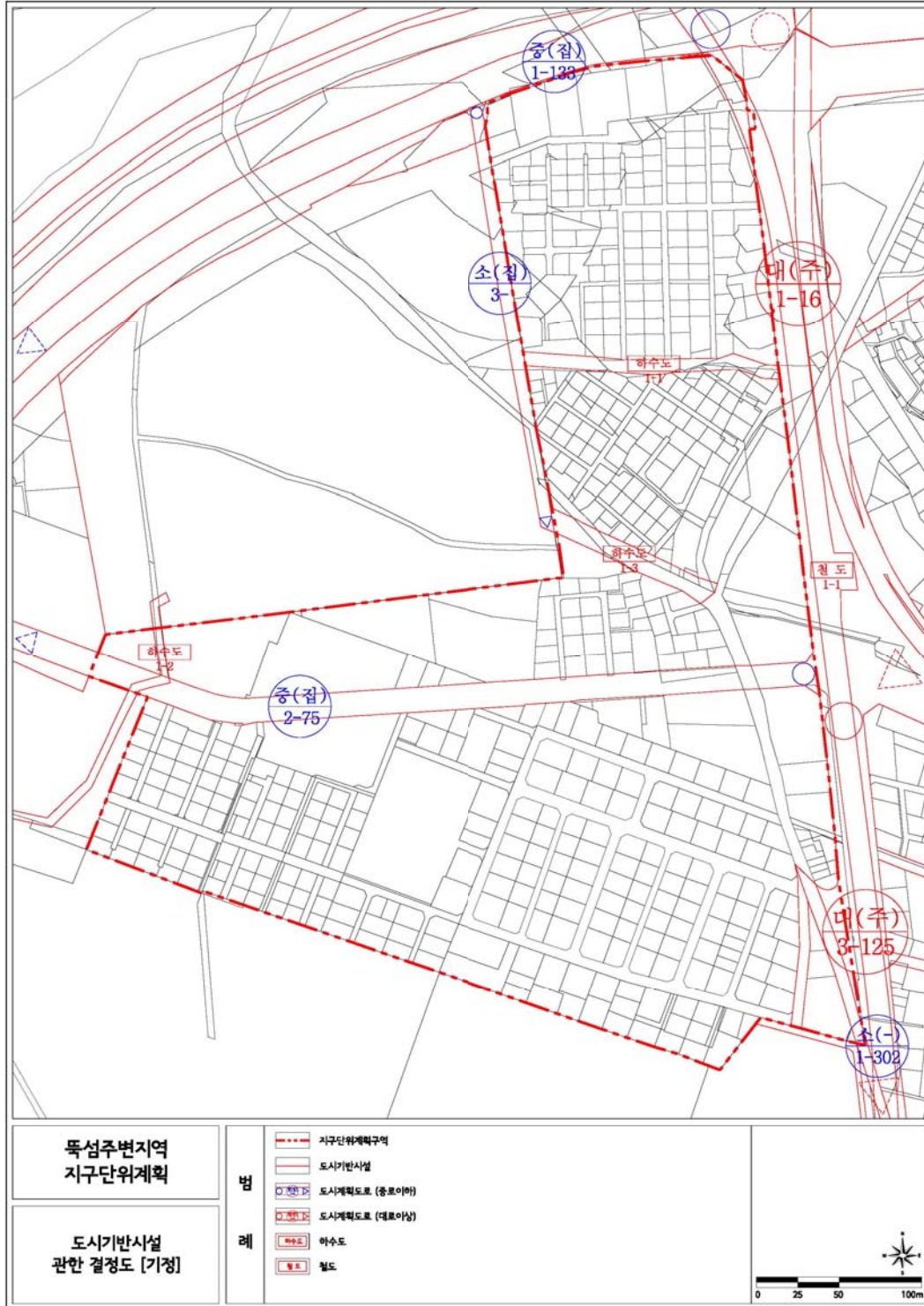
◆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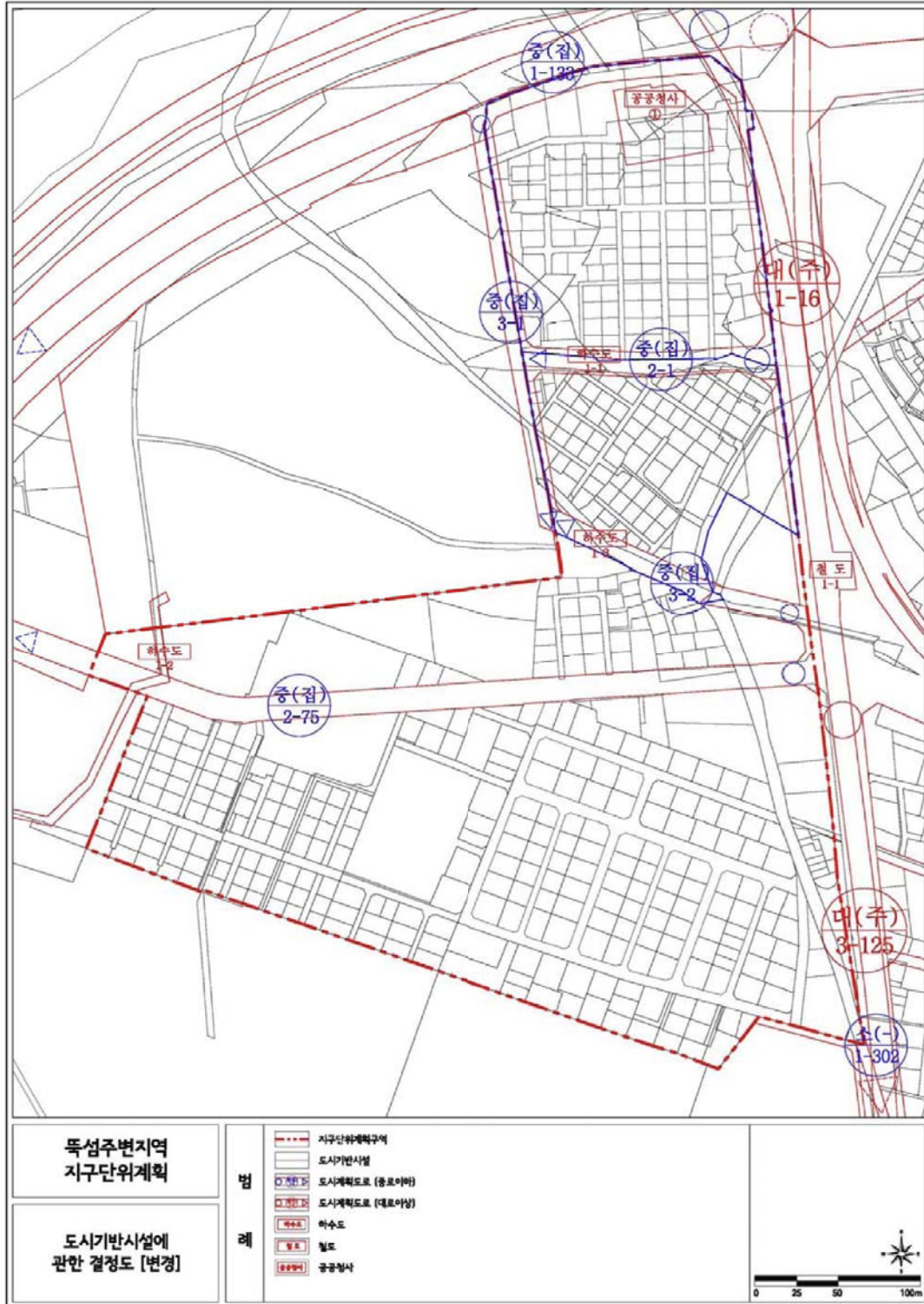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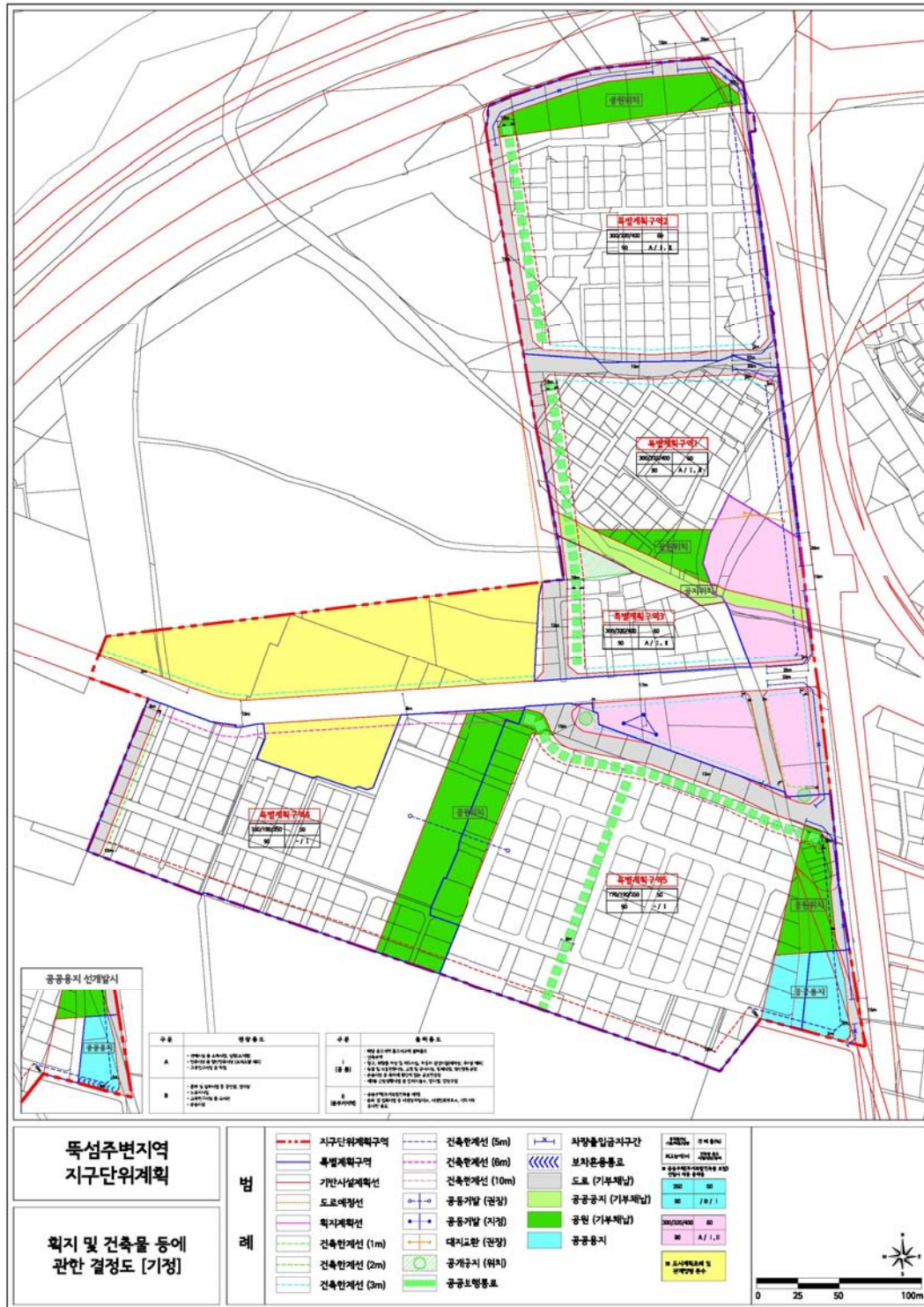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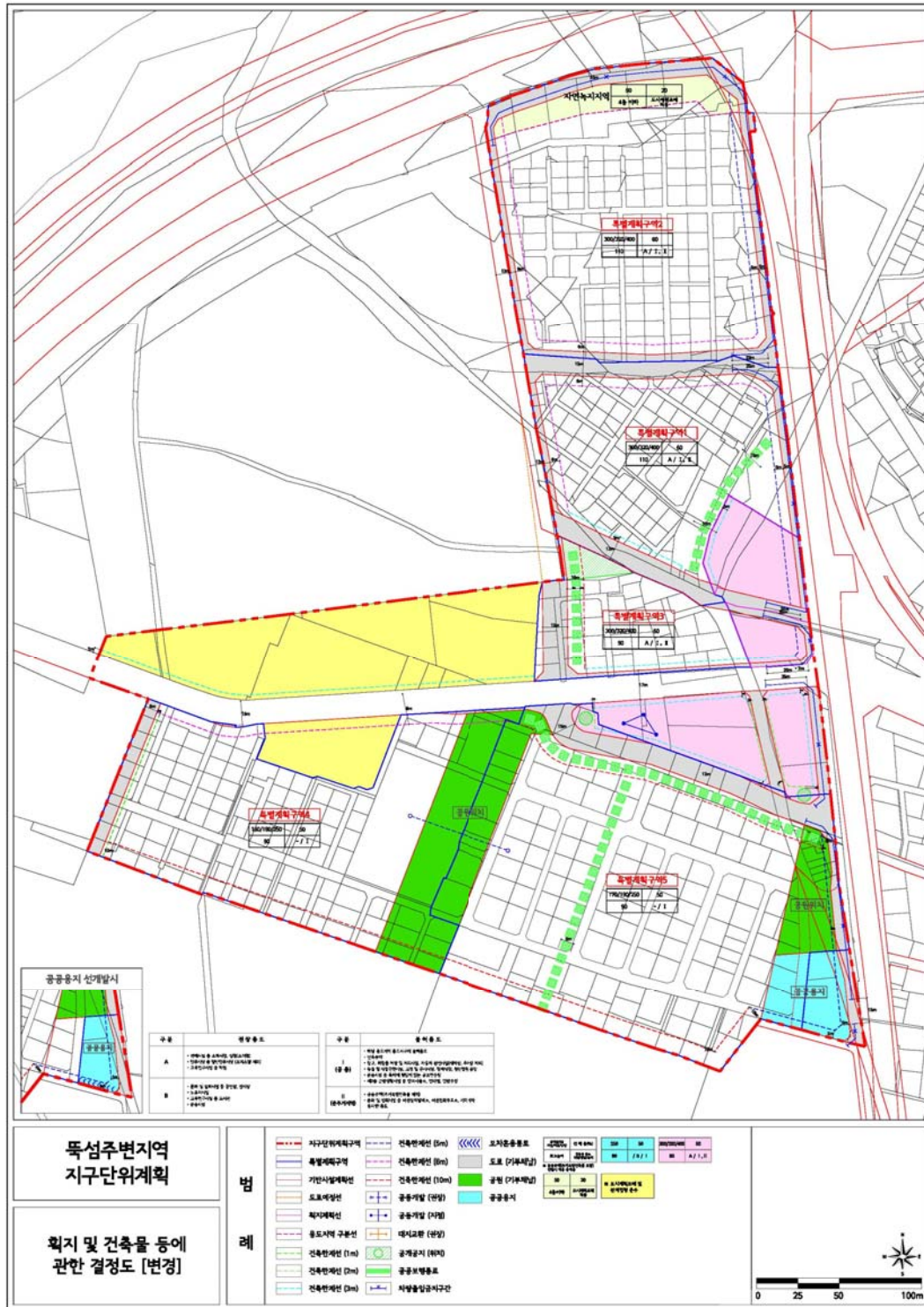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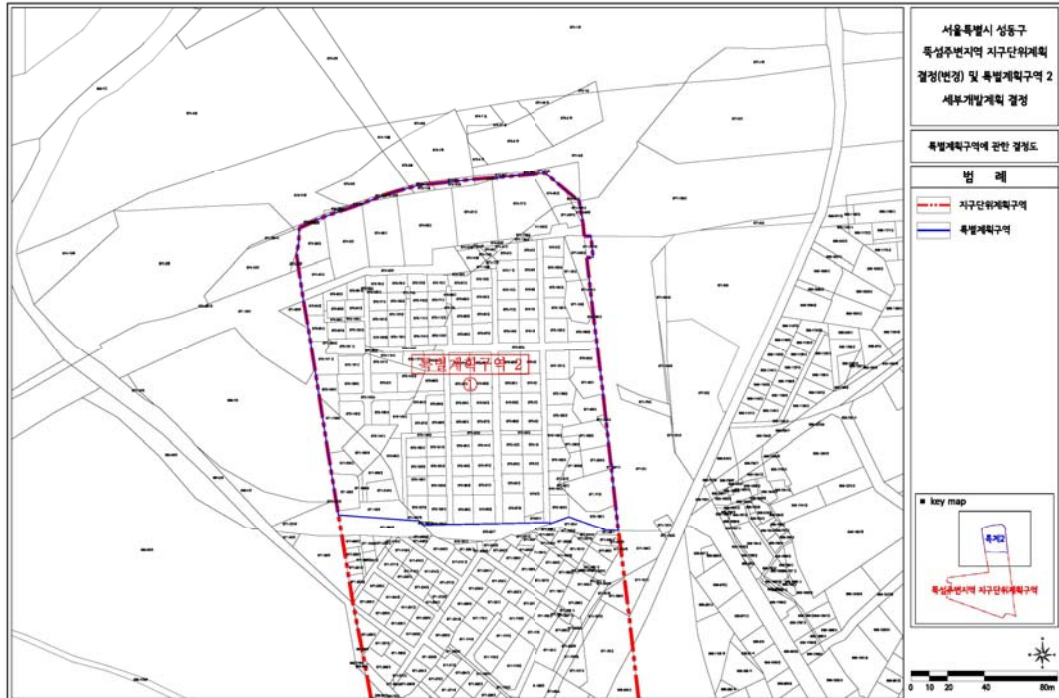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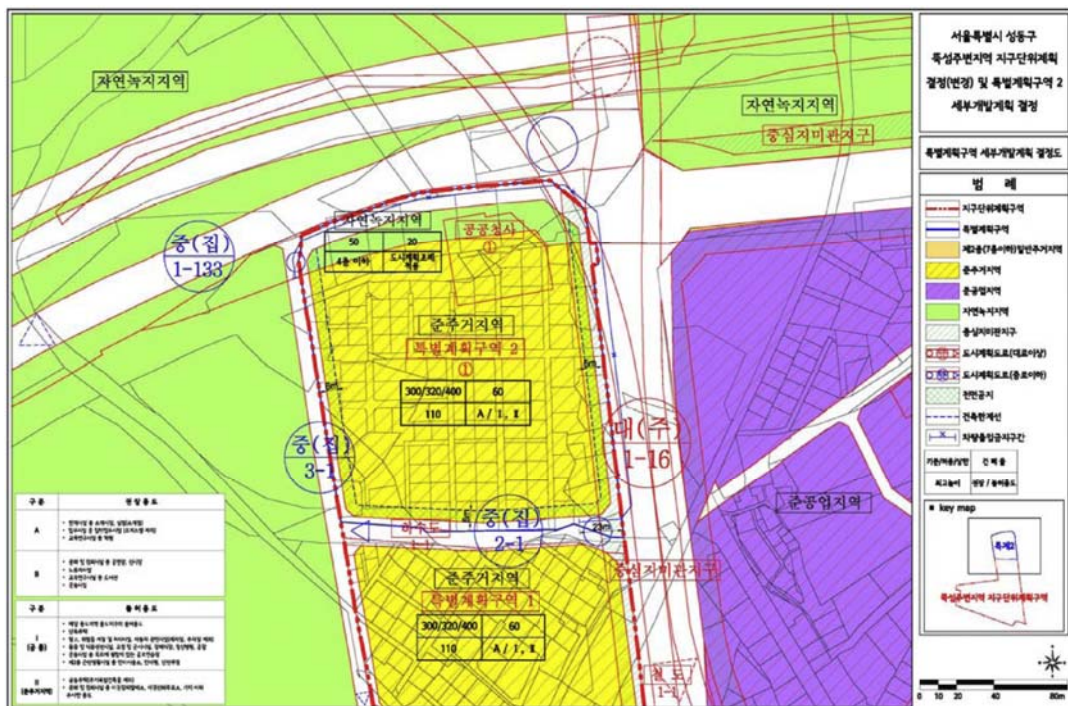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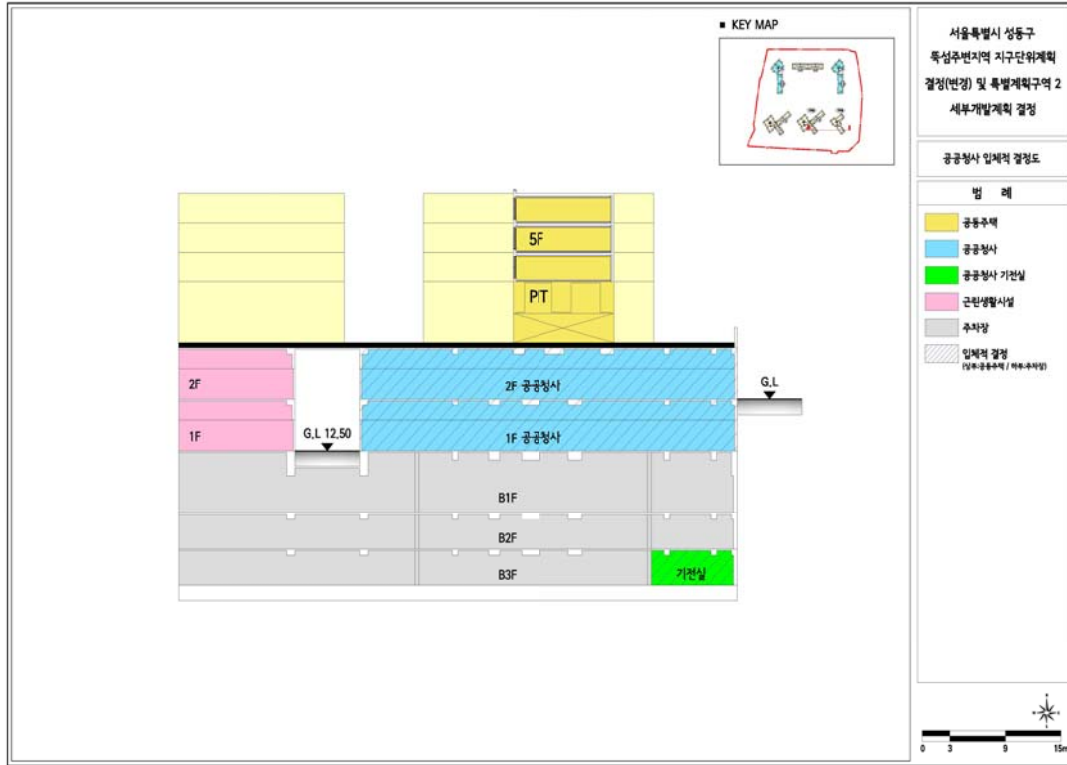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2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 도시기반시설(공공청사) 입체적 결정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64호

소방시설업 폐업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의거 소방시설업 폐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업종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폐업일
제 은평2010-1호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	병민전기(주) (이옥화)	은평구 증산로395-16 한양빌딩(신사동)	2016.10.5.
제 강남1985-34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주을전이앤씨 (강신무)	강남구 강남대로120길 (논현동, 승승빌딩)	2016.9.30.
제 구로2012-5호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기계)	대양이앤이기술(주) (이성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C동 609호), 가산동	2016.10.18.
제 용산2007-1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국보일렉콤 (손원호)	용산구 한강대로15길 9-5 403호	2016.10.20.
제 강남2015-8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주식회사 김스텍코리아 (김상귀)	강남구 역삼로2길 16 (역삼동)	2016.10.24.
제 구로2002-5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용원기계설비 (윤성우)	금천구 가마산로 96, 8차 1504호(가산동)	2016.10.27.
제 강서2010-1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공향안전관리 (이지원)	강서구 양천로14길 66(방화동)	2016.10.2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6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1. 업체명 : 주식회사 어반엔씨티
2. 대표자 : 우 용 중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9길 25(삼성동, 관성빌딩)
(☎ 02-3453-5537)
4. 업종 :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수질[제41호]
6. 지정일자 : 2016. 10. 3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6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	지스퀘어피에프브이 (주)	서장원	2016.10.05.	서울160064	구로구 디지털로 306, 14층 1401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AMC: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 205호 (구로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9,000,000	신규등록
2	(주)씨피엠씨	김천섭	2016.10.10.	서울160065	강남구 테헤란로38길 43, 3층 (역삼동, 청록빌딩)	300,000	신규등록
3	(주)알토지앤엠	박병수	2016.10.10.	서울160066	송파구 총민로 52, 비동 317호 (문정동, 가든파이브 워크스)	500,000	신규등록
4	우암건설(주)	이원복	2016.10.11.	서울160067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14층 (내수동, 세종로대우빌딩)	2,000,000	신규등록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5	㈜더조은산업개발	박은기	2016.10.13.	서울160068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1501호 (가산동, 더루벤스밸리)	300,000	신규등록
6	등명종합건설㈜	김해현	2016.10.17.	서울160069	강서구 강서로 466, 4층 402호 (등촌동, 우리벤처타운)	660,000	신규등록
7	㈜코크렘케이스퀘어 위탁관리부동산투자 회사	고성관	2016.10.19.	서울160070	강남구 삼성로 511, 코람코자산신탁 내 (삼성동, 골든타워) AMC: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삼성동, 골든타워)	5,920,000	신규등록
8	㈜파크하비오	하도형 안창수	2016.10.24.	서울160071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0 (가산동)	500,000	신규등록
9	금강시너지건설㈜	오명진	2016.10.25.	서울160072	서초구 논현로27길 29, 3층 (양재동, 경희빌딩)	700,000	신규등록
10	㈜쓰리에스씨앤에프	박상덕	2016.10.25.	서울160073	강남구 테헤란로 439, 13층 (삼성동, 연당빌딩)	2,000,000	신규등록
11	㈜태림더끌리움	김명현 김지은	2016.10.31.	서울160074	서초구 서초대로 67, 8층 6호 (방배동, 성령빌딩)	300,000	신규등록
12	㈜아일렉스아이앤디	정영안	2016.10.31.	서울160075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5, 11층 1101호, 1102-2호, 1102-3호 (여의도동, 아일렉스타워)	300,000	신규등록
13	미래삼송프로젝트㈜	남시복 최재명	2016.10.05.	서울120107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203호 (당산동4가, 당산SK V1센터)	분양완료	폐 업
14	㈜티제이물류	임재인	2016.10.14.	서울120028	광진구 자양로 126, 1109호 (구의동, 성지하이츠)	사업종료	폐 업
15	㈜세건주택	이천식	2016.10.14.	서울150059	영등포구 선유동1로 50, 804호 (당산동3가)	사업축소	폐 업
16	엠큐디벨로퍼㈜	박철웅	2016.10.14.	서울150068	마포구 월드컵북로16길 14, 4층 (성산동, 명문빌딩)	사업방식변경	폐 업
17	㈜천산건축사사무소	하인철	2016.10.18.	서울100083	서초구 잠원로4길 41-15 (잠원동)	사업없음	폐 업
18	㈜싸이칸홀딩스	김종규	2016.10.24.	서울080284	강남구 압구정로36길 18, 6층 (신사동, 신구빌딩)	인력부족	폐 업
19	홍정종합건설㈜	홍승표	2016.10.27.	서울090065	서초구 강남대로99길 33 (잠원동)	사업없음	폐 업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468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73호
중합공사시공업자 등록기준 실태조사 관련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요청을 하고 이 사실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6.11.10.~2016.11.24.
2. 중합공사시공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요청 통지 사항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시에 정처분
히스종합건설 (주) 배철수	건축공사업 13-0246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08-127, 5층 (피앤피빌딩)	2015년도 재무제표 및 증빙서류 일체, 건설기술자 현황표 일체 등	시정명령 등

3. 실태조사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4. 공고내용
 - 가. 실태조사 자료 제출기간 : 2016. 11. 18.(금)
 - 나. 실태조사 제출처 :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다. 실태조사 원인 : 2016년도 건설업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실태조사
 - 2015년도 재무제표 및 증빙서류 일체
 - 2015년도 12월31일 건축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5. 위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오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설안전과 ☎(02)2133-8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83호
공시 송달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등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1. 10. ~ 2016. 11. 24.(15일간)
3. 공고장소 : 서울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시송달내용

대상자	소재지 (주소)	처분내용	위 반 내 용	의견제출기한
㈜동호기술 단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6길 5, 302호	과태료 40만원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등 총 4건 위반	2016.12.5.

5. 기타사항

- 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사전 고지된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86호**

밤고개로 확장공사 기본설계(안) 공람공고

1. 우리시에서 SRT수서역 개통 및 세곡2·강남 보급자리, 위례신도시 등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밤고개로의 교통정체 완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밤고개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아래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장

- 가. 사업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사거리 ~ 수서IC
- 나. 사업 개요 : 도로확장 연장 1.85km, 폭 왕복 6차로 → 7~8차로
- 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SRT 수서역 개통 및 세곡2·강남 보급자리지구,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밤고개로의 교통정체 완화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마. 공사예정기간 : 2017. 03. ~ 2018. 12.
- 바. 연차별 투자계획 : 실시설계 완료 후 연차별 투자계획 확정 예정
- 사.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아. 공람내용 : 도로확장 기본설계안
- 자.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 강남구청 도로관리과(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강남구청 제2별관 1층)
- 차. 의견 제출방법 : 의견 내용(의견제출자의 주소 및 연락처 기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별도서식 없음)
- 카. 토지사용(수용) 계획 : 실시설계시 세부 수용계획 수립 예정
- 타.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7), 강남구 도로관리과(02-3421-655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8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2596	2016.10.04.	포스나인미디어(주) 김광희 110111-4071679	서울 서초구 논현로11길 10길, 201호 (양재동, 재성빌딩)
2	202597	2016.10.10.	(주)케이비에어 강인주 110111-5311909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21길 65, 에이동 209호(북가좌동)
3	202598	2016.10.10.	(주)티앤아이씨티 우흥제 110111-581914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8길 9, 501호(공덕동, 영명빌딩)
4	202599	2016.10.13.	(주)좋은통신 서명진 110111-6166692	서울 동작구 상도로26가길 11, (상도동)
5	202600	2016.10.20.	(사)장애인동반성장협회 정영석 240121-001303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3-33, 505-1호(가산동,대륭테크노타운2차)
6	202601	2016.10.20.	(주)마하사운드 변인규,이영호 110111-5923415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36가길 41, (망우동)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7	202602	2016.10.20.	(주)룩삼밀리아이티 도학진 110111-6148947	서울 강서구 화곡로 256, 4층 (화곡동, 선우빌딩)
8	202603	2016.10.20.	백영전자(주) 임대순 110111-0198584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6,409호 (양평동3가, 이앤씨드림타워)
9	202604	2016.10.20.	(주)상현엔지니어링 이재권,이재혁 110111-3830688	서울 강서구 화곡로 18길,30-11, 203호(화곡동, 원흥타운)
10	202605	2016.10.24.	(주)넥스트코어테크놀로지 서원기 134211-0139041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13길 7, 2층(문정동)
11	202606	2016.10.24.	(주)한빛에스아이 황명구 110111-3077058	서울 서초구 언남길 57, 201호(양재동, 대흥빌딩)
12	202607	2016.10.24.	(주)아이티로그 도학진 110111-4052835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1106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1차)
13	202608	2016.10.28.	사회적협동조합공감과연대 홍재현 254151-0019973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44, 비103호(성수동2가,우영테크노센터)
14	202609	2016.10.28.	(주)등대씨엔씨 서철승 110111-4334499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413호(가산동,에이스하이엔드3차)
15	202610	2016.10.28.	시엔스(주) 박우진 110111-5196153	서울 강남구 연주로 730, 302호(논현동, 동익빌딩)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 2133-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97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김철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일시 : 2016-09-29 06:59 장소 : 마장2교 내용 : 총복84사7309(카고)차량 총중량 4.0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6. 12. 31.
 - 나.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02호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아래의 건축허가를 취소처분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가.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나.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

다. 처분대상 : 노량진역사(주)

※ 법인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12길 12(대방동) 301호

라. 건축허가 취소일 : 2016. 8. 31

마. 공고기간 : 2016. 11. 10. ~ 2016. 11. 25.

바.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관 및 홈페이지

사. 건축허가 취소 대상

허가번호 (허가일자)	건축위치	건축주	연면적(㎡)	건축구분	용도
2008-신축-1 (2008.5.2)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12-1 외 24필지	노량진 역사(주)	122,062.97	신축	운수시설(철도역사), 판매시설,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운동시설

아.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02-2133-7112)

자.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은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11호

강서구 화곡동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73-11 외 1필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가. 열람 기간: 2016. 11. 11. ~ 2016. 11. 24.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02-2133-4934)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강서구 화곡동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외 1필지	-	증)945	945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945	감) 945	-	-	-
	준주거지역	-	증) 945	945	100.0	

라. 관계도서: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13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1) 후원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알즈너 공감대리점	서울 후- 제660호	조미령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29길 23, (쌍문동) (02-998-7150)	소재지 ('16.09. 30.)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307, 106동 501호 (방학동, 우성2차아파트)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29길 23, (쌍문동)
마임 영등포지사	서울 후- 제258호	윤수례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44, 3층(신길동) (02-875-3207)	소재지 ('16.09. 24.)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178, 3층(신길동)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44, 3층(신길동)
자연건강식품	서울 후- 제340호	신명숙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9길 22, (도곡동) (02-575-9982)	소재지 ('14.09. 30.)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9길 8, 2층(도곡동)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9길 22, (도곡동)
바이오 플래넷(주)	서울 후- 제654호	김시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4, 11층(삼성동, 인화빌딩) (070-7873-0551)	소재지 ('16.10. 0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3, 5층 (삼성동, 애플트리타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4, 11층(삼성동, 인화빌딩)
오휘은평지사	서울 후- 제432호	김한석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6길 5, 3층 (응암동) (02-384-7001)	상 호 ('16.09. 22)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6길 5, 3층 (응암동)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61, 203호(갈현동, BYC빌딩)

2) 다단계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주)조은사람들	서울- 제730호	조용덕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8, 2층 (봉천동, 유양빌딩) (02-538-5533)	소재지 ('16.09. 2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13, 7층(대치동, 포스타빌딩)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8, 2층(봉천동, 유양빌딩)
(주)인바이트 커뮤니케이션	서울- 제806호	하진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3층 (역삼동, 여삼빌딩) (02-1670-9239)	소재지 ('16.10. 04)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97길 20, 4층 (청담동, 성호빌딩)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3층 (역삼동, 여삼빌딩)
(주)에이필드	서울- 제833호	이종현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1401호(만리동1가, 스카이1004빌딩) (02-587-9609)	소재지 ('16.10. 14)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44길 7, 409동-404호(진관동, 은평뉴타운폭포동)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44길 30, 424동-501호(진관동, 은평뉴타운폭포동)

3) 다단계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주)타임엔로우	서울 - 제800호	유희양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802호(삼성동, 현대타워) (1644-3212)	'16.09.30.	공제해지
(주)바이오숲	서울 - 제832호	안성훈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2, 5층(논현동, 한일빌딩) (3443-9252)	'16.10.12.	공제해지

4)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청솔상사	서울 후- 제429호	마은영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73길 20-8, (면목동) (010-5222-0501)	'16.10.17.	영업부진
종근당건강건강미락 동대문지사	서울 후- 제647호	최용희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19가길 34, 202호(용두동) (02-933-3476)	'16.09.26.	사업부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민생경제과(☎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17호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종로구 안국동 175-2 일대 풍문여고부지의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2133-8412, fax : 2133-0739)
 서울시청 박물관과(☎ 2133-4191, fax : 2133-1447)
 종로구 건축과 (☎ 2148-2813, fax : 2148-5830)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북촌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종로구 북촌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일대	1,128,372.7	-	1,128,372.7	•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00호(2008.6.12)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1) 교통시설(변경없음)
- 2) 공간시설(변경없음)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②	학교	고교	안국동 175-2, 175-101	12,826.2	감) 12,826.2	-	서교위5 1987. 02.21	풍문여고

○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문화시설	박물관	안국동 175-2, 175-101	-	증) 12,847.8	12,847.8	-	서울 공예박물관

- 건축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①	문화시설	60%이하	120%이하	신축시	3층 이하, 12m이하	▶ 기존 5층 과학관은 증축, 개축, 재축 시 5층 허용
					기존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시	4층 이하, 16m이하	

3.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

1) 최대개발규모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최대개발규모	북촌6구역	330㎡ 이하	북촌6구역으로 가구 및 획지 15-1 포함

2) 획지계획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획지선	북촌6구역에 15-1 포함	• 풍문여고 이적지 중 문화시설 지정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획지선을 지정하여 관리하며 공동개발은 불허함. • 획지 내 필지들은 개별 필지별 건축이 규제되고 획지규모의 공동개발을 지정함.
대지분할가능성	북촌6구역에 15-1 포함	• 대지의 여건과 효용성을 위하여 북촌6구역 내 최대개발규모 면적 내에서 분할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함.

3)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역	동명	지번	필지	획지	비고
15	1	북촌6구역에 15-1 포함	안국동	175-2	(206.9)	985.1	획지선 지정 (풍문여고 해제 부지 중 가구 및 획지 15-1 필지분할예정)
					(170.7)		
					(239.4)		
					(118.3)		
					(249.8)		

※ 상기 면적은 토지대장(2009년 9월 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값이며 ()안의 값은 획지내 편입된 면적을 개략 산출한 값으로서, 획지의 면적 등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계획 결정조서

1) 허용용도 (변경없음)

2) 불허용도

도면표시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적용기준
불허1	북촌6구역 (가구 및 획지 15-1 포함)	공동주택	연립주택	전층 불허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300㎡ 미만)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입지 불허 • 건축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본 지침제24조~제45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제53조(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침)의 규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300㎡ 이상)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300㎡ 미만) 제조업소, 수리점(500㎡ 미만) 청소년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500㎡ 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300㎡ 미만)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1,000㎡ 미만) 노래연습장	전층 불허

3) 용도완화

도면표시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예시용도	세부시설기준
용도완화	북촌6구역 (가구 및 획지 15-1 포함)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	전통공연장 한옥 및 전통문화관련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전통공방, 전통체험시설	입지허용
		교육연구시설	학원	문화관련 입시학원/어학학원 한옥연구센터 한옥건축학교(전수학교)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전통체험시설 청소년시설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신문사 제외)	-	지정된 부지에 한해 입지허용 - 북촌7구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지상), 한국금융연수원, 국무총리공관, 베트남대사관, 계동산 1-36 - 특별계획구역: 현대그룹사옥

나)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결정조서

1) 건폐율 결정조서

적용구역	건폐율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가구 및 획지 15-1 적용 학교이적지 건폐율 : 30%

※ 서울시도시계획조례 54조 3항 1호에 의거하여 학교이적지는 10년간 건폐율 30%적용

2) 용적률 결정조서

적용구역	용적률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가구 및 획지 15-1 적용 학교 이적지 용적률 : 120%이하

※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2항에 의거하여 학교 이적지는 10년간 용적률 120% 적용

3) 높이계획 결정조서

적용구역	높이		비고
북촌6구역 (가구 및 획지 15-1 포함)	한옥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 a : 건물폭 • 비한옥 경사지붕 설치 권장 (경사도 3:10~6:10인 경우에 한하여 최고높이 10m이하 적용) • 본 지침 제42조 내지 제44조 참고
	비한옥	2층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4)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 및 구역명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북촌6구역 (가구 및 획지 15-1 포함)	• 안국동 175-2 내 잔여부지	용도	불허1 / 용도완화	-
		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높이	한옥 2층 이하 /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비한옥	2층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경사지붕 설치 시 최고높이 10m이하)	

다)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구역별지침 적용구역의 구분>

구분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한옥건축유도	북촌6구역 (가구 및 획지 15-1 포함)	- 신축시 건축물의 형태를 한옥으로 유도함. (비한옥 신축 가능) - 비한옥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시, 기존 한옥과의 경관적 조화를 고려하여 공통지침과 한옥건축유도지침 준수	한옥의 경우 한옥의 형태 및 외관지침 준수

<공통지침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① 규제사항 : 변경없음

② 권장사항 : 변경없음

<구역별 지침>

구분		한옥건축유도
적용구역		북촌6구역 (가구 및 획지 15-1 포함)
비한옥의 신축		가능
지붕	경사지붕 설치	권장
		- 단, 경사지붕 설치 시 - 지붕의 경사는 반드시 3:10 이상, 6:10 이하로 함. - 경사 방향은 주변 건축물과 일치하도록 함.
담장설치	도로경계선에 전통양식담장설치	규제
색채	권장색채사용 또는 재료 고유의 색채 유지	규제
옹벽 등의 설치	가로변에 면한 경우 콘크리트 마감 금지	규제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기정

구분	적용구간	계획내용	비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북촌1구역, 북촌2구역, 북촌6구역	• 공공기여에 따라 당해 건물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조건 및 내용 은 완화계획에 따름. • 「주차장법」 및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기준 준수
	차량진입금지구간에 면한 대지	• 당해 건물의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인 근주차장 또는 비용납부로 대신)	

변경

구분	적용구간	계획내용	비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북촌1구역, 북촌2구역, 북촌6구역, 서울공예박물관 건립부지	• 공공기여에 따라 당해 건물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조건 및 내용 은 완화계획에 따름. • 「주차장법」 및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기준 준수
	차량진입금지구간에 면한 대지	• 당해 건물의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인근주차장 또는 비용납부로 대신) • 안동별궁터 보존	

다)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주민협정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6.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조서 (주차장 설치기준완화 외 변경없음)

가) 주차장 설치기준완화

기정

도면표시	적용구역	완화근거	완화조건	완화내용 (당해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비고
-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① 한옥건축시	100% 완화	-
주차장 설치기준완 화구역①	북촌1구역 북촌2구역 북촌6구역	한옥마을 보존	② 가로지장물을 부지내 수용시	100% 완화	• 변압기·개폐기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로서 관 계부서에서 부지내 설치를 인정하는 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②	삼청동길변 가화로변 올곡로변 북촌길변 계동길남측 화개길	차량진입 금지구간 지정	③ 가로지장물을 부지내 수용시	100% 완화	• 변압기·개폐기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로서 관 계부서에서 부지내 설치를 인정하는 시설
			④ 공공에게 공간제공시	100% 완화	• 5년이상 무상임대조건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와 공간 협약체결을 한 경우에 한함. • 지하1층 또는 지상층에 연면적 100㎡이상의 공간 을 공공에게 제공시

변경

도면표시	적용구역	완화근거	완화조건	완화내용 (당해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비고
-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① 한옥건축시	100% 완화	-
주차장 설치기준완 화구역①	북촌1구역 북촌2구역 북촌6구역 (가구 및 획지 15-1포함)	한옥마을 보존	② 가로지장물을 부지내 수용시	100% 완화	• 변압기·개폐기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로서 관 계부서에서 부지내 설치를 인정하는 시설
	서울공예박물관 관건립부지	안동별궁 장소성 회복	③안동별궁터 보존	100% 완화	• 최소한의 주차장 확보 유물반출입, 장애인주차 허용 (5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②	삼청동길변 가화로변 울곡로변 북촌길변 계동길남측 화개길	차량진입 금지구간 지정	④ 가로지장물을 부지내 수용시	100% 완화	• 변압기·개폐기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로서 관 계부서에서 부지내 설치를 인정하는 시설
			⑤ 공공에게 공간제공시	100% 완화	• 5년이상 무상임대조건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와 공간 협약체결을 한 경우에 한함. • 지하1층 또는 지상층에 연면적 100㎡이상의 공간을 공공에게 제공시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라. 관련도서(생략) : 열람장소 비치

서울시교육청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6-163호

서울특별시의회 안건 제출 공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연번	의 안 명	제 출 자	의안번호
1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예산담당관)	1496
2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1497
3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1498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6-12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5-135호(2015.12.17.)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6-3호(2016.1.14.)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승인 제4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게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주차관리과(☎02-2148-3344)에 비치하여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0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47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 2) 사업의 명칭 : 승인 제4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 사업의 면적 : 1,322.2㎡(대지 1,018.4㎡, 도로 303.8㎡)
- 2) 사업의 규모 : 승용차 60~75면, 입체식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43 (수송동 146-2)

마. 사업의 기간 : 인가 고시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주차관리과(☎2148-3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종류 및 내용	
1	송인동 462	대	74	74	황○구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9번지 동백우성아파트 1301-1401					
2	송인동 463	대	10	10	황○길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490					
3	송인동 464	대	66	66	이○준	서울 종로구 송인동 814-11 다복빌라 B01					
4	송인동 490	대	43	43	황○길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490					
5	송인동 479	대	123	123	이○복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479-1					

□ 물건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건물 층수	수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종류 및 내용	
1	송인동 462	건물	목조 와즙(대장) 블록조 와즙(현재)	1층	43.04 (실측 55)	황○구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9번지 동백우성아파트 1301-1401					
		가건물 (창고)	블록조(현재)	1층	실측 4	황○구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9번지 동백우성아파트 1301-1401					
2	송인동 464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 ~ 지상4층	9.66(지층)	이○준	서울 종로구 송인동 814-11 다복빌라 B01					
					31.7(1층)							
					30.51(2층)							
					31.72(3층)							
					26.82(4층)							
3	송인동 490	건물	목조 초즙(대장) 시멘트벽돌(현재)	1층	16.52 (실측 55)	황○길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490					
		가건물 (창고)	시멘트벽돌(현재)	1층	실측 6	황○길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490					
		대문	철제(문주포함)	-	1식							
		수도전	-	-	1식							
		담장	블록 및 벽돌	-	1식							
4	송인동 479	물건이 전비	창고부속물 등	-	1식	이○복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479-1					
		건물	세멘트벽돌조	1층	43.74 (실측 120)							

<변경후>

☐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종류 및 내용	
1	송인동 462	대	74	74	황○구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9번지 동백우성아파트 1301-1401				
2	송인동 463	대	10	10	황○길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490				
3	송인동 464	대	66	66	이○준	서울 종로구 송인동 814-11 다복빌라 B01				
4	송인동 490	대	43	43	황○길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490				
5	송인동 479	대	123	123	이○복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479				

☐ 물건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건물 층수	수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종류 및 내용	
1	송인동 462	건물	목조 와집(대장) 블록조 와집(현재)	1층	43.04 (실측 55)	황○구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9번지 동백우성아파트 1301-1401					
		가건물 (창고)	블록조(현재)	1층	실측 4	황○구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9번지 동백우성아파트 1301-1401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건물 층수	수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종류 및 내용	
2	송인동 464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 ~ 지상4층	9.66(지층)	이○준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814-11 다복빌라 B01				
					31.7(1층)						
					실측 37						
					30.51(2층)						
					실측 37						
3	송인동 490	건물	목조 초층(대장) 시멘트벽돌(현재)	1층	31.72(3층)	황○길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490				
					실측 35						
					26.82(4층)						
					실측 34(4층)						
					16.52 (실측 55)						
4	송인동 479	건물	세멘트벽돌조	1층	실측 6	황○길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490				
					1식						
					1식						
					1식						
					1식						
5	송인동 479(1층)	건물	세멘트벽돌조	1층	43.74 (실측120)	이○복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479				
					1식						
					1식						
					1식						
					2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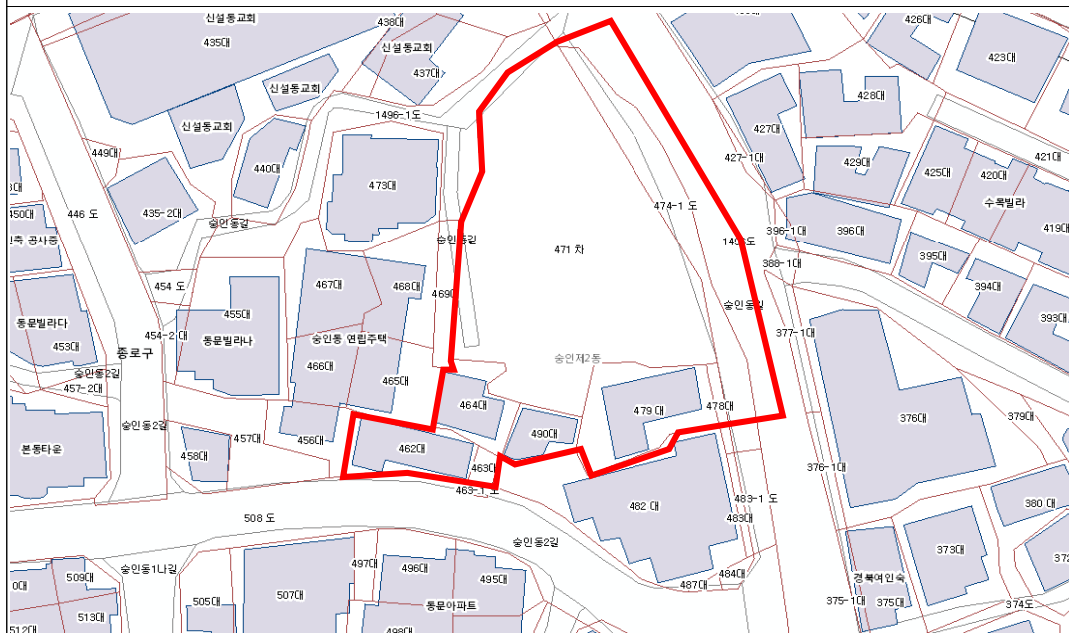
☐ 영업권 조서

연번	소재지	상호	수량	영업권의 종류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송인동 479 (1층)	비앤시	1식	제조업(이류)	이○열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479 (1층)	

위치도 및 사업구역도



위 치 도



사업구역도

◆ 종로구고시 제2016-126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

도로법 제19조 1항 또는 제20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따라 도로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종로구청장

구 분		[V]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구도	
노선번호		C1-J13-2-2 외 230	
노선명		재동-3 외 230	
기점		재동 84-42 외 230	
종점		계동 144-2 외 230	
주요 통과지			
총연장(킬로미터)		20.951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연장 (킬로미터)		

□ 구도 노선 지정(신규) 세부내역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전용구간 연장(m)	비고
1	재동-3	C1-J13-2-2	재동 84-42	계동 144-2	82		82		
2	재동-4	C1-J13-2-A1	재동 84-15	재동 84-14	18		18		
3	재동-5	C1-J13-2-A3	재동 84-23	재동 84-30	38		38		
4	재동-6	C1-J13-2-A5	재동 84-10	재동 84-9	22		22		
5	재동-7	C1-J13-2-A7	재동 84-7	재동 84-8	15		15		
6	가회-4	C1-J13-6-2	가회동 208-7	계동 79-8	170		170		
7	가회-5	C1-J13-6-A1	가회동 192	가회동 191	18		18		
8	계동-2	C1-J13-6-A3	계동 81	계동 86	25		25		
9	계동-3	C1-J15-2-2	계동 120-7	계동 140-48	138		138		
10	계동-4	C1-J15-2-A1	계동 125-2	계동 125-1	23		23		
11	계동-5	C1-J15-2-A3	계동 134-3	원서동 135-2	56		56		
12	가회-6	C1-J13-8-2	가회동 177-17	계동 74-1	145		145		
13	가회-7	C1-J13-8-A1	가회동 177-4	가회동 177-5	27		27		
14	원서-2	C1-J16-1-A1	원서동 160	원서동 160	13		13		
15	가회-8	C1-J13-7-2	가회동 170-4	가회동 102-1	166		166		
16	가회-9	C1-J13-7-A1	가회동 141-1	가회동 132	75		75		
17	가회-10	C1-J13-7-A3	가회동 116	가회동 130-1	72		72		
18	가회-11	C1-J13-7-A5	가회동 93-1	가회동 97	24		24		
19	가회-12	C1-J13-9-2	가회동 70-2	가회동 88	100		100		
20	가회-13	C1-J13-9-A2	가회동 87	가회동 53	18		18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21	가회-14	C1-J13-12-1	가회동 11-4	가회동 11-71	225		225		
22	가회-15	C1-J13-12-A1	가회동 11-3	가회동 11-47	77		77		
23	가회-16	C1-J13-12-A2	가회동 11-28	가회동 11-22	25		25		
24	가회-17	C1-J13-12-A4	가회동 11-92	가회동 11-153	64		64		
25	가회-18	C1-J13-12-A3	가회동 11-32	가회동 11-30	42		42		
26	가회-19	C1-J13-11-1	가회동 42	가회동 33-26	85		85		
27	가회-20	C1-J13-11-3	가회동 1-90	가회동 1-13	163		163		
28	가회-21	C1-J13-11-A2	가회동 46	가회동 51-4	45		45		
29	가회-22	C1-J13-11-A4	가회동 42	가회동 37-4	36		36		
30	삼청-9	C1-J13-11-A6	삼청동 35-174	삼청동 35-119	67		67		
31	가회-23	C1-J13-11-A1	가회동 1-94	가회동 1-94	55		55		
32	원서-3	C1-J16-7-2	원서동 4-61	계동 2-105	122		122		
33	원서-4	C1-J16-7-A1	원서동 4-56	원서동 4-39	47		47		
34	원서-5	C1-J16-7-A3	원서동 4-46	원서동 4-6	12		12		
35	원서-6	C1-J16-5-1	원서동 42	원서동 16	203		203		
36	원서-7	C1-J16-5-A2	원서동 31-2	원서동 9-9	43		43		
37	원서-8	C1-J16-3b-1	원서동 135-60	원서동 135-81	112		112		
38	원서-9	C1-J16-3b-A1	원서동 135-59	원서동 135-60	15		15		
39	원서-10	C1-J16-3b-A3	원서동 77-20	원서동 77-15	26		26		
40	원서-11	C1-J16-3b-A2	원서동 135-88	원서동 135-87	14		14		
41	원서-12	C1-J16-3a-1	원서동 135-58	원서동 135-75	267		267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42	원서-13	C1-J16-4-1	원서동 86-16	계동 36-26	138		138		
43	원서-14	C1-J16-4-3	원서동 4-24	원서동 4-16	24		24		
44	원서-15	C1-J16-4-A1	원서동 86-15	원서동 86-24	45		45		
45	원서-16	C1-J16-4-A2	원서동 4-17	계동 2-133	57		57		
46	계동-6	C1-J15-6-1	계동 2-46	계동 2-35	88		88		
47	계동-7	C1-J15-6-A1	계동 2-46	계동 2-42	34		34		
48	계동-8	C1-J15-6-A2	계동 2-62	계동 2-59	21		21		
49	계동-9	C1-J15-6-A4	계동 2-58	계동 2-25	11		11		
50	원서-17	C1-J16-3-1	원서동 77-10	원서동 76-56	190		190		
51	원서-18	C1-J16-3-A2	원서동 77-4	원서동 77-80	22		22		
52	원서-19	C1-J16-3-A4	원서동 76-12	원서동 76-13	25		25		
53	원서-20	C1-J16-3-A6	원서동 76-33	원서동 76-37	35		35		
54	계동-10	C1-J15-4-2	계동 24-1	계동 30-1	74		74		
55	계동-11	C1-J15-4-A1	계동 29	계동 28-2	13		13		
56	계동-12	C1-J15-4-A3	계동 34-2	계동 2-56	16		16		
57	계동-13	C1-J15-1	계동 146-2	계동 143-1	97		97		
58	계동-14	C1-J15-3	계동 141-2	계동 78-2	232		232		
59	계동-15	C1-J15-5	계동 73-6	계동 70-1	28		28		
60	계동-16	C1-J15-7	계동 65-1	계동 62-2	35		35		
61	계동-17	C1-J15-9	계동 12-2	계동 5-1	60		60		
62	계동-18	C1-J15-A2	계동 107-1	계동 105	32		32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63	계동-19	C1-J15-A1	계동 117-1	계동 91	137		137		
64	계동-20	C1-J15-A3	계동 101-3	계동 101-4	11		11		
65	계동-21	C1-J15-A4	계동 140-40	계동 140-48	80		80		
66	계동-22	C1-J15-A6	계동 133-6	계동 133-11	43		43		
67	계동-23	C1-J15-A8	계동 44-1	계동 36-3	69		69		
68	계동-24	C1-J15-A10	계동 49-1	계동 49-1	16		16		
69	계동-25	C1-J15-A12	계동 63-2	계동 15-7	51		51		
70	계동-26	C1-J15-A14	계동 52-1	계동 53	23		23		
71	계동-27	C1-J15-A16	계동 12-2	계동 16-1	25		25		
72	계동-28	C1-J15-A18	계동 5-7	계동 7	17		17		
73	계동-29	C1-J15-A20	계동 8-2	계동 8-4	10		10		
74	문니-3	C1-J16-1	문니동 98-7	원서동 55	525		525		
75	원서-21	C1-J16-3	원서동 72	원서동 75-1	60		60		
76	원서-22	C1-J16-A2	원서동 156	원서동 174	66		66		
77	원서-23	C1-J16-A4	원서동 162-1	원서동 177	42		42		
78	원서-24	C1-J16-A6	원서동 147	원서동 134-9	38		38		
79	원서-25	C1-J16-A8	원서동 127	원서동 123	27		27		
80	원서-26	C1-J16-A10	원서동 99	원서동 99	20		20		
81	원서-27	C1-J16-A1	원서동 8-4	원서동 7	17		17		
82	가회-23	C1-J16-A3	가회동 11-61	가회동 11-63	24		24		
83	가회-24	C1-J16-A5	가회동 11-67	가회동 11-64	22		22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84	재동-8	C1-J13-1	재동 104-1	재동 83	212		212		
85	재동-9	C1-J13-3	재동 38-2	가회동 1-17	565		565		
86	가회-25	C1-J13-5	가회동 1-200	가회동 1-234	170		170		
87	삼청-10	C1-J13-7	삼청동 28-37	삼청동 22	380		380		
88	재동-10	C1-J13-A2	재동 89-1	재동 85-5	33		33		
89	재동-11	C1-J13-A4	재동 84-39	재동 84-35	30		30		
90	재동-12	C1-J13-A1	재동 60-1	재동 49-1	25		25		
91	가회-26	C1-J13-A6	가회동 162-1	회동 117	100		100		
92	가회-27	C1-J13-A3	가회동 165-2	가회동 160	27		27		
93	가회-28	C1-J13-A8	가회동 205	가회동 201	16		16		
94	가회-29	C1-J13-A10	가회동 172-1	가회동 188	81		81		
95	가회-30	C1-J13-A12	가회동 175-2	가회동 175-2	14		14		
96	가회-31	C1-J13-A14	가회동 177-7	가회동 177-14	32		32		
97	가회-32	C1-J13-A5	가회동 25-1	가회동 11-78	43		43		
98	삼청-11	C1-J13-A16	삼청동 28-6	삼청동 28-17	50		50		
99	삼청-12	C1-J13-A18	삼청동 27-4	삼청동 27-29	96		96		
100	삼청-13	C1-J13-A20	삼청동 27-15	삼청동 27-11	38		38		
101	계동-30	C1-J16-1a-1	계동 140-10	원서동 135-106	130		130		
102	재동-13	C1-J13-1-2	재동 109	안국동 85	160		160		
103	안국-3	C1-J13-1-A1	안국동 104	안국동 103	13		13		
104	안국-4	C1-J13-1-A3	안국동 75-5	안국동 70	100		100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105	부암-1	5305-J7-1a-2	부암동 41	부암동 44-6	102		102		
106	부암-2	5305-12-2	부암동 224-1	부암동 225-2	34		34		
107	부암-3	5305-12-4	부암동 217-2	부암동 216-3	25		25		
108	부암-4	23-38-1	부암동 220-1	부암동 238-2	132		132		
109	부암-5	23-38-3	부암동 238-5	부암동 237-36	70		70		
110	부암-6	5305-10-2	부암동 224-1	부암동 243-1	270		270		
111	부암-7	5305-10-A1	부암동 275	부암동 274-1	20		20		
112	부암-8	5305-10-A3	부암동 259-1	부암동 254-1	52		52		
113	부암-9	5305-J7-1-1	부암동 44-1	부암동 100-10	245		245		
114	부암-10	5305-J7-1-A2	부암동 29-10	부암동 29-6	50		50		
115	부암-11	5305-11-2	부암동 281-6	부암동 293-3	137		137		
116	부암-12	5305-11-4	부암동 370-12	부암동 296	40		40		
117	부암-13	5305-11-A1	부암동 293-4	부암동 산 16-3	15		15		
118	부암-14	5305-7-1	부암동 313-1	부암동 325-2	160		160		
119	부암-15	23-37-2	부암동 202-4	부암동 164-2	86		86		
120	부암-16	23-41-A2	부암동 191-21	부암동 191-18	92		92		
121	부암-17	23-42-1	부암동 175-1	신영동 158-5	285		285		
122	부암-18	23-42-A2	신영동 179-11	신영동 160-8	73		73		
123	부암-19	5305-5-1	부암동 265-21	부암동 314-3	64		64		
124	부암-20	5305-5a-1	부암동 327	부암동 362-10	290		290		
125	부암-21	5305-3-2	부암동 254-5	부암동 252	60		60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126	부암-22	5305-J7-1	부암동 257-3	부암동 95-55	950		950		
127	부암-23	5305-J7-3	부암동 95-31	부암동 150-8	137		137		
128	부암-24	5305-J7-A2	부암동 245-5	부암동 247-1	37		37		
129	부암-25	5305-J7-2-2	부암동 60-1	부암동 70-2	240		240		
130	부암-26	5305-J7-2-A2	부암동 61-1	부암동 107	148		148		
131	부암-27	5305-J7-2-A1	부암동 51-5	부암동 52	30		30		
132	홍지-4	23-43-A1	홍지동 128-3	홍지동 128-1	12		12		
133	홍지-5	23-6-2	홍지동 72-8	신영동 131-1	550		550		
134	신영-4	23-6-A1	신영동 98	신영동 87-1	95		95		
135	신영-5	23-6-A3	신영동 133-1	신영동 135-1	62		62		
136	홍지-6	23-45-1	홍지동 133-3	홍지동 130-2	70		70		
137	홍지-7	23-J9-2a-A2	홍지동 52-1	홍지동 51-5	53		53		
138	홍지-8	23-J9-2-A2	홍지동 62-5	홍지동 60-1	57		57		
139	홍지-9	23-J9-1-2	홍지동 45-1	홍지동 35-1	152		152		
140	홍지-10	23-J9-1-4	홍지동 42-2	홍지동 40	81		81		
141	신영-6	23-7-1	신영동 183-1	신영동 202-1	61		61		
142	신영-7	23-7-A2	신영동 203-1	신영동 200-4	47		47		
143	신영-8	23-7b-A2	신영동 214-58	신영동 214-58	20		20		
144	신영-9	23-7a-2	신영동 201-1	신영동 206	57		57		
145	신영-10	23-6d-1	신영동 117-1	신영동 64	178		178		
146	신영-11	23-6d-A1	신영동 67	신영동 63	37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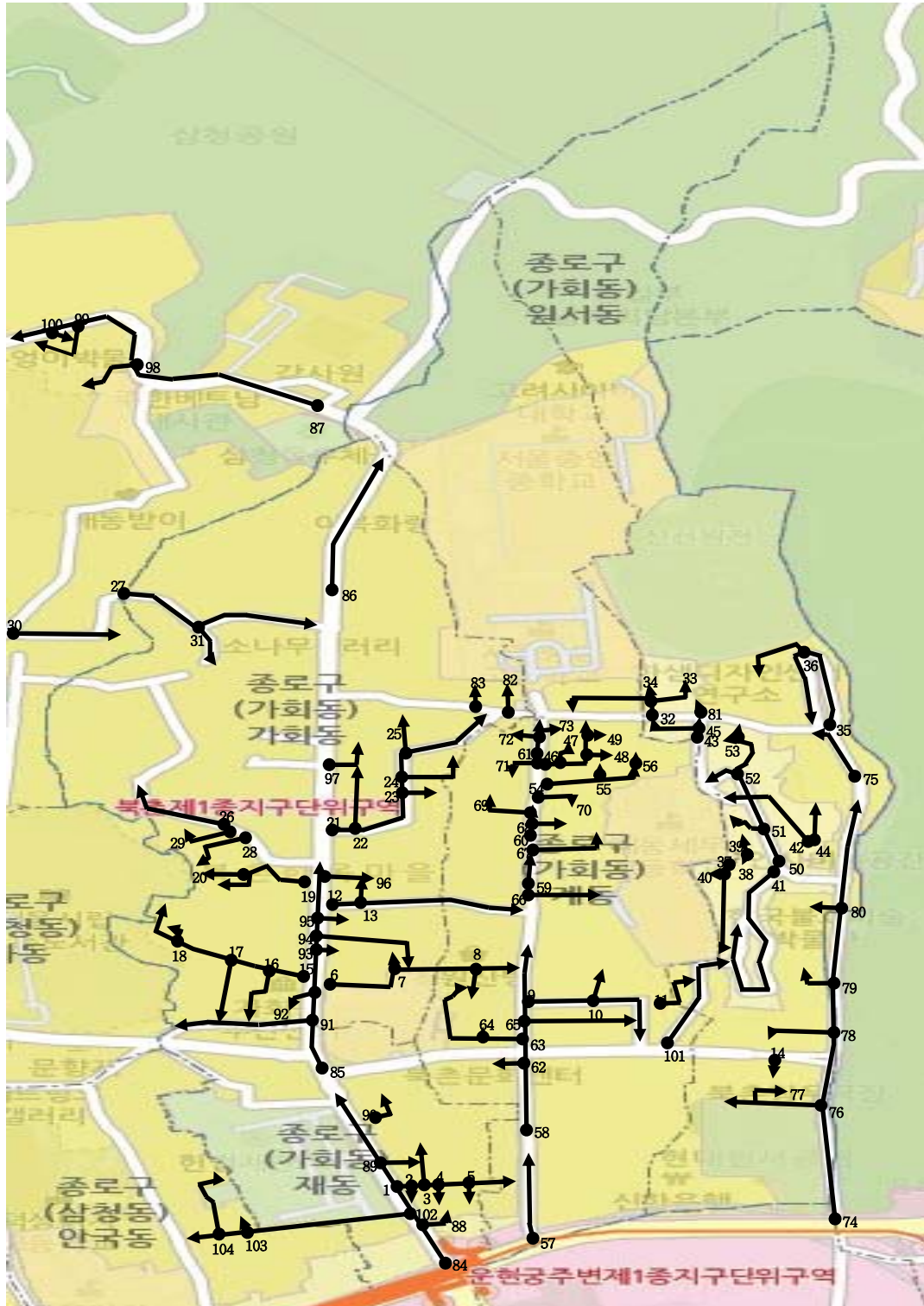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147	신영-12	23-6b-2	신영동 99	신영동 94	38		38		
148	신영-13	23-6b-4	신영동 90	신영동 83	175		175		
149	신영-14	23-6a-2	신영동 158-14	신영동 158-30	130		130		
150	신영-15	23-6a-A1	신영동 158-28	신영동 157-2	21		21		
151	신영-16	23-6a-A3	신영동 158-29	신영동 158-29	14		14		
152	송인2-1	4801-25-2	송인동 1433	송인동 232-3	360		360		
153	송인2-2	51-60-1	송인동 221	송인동 232-20	210		210		
154	송인2-3	51-66a-A2	송인동 207-50	송인동 207-40	62		62		
155	송인2-4	4801-27-2	송인동 1396-1	송인동 206-9	288		288		
156	송인2-5	4801-27-4	송인동 232-12	송인동 238-2	124		124		
157	송인2-6	4801-27-A1	송인동 211-9	송인동 211-8	30		30		
158	송인2-7	4801-27-A3	송인동 235-1	송인동 235-4	25		25		
159	송인2-8	51-62-1	송인동 228-6	송인동 217-16	137		137		
160	송인2-9	51-62-A2	송인동 226-7	송인동 226-1	42		42		
161	송인2-10	51-66-1	송인동 200-6	송인동 1419-1	163		163		
162	송인2-11	51-66-3	송인동 1426	송인동 204-2	60		60		
163	송인2-12	4801-29-2	송인동 1368	송인동 228-5	372		372		
164	송인2-13	4801-29-A1	송인동 211-3	송인동 207-19	44		44		
165	송인2-14	4801-29-A3	송인동 207-7	송인동 207-24	62		62		
166	송인2-15	4801-29-A5	송인동 217-1	송인동 211-12	88		88		
167	송인2-16	4801-29-A7	송인동 217-20	송인동 217-10	88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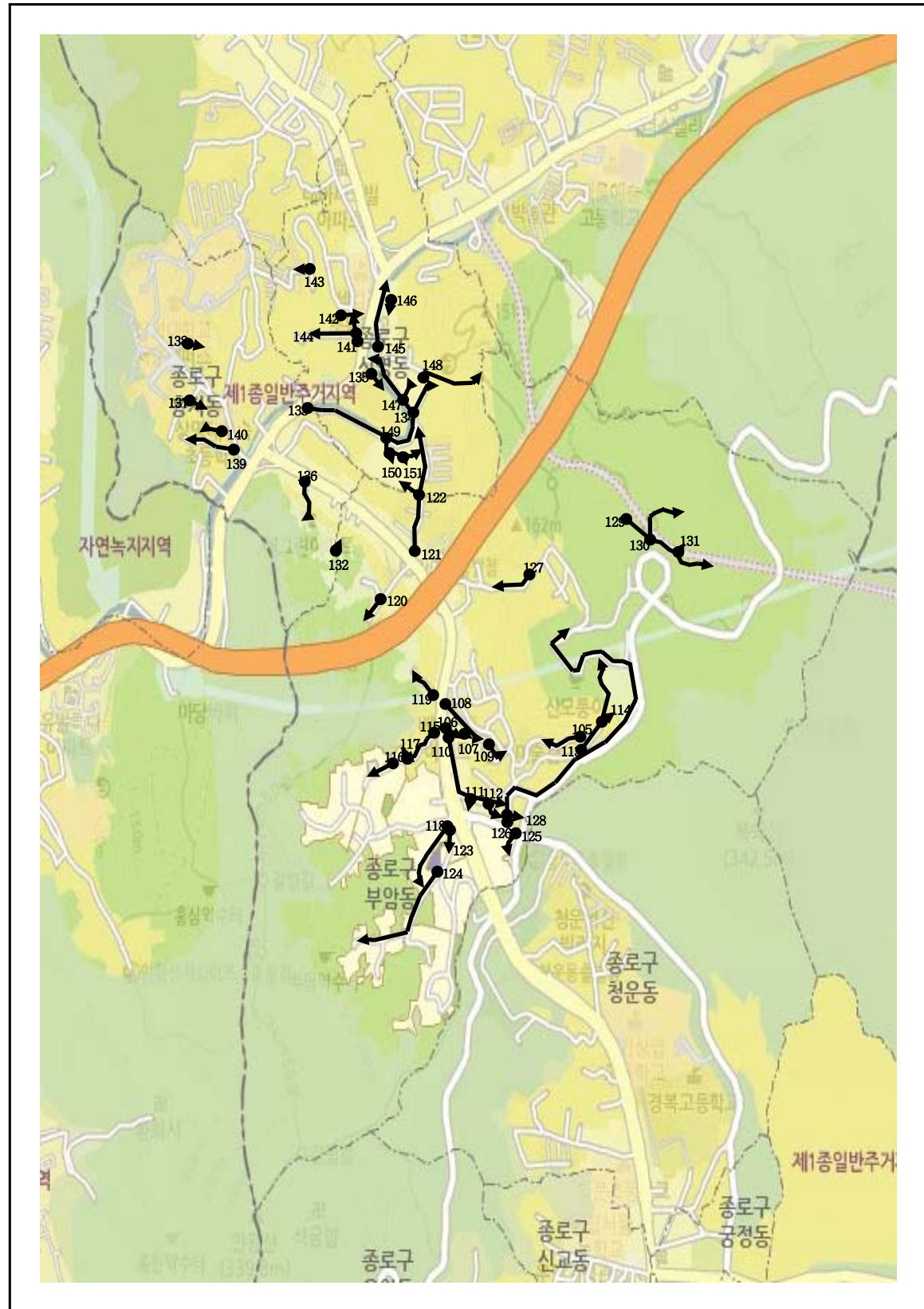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168	송인2-17	51-58a-2	송인동 248	송인동 296-52	140		140		
169	송인2-18	51-56-1	송인동 303	송인동 316-2	230		230		
170	송인2-19	51-56-A2	송인동 292-1	송인동 278	41		41		
171	송인2-20	51-56-A4	송인동 298-1	송인동 298-1	11		11		
172	송인2-21	51-56-A6	송인동 296-14	송인동 296-3	15		15		
173	송인2-22	51-56-A8	송인동 296-21	송인동 313-12	31		31		
174	송인2-23	51-56-A1	송인동 317-22	송인동 317-67	50		50		
175	송인2-24	5111-4-2	송인동 318-16	송인동 241-17	205		205		
176	창신1-65	5111-4-A1	창신동 396-1	창신동 401-12	46		46		
177	송인2-25	51-65a-2	송인동 178-89	송인동 178-147	38		38		
178	송인2-26	56-65a-1	송인동 178-39	송인동 178-28	75		75		
179	송인2-27	51-65a-A1	송인동 178-27	송인동 178-19	27		27		
180	송인2-28	56-65a-A3	송인동 178-20	송인동 178-20	14		14		
181	송인2-29	51-67-1	송인동 190-2	송인동 181-127	180		180		
182	송인2-30	51-67-A2	송인동 190-3	송인동 186	54		54		
183	송인2-31	51-65-1	송인동 178-142	송인동 181-161	240		240		
184	송인2-32	51-65-A2	송인동 178-100	송인동 178-167	20		20		
185	송인2-33	56-65-A1	송인동 178-88	송인동 178-83	92		92		
186	송인2-34	56-65-A4	송인동 178-68	송인동 178-72	100		100		
187	송인2-35	56-65-A6	송인동 178-67	송인동 181-173	75		75		
188	송인2-36	51-65-A8	송인동 178-134	송인동 178-62	54		54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189	송인2-37	51-65-A10	송인동 178-82	송인동 178-83	52		52		
190	송인2-38	51-65-A12	송인동 178-61	송인동 181-16	60		60		
191	송인2-39	51-65-A14	송인동 178-59	송인동 178-119	48		48		
192	송인2-40	51-65-A16	송인동 181-48	송인동 181-11	54		54		
193	송인2-41	51-65-A18	송인동 178-56	송인동 178-15	66		66		
194	송인2-42	51-65-A20	송인동 181-53	송인동 181-132	51		51		
195	송인2-43	51-65-A22	송인동 181-52	송인동 181-130	50		50		
196	송인2-44	51-65-A24	송인동 181-116	송인동 181-127	45		45		
197	송인2-45	51-63b-1	송인동 179-45	송인동 181-81	112		112		
198	송인2-46	51-J35-1-2	송인동 759	송인동 179-46	293		293		
199	송인2-47	51-J35-1-A2	송인동 181-124	송인동 181-170	18		18		
200	송인2-48	51-J35-1-A4	송인동 181-113	송인동 181-92	76		76		
201	송인2-49	52-3-1	송인동 1239-1	송인동 1086	140		140		
202	송인2-50	52-3-A2	송인동 1184	송인동 1188	36		36		
203	송인2-51	52-1-1	송인동 1248	송인동 1103	115		115		
204	송인2-52	52-1-A2	송인동 1245	송인동 1245	15		15		
205	송인2-53	52-1-A1	송인동 1140	송인동 1137	42		42		
206	송인2-54	52-1-A4	송인동 1129	송인동 1124	40		40		
207	송인2-55	52-1-A6	송인동 1095	송인동 1094	18		18		
208	송인2-56	51-J35-1a-1	송인동 817-1	송인동 495	150		150		
209	송인2-57	51-J35-1a-A2	송인동 712	송인동 836	30		30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210	송인2-58	52-7-2	송인동 345	송인동 411	90		90		
211	송인2-59	52-7-A1	송인동 357	송인동 352	40		40		
212	송인2-60	52-5-1	송인동 1238	송인동 339	75		75		
213	송인2-61	51-J35-1b-1	송인동 898	송인동 509	165		165		
214	송인2-62	51-J35-1b-A1	송인동 181-94	송인동 181-75	43		43		
215	송인2-63	51-J35-1b-A3	송인동 618	송인동 600	78		78		
216	송인2-64	51-J35-1c-2	송인동 895	송인동 181-204	132		132		
217	송인2-65	51-J35-1c-A1	송인동 181-153	송인동 181-160	20		20		
218	송인2-66	51-J35-1c-A2	송인동 181-154	송인동 181-155	28		28		
219	송인2-67	51-J35-2-2	송인동 482	송인동 554	172		172		
220	송인2-68	51-J35-2-A1	송인동 458	송인동 445	53		53		
221	송인2-69	51-J35-2-A3	송인동 529	송인동 533	30		30		
222	송인2-70	51-J35-2-A5	송인동 595	송인동 581-2	47		47		
223	송인2-71	51-J35-2-A7	송인동 554	송인동 556	23		23		
224	송인2-72	51-J35-1	송인동 1051	송인동 431	430		430		
225	송인2-73	51-J35-A2	송인동 1050	송인동 1047	35		35		
226	송인2-74	51-J35-A4	송인동 362-2	송인동 402	42		42		
227	송인2-75	51-J35-A6	송인동 365-1	송인동 369	32		32		
228	송인2-76	51-J35-A1	송인동 435	송인동 471	47		47		
229	송인2-77	51-58-1	송인동 270-1	송인동 234-76	260		260		
230	송인2-78	51-58-A2	송인동 267	송인동 266	16		16		
231	송인2-79	51-58-A4	송인동 246	송인동 245	30		30		

□ 지 형 도 (1/50,000 이상)







◆ 중구고시 제2016-100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신당동 132-10 일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중 구 청 장

1. 결정사유

-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노인정 등을 정비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종합복지센터)을 건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회복지시설	신당동 132-10 일대	-	증)379.4	379.4	-	제2종일반 주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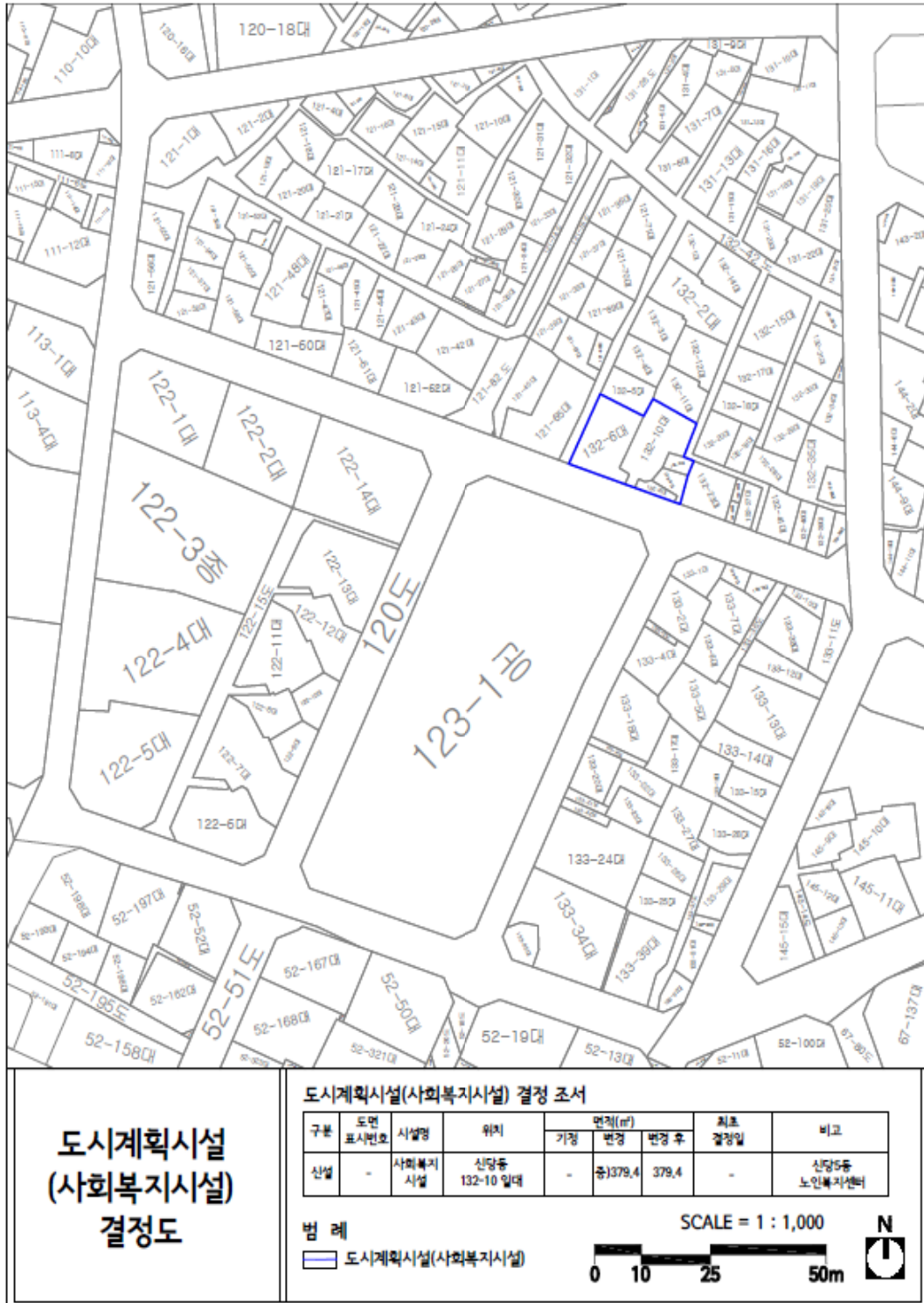
○ 건축물의 범위

구 분	시설명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신설	사회복지시설	신당동 132-10	60%이하	200%이하	지상 4층 이하	신당5동 노인복지센터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도(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기타 사항은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 및 사회복지과(☎02-3396-5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도



◆ 중구고시 제2016-101호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63호(2002.09.01)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2호(2014.09.04)로 변경결정(재정비) 고시된 우리구 북창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7차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6.10.26)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중 구 청 장

1. 결정 취지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남대문로3가 110번지 외 7필지의 남대문로변에 지정된 건축한계선에 대하여 근현대건축물을 보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일환으로 북측 대지경계에 쌈지형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신설코자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축 한계선	- 대로 1-2호선변(남대문로) : 3m - 대로 3-112호선변(소공로) : 3m - 소로 3-5호선변 : 3m	- 대로 1-2호선변(남대문로) : - (폐지) - 대로 3-112호선변(소공로) : 3m - 소로 3-5호선변 : 3m - 대상지 북측 경계부 : 4m(신설)	

나.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남대문로3가 110번지 일대	대로1-2호선변 (남대문로) 건축한계선 폐지 - 건축한계선 3m → 폐지	송례문에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이어지는 남대문로변 근대 상업가로의 기존 건축물 배치형태와 가로경관 보존을 위하여 남대문로에 지정된 건축한계선을 폐지
	대상지 북측 경계부 - 건축한계선 4m → 신설	소공로와 이면부를 연계하는 보행축 강화를 위하여 건축한계선 신설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 기타에 관한 사항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구분		제어기준		비고
		기정	변경	
대지내 공지	쌈지형공지	-	- 보행결절점에 위치 지정 - 이면부 : 1개소	- 권장사항 - 최소폭 : 폭 5m이상 - 조성계획기준 : 최소 25m²이상
통로	공공보행 통로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 부지 북측부 : 1개소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공공보행공간 확보

나. 변경사유서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남대문로3가 110번지 일대	- 쌈지형공지 신설 - 1개소 - 면적 : 400m²	소공로 ~ 이면부 보행축과 연계하여 이용객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쌈지형공지 신설
	- 공공보행통로 신설 - 1개소 - 폭원 : 4m	소공로변과 이면부를 연계하는 보행축 강화를 위하여 기 결정된 소공동 특별계획구역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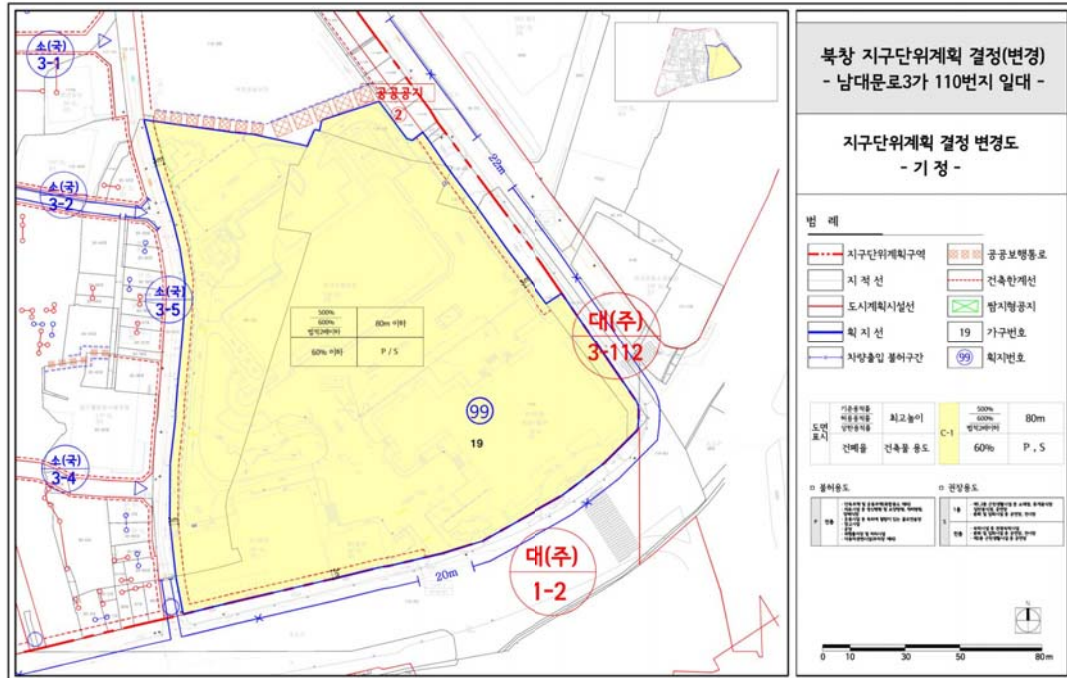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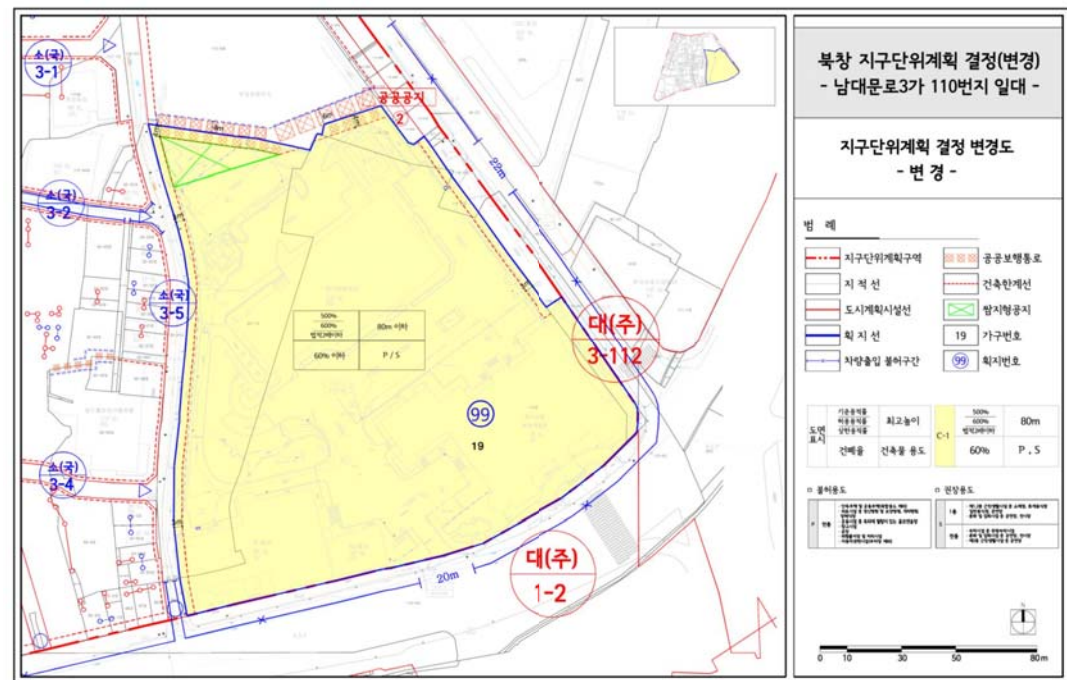
4.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8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중구고시 제2016-102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6호(2015.4.30)로 결정 고시되고, 중구고시 제2015-94호(2015.1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우리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신당동 251-10번지 소유자로부터 주민제안이 있어, 제7차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6.10.26.)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도심재생과, ☎02-3396-578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0일

중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중구 신당동 251-10, 251-133번지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사항임

2.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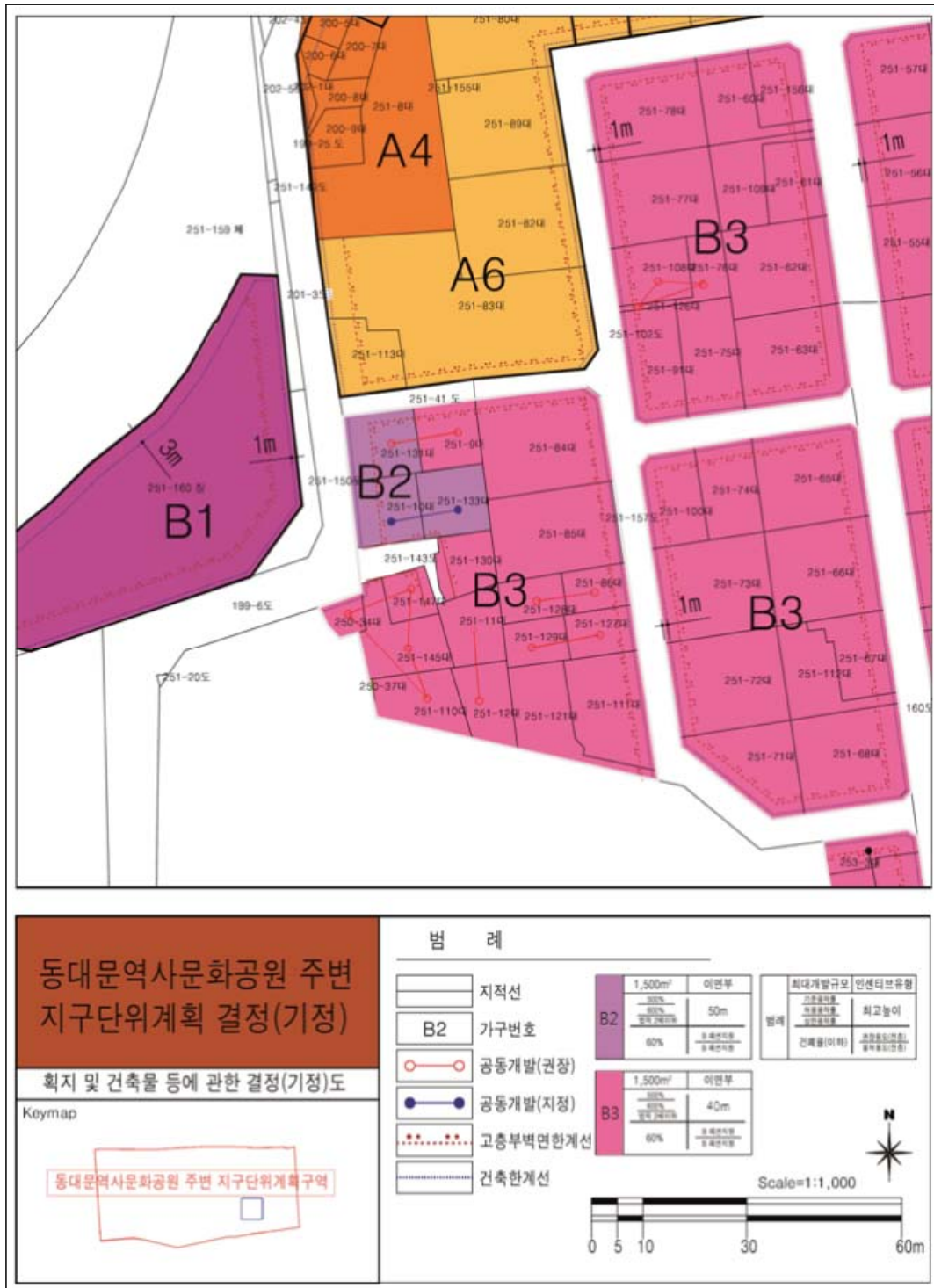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	위 치		필지면적 (㎡)	비고
			동명	지번		
기정	4-6	3,421	신당동	251-10	165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251-133	165	
변경	4-6	3,421	신당동	251-10	165	
			신당동	251-133	165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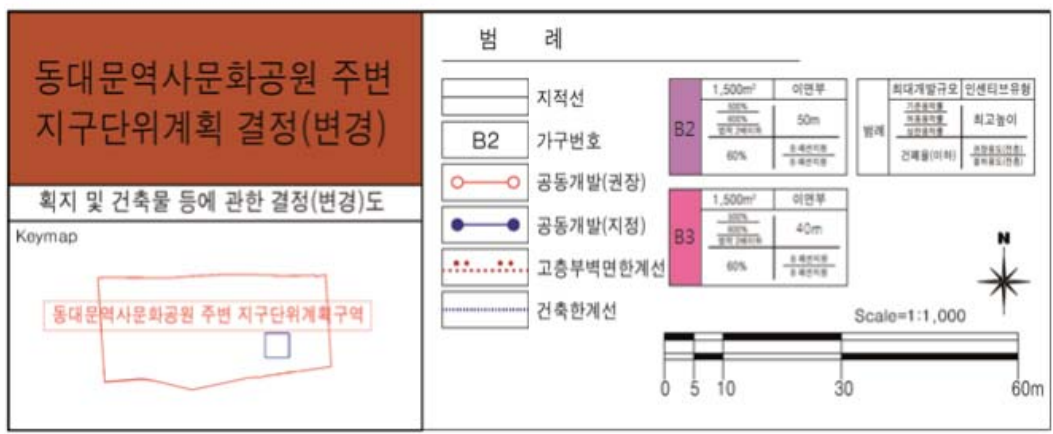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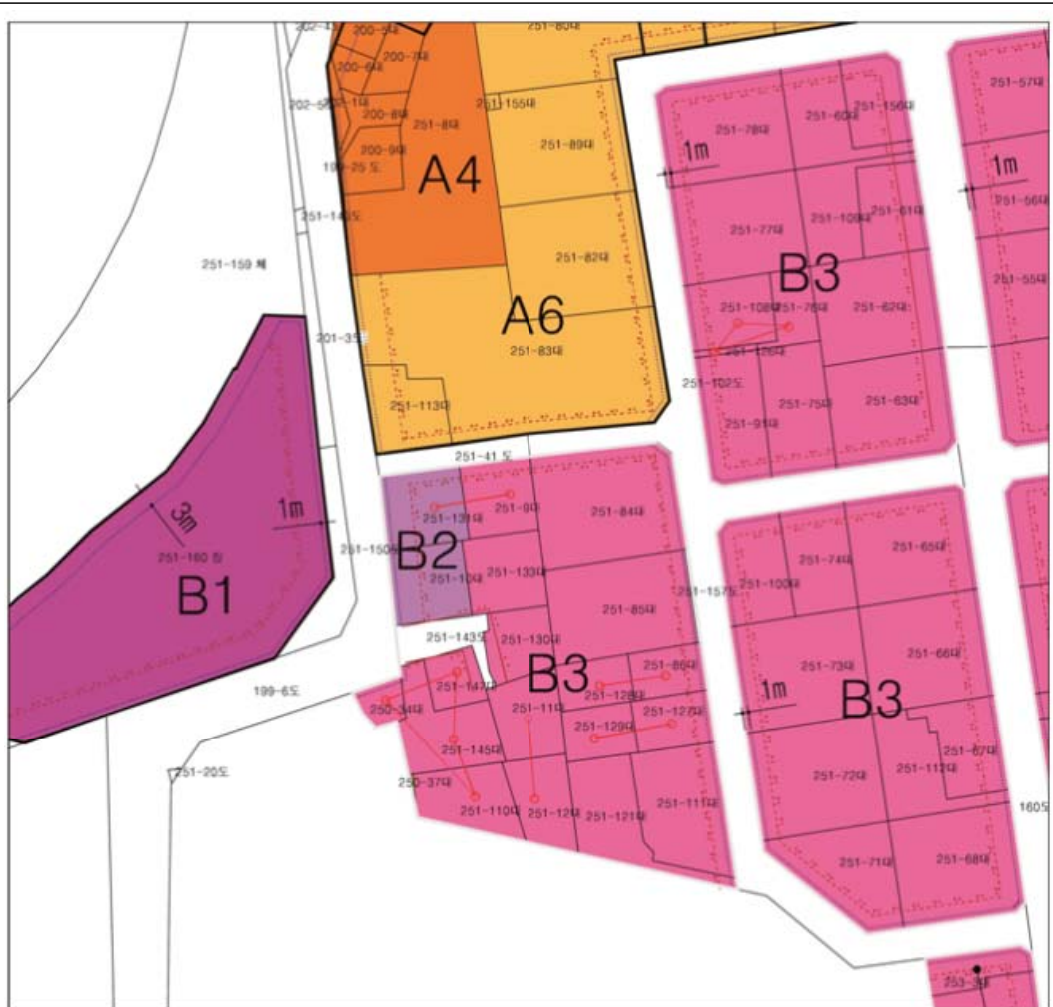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당동 251-10, 신당동 251-133	공동개발지정을 단독개발로 변경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소유자가 상이한 공동개발지정(신당동 251-10호, 251-133호)을 단독개발로 변경하고자함.

3. 관계도면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용산구고시 제2016-125호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9호(2011.10.13.)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3-68호(2013.7.11.) 및 같은고시 제2015-138호(2015.10.15.)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한강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지정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용 산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1)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없음)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4)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5)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도시환경정비사업	2016. 10. 10. 까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	기존 : 309세대※ 계획 : 476세대	
변경	변경없음	2017. 10. 10. 까지	변경없음	변경없음	

6) 기타정비계획사항(변경없음)

2. 변경사유

○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임

3. 관계도면 : 변경없음(생략)

○ 토지이용계획도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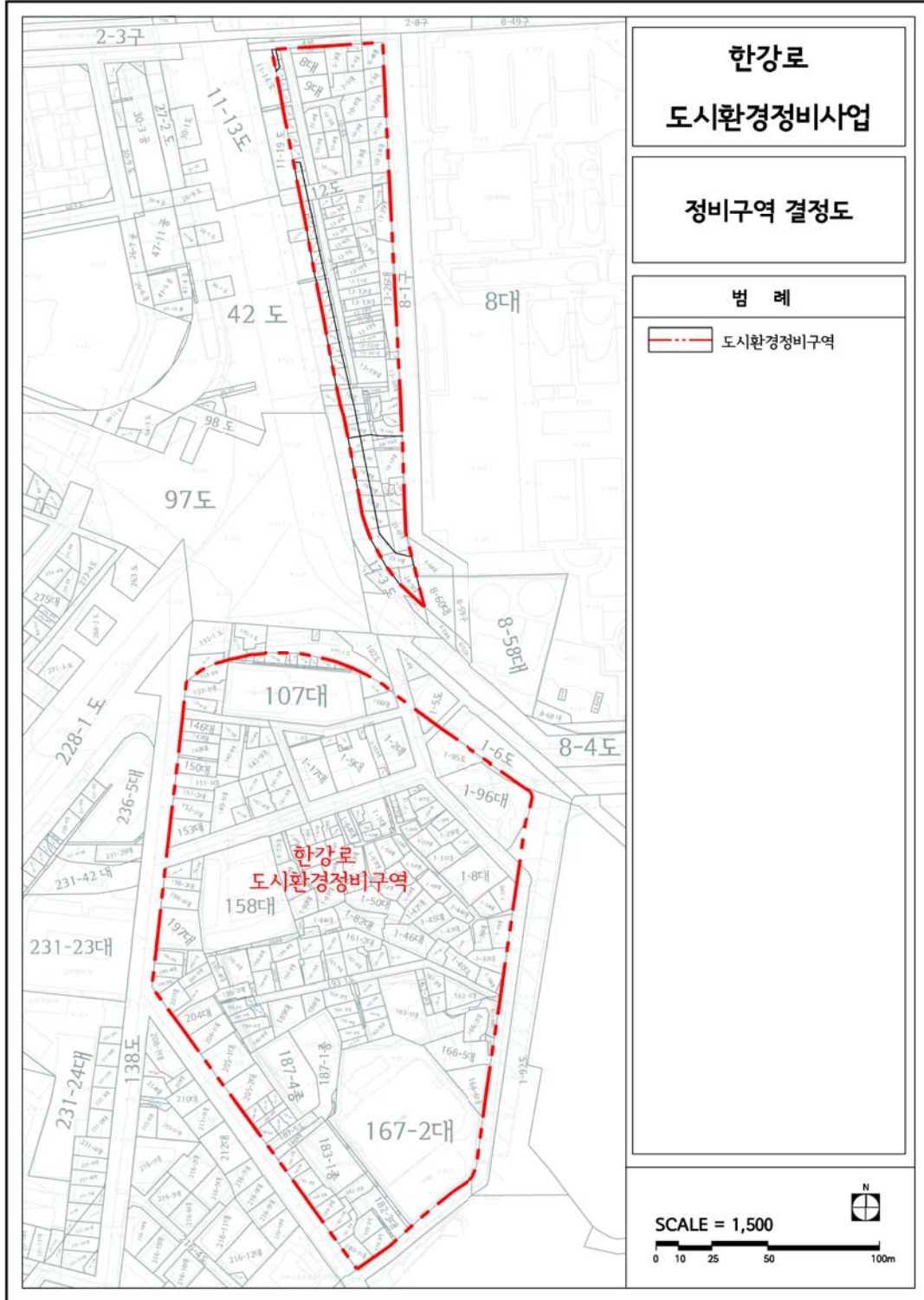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도서 참조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 도시계획과(☎ 2199-7413)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결정도(변경없음)



◆ 용산구고시 제2016-12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77.7.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6-318 (2016. 10.13.)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응봉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6-716호(2016.10.21.)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여성가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0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어린이집 건립사업

나.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542 일대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 적 : 1,500㎡
- 내 용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라. 사업시행자 : (복)엘지복지재단 대표이사 구본무(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 사업시행부서 : 용산구청 여성가족과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7. 6. 30.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따로붙임

사. 관계서류 비치 : 용산구청 여성가족과(☎02-2199-7163), 공원녹지과(☎7593)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사업시행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한남동	726-542	대	1,500	1,500	용산구					
합계				1,500	1,500						

◆ 도봉구고시 제2016-144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2호(2016.10.13.)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995호(2016.10.20.)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실시한 도봉구 창5동 286-2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도봉구청 공원녹지과(☎02-2091-3754)에 비치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0일

도봉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사업의 명칭 :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286-2번지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 적 : 344㎡
- 내 용 : 공공공지 조성을 위한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 부터 2017. 12. 31.까지

바. 주요내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불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공원녹지과(☎02-2091-3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서 각 1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창동 286-2	대지	344	344	삼풍물산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12-7	1/1			

지장물 조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창동 286-2	건물	슬레이트/ 시멘트벽돌조	49.5	㎡	삼풍물산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12-7					
2	창동 286-2	수목	은행나무 (B50)	1	주	삼풍물산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12-7					

◆ 도봉구고시 제2016-14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초안산 근린공원 내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1. 문화재청고시 제2002-14호(2002. 3. 9.)로 문화재 지정 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 제2008-160호(2008. 12. 10.)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조정 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 제2009-24호(2009. 4. 7.)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및 지형도면 정정 결정된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보호구역내에 편입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202-3 외 3필지에 대한 사유지 토지보상을 위하여 도봉구 공고 제 2016-982호(2016. 10. 20.)로 열람공고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 내용은 도봉구청 문화체육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0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202-3외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초안산 근린공원 내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 2,600㎡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마. 사업시행자

- 성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바.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7.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조서

아. 고시방법 : 시보게재

자. 문의 : 도봉구청 문화체육과(☎2091-2262)

토지조서(2016년도 서울 조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연번	소재지 (도·군·구)	지번	지목	공부상 전체면적 (㎡)	편입 면적 (㎡)	2016년도 보상대상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2,600	2,600	2,600							
1	창동	산202-3	임	400	400	400	정은식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0길 **(삼선동2가, *층)					
							정은식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0길 **(삼선동2가, *층)	1/2				
							김신철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2.8/28				
2	창동	산203-6	임	450	450	450	정수교	서울 성북구 장월로32길 *-(장위동)	2.8/28				
							정운영	서울 노원구 노원로 214, *동 ***호(하계동, 삼익아파트)	2.8/28				
							장재웅	서울 노원구 노원로 214, *동 ***호(하계동, 삼익아파트)	5.6/28				
3	창동	산204-3	임	750	750	750	이순웅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문덕길 5, ***동 ***호(하늘빛아파트)					

연번	소재지 (도·군·구)	지번	지목	공부상 전체면적 (㎡)	평의 면적 (㎡)	2016년도 보상대상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창동	산205-22	임	1,000	1,000	1,000	김영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80, ***동 ***호 (진행동, 호수마을)		신안상호 저축은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 (대치동)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오만순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596번길 18, ***동 ***호(신곡동, 드림벨리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정선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33, ***동 ***호(수업동, 강선마을)	근저당권 설정	
										한상현	대구시 달서구 장기로 242, ***동 ***호(감삼동, 우방드림시티)	근저당권 설정	
										김영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8길 **, ***호(청담동)	채무자	

◆ 노원구고시 제2016-104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노원구고시 제2016-84호(2016. 9. 22)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노원구공고 제2016-762호(2016. 9. 29)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된 노원구 상계동 169-409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교통지도과(☎2116-41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69-409
2. 사업시행자
 - 가.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3. 사업자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시행(주차장)
 - 나. 사업의 명칭 :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4. 사업의 내용
 - 가. 면 적 : 235㎡
 - 나. 사업규모 : 지상 평면식 주차장 약 10면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따로붙임

토 지 조 서

■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의종류 와 내용	
1	상계동 169-409	대	235	김만봉	노원구 중계동 364 신안동진아파트 105동 405호	-	-	-	
계			235		-	-	-	-	

별첨조서

□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구 조	규모	연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종류 와 내용	
1	상계동 169-409	시멘트 블록조	지하1 지상1	242.78	김민봉	노원구 중계동 364 신안·동진아파트 105동 405호	-	-	-	- 지하1층 점포 140.3㎡ - 지상1층 근린생활 102.48㎡
계				242.78		-	-	-	-	

< 위치도 >



< 현장 사진 >



◆ 노원구고시 제2016-10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81호(2016.8.11.)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최종)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2-32호(2012.6.14)로 실시계획인가고시(최초),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85호(2016.9.22.)로 실시계획변경고시(최종)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번지 일대 불암산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 내용은 노원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1번지 일대
-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조성사업
- 다. 면 적 : 24,351㎡
- 라. 사업의 내용 :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 등
- 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 변경내용 : 사업기간 변경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등 권리명세 : 별첨

■ 변경사항 : 편입할 토지 지번 확정

■ 고시방법 : 시보게재

■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공원기획팀 ☎2116-3943,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 은평구고시 제2016-95호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07.05.)로 구역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5호(2002.07.0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4호(2011.04.28)로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변경(재정비) 결정된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대조동 186-3 외 2필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공동개발(지정)변경 제안이 있어, 2016년 제2차(2016.07.27) 및 제4차(2016.10.14.)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내용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은 평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사유

- 공동개발 지정된 3필지(대조동 186-3, 186-4, 186-5)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변경 동의 및 요구가 있어, 금회 2필지(대조동 186-3, 186-4)에 대해서 공동개발에 의한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변경하는 것임.

나.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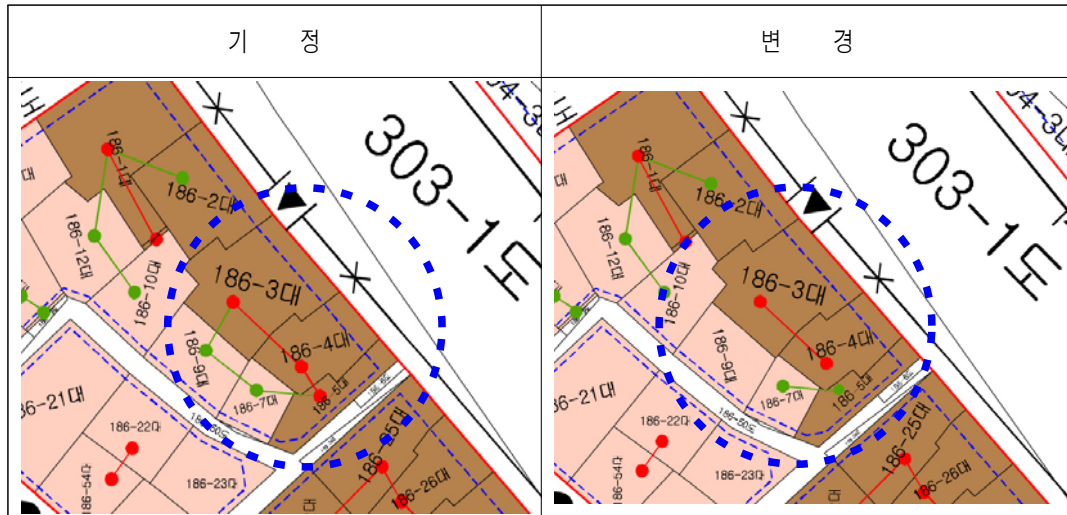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비 고
기정	대조동	186-3	260	714	• 공동개발(지정) : 186-3, 186-4, 186-5 • 공동개발(권장) : 186-3, 186-5, 186-7, 186-9
		186-4	145		
		186-5	106		
		186-7	75		
		186-9	128		
변경	대조동	186-3	260	405	• 공동개발(지정) : 186-3, 186-4
		186-4	145		
		186-5	106	181	• 공동개발(권장) : 186-5, 186-7
		186-7	75		
		186-9	128	-	• 단독개발

다.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라.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 74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마.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은평구고시 제2016-9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2호(2016.4.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봉산도시자연공원과,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2호(2016.4.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오릉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봉산·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6-563호(2016.5.12.) 및 제2016-70호(2016.8.18.), 제2016-82호(2016.9.29.)로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1) 봉산도시자연공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산130-9번지 일대
- 2) 서오릉도시자연공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산131-8번지 일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봉산·서오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토지보상 12,743㎡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변경전: 고시일로부터 ~ 2016. 12. 31. 까지

2) 변경후: 고시일로부터 ~ 2017. 12. 31. 까지

바. 변경사유: 본 사업 추진절차(각종심의 등)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계		40,802	12,743						
구산동 산136-5	임	33,159	5,100	서울 은평구 구산동 465-12 유진연립에이동103호	차봉*				
				서울 은평구 역촌동 4-60	황규*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4	한충*				
				서울 은평구 구산동 308-44	심형*				
				서울 구산동 308-98	변수*				
				서울 은평구 구산동308-132	김정*				
				서울 은평구 구산동308-132	박봉*				
				서울 종로구 송월길 118-59(행촌동)	박석*				
				서울 종로구 송월길 118-59(행촌동)	박성*				
				서울 은평구 통일로82나길 9,401호(불광동, 우성빌라)	김영*				
갈현동 산131-22	임	190	19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갈현동 산131-8	임	7,453	7,45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405	김도*				

◆ 은평구고시 제2016-98호

도시관리계획(응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6호(2013.07.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응암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응암동 87-3 외 1필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공동개발(지정)변경 제안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응암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은 평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사유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여 건축행위가 추진되도록 변경코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응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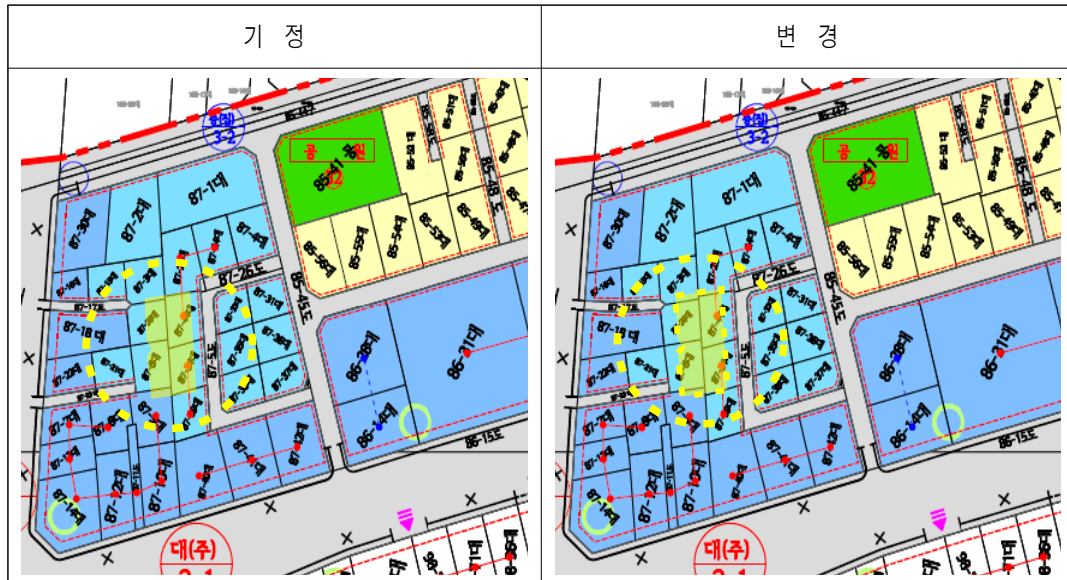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 고
기정		응암동 87-3	164.3	-	○자율적 공동개발 : 87-3, 87-20
		응암동 87-20	149.8		
변경		응암동 87-3	164.3	314.1	○자율적 공동개발 : 87-3, 87-20 ※ 자율적 공동개발 2필지 (응암동 87-3, 87-20)는 공동개발이 가능함
		응암동 87-20	149.8		

다.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라.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 74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도시관리계획(응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 응암동 87-3 외 1필지(응암동 87-20)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양천구고시 제2016-7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양천구 신정동 313-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건축과(☎2620-355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0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 명 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축 및 용도변경

다. 사업규모

- 대지면적 : 29,668.90㎡
- 건축규모

- 기정 :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26,187.39㎡
 - 변경(증축) :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34,561.54㎡
(지하2층/지상6층 연면적 8,374.15㎡ 별관동)
 - 용도변경 : 본관 지상1층[사무실·구치감→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26.22㎡]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법무부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6.12월/2018.02월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불 임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대지위치	시설용도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의 권리명세	
1	신정동 313-1	공공업무시설	29,668.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국)법무부/ (국)대법원	-	-	-	

◆ 구로구고시 제2016-168호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호(2013.01.17)로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로 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공고 제2016-247호(2016.02.25)로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 구로구고시 제2016-39호(2016.03.17)로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고시된 구로구 공동 117번지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주차장)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구 로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공동 117번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사업
 2) 명 칭 : 서울전파관리소 부대시설(주차장) 설치공사
- 다. 사업의 내용 <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면적 : 10,670㎡
 2) 부대시설(주차장) 면적 : 372㎡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1) 성 명 : 국,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전파관리소
 2)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117번지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기 정 : 2016.03.17 ~ 2016.12.31
 2) 변 경 : 2016.03.17 ~ 2017.12.31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부설주차장(㎡)	토지소유자
1	궁동	117	대	10,670	372	국(미래창조과학부)
계				10,670	372	

-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변경사유 : 2016년 예산부족으로 주차장 공사 추진이 불가하였으나 2017년 예산에 반영되어 부득이 준공예정일 변경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고시 제2016-1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6-45호(2016. 4.1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강동구공고 제2016-1247호(2016.10.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된 “진황도로 개설(확장) 공사(2차)”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저촉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 수령인, 미 통지인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강 동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둔촌동 114-4번지 외 2필지
 - 금회(2차) 사업 시행지 : 강동구 둔촌동 114-4, 강동구 둔촌동 115-5

강동구 둔촌동 117-3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 : 진황도로 개설(확장) 공사(2차)

라.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12~15m, 연장 330m

- 금회(2차) 사업구간 : 강동구 둔촌동 114-4번지외 2필지(60㎡)

마.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서울 강동구 성내로 25)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12.31.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 사업명 : 진황도로 개설(확장) 공사 (2차)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권리	
1	문촌동 114-4	20	4	전	1/6	최정*	서울 서대문구 홍정로*가 2**-1*	고병*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가 *	관리인	
2	문촌동 115-5	225	39	전	5/6	김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 유원**@ **5동 ***2호		서울 강동구 도산대로**길 1*, **동 **3호(**빌라)	근저당권	
3	문촌동 117-3	807	17	전	1/2	이용*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 ***2동 ***1호(**파크빌)	이용*	서울 강동구 명일로 1**, **2호(**동**파크빌)		

구 공 고

◆ 중랑구공고 제2016-9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2009.06.0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5-21호(2015.04.0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5-29호(2015.04.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중화동 306-44 ~ 306-69간(봉화산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도시개발과, 건설교통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0일

중 랑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내용

구분	사업위치	사업종류 및 명칭	사 업 규 모	사업의 착수에정일 및 준공예정일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일자	사 업 시행자
당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06-44 ~ 306-69간 (봉화산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중화동306-44~306-69간(봉화 산로) 확장공사	B=5m L=60m	인가일로부터 2016.12.31. 까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3호 (2009.06.04.)	•성명 : 중랑구청장 •주소 : 서울시중랑구봉화 로179 (신내동)
변경	변경사항 없음	변경사항 없음	변경사항 없음	인가일로부터 2017.12.31. 까지	변경사항 없음	변경사항 없음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다.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라.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도시개발과(전화 : 2094-2181~3)

중랑구청 건설교통국 도로과(전화 : 2094-2692~5)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306-44~306-69간(봉화산로) 확장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이권리	
1	당초	중화동	306-75	대	97.7	97.7	김수정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30길 38 (중화동)	진접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78-1	근저당	
	변경	중화동	306-75	대	97.7	97.7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레란로405(삼성동)	근저당	
2	당초	중화동	306-76	대	63.2	63.2	허용중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57길 20-9 (묵동)				
	변경	중화동	306-76	대	63.2	63.2	서울특별시					
3	당초	중화동	306-77	도로	20.9	20.9	강신주	서울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00-16, 405호(한남동, 힐탑트레져1동)				
	변경	중화동	306-77	도로	20.9	20.9	서울특별시					
4	당초	중화동	306-78	대	67	67	김선용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33-4 (중화동)				
	변경	중화동	306-78	대	67	67	서울특별시					
5	당초	중화동	306-79	대	65.4	65.4	우점자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33-4 (중화동)				
	변경	중화동	306-79	대	65.4	65.4	서울특별시					

별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306-44~306-69간(봉화산로) 확장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당초	중화동	306-44	건물(1층)	시멘트벽돌조	75	김수정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30길 38(중화동)	진접농업협동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정현리 378-1	근저당	
	변경	중화동	306-44	건물(2층)	연와조	47.5			(주)주식회사비지에프리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레란로405(삼성동)	근저당	
	1			건물(1층)	시멘트벽돌조	75	김수정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30길 38(중화동)	진접농업협동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정현리 378-1	근저당	
									(주)주식회사비지에프리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레란로405(삼성동)	근저당	
2	변경	중화동	306-43	건물(1층)	연와조	61.7	허용중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57길 20-9(목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빈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중화동	306-43	건물(2층)	연와조	61.7						
3	당초	중화동	306-70	건물(1층)	연와조	38.4	김선웅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33-4 (중화동)				
	변경	중화동	306-70	건물(2층)	연와조	13.2						
4	변경	중화동	306-69	건물(1층)	연와조	38.4	김선웅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28-6 (중화동)				
	변경	중화동	306-69	건물(2층)	연와조	13.2						
	4			건물(1층)	시멘트벽돌조	35.7	우점자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33-4 (중화동)				
				건물(2층)	연와조	14.7						

영업권 조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306-44~306-69간(봉화산로) 확장공사

구분	소재지	상호명	업종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변경없음	중화동 306-44	우동한그릇	일반음식점	김성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457-10 (대림동)	
2 변경없음	중화동 306-44	씨유 이화교사거리점	편의점	강현아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31(중화동)	
3 변경없음	중화동 306-44	유기네빵집	제과점	류종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4가길 28-21, 202호 (중화동,세영리치빌)	
4 변경없음	중화동 306-43	황실맛사지방				
5 변경없음	중화동 306-43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업	김남홍	동대문구 제기동 887-70	
6 변경없음	중화동 306-43	금수사	일반음식점	김남길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7길 7-5 (중화동)	
7 변경없음	중화동 306-43	찰떡공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수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11-25 (중화동)	
8 변경없음	중화동 306-70	포차의 신	일반음식점	권순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4길 73,나동 302호 (목동,장미아파트)	
9 변경없음	중화동 306-79	홍두깨칼국수	일반음식점	박양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95-7 (인후동1가)	
10 변경없음	중화동 306-79	한양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및 건설업	김호중	광진구 노유동 57-84	
11 변경없음	중화동 306-79	썬더치킨	일반음식점	김만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556,109동 503호 (공릉동,호성아파트)	

I. 위치도



II. 현황 사진



◆ 강북구공고 제2016-11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1990.10.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6-76호(2016. 5. 4.)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아래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강북구청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0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 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비고
북한산 둘레길(순례길)도로개 설공사	강북구 우이동 73-143 ~ 우이동 73-134	폭 6m 연장 102m	강북구고시 제2016-76호 (2016. 5. 4.)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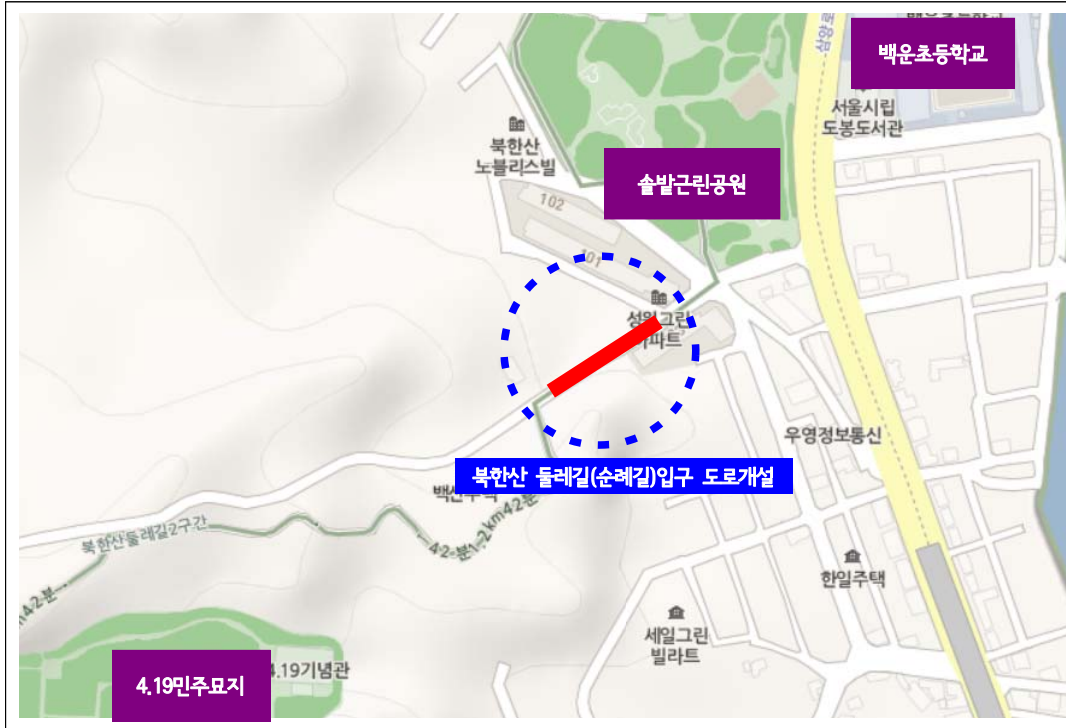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로관리과(☎901-5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북한산 둘레길(순례길)입구 도로개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관리의 내 용	
1	우이동 73-163	대지	68	68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243-59	김우형					
2	우이동 73-164	대지	161	16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우이동 직장주택조합					
2	우이동 산63-64	임야	91	9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20, 202동 1702호(동문2차아파트)	전찬근	1/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20, 202동 1702호(동문2차아파트)	최희예	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30, 601동 1511호(강촌마을)	최복희	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6, 902동 1303호(롯데마을)	정윤희	1/4				

□ 위치도



◆ 강서구공고 제2016-1308호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내발산동 755-4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주민열람 공고**

1. 강서구 내발산동 755-4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용도변경에 관한 주민제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0일

강 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02-2600-6656)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3)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	근생2	내발산동 755-4일원	728.1	감)728.1	-	근린생활시설용지

■ 숙박시설용지(신설)(안)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	숙박	내발산동 755-4일원	-	증)728.1	728.1	숙박시설용지

- 6)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관계도서 참조
 라. 관계도면 : 생략(강서구 도시계획과 열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동작구공고 제2016-963호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 관련서류는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955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0일
 동 작 구 청 장

가.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

시 설 별		시 행 기 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단계(4~5년차)		2단계(6년차이후)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계	건수	94	326,401	53	206,250	26	84,763	15	35,387	
	사업비 (백만원)		201,182.2		102,911		52,391.4		45,879.8	

시 설 별		시 행 기 간								비고
		계		1단계 (1~3년차)		2단계 (4~5년차)		2단계 (6년차이후)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도로	건수	61	167,297	35	92,822	19	58,247	7	16,228	
	사업비 (백만원)		118,583.5		23,871.3		50,321.2		44,391	
공원	건수	12	104,994.1	8	72,688.1	2	19,838	2	12,468	
	사업비 (백만원)		14,926.3		12,341.9		1,587		997.4	
공공공지	건수	7	15,503	4	14,827			3	676	
	사업비 (백만원)		1,100.7		1,052.7				48	
공공청사	건수	5	9,388	2	3,776	2	3,671	1	1,941	
	사업비 (백만원)		666.5		268.1		260.6		137.8	
녹지	건수	5	6,512.2	1	180.9	2	2,257	2	4,074.3	
	사업비 (백만원)		524.9		50		169.3		305.6	
사회복지 시설	건수	1	1,283	1	1,283					
	사업비 (백만원)		91.1		91.1					
문화시설	건수	1	750.0			1	750.0			
	사업비 (백만원)		53.3				53.3			
학교	건수	1	13,182.2	1	13,182.2					
	사업비 (백만원)		935.9		935.9					
유수지	건수	1	7,491	1	7,491					
	사업비 (백만원)		64,300		64,300					

나.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 도로

시설명	위 치 (사 업 명)	우선 순위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 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 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도로	흑석동 76-171 ~ 257-58	1	2017년~	10	265	2,650	397.5					397.5	1
도로	흑석동 산63-100 ~ 257-129	2	2017년~	12	231	2,772	415.8					415.8	1

시설명	위 치 (사 업 명)	우선 순위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 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 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도로	흑석동 67-207 ~ 75-33	3	2017년~	8	91	864	129.6					129.6	1
도로	흑석동 76-80 ~ 76-73	4	2017년~	6	73	438	65.7					65.7	1
도로	신대방1동 470-4 ~ 474-1	5	2017년~	10	187	1,870	300				300		1
도로	상도4동 201-46 ~ 201-20	6	2017년~	4	160	640	610				610		1
도로	사당동 127 ~ 산15	7	2017년~	6	106	636	120				120		1
도로	사당4동 318-1 ~ 318-3	8	2017년~	6	53	318	1,285				1,285		1
도로	신대방2동 344-28 ~ 344-23	9	2017년~	6	30	180	594				594		1
도로	사당1동 440 ~ 437-3	10	2017년~	6	144	864	770				770		1
도로	흑석동 86-153 ~ 86-74	11	2018년~	6	21	126	18.9					18.9	1
도로	흑석동 25-21 ~ 산63-100	12	2018년~	20~23	502	21,414	3,212.1					3,212.1	1
도로	흑석동 100-8 ~ 79-162	13	2018년~	20	488	9,760	1,464.0					1,464.0	1
도로	흑석동 183-17 ~ 41-15	14	2018년~	15~18	496	8,778	1,316.7					1,316.7	1
도로	사당4동 산43-5 ~ 284-4	15	2018년~	6	310	1,860	124				124		1
도로	사당3동 산35 ~ 220-102	16	2018년~	6	400	2,400	287				287		1
도로	사당1동 산46 ~ 443	17	2018년~	6	200	1,200	1,180				1,180		1
도로	상도4동 214-210 ~ 211-17	18	2018년~	6	360	2,160	225				225		1
도로	상도4동 214-104 ~ 214-291	19	2018년~	6	40	240	218				218		1
도로	상도2동 29-81 ~ 29-130	20	2018년~	6	45	270	13				13		1
도로	노량진동 229-116 ~ 309-16	21	2019년~	8	143	1,144	171.6					171.6	1
도로	노량진동 229-21 ~ 225-196	22	2019년~	6~15	238	1,039	155.9					155.9	1
도로	노량진동 120-6 ~ 225-294	23	2019년~	8	275	2,200	330.0					330.0	1
도로	노량진동 306-10 ~ 279-5	24	2019년~	15	390	5,850	877.5					877.5	1
도로	노량진동 315-135 ~ 313-72	25	2019년~	12	188	2,256	338.4					338.4	1
도로	대방동 20-10 ~ 44-272	26	2019년~	6~30	30	555	83.3					83.3	1

시설명	위 치 (사 업 명)	우선 순위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 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 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도로	대방동 49-6 ~ 366-5	27	2019년~	15~20	292	656	98.4					98.4	1
도로	대방동 11-25 ~ 11-8	28	2019년~	5~6	25	137	20.6					20.6	1
도로	노량진동 240-79 ~ 23-58	29	2019년~	15	745	11,175	1,676.3					1,676.3	1
도로	사당3동 162-61 ~161-41	30	2019년~	6	370	2,220	350				350		1
도로	사당4동 240-17 ~ 708-72	31	2019년~	6~8	540	3,780	255				255		1
도로	사당4동 321-3 ~ 318-1	32	2019년~	8	88	704	5,599				5,599		1
도로	사당1동 147-4 ~ 708-287	33	2019년~	10	67	670	146				146		1
도로	사당3동 산35 ~ 708	34	2019년~	6	70	420	399				399		1
도로	사당3동 163 ~ 163	35	2019년~	6	96	576	624				624		1
도로	사당1동 714 ~ 산47	36	2020년~	6	100	600	193				193		2-1
도로	사당2동 87-4 ~ 산20	37	2020년~	6	310	1,860	3,026				3,026		2-1
도로	본동 10-30 ~ 10-9	38	2020년~	6	45	270	329				329		2-1
도로	사당2동 71-1 ~ 사당동 55	39	2020년~	6	594	3,564	593				593		2-1
도로	상도3동 313-36 ~ 256-4	40	2020년~	6	120	720	1,180				1,180		2-1
도로	사당3동 151 ~ 176-5	41	2020년~	6	500	3,000	857				857		2-1
도로	상도4동 196-39 ~ 187	42	2020년~	6	162	972	692				692		2-1
도로	상도4동(대3-18) ~ (중3-35)	43	2020년~	12	200	2,400	4,680				4,680		2-1
도로	노량진1동 315-3 ~ 산134	44	2020년~	4	90	360	446				446		2-1
도로	사당5동 1139-1 ~ 190-220	45	2020년~	6	40	240	1,224				1,224		2-1
도로	등작동 산18-1 ~ 사당동 산31-2	46	2020년~	12	1,960	23,520	33,990				33,990		2-1
도로	노량진동 51 ~ 84-9	47	2021년~	15	142	2,130	319.5					319.5	2-1
도로	노량진동 232-143 ~ 232-255	48	2021년~	12	95	1,140	171.0					171.0	2-1
도로	노량진동 232-188 ~ 84-11	49	2021년~	12	250	3,000	450.0					450.0	2-1
도로	노량진동 225-32 ~ 225-158	50	2021년~	10	120	1,200	180.0					180.0	2-1
도로	노량진역전 ~ 구로동	51	2021년~	25~40	730	4,790	718.5					718.5	2-1
도로	노량진동 233-5 ~ 248-14	52	2021년~	12	65	780	117.0					117.0	2-1
도로	흑석동 272 ~ 38-28	53	2021년~	15~20	483	7,245	1,086.8					1,086.8	2-1
도로	흑석동 38-26 ~ 38-58	54	2021년~	6	76	456	68.4					68.4	2-1

[illegible]

○ 공원

시설명	위 치 (사 업 명)	우선 순위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 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 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공원	흑석동 69-163	1	2017년~			7,233.0	578.6					578.6	1
공원	흑석동 58-11	2	2018년~			16,896.0	1,351.7					1,351.7	1
공원	동작동 산30-7 일대	3	2018년~			15,266.1	1,221.3					1,221.3	1
공원	대방동, 본동, 노랑진동 일대	4	2019년~			1,542.0	123.4					123.4	1
공원	대방동226-7	5	2019년~			7,404.0	592.3					592.3	1
공원	대방동44-29	6	2019년~			14,683.0	1,174.6					1,174.6	1
공원	상도1동 477 (무궁화어린이공원)	7	2019년~			1,722	2,300		2,300		2,300		1
공원	흑석동,본동일대 (용봉정근린공원)	8	2019년~			7,942	5,000		5,000		5,000		1
공원	노랑진동119-171	9	2021년~			1,235.0	98.8					98.8	2-1
공원	노랑진동252-3	10	2021년~			18,603.0	1,488.2					1,488.2	2-1
공원	흑석동 105	11	2022년~			12,209.0	976.7					976.7	2-2
공원	흑석동 54-28	12	2022년~			259.0	20.7					20.7	2-2

○ 공공공지

시설명	위 치 (사 업 명)	우선 순위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 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 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공공공지	흑석동 257	1	2017년~			3,767	267.5					267.5	1
공공공지	흑석동 86-81	2	2018년~			527	37.4					37.4	1
공공공지	노량진동 294-432	3	2019년~			10,437	741.0					741.0	1
공공공지	흑석동 198-52	4	2019년~			96	6.8					6.8	1
공공공지	흑석동 25-44	5	2022년~			189	13.4					13.4	2-2
공공공지	흑석동 97-2	6	2022년~			373	26.5					26.5	2-2
공공공지	흑석동 97-38	7	2022년~			114	8.1					8.1	2-2

○ 공공청사

시설명	위 치 (사 업 명)	우선 순위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 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 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공공청사	노량진동 225-171	1	2019년~			2,027.0	143.9					143.9	1
공공청사	대방동 45-4	2	2019년~			1,749.0	124.2					124.2	1
공공청사	노량진동 294-41	3	2021년~			2,971.0	210.9					210.9	2-1
공공청사	흑석동 272-3	4	2021년~			700.0	49.7					49.7	2-1
공공청사	흑석동 54-152	5	2022년~			1,941.0	137.8					137.8	2-2

○ 녹지

시설명	위 치 (사 업 명)	우선 순위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 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 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녹지	사당동 169-15 일대	1	2019년~			180.9	50		50		50		1
녹지	흑석동 274	2	2021년~			1,217.0	91.3					91.3	2-1
녹지	흑석동 269-3	3	2021년~			1,040.0	78.0					78.0	2-1
녹지	흑석동 264-1	4	2022년~			600.0	45.0					45.0	2-2
녹지	흑석동 산88-14	5	2022년~			3,474.3	260.6					260.6	2-2

○ 사회복지시설

시설명	위 치 (사 업 명)	우선 순위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 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 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사회복지 시설	흑석동 257-10	1	2017년~			1,283.0	91.1					91.1	1

○ 문화시설

시설명	위 치 (사 업 명)	우선 순위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 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 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문화시설	흑석동 38-58	1	2021년~			750	53.3					53.3	2-1

○ 학교

시설명	위 치 (사 업 명)	우선 순위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 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 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학교	흑석동 60	1	2018년~			13,182.2	935.9					935.9	1

○ 유수지

시설명	위 치 (사 업 명)	우선 순위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 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 간 (비행정청)	
									계	시비	구비		
유수지	동작구 흑석동 1-2번지 주변	1	2017년~			7,491	64,300			64,300			1

◆ 서초구공고 제2016-1310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8호(2011.7.7)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주민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 신청이 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본 도시관리계획(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 초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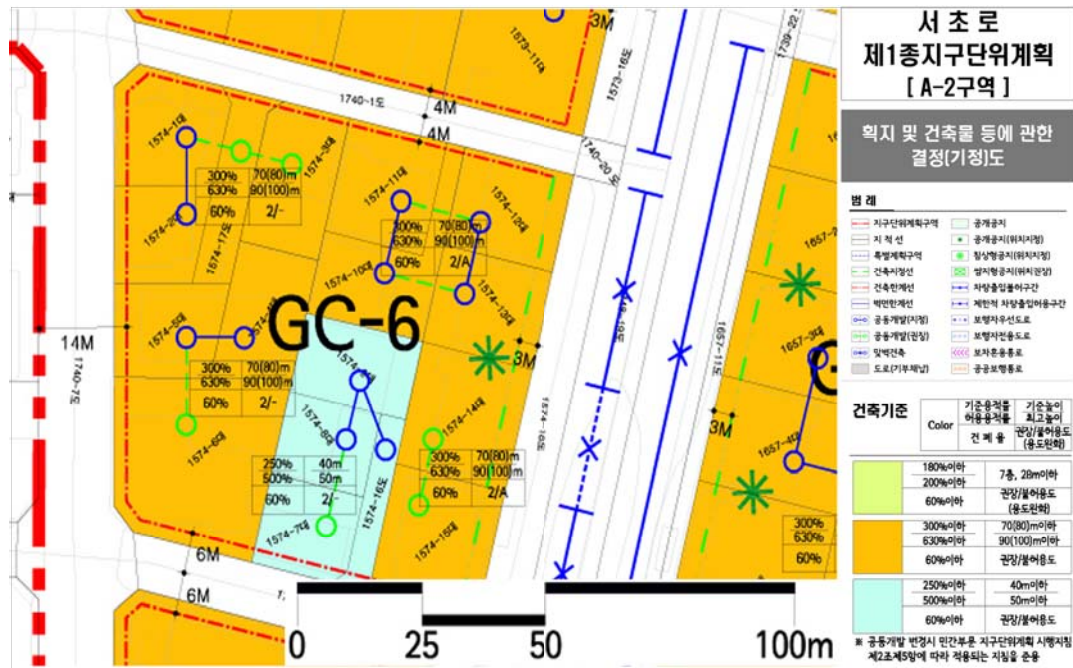
1. 변경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구 분		지 번	면적 (㎡)	기 정	변 경	비고
				계획내용	계획내용	
GR-21	공동 개발	서초동 1574-10~13	1,105.4	1574-10,-11/-12,-13 각각 공동개발 지정 1574-10,-11/-12,-13 공동개발 권장	1574-10,-12 공동개발 지정 1574-10,-11,-12,-13 공동개발 권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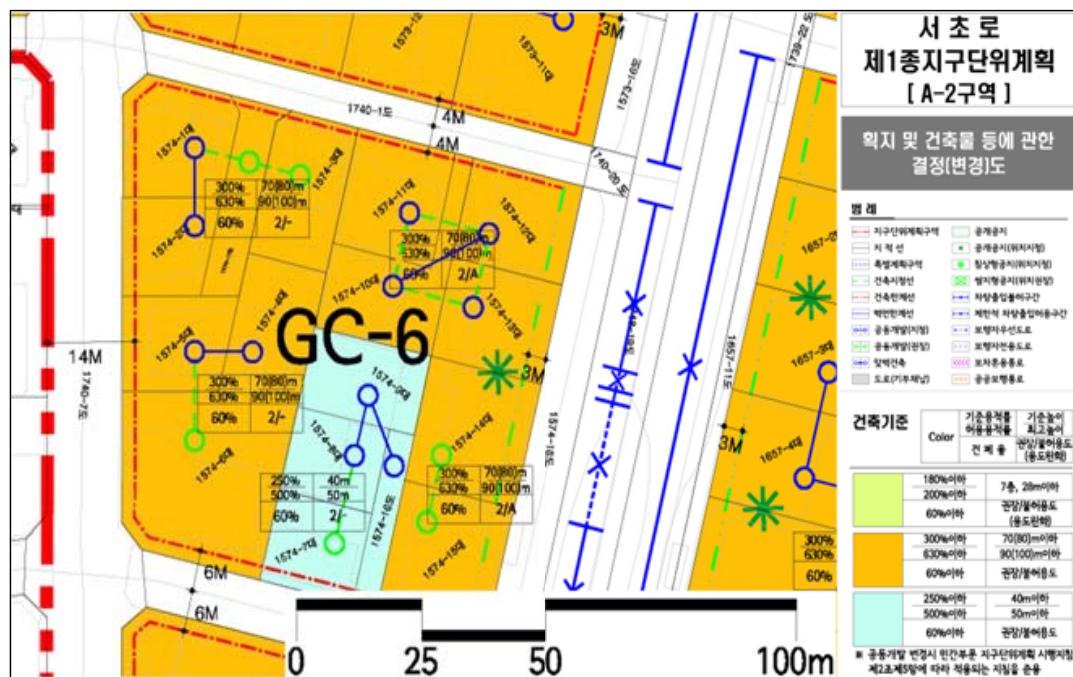
- 나. 교통처리계획 : 서초동 1574-13번지 일부 차량출입불허구간 부분 해제(3m) 및 차량출입구 신설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열람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내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2155-678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첨부】

- ☐ 서초동 1574-10, -11, -12, -13번지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강동구청고 제2016-13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47호(2013. 5. 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서는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0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둔촌동 105~105-3간

- 금회(2차) 사업 시행지 : 강동구 둔촌동 102-3, 강동구 둔촌동 105,
강동구 둔촌동 107-1, 강동구 둔촌동 108-3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 : 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4~6m, 연장 125m

- 금회(2차) 사업구간 : 도로개설 폭 4~6m, 연장 103m

마.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바.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 12. 31일 까지

사.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5)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 사업명 : 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관리	
1	둔촌동 102-3	332	39	도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2	둔촌동 105	1121	200	대	2/29	최중*	하남시 덕풍동 4**-2 **아트빌라 1**				
					2/29	최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2** 주공아파트 2**-2**				
					2/29	최희*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군위실길 5*-2*				
					4/29	최홍*	서울 강동구 삼전동 4-*				
					4/29	최강*	서울 강동구 둔촌동 4*-1				
					4/29	최홍*	서울 강동구 길동 2** 로즈** 가-1**호				
3	둔촌동 107-1	380	105	대	10/29	최도*	서울 강동구 둔촌동 1**				
					1/29	최영*	서울 강동구 둔촌동 5**-1*				
						조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 -403	강동** **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암사동) (**지점)	근저당권	
4	둔촌동 108-3	255	88	대		조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 -4**	강동** **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암사동) (**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수용 및 사용할 물건조서

- ☐ 사 업 명 : 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용도	구조 및 규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둔촌동 105	건물	주택	세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40	6/29	최중*	서울 강동구 둔촌동 1**				
						4/29	최흥*	서울 강동구 삼전동 4--*				
						4/29	최강*	서울 강동구 둔촌동 4**~3				
						4/29	최홍*	서울 강동구 길동 2** 로즈** 기-1**호				
						10/29	최도*	서울 강동구 풍성로73길 **				
2	둔촌동 107-1	지상물	차고	시멘트벽돌조 세멘기와지붕	13	1/29	최영*	서울 강동구 둔촌동 5**~1*호				
							최도*	서울 강동구 풍성로73길 **				
							조전*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 -4**	강동** **조함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 (암사동) (**지점)	근저당권	
3	둔촌동 108-3	지상물	창고	시멘트벽돌조 세멘기와지붕	9							
							조전*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3 -4**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도로시설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가양대교 ~ 청담대교	선박 2척 (기선 1척, 부선 1척)	청담대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선박 운항	2016.11.2. ~ 2016.11.4.	2016. 11.2.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합동종합 건설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10길 12	서울시계 내 한강 (동작대교~잠실수중보)	선박 2척 (기선 1척, 부선 1척)	한강 쓰레기 수거작업	2016.11.4. ~ 2016.12.17.	2016. 11.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65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메트로 토목사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	동작철교 하부	선박 2척 (기선1척, 부선1척)	동작철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선박 운항	2016.11.5. ~ 2016.12.31.	2016. 11.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66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해마수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76길 51	서울시계 내 한강 (잠실철교)	선박 2척 (기선 1척, 부선 1척)	잠실철교 교각 수중청소 및 외관조사	2016.11.4. ~ 2016.12.8.	2016. 11.4.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6-262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6.11.10. ~ 2016.11.23.(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6.11.24. ~ 2016.12.7.(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승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7	001844	김*선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길 **	(구의동)
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5-08	002446	이*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번길 ***	니동 ***호 (수택동)
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238	김*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길 **	***동 ***호 (토정동, 한강삼성아파트)
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240	김*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길 **	니동 ***호 (수색동, 한진양주P/O직원아파트)
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241	김*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길 *-**	***호 (석촌동, 현대아파트)
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242	송*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동 ***호 (장기동, 초당마을주공아파트)
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251	이*원,이*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길 **	***호 (역촌동)
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252	박*순,최*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유남길 *	B동 ***호 (수암동, 삼성하이츠빌라)
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261	김*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동 ***호 (신정동, 아이파크아파트)
1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265	최*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	***호 (토당동, 대림빌)
1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272	박*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번길 ***	A동 ***호 (사리현동, 그린하임)
1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275	박*웅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	***동****호 (민락동, 신들마을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276	정*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	***동 ***호 (마곡동, 마곡캠벨리*단지)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278	신*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나길 **	***호 (화곡동, 일성스카이라) *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279	정*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서울시 월곶로*나길 **번길 *	***동 ***호 (월곶동, 월곶공원*차이파트)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282	정*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	*층동 (신사동)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284	문*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나길 ***	***호 (북가좌동)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289	김*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 부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가길 **	(가산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292	강*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나길 **	***호 (금향동, 가진빌라)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293	김*웅	바퀴가 있는 등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나길 ***	***동 ***호 (등촌동, 등촌주공*, 단지아파트)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294	이*희	바퀴가 있는 등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나길 **	***호 (신당동, 백룡청기와빌라지)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300	김*영	바퀴가 있는 등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 부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나길 **	***호 (관양동)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301	신*규	바퀴가 있는 등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 불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	***호 (연희동)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306	문*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나길 ***	(신정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312	정*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길 **	***호 (신사동, 부흥아파트)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314	이*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길 **	***호 (수색동)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315	우*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	***호 (신사동, 홍익아파트)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317	정*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	***동 ***호 (목동동, 신내마을*단지 현대비발디)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320	류*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번길 **	(설문동)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324	배*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나길 **	(화곡동)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335	이*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길 ***	***호 (역촌동, 타미에코빌)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338	이*은,유*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	***동 ***호 (신사동, 세티아파트)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342	김*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	***동***호 (철산동, 철산한신아파트)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352	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 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353	박*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길 **	***호 (흑석동)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354	김*국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길 ***	***동 ***호 (상도동, 상도현대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355	장*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지구아파트 **	**동 ***호 (반포동, 신반포*지구아파트)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356	박*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길 **	B**호 (봉천동)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359	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 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360	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 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362	정*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A동***호 (반포동, 반포아파트)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364	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 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368	성*경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진구 자양로**길 ***	(구의동)
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369	임*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동*나길 *	(하왕십리동)
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370	김*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	(대방동)
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371	ES***IN D**ID M**C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나길 **	지하*호 (이태원동)
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374	PI**NO CH**TO P**R R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	(한강로*가)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378	함*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번길 **	***호 (리버빌)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치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위반과태료	2016-09	003383	남*민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길 ***	(반포동)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위반과태료	2016-09	003385	김*숙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위반과태료	2016-09	003386	김*숙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위반과태료	2016-09	003389	박*수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	***동 ***호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위반과태료	2016-09	003393	김*숙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위반과태료	2016-09	003395	최*우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나길 *	지흥동 ***호 (사당동)
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위반과태료	2016-09	003396	이*호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길 **-***	***호 (신림동)
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위반과태료	2016-09	003397	김*만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길 ***	(당산동*가)
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위반과태료	2016-09	003398	최*호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목마들로 **	***호 (화곡동, 샬레아파트)
5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위반과태료	2016-09	003400	김*원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길 *-*	(양평동*가)
5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위반과태료	2016-09	003402	신*호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길 *	(신길동)
6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위반과태료	2016-09	003404	심*보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호 (자양동)
6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위반과태료	2016-09	003406	S*N D**E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길 **	***호 (동자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6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08	신*기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길 **	(한남동)
6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10	윤*환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길 **	(신월동)
6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11	주식회사 어***스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가길 **	*층 (동빙고동)
6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12	BE***RDO DA***N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가길 **	***호 (이태원동)
6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13	이*형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사길 **	(사당동)
6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16	안*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가길 **	(안락동)
6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18	김*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 **	***동 ***호 (마곡동, 마곡캠벨리*단지)
6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24	E**ET AN**EAS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	*동 ***호 (옥수동, 옥수동극동아파트)
7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26	장*근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달래로**가길 ***	***호 (화곡동)
7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31	이*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가길 **	(신길동)
7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35	박*정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가길 ***	E동 ***호 (효창동)
7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36	김*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 부재	서울특별시지치 한누리대로 ****	***호 (보림동, 스타힐타워*)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7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437	신*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길 ***	*층 ***호 (봉천동, 아이빌)
7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438	조*홍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가길 ***	(봉천동)
7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5-10	003439	임*혁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	***동***호 (대소면, 개나리아파트)
7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442	이*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길 **	*동 B**호 (석촌동, 광동주택)
7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445	선*원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길 *	***호 (석촌동, 목화빌리지)
7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447	손*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길 **	***호 (잠실동, 홍인빌라)
8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449	남*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번길 **	***동 ***호 (생연동, 건영아파트)
8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451	서*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길 **	B동***호 (보문동*가)
8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452	송*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답중앙*길 *	(응답동)
8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454	박*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길 ***	(중곡동)
8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456	주*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번길 **	***동 ***호 (인창동, 주공*단지아파트)
8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462	박*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신로*길 ***	(화양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8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63	최*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길 **	(반포동)
8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64	김*욱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호 (구의동, 경성하이츠)
8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65	조*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길 **	(자양동)
8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67	최*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서로 ***	(하계동)
9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75	김*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가길 **	(한남동)
9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86	이*현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길 ***	(보광동)
9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87	윤*석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9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89	장*영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가길 *-*	B**호 (방이동)
9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90	정*권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길 **	B***호 (논현동)
9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91	김*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길 ***	***동 ***호 (사당동, 극동아파트)
9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92	양*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길 ***	(장위동)
9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96	박*운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	***동B**호 (오포읍, 아르로빌)
9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97	최*섭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풍로**길 **	B동**호 (창신동, 도시빌라)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9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98	고*택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길 **	***동 ***호 (천호동, 신주아파트)
10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499	김*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	가인동***호 (회곡동, 미가채)
10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507	신*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	B**호 (신사동)
10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509	전*준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번길 ***	***동 ***호 (인창동, 주공*단지아파트)
10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510	노*완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	(성수동*가)
10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511	윤*진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길 **	**동***호 (일원동, 대우아파트)
10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512	김*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동 ***호 (하왕실리동, 행업풍림아파트)
10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513	이*웅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길 **	***동 ***호 (대방동, 주공아파트)
10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514	정*신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가길 ***-**	지충 ***호 (회기동)
10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516	이*기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나루로**길 ***-**	(군자동)
10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518	김*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평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범마을휴먼시아아파트)
1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527	최*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길 **	***동 ***호 (구로동, 구로중앙하이츠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치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31	(주)***이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로길 **	***호 (옥수동)
1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33	이*원,김*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	***동 ***호 (종곡동)
1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35	임*복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전라북도 익산시 등신로*길 **	(신동)
1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36	김*섭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림로*길 **	(자양동)
1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39	오*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5,000	2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자양동)
1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42	이*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신*길 ***	*층 ***호 (창신동)
1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46	정*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길 *-*	***호 (미아동, 삼성로*길)
1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47	GO**A HO**AM ABD***AK AM F**MI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충청남도 아산시 탐정면 선문로 ***	***동 ***호 (홍의아파트)
1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48	서*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길 **	B동***호 (보문동*가)
1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52	박*경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번길 *-*	(주사랑교회)
1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54	H**G HA**UA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길 ***	(대림동)
1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횡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57	김*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림로*라길 *	***동 ***호 (신길동, 삼환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치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58	이*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1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60	김*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	(여의도동, 제일빌딩)
1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63	박*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총로 **~**	***동 ***호 (한국아델리움)
1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76	김*교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중앙로 ***	(설악면)
1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77	L*O JIN**HE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	***호 (선부동, 주공**단지아파트)
1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78	유*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월로**길 **	***동 ***호 (남신리동, 두산위브아파트)
1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82	이*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1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84	노*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	***동***호 (창곡동, 위례**단지)
1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89	주식회사 * (주)에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번길 *-**	*층 (북문로*가, 대충빌딩)
1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91	이*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호령로 **	멤버스부*층상가 (방배동, 멤버스뷰)
1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92	정*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리재엠티*길 *	(공덕동)
1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595	이*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	(구로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치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596	임*욱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중장로**길 **	***호 (본오동)
1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597	황*하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	(구의동)
1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613	이*철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길 **	***호 (천호동, 레이크빌)
1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615	김*웅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	***동 ****호 (암사동, 선서현대아파트)
1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616	허*욱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길 ***	(길동)
1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619	김*현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	(천호동)
1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621	임*영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이천시 대신로***번길 ***	(고당동)
1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624	허*욱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길 ***	(길동)
1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626	박*복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길 ***	***호 (석촌동)
1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627	주식회사 에**모터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길 **	(고덕동)
1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633	박*수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대로*길 ***	***호 (풍납동, 신일빌라)
1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635	이*배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번길 ***	***호 (부평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4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637	김*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나길 ***-	***호 (화곡동, 송원오피스텔)
14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640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로 ***-	***동 ***호 (진관동, 은평뉴타운복식고개)
14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643	박*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신로*길 **	***호 (응암동)
15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648	이*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길 ***-	***호 (북천동)
15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655	박*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창능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신뒤마을주공아파트)
15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656	신*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번길 *-*	(상대원동)
15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665	이*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번길 *	A동 ***호 (석남동, 전원율터안)
15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669	강*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구 남주길 ***-**	*층호 (주안동)
15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673	윤*웅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	***동 ***호 (원문동, 주공아파트)
15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674	최*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	*동 ***호 (대림동, 무림아파트)
15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678	김*목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길 **	(봉천동)
15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681	최*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	(동교동, 대명빌딩)
15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683	홍*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	***호 (망원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6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686	이*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시불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가	***
16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693	김*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길 ***	(자양동)
16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697	서*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순환로***번길 ***	***동 ***호 (분평동, 주공*단지아파트)
16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04	문*상, 이*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호 (자양동, 우리광하이빌)
16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05	김*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굴현길 **	*동 ***호 (굴현동, 경향타운)
16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10	이*원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길 ***	(자양동)
16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14	Y**N QI**NG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담미로 **	***동 ***호 (선부동, 산호한아파트)
16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18	(주)브***퍼 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시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	***호 (구로동, 대림포스트타워*차)
16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19	김*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길 **	*층 (정릉동)
16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24	백*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차인부 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번길 **	가동 ***호 (호계동, 삼우연립)
17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26	한*진, 김*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길 ***	(송현동)
17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28	박*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가길 ***	(자양동)
17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33	김*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다길 ***	(한남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7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735	윤*규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가길 **	지층 ***호 (구의동, 플라스빌)
17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740	정*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길 **	***동 ***호 (성수동*가, 성수동 롯데캐슬파크)
17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742	조*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번길 **	***동 ***호 (별내동, 별내푸르지오)
17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744	고*철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다길 ***-	*층 ***호 (송인동)
17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745	김*현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림바위로*길 **	***호 (갈월동, 남산하얏트빌)
17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749	최*수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화양동)
17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753	김*환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길 **	**호 **/* (신당동)
18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755	권*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차인물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가길 **	지층 ***호 (성내동)
18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760	신*철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	***동 ***호 (하양심리동, 금호베스트힐아파트)
18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761	김*욱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가길 **	***호 (구의동, 경성하이츠)
18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762	최*혁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화양동)
18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공관권위반과태료	2016-09	003764	JIN SH***JONG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가길 **	***호 (자양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8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65	김*건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림로**길 **	(자양동)
18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69	안*환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길 **	***호 (서초동, 강남초정에명터에)
18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71	김*을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번길 **	***동***호 (수내동, 파크타운)
18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74	최*진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번길 ***	***호 (보정동)
18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75	윤*호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공원로 ***	***호 (망우동, 월드컵임)
19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77	고*석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길 ***	(자양동)
19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78	최*철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서대문구홍제동	****-
19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82	고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곡개로**길 ***	(울림동)
19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88	김*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번길 ***	(상대원동)
19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90	안*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길 ***	***호 (송파동, 미래빌리지)
19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93	장*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길 ***	B동 ***호 (효창동, 효창빌라)
19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798	강*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호 (신천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9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00	김*훈,김*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절골길 ***-	***동 ***호 (장지동)
19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04	최*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번길 ***-	***호 (경서동, 모름아트빌*차)
19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05	H*N T*K H*N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용산구한강로*가	HAZMART PSC*** BOX ** APO AP *****
20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06	신*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	*등***호 (잠원동, 잠원한신아파트)
20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10	조*섭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길 **	****동 ***호 (방화동, 방화**단지아파트)
20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12	허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로 **	마동 ***호 (민수동, 아주아파트)
20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13	박*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안길 *	***호 (부곡동)
20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16	황*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길 ***-	***호 (잠원동)
20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19	호*현,이*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번길 **	*층 (향동)
20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25	홍*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	***동 ****호 (하왕신리동, 팀즈힐*)
20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26	정*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길 *	***동 ****호 (삼성동, 한솔아파트)
20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꽃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30	송*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길 ***-	지층 ***호 (성내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20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31	박*복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부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번길 ***	A동 B*호 (안양동, 영진빌라)
2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32	안*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길 **	(화양동)
2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33	안*성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가길 *	***호 (동선동*가)
2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35	하*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길 ***	*층호 (장안동)
2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41	박*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가길 ***	(자양동)
2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45	박*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로***	***동 ***호 (호평동, 엘에이치 호평*단지)
2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46	홍*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문로**길 ***	***호 (삼전동)
2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52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번길 **	*동 ***호 (원종동)
2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57	이*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가길 **	기동 ***호 (월계동, 삼정아파트)
2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58	김*진, 우*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능곡로**번길 **	***동 ***호 (신곡동, 신곡건영아파트)
2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59	최*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길 ***	*/ (화양동)
2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62	김*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대구광역시 달성구 장산남로 **	***동 ***호 (용신동, 롯데캐슬아파트)
2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광위반과태료	2016-09	003869	최**이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	***호 (사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22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872	손*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	***동 ***호 (정자동, 한솔마을주공*단지아파 트)
22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874	정*봉,정*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창문화로 ***	***호내***호 (평창동, 평창동안성타워)
22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875	김*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지혜로 ***-*	***호 (금광동, 백산빌라*차)
22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883	장*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	(용문면)
22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887	고*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 ***-*	***호 (보문동*가)
22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891	신*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지혜로 **번길 ***-*	(금광동)
22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898	김*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	C동 ***호 (송도동, 송도 BRC 스마트벨리 지식산업센터)
22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05	이*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앙역로 ***-*	(목동)
23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06	송*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번길 **	***호 (송내동, 세일해피랜드)
23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09	조*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	(서정동)
23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11	유*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	***동 ***호 (도봉동, 도봉한신아파트)
23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16	이*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	***동 ***호 (신내동, 동성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지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23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922	김*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동 ***호 (불로동, 월드아파트)
23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923	이*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	***동 ***호 (태전동, *단지성원아파트)
236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926	이*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 (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롯데캐슬골드아파트)
237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927	유*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길 **	(정릉동)
238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929	이*홍,이*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길 **	(부곡동)
239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933	우*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길 ***	(신길동)
240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939	서*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	***호 (만수동)
241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943	노*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5,000	20,000	폐문부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길 **	***호 (노형동, 재현원룸)
242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947	정*빈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업대로 ***-*	***호 (은행동, 오펜라하우스)
243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949	정*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	***동 ***호 (길동, 현대아파트)
244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950	최*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번길 ***	(봉곡동)
245	10-288706	[시밀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952	이*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청로*길 **	(옥포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치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2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54	여*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5,000	2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길 **	***호 (대치동, 대우 아이빌멤버스)
2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59	서*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	***호 (신림동, 온누리)
2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61	노*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지**길 **	(신림동)
2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68	전*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세오개로**번길 **	(석남동, 건우주택)
2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70	길*승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동 ***호 (학익동, 대동아파트)
2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71	강*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	(민수동)
2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72	김*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답레로*길 **	*** (신월동)
2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81	김*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가길 *	(흑석동)
2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86	이*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가길 **	***호 (상도동, 한배리조빌)
2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89	신*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번길 *	나동 ***호 (부평동, 행복의집)
2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91	고*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가길 *	(대림동)
2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95	권*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	***호 (우암동)
25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음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3996	황*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번길 ***	***호 (오정동, 대호타임스빌)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 통치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예정 금액(원)	자진납부 감면액(원)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25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3997	정*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길 **	***호 (등빙고동)
26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4004	고*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 ***	***동 ***호 (신내동, 신내우디안*단지)
26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4007	김*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나길 **	(이태원동)
26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4008	김*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길 *-*	가동 (봉천동)
26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09	004009	정*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	***동 ***호 (금곡동, 수원호매실휴먼시아*단 지)
26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0	004016	(주)디지*** 자 서**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이사불명	서울서초구서초동	****-* 지천빌딩 *층
26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빛이용관리위반과태료	2016-10	004019	클*시 성**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층 (논현동, urbanhive)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6-263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6.11.10. ~ 2016.11.23.(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6.11.24. ~ 2016.12.7.(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충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8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전*수	주소불명	강원도 양구군 동면 독산영로 ***	(동면)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0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조*현	수취인불명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번길 **	*층동 ***호 (교문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0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엽	수취인불명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로**번길 **	상기동 *층 *호 (진접읍, 우남아파트)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2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심*순	수취인불명	경기도 구리시 별밀로 ***-*	***호 (토평동)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3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원	이시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	(성산동)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6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47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LUO JIN**E	주소불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부광장남로 ***	****호 (신부동, 주공**단지아파트)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0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오*정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길 *-**	(신원동)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52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5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5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0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호	이시불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호 (장위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주차행위				***-*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0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운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말길 ***	(염곡동)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0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해명***빌(주)	수취인불명	경기도 김포시 동진읍 서암로*번길 ***	*층 ***호 ()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1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강*희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호 (구의동)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56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5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변*선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마길 **	(공평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2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성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두리동길*번길 ***	(두암동)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5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JIN JI**UA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길 **	(구로동)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6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정*영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암대로*길 **	(신월동)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2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배*임	수취인불명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	(전곡읍)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6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주)***코리아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	**층 ***호 (방배동)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2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주식회사 **	수취인불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	***호 (신원동, 한신프라자)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횡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6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호 (역삼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테헤란로**길 **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6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식	주소불명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번지 *호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68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6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식	주소불명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번지 *호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68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6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호	이시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동 ***호 (신천동, 롯데캐슬단지)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6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3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유*규	수취인불명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번지 **-**-**	***호 (화도읍, 동광그린빌)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7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R***RT A HO***NBAUGH JR	수취인불명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신장원길 **	()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7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체*진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남**길 **	(양재동)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4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유*규	수취인불명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번지 **-**-**	***호 (화도읍, 동광그린빌)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4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유*현	이시불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길 **	(송인동)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2016-09	00134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50,000	NG***N THI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주차행위		***C		용마신로**길 **-**-**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8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산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	***호 (반포동)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8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3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주)***아이엔씨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보로 ***-**-**	(직전동)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4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한*철	수취인불명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영대*길 ***-	(금남면)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0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석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5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신*림	폐문부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복면 충절로 ****	****동 ****호 (중앙아파트)
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2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최*웅	폐문부재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길 **	B**호 (주암동, 수정빌라)
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2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조*곤	폐문부재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길 **	***호 (주암동, 청명그린빌라)
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2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식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번길 ***-**-**	****동 ***호 (고림동, 이삭아파트)
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0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전*숙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	****동 ****호 (전농동, 레미안크레시티아파트)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포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0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50,000	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	(전농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출입하는 행위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8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재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	***동 ***호 (상계동, 상계주공*단지아파트)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8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순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우정로**길 **	(망원동)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0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안*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나길 **	B동 ***호 (등촌동, 등명타운)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29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장*재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길 **	***호 (서초동)
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0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길 ***	***호 (화곡동, 웰드힐타운)
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0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권*철	폐문부재	경기도 용택시 서재로 **	***동 ***호 (동석동, 서재자이아파트)
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0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희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길 **	***동 ***호 (미아동, 미아오진아파트)
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0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	***동 ***호 (혜경동, 휘경동동양아파트)
5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0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정*만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달레로**길 **	(화곡동)
5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1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박*태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들로 **	***동 ***호 (월계동, 그랑빌아파트)
5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5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지*성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슬샘로**길 **	(미아동)
6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1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들로 **	***동 ***호 (월계동, 그랑빌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6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1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송*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길 **	***호 (잠원동)
6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1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열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길 ***	(제기동)
6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6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장*숙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	***호 (마곡동, 갤럭시인텔리전스)
6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2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오*희, 이*훈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로 **	***동 ***호 (휴먼시아**단지아파트)
6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2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백*열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번지 **/*
6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2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만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신로**가길 **	(화곡동)
6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3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	***동 ***호 (후계동, 휘경동영아파트)
6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8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원*웅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상계**동	***-***
6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4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염*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길 ***	***호 (밤배동)
7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4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0	김*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	***동 ***호 (자곡동,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7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9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길 **	(하월곡동)
7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4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안*찬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진구 장문로 **	(보광동)
7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9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송*지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진구 장문로*니길 **	***호 (한남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7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0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강*남*윤*대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길 **	(구의동)
7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8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나길 ***	***호 (정릉동, 동신아파트)
7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51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철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번길 **-*	***호 (상대원동, 번영맨션)
7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1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원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길 **	***호 (길동, 다성 이즈빌)
7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9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숙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7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29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최*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길 **-*	(시당동)
8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29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이*중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길 *	***호 (본오동)
8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9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호 (역삼동)
8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29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현*성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	지층 *호 (마천동)
8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8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가길 **	*호 (여의도동, 초원아파트)
8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9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숙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8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1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윤*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	***동 ***호 (강일동, 고덕리엔파크*단지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8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92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마길 *-*	(자양동)
8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506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길 **	*층 (신당동)
8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299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강*석	폐문부재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길 **	***호 (증평읍)
8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52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허*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길 ***	(보광동)
9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1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유*천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길 **	***호 (면목동)
9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50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임*철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양로*나길 **	***호 (구의동)
9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97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구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길 *-**	(종화동)
9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518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서*호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번길 ***	A동 ***호 ()
9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11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숙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호 (신림동)
9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0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섭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길 **	***동 ***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9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51	바뀌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숙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9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1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유*순,강*은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암길 ***	***동 ***호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아파트)
9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5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권*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	(능동)
9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1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신*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목로**길 ***-*	(민목동)
10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5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유*현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번길 **	***호 ()
10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5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석,김*호	폐문부재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안*길 **	(소룡동)
10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2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채*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길 *-*	*흥옥탑호 (광희동*가)
10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2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서*석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	***동 ***호 (신도브레뉴아파트)
10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2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최*태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길 ***-*	(화양동)
10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6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증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길 *	***호 (본오동)
10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6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자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길 **	*흥 ***호 (노원동)
10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2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Y*N T***EN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진구 대사관로***가길 **	***호 (한남동)
10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2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	***동 ***호 (구의동, 아자신후먼시아)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0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6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원*호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번길 **	***호 (검암동, 에베에셀)
1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63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김*숙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1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6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국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리길 **	***호 (내발산동, 강성레스트빌아파트)
1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2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현	폐문부재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B동 ***호 (능동)
1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6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DO**TTE M***NIE AN**LA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길 *-**	***호 (한남동)
1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7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숙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1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3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박*한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	(신곡동)
1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3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황*일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화랑로***번길 ***-	(신성동)
1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3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철,이*웅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길 **	***동 ***호 (하월곡동, 월곡김영명가)
1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7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숙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1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7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일로**길 **	(화양동)
1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7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양*혁	폐문부재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	(송정동, 이경자빌딩)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3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길 **-*	가동 ***호 (성수동*가, (구)부용연립)
1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3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권*준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담십리로**길 **	지층*호 (면목동, 광진연립)
1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74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이*원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	(송정동)
1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7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신*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길 **	***동 ***호 (도선동, 성동삼성세르빌)
1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7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섭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길 ***-	(자양동)
1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7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우*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	***호 (논현동)
1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92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중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성북구 본오로*길 *	***호 (본오동)
1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3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전*경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번길 **-*	***호 (용현동, 수봉탑스빌)
1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3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조*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길 **	***호 (예장동, 예장동 삼익아파트)
1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7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윤*진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나길 **	(면목동)
1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7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민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번길 **	(신곡동)
1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8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길 **-*	(길동, 지상원룸빌)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7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중영**길 **	(용답동)
1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8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설*광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나길 *	***호 (대림동, 오션빌)
1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8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허*왕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	***호 (홍인동, 현대우일터운)
1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9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 **	(암사동)
1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4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정*영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번길 **	***동 ***호 (가능동, 누리파크빌)
1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82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안*열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	***동 ***호 (하왕신리동, 텐즈힐*)
1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38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길 ***	(길동, 지상원룸빌)
1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4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	*층 ***호 (신림동)
1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47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숙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	*층 ***호 (신림동)
1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8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H**G H**YU AN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기길 ***	(대림동)
1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09	00148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신*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 ***	***호 (황학동, 한양 IClass)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 기본주소	납세자 상세주소
1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153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만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다길 **	*동 ***호 (풍남동, 유천연립)
1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154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지*기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관진구 인교광로**가길 **	***호 (종곡동, 평화주택)
1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156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박*영	수취인불명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은행정길 **	(봉성면)
1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158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송*호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길 **	***동 ***호 (장안동, 신부파스카 아파트)
1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161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한*욱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로 **	***동 ***호 (행신동, 서정마을*단지아파트)
1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155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희	폐문부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번길 **	***동 ***호 (서천동, 서천마을휴먼시아 *단지)
1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157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영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 **	***동 ***호 (강일동, 강일리버파크*단지아파트)
1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158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S*N M*G LAN,전*수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	나동 ***호 (신사동, 초원네스빌)
1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160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정*선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 ***	***동 ***호 (신내동, 신내우디안*단지)
1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16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희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곡로**번길 **	***동 ***호 (토당동, 은곡*자현대출타운)
15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155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문*원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동 ***호 (역삼동, 역삼푸르지오아파트)
15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154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방*석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번길 **	*층 (길동)
15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6-10	00155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영,김*기	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에당*로 **	***동 ***호 (금강펜테리움아파트)

◆ 은평소방서공고 제2016-5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제한하고자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은 평 소 방 서 장

건 물 명	주 소	소방안전관리자	생년월일	수첩번호	선임일자	자격정지일
수색종합클리닉	은평구 수색로 272-1(수색동)	김은정	1970-03-07	1995-01-22-1-000741	1998-05-04	2016-11-07
푸른숲아파트	은평구 백련산로 91-5(응암동)	이창훈	1972-02-02	점검위탁 감독자	2015-06-10	2016-11-0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02-384-01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소방서공고 제2016-22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 이수자 업무정지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해 「같은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송 파 소 방 서 장

1. 건 명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 이수자 업무정지 공고
2. 근 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3. 공고(업무정지) 대상 및 내용

대 상 자			업무정지 내용		업무정지일
성 명	대 상 물	대상물 주소	정지되는 업무	업무정지 사유	
황연주	신안빌딩	송파구 송이로36길 68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기한 내 교육 미이수	2016. 11. 7.
신종권	잠실현대아파트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7	소방안전관리보조		2016. 11. 7.

4. 실무교육 미 이수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정지된 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를 30이내 선임하고,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기한 내(30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호

나. 해당자를 선임하고 기한 내(14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4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431-41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85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사장
 -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862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82번지
 - 면 적 : 영구 3.29㎡, 일시 7.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상개폐기 지상변압기 설치
 - 내 역 : · 개폐기(기초대1.7m×1.12m×0.9m),(본체1.6m×1.0m×0.8m)
· 변압기(기초대1.6m×1.12m×1.1m),(본체1.5m×1.0m×1.0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6.11.03.~2021.11.02.(2016.11.14.~2016.11.18.)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91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치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80-19

- 면 적 : 10m²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를 위한 전기 전선관 매설
 - 내 역 : 전선관 매설 설치(20m×0.5m) 1식
-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6.11.07.~2021.11.06.(2016.11.07.~2016.11.17.)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